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007. 8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최종보고서-

2007. 8

한국사회학회

제 출 문

대통령자문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학술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8월

한국사회회장
전태국

책임연구원 :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이민주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수료)

목 차

서론. 한국적 “다문화주의” 의 모색:	
세계화 시대 이민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	1
I. 연구의 배경: 다인종·다민족화와 다문화주의 논란	1
II. 연구의 필요성	2
1.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상대적 지체	2
2.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변화의 가속화	3
3. 선진 다민족·다인종국가의 이민정책 변화	3
4. 국내 학계 및 정책입안의 도전적 과제	4
5. 경험과 전망 부족에 따른 정책사업의 중복과 프로그램 빈곤	5
6. 성급한 “다문화주의” 수용과 민족·인종차별주의	5
III. 연구의 목적과 설계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설계	7
1) 현 단계 “다문화” 현상의 주요 사회 주체 설정	8
2) 현 단계 “다문화” 현상의 분석과 이론화	8
3. 연구의 진행	9
IV.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관련 쟁점들	10
1. 핵심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이해	10
1) 용어에 대해 : 이민, 외국인, 이주 등	11
2) 개념에 대해 : 다인종·다민족화와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13
2. 한국 다민족·다인종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16
3. ‘다문화’ 현상의 주요 대응세력, 정부와 시민단체	22
V. 세부 연구과제의 요약	25
VI. 연구의 범위와 의의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의의	31

제 1 장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35
I. 서론	35
II.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	36
1. 세계화 시대 이민으로서의 한국의 이민현상	36
2. 세계화 이민의 특징과 한국의 사례	38
1) 이민수요의 폭증과 폐쇄적이고 선별적인 출입국정책	38
2) 불법이민의 일상화(routinization)	41
3) 이민경로의 다양화	44
III. 세계의 이민논의와 한국의 ‘다문화’ 논의	45
1. 선진국과 한국의 이민논의 비교	46
2. 한국 이민논의의 전망	50
1) 인종주의의 부상	50
2) ‘다문화’ 논의의 분화	53
IV. 한국적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55
1. 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정의의 모색	55
2. 보편주의의 활성화	58
3.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의 측면에 대한 고려	60
V. 요약 및 결론	62

제 2 장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67
I. 들어가는 글	67
II. 현대 한국사회 다문화주의 담론의 형성과 특징	71
1. 한국사회의 다문화지형도: 민족·계급·젠더·공간	74
2. 다문화 정책의 지형도	79
3. 다문화 담론의 지형	80
III. 단일민족론과 한민족정체성 형성의 역사인류학적 고찰	82
1. “단군의 자손”주장과 순혈주의의 관계	83
2. 차별원인은 순혈주의적 단일민족론이 아니라 문화적 우월주의	87
3. 문명론의 차별과 혈통의 차별	90

IV. 식민지 청산과 근대화 과정의 민족주의 형성 및 재생산	91
1. 식민지 청산과 민족주의	91
2. 분단과 통일의 역사의식과 민족주의	96
V. 한국식 다문화주의 담론의 성찰	97
VI. 한국식 다문화주의론의 이론화와 정책제안	101
1.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론화	101
1) 특성과 개념화	102
2) 변화의 방향	106
2.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델의 정립 전략	107

제 3 장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111

I. 서론	111
II.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도시 및 이민사회 발전에 대한 문헌연구	113
1. 세계화 시대의 자본과 인구 이동 및 글로벌 거대 도시 발전에 관한 연구	113
2.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이민 사회 및 외국인 거주공간에 관한 연구	116
3. 한국의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	119
III. 서울의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외국인 마을을 중심으로	121
1. 세계화 시대 전·후 외국인의 유입과 서울의 공간적·계급적 구성	122
2. 서울의 외국인 마을의 문화적 특성과 주류사회와의 소통	129
IV. 결론: 한국적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외국인마을의 사례를 통한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제언	133

제 4 장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141

I. 머리말	141
II.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	144
1.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	144

1) 국가간 활발한 인적교류	144
2)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외국인력 수요증가	145
3) 체류 외국인 유형의 다양화 및 정주화	146
2. 사회통합·다문화포용 등 새로운 정책 수요발생	147
1) 사회통합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의 필요	147
2) 다문화 포용에 필요한 사회 환경 조성	147
3)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 외국인력 도입·활용	148
4) 인권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148
3. 종합적·중장기적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마련 필요	149
1) 외국인 체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의제 대두	149
2) 외국인정책에 대한 총괄시스템	150
III.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주요 변화와 최근 추진 현황	150
1. 외국인정책의 주요 변천	150
1) 인재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정책	150
2) 외국인 단순노무인력 정책	151
3)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	153
2. 외국인정책의 대상별 최근 추진 현황	153
1) 외국적동포	153
2) 정주외국인 및 이민자 2세	155
3) 국민	157
4) 외국인근로자	157
5) 외국인유학생	160
6) 난민	160
7) 불법체류외국인	161
IV. 참여정부의 외국인정책 주요 사항과 정책진단	163
1. 참여정부의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항	163
2. 외국인정책의 진단	164
1) 긍정적인 면	164
1) 미흡한 면	165
V. 향후 외국인정책의 추진방향	166
1.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 체계 확립	167
2. 외국인 유입의 정책적 관리	167
3. 귀화 신청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운영	168

4. 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	170
5. 국민의 다문화 포용력 강화	170
VI. 맺음말	171

제 5 장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 안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 173

I. 서론	173
1.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 제기	173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76
II. 다문화 사회 차별적 갈등과 다문화 운동	177
1. 다문화 사회의 갈등	177
1) 노동력 유입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차별 갈등	178
2)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신 빈곤층 형성에 따른 갈등	179
3) 코시안 아동의 증가와 제3의 정체성 갈등	179
2. 차별극복으로서 다문화 운동의 이해	181
1)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181
2) 차별극복을 위한 다문화 주의의 이해	183
3) 다문화 운동	184
3. 차별문화 극복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186
1) 지역사회의 차별 문화 극복의 중요성	186
2) 차별문화 극복 대안으로서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187
III.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190
1. 다문화 사회의 국경없는 시민권	190
1) 국경없는 시민권 논의 계기	190
2) 국경없는 시민권의 주장 근거	192
3) 국경없는 시민권의 내용	193
4) 국경없는 시민권을 넘어선 공동체 사회 구상	194
2. 국경없는 마을 운동	196
1) 문화적 사고로서 국경없는 마을	196
2) 하위문화의 형성	197
3) 하위문화로써 국경없는 마을	198

3.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교육	199
1) 다문화 교육의 목적과 목표	199
2) 다문화 공동체 교육의 내용	200
3) 다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201
IV.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실천 과정	202
1.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출발	202
1) 다문화와 이주노동자	202
2) 다문화와 다문화 가족	203
2.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이해	204
1) ‘국경없는’이라는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전제 한다. ..	204
2) ‘마을’의 의미는 공동체이다.	205
3) 국경없는 마을은 다문화 사고 운동이다.	205
3.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전개	205
1)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1기 (1996-2002)	205
2)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2기 (2003-2006)	208
3)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3기 (2006년 6월 이후 현재) ...	214
V. 결 론	215

제 6 장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	219
I. 들어가는 글	219
II. 이민정책 수립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220
III.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	226
1. 외국인력 활용 정책의 변화: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로	226
2. 사회통합 정책 발표 배경: 결혼이민자 증가	229
3. 사회통합 정책 발표 및 특성	232
IV.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236
1. 정부 각 부처간 세력확대 노력	237
2. 참여정부의 특성	238
V. 한국적 다문화사회 지향 이민(통합)정책에 대한 평가	239
1. 다문화 지향 정책이지 다문화주의 정책이 아님	239

2. ‘정부+NGO’주도적 그리고 ‘중앙’ 주도적인 정책임	240
VI.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	241
1. 다문화주의적 · 동화적 제3의 통합모델 모색	242
2. 단계별원칙: 제1단계 ‘선별’원칙 대 제2단계 ‘다양성 존중’원칙	243
3. 내 · 외국인 정책을 포함하는 진정한 이민정책의 모색	244
VII. 맺는 글	245

제 7 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I. 서론	251
1.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251
2. 외국인 이주노동자 실태	254
3. 결혼이주여성 실태	255
4. 다문화주의 담론의 부상	257
II. 이론적 논의	258
1.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 배경	258
2.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배경과 문제점	259
III.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262
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의 내용	262
2.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내용	266
3.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관점	268
IV.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사례	274
1. (사) ‘국경없는 마을’	274
1) ‘국경없는 마을’의 출현 배경	274
2)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주장	275
3)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활동	275
2.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舊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77
1) 출현 배경 및 변화	277
2) 주요 활동 및 주장	277
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79
1) 출현 배경 및 변화	279
2) 주요 활동 및 주장	280

V. 결론과 정책제언	282
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비교	282
2. 단계적 다문화주의	286
3. 민관 거버넌스체계	287

부 록: 중간보고회의 전문가 논평 291

제 1 장 논 평	293
제 2 장 논 평	296
제 3 장 논 평	300
제 4 장 논 평	303
제 5 장 논 평	306
제 6 장 논 평	310
제 7 장 논 평	312

서론.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 세계화 시대 이민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I. 연구의 배경: 다인종·다민족화와 다문화주의 논란

한국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인종·다민족화 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6년 12월 현재 전 인구의 1.86%, 약 91만 명이며,¹⁾ 이들의 정책집단별, 출신국별, 광역단체별 분포는 법무부의 정기적인 통계 발간으로 그 변화추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²⁾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가 그랬듯이, 2000년대 중반 이후는 가히 “다문화 열풍”이라 할 만큼 다양한 학술활동뿐 아니라 관련 정책과 사업이 기획 추진되고 있다. 당시 정보격차를 염려하던 입장이 공존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치적·학술적 입장에 관계없이,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갈등이나 균열을 그다지 겪지도 않은 채, ‘동화가 아닌 적응과 통합,’ ‘다문화적 감수성과 문화다양성의 고양’이라는 사회·문화·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입장이 주류를 점하고 있다. 보편 가치로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지향”에 아주 쉽게 동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김혜순, 2006b).

이런 현상에 대해,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적인 한국의 정치문화적인 전통하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실현이 난제라는 일반적인 우려는 물론, 다문화가 진정 바람직한 대안인가라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관심과 전공분야가 다른 관찰자들은 약 2%라는 점유율은 그리 많은 것이

1) 국제이주기구(IOM)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는 방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합법·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2005년 기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6-05-20 보도).

2) 관련 현황은 본 보고서의 김남일 법무부 정책관이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아니고, 한국사회에 누적된 다른 현안에 비해 다인종·다민족화는 정책적 의제는 고사하고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의 “다문화 열풍”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택적으로 부각시킨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현안들에 정치권이 대중추수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므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³⁾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는 국민 다수의 동의와 설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보내는 이런 의심과 폄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들을 포괄하면서 지난 2-3년간 국내에 풍성해진 다문화 담론과 학술적·정책적 실천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작업이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II. 연구의 필요성

1.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상대적 지체

동북아시아의 주역인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 중국은 내생적으로 다민족·다인종사회이며, 일본은 제국주의적 확장기를 통해 다민족·다인종 관련 담론과 정책이 내부적으로 형성되었던 경험이 있으나, 한국은 이들 3국 중 가장 강력한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주의 전통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자본과 노동의 글로벌화라는 당대의 세계사적 국면으로 인해 세계 경제체계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일본부터 시작하여, 한국, 그리고 이제 개방하기 시작한 중국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다민족·다인종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이들 3국 모두 새로운 양상의 다민족·다인종화에 따른 사회통합의 도전을 안고 있으나, 한국사회에는 이것이 더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간의 압축적인 고도경제 성장이라는 내부적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라는 지구적 규모의 변화로 한국사회의 민족적·인종적 구성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내적인 적응과 통합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주역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경험이 일천한 현상이 다면적이고 동시

3) 관련 학술행사나 정책사업 회의 석상이나 사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평이다.

적으로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대응책을 견인할 기본 철학과 방향, 추동력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변화의 가속화

한국은 칠레, 미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EU와 다자간 협정보다 더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인적·물적 왕래가 일어나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노동과 자본, 상품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체결은 동북아 3국 중 유일하고, 미국과 EU간의 견제심리로 EU와도 가장 먼저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EU국가와 한국 간에 거래와 왕래가 빈번해지는 것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한국 간에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도 활발해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다민족·다인종화의 가속적 진행을 의미한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더욱 증가하고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다문화 한국사회(multi-cultural Korea)로의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⁴⁾

3. 선진 다민족·다인종국가의 이민정책 변화

선진 제국에서 이민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정책기조가 중대 전환국면을 거치고 있다. 지금의 다민족·다인종화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 즉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이므로, 근대적 국가의 성립과 통합을 우선으로 여러 민족·인종간의 정치·종교·문화적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했던 것과는 다르다. 앞서 이들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다 해도 최근 들어 관련 갈등이 증폭되고 통합과 배제의 선을 명백하게 긋는 정책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⁵⁾

즉, 선진 다민족·다인종국가도 새롭게 전환되는 국제 이주 및 이민 환경에 맞추어 이론과 정책이 새롭게 조정되는 국면에서 역사·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다른

4) 국무조정실 2007. 4. 20 보도자료 “한 총리, ‘이민자 지원강화로 다문화사회 본격 대응’” 2쪽.

5) 2007년 7월에 미국에서는 양당합의하에 마련된 20년만의 이민법 개정안이 전면적인 논란 끝에 무산되었다.

한국이 이들과 동일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과 서구의 경험과 이론은 참고할 수 있으나 선별적이고 주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글로벌화라는 당대의 세계사적 국면성과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지역적 현장성이 본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국내 학계 및 정책입안의 도전적 과제

지금까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대두되면 학계의 연구결과와 선진 제국의 이론과 정책을 참고하면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령을 만들어왔다. 다민족·다인종화의 경우에도 이런 접근방법이 활용되어야겠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국내 현장의 변화는 새롭고, 급격하면서, 정책 요구가 높다 보니, 현상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의 상대적 분리에 익숙했던 기존의 학술활동과 큰 차이를 보이는 국면이다.

일시적 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1990년대부터 있었다. 한정적인 입법조치와 정책으로 대응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 급변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집단이 다양해졌으며, 그만큼 다양한 요구가 발생했으며, 국내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수요가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연구논문과 보고서가 최근 2-3년간 급격히 축적되는데, 실태조사와 현황과악, 추상적이고 당위론적인 입장 제시, 세분화된 영역에서의 문제와 입장 제기로 대별할 수 있다.⁶⁾ 학문적 연구는 원래 속성상, 구체적이고 분화된 전문영역에서의 연구 축적, 기존 이론과 학설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통해 발전한다. 이런 축적과 발전 속에 현실 상황에 적응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의 구분이 명확한 것이 그동안 학계의 관행이던 것에 비해 참으로 파격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둘째, 지금까지 학계 연구나 정책 입안시 중요한 전형으로 삼아왔던 선진 제국의 정책이 최근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다.

셋째, 이들의 정치·종교·역사·문화적 경험이 한국사회와 다르다는 점은 어떤

6) 한국사회학회의 2006년도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연구보고서(한국사회학회, 2006: 이하 2006 보고서)도 국내 외국인 집단 별 현황과 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의제를 다룰 때나 마찬가지로 유념해야 하지만, 다민족·다인종의 경험에 있어서는 양적·질적 차이가 아니라 아예 경험의 유무로 차이난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한국사회에 생소한 다민족·다인종화, 이 방면의 선진인 사회나 한국사회가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적으로 겪고 있는 국면의 전환, 다민족·다인종화에 대한 적응과 통합에 있어 한국사회는 서구와 다르다는 인식,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는 정책 입안가 뿐 아니라 국내 거의 모든 사회과학자들에게 전대미문의 지적, 학술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5. 경험과 전망 부족에 따른 정책사업의 중복과 프로그램 빈곤

그간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관련 주제가 사회·정책의제로 부상되었고, 2006년 일련의 외국인 지원과 통합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정주 외국인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사업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정부의 관심은 많으나 부처 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정부와 민간단체 간 중복지원과 특정 사업으로의 편향 등, 현장에서의 진행은 조정과 체계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김혜순, 2006c).

6. 성급한 “다문화주의” 수용과 민족·인종차별주의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적응해주시기를 바라는 인도주의적 관심과 기대, 그러면서도 갈등과 경쟁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양가적 감정을 갖는 게 보편적이다. 이런 양가적 감정때문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온정과 시혜가 극우적인 구별 짓기와 차별로 비화되는 것은 즉각적일 수 있고 언제 어디서고 나타난다(김혜순 2006b).

그런데 한국은 정체성의 갈등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험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현실감이 없다 보니 오히려 다문화주의가 쉽게 동원, 수렴되는 것일 수 있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한국사회가 단일민

7) 이는 2007년 4월 20일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는 보도가 있었음(국무조정실 2007. 4. 20 보도자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족주의와 순혈주의에 편향되어있다는 대중적 인식과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에 비해 인종 통합과 다문화적 포용에 선진적이라던 프랑스에서 2005년 발생한 인종갈등이 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포용정책이나 이상적인 다문화주의로 급격히 경도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일상에서 갈등이 구체화되는 순간 오래 익숙해왔던 “순수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차별과 적대감이 바로 발화될 수 있다.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 때 한국인의 미국에서의 거취를 고려해 국가적 사과를 종용하던 일부 언론과 네티즌, 한국인 봉사단체의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기독교 혐오적인 반응”과 이들을 순교자로 보는 대중적인 집회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인종과 민족⁸⁾ 종교적 논란이 한국사회를 첨예하게 분열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프간 피랍사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회나 당사자가 부담케 하라는 주장까지 있으니, 이런 분열에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겹쳐질 때 서구에서 이미 사회 범주가 된 혐오 범죄(hate crime)가 한국사회에도 일상화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전망은 미흡한 채 이상적 지향에 대한 추상적 수준에서의 동의만으로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정책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따라서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다. 현장은 다양한 이주 외국인 집단, 관련 NGO, 지자체, 개별 학문분과와 학술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는 무수한 전선을 두고 대립되기 마련이다. 체계화와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현장반응적인 세부 사업과 정책은 첫째, “나눠 먹기식,” “임기응변적,” “온정적, 시혜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둘째, 사업의 중복과 편향을 피할 수 없다. 셋째, 관련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여론추수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급선회될 것이다.

8) ‘국가와 민족’이 동원될 때 집단적 트랜스 상태에 빠져드는 가장 최근의 예로 황우석 교수 사건과 심형래 감독의 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들 수 있다.

III. 연구의 목적과 설계

1. 연구의 목적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이론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이론화는 학술적 작업인 동시에 정책적인 작업이다. 한국 인구 구성의 다민족·다인종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데 반해 한국사회에 아주 새롭지만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 제국에 나타나는 최근 관련 갈등과 정책의 변화에 비해 오히려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포용과 통합, 다문화주의로 합의가 일어난 듯한 사회분위기....이들은 학술적 연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정책 환경으로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여러 글에서 밝히듯이, 법무부는 2006년 12월 국내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었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하게 되었다. 즉,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두되었고 이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장되면서 “사회통합과”가 신설된 것으로 이미 가시화되어 있다.

이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요구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 간에, NGO간에, 학계 내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능한 포괄할 수 있어야 하되, 몇 개의 정책연구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과 철학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또한 현 지점은 정책입안가나 현 장운동가, 연구자 모두 학습과 연구, 대응방안 마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방향과 철학정립을 위해 현장의 주도 세력과 그들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과제와 쟁점을 제안하는 것, 그것을 이론화의 한 출발점으로 삼기로 한다.

2. 연구의 설계

현 단계는 다민족·다인종사회로의 전환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학술적인 체계화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사회의제화에 온 시민단체와 이를 받아 정책의제화한 정책담당자가 전망하는 한국의 다민족·다인종사회를 출발점으로 하되, 이들과 전문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이론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1) 현 단계 “다문화” 현상의 주요 사회 주체 설정

한국의 “다문화”관련 현상의 주요 사회 주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들 관련 사업과 활동을 하는 NGO,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 주무 부처가 있다. “다문화”현상의 담론화에는 언론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은 언론사가 특정의 사회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이거나 전문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제외했다.⁹⁾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이들이 직면하는 적응의 과제와 갈등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사회학회의 2006년도 보고서 또한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 북한이주민, 재한 화교, 이주노동자 등, 국내 이주민 집단 별 상황을 점검하였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양다기하게 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에서 필요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다문화”관련 현상을 주도하는 사회 주체로서 이들의 움직임은 아주 미약하다. 지금으로서는 관련 NGO와 정부 주무 부처만을 주요 사회적 행위자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NGO중에서 활동연한이 길고 관심사가 특정 외국인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 단체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의 이사장인 박천웅, 2006년 12월 중 국내 외국인 관련 주무 부처가 된 법무부에는 종래 출입국관리국을 개편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담당관인 김남일에게 본 연구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후 원고를 청탁하였다.

2) 현 단계 “다문화” 현상의 분석과 이론화

한국의 “다문화”관련 현상의 주요 사회 주체로서 정부 주무 부처와 NGO가 설

9) 이면에 따른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사회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 언론사들도 나름의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로는 보도경향을 분석하는 정도가 유의할 것인데, 그간의 경향을 보면 개별 담당자들이 NGO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행사와 보도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정도이다(김혜순 2006c).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언론의 보도경향 분석은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정된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집단으로 사회학에서 주목해온 국가와 시민사회를 각각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분석과 이론화의 여지가 상당히 많음을 시사한다. 국가-시장-시민의 역학관계를 놓고 볼 때, 다인종·다민족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세계화되는 자본과 노동이므로 이런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과 시민사회의 대응이 특정 국가의 다문화 현상을 구성해 가는 것으로 얼개를 잡을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인 골격을 구성하기 전에, 이런 정도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두고 한국사회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제안서를 공모하여 집필자의 전문성과 위 기본 구성에 적합한 내용에 주목하면서 최종 5편의 제안서를 선정하였다. 공모에 선정된 주제는 세계화에 따른 이민현상 분석, 한국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 분석. 국가와 NGO의 분석과 방향 제시, 다인종·다민족화의 지역적 전개를 다루는 현황분석의 5편이다. 다인종·다민족화의 지역적 전개는 “다문화” 현상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분석과 이론화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다인종·다민족화라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진행되는 현장이 바로 지역이고, 한국사회의 중앙 집중성과 지역차별성을 감안할 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에 지역별 특수성이 누락된다면 또 다른 추상화와 보편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처음의 두 편은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으로서 세계화이민이라는 보편적인 경향과 한국사회의 역사 문화적인 전통이라는 특수성의 맥락을 다루며, 나중의 두 편은 이 현상의 주도세력인 정부와 시민단체 활동을 평가 분석하면서 향후 한국적 다문화사회 실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3. 연구의 진행

연구에 참여하게 된 전문가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향 공유를 위한 전체 회의와 워크숍 각 1회,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모든 필진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중간발표회를 가졌으며, 모든 회의는 회의록과 녹취록이 작성되어 그 내용이 공유되었다. 온라인으로도 활발한 의견개진이 진행되어 연구과정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연구일정과 진행사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사회학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학술행사의 주제로 “다문화”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선정함에 따라 본 연구의 중간발표는 동 기념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참여가 많았고,¹⁰⁾ 지정 토론과 자문 외에 일반 연구자의 논평도 얻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책임연구원의 서론과 각 전문가의 원고, 각 원고에 대한 동료 연구자들의 기명 <논평>이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관련 쟁점들

1. 핵심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이해

개념은 대상을 보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표현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치적 또는 문화·학술적 권력에 의해 위로부터 주어져 대중화된 개념은 피상적이라 불안정하여 사후적으로 그 개념의 외연과 내포를 둘러싼 상징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대중에 회자되면서 생명력을 얻게 된 개념은 사용자만큼이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인식과 소통을 가로막게 된다. 그런 만큼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개념화 과정은 지난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경쟁하며 공존하게 된다.

특정 개인에 대한 애칭이나 별명도 그렇지만, 사회적 호칭 또한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사회적 존재와 지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과 타협, 변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널리 알려진 예를 들자면, 흑인 인권운동과 함께 니그로(negro)라는 흑인평화적인 용어 대신 블랙(black)을 사용하자던 것이 흑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니그로를 넘어 니거(nigger)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유색인의 경우 people of color와 colored people에 대한 정치성이 논의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개념 특히 이념과 관련된 개념과 사회적 호칭에 더욱 민감하다. 한국사회의 위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 특징, 식민지적인 학문풍토, 분단과 반공주의의 역사가 사용하는 개념과 사회적인 호칭이 갖는 정치성을 극대화해왔다. 즉, 개념이나 호칭은 그 대상과 주체가 정치화되는 정도에 따라 용법과 의미에

10) 위 행사는 통합(plenary)세션과 개별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통합세션에는 200여명, 개별 세션에는 50여명이 참여했음.

대한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인 배경이 이런 논란에 선별적으로 작용하여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색, 혼혈아, 탈북자 같은 기존 용어와 호칭은 이미 정치화되어 사용을 금하거나 대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박천웅은 1997년 당시 혼혈아, 튀기 등의 경멸적인 용어를 대체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코시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설동훈(2006a, 2006b)은 이 호칭이 강자의 횡포라며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호응(정지아 2006; 임태훈, 2006 등)도 있었다. 2006년 초반 전북 교육청이 용어 공모에 나서 온누리안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채택했으나(서울신문 2006-03-23 보도), 이 또한 이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배제하기 쉽다는 이유로 큰 호응을 얻진 못했다.

즉,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가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 특정 권력이 용어나 호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 연구와 정책의 대상이 아직 주체화·정치화되지 않은 상황은 우리가 개념과 용어, 호칭 사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인 배경과, 선진 다인종·다민족사회의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갈등을 볼 때 개념과 용어, 호칭에 대한 정치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상반되는 요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용어에 대한 지나친 엄격성과 용어 통일에 대한 편집증에서 벗어나 개별 연구자의 입장과 특정 맥락에 적합한 용어를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정치담론이나 학술논의에 다양한 용어들이 공존할 수 있으며, 특정 용어를 통해 특정 입장이 드러나게 하며 그 자체가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동일한 정책 내에서, 또는 단일한 연구보고서 내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통일은 필요하다. 더구나 정책제안을 지향하는 이 연구 보고서의 특성상 입장과 맥락에 따른 용어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원칙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일부 용어와 개념, 호칭에 대해서는 이해를 공유하면서 사용키로 하였다.

1) 용어에 대해 : 이민, 외국인, 이주 등

법무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은 영어로 immigration policy인데, 우리말로 “외국인 정책”이라 한 것은 그동안 “이민”이 한국사회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으로 쓰여 온 관행 때문이라고 적시했던 바,¹¹⁾ 용어에 대한 고민이 드러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법무부 정책의 명칭은 외국인 정책으로, 내용상으로는 이민 정책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적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민’은 동시적이든 또는 가족의 일부가 먼저 이주하고 나머지 가족원이 나중에 합류하든, 가족단위의 이동으로, 이동 후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선진국의 이민 우선순위도 예전에는 가족관계(family ties)가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문 기술이나 지식인 또는 농업노동자처럼 노동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력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노동자 개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이동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제 3국으로 다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이민보다는 이주(migration, migrants)가 적절하다. 이민은 영어 단어의 immigration(immigrants)에 대응하는 말로 유입국에서 본 이주자이며, 송출국(또는 출신국)에서 보면 emigration(emigrants)이다. 국내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이(전)입인, 이(전)출인을 써왔지만, 국가 단위로는 나가는 이민만 있어서였는지 emigration(emigrants)에 대응하여 사용되어 온 우리말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동남아시아와 중국 몽골 지역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위해 오는 여성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쓰기로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을 위해 이민 온 여성으로 풀이되어 예전의 우편주문 신부, 사진신부와는 연계가 강조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도 물론 성상품화가 작용하여 이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에 따른 이민의 일환(Hsia 2004, 2006)이라는 점이다. 돌봄과 서비스영역으로 이주하는 여성 이주의 일반 경향과, 결혼으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이민이기 보다 여성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결혼이 선택된 이주라는 점, 송출될 수밖에 없는 출신국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출신국에서 가졌던 여성 개인과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은 이들이 한국사회와 결혼한 가족에 대한 적응과 통합과정에 일정한 유형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민보다는 위에서 구분한대로 이주가 적절하다.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 대한 고려가 생략되어 있다는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고, 그들 자녀의 적응문제가 대두된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하지만,¹²⁾ 결

11) 2006년 발표한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회의 자료.

12) 따라서 결혼이주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적 혼혈인 자녀에 대한 정책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혼이주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책집단이다. 한국인 여성은 상향혼의 경향으로 선진국의 남성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의 남성과 결혼하며,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국가에서 오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이들 남성은 결혼 또는 돌봄이나 서비스 영역으로의 이주 경로를 따르지 않으며, 남성으로서 한국가족에 적응하고 통합될 것에 대한 요구가 여성의 경우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적응과 통합의 과제가 다르다.¹³⁾ 즉, 이론적으로 사회적 위상이 다르면 정책적 요구와 대응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코시안의 경우, 위에서 예시하였듯이 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으나, 새로 제안된 ‘온누리안’도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국제결혼 자녀’가 혼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따라 맥락에 맞는 것을 쓰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가정/족은 ‘국제결혼 가정/족’, 또는 ‘다문화가정/족’을 혼용한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에 대비한 용어로 많이 쓰여 왔다.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해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도 보이는데 이는 illegal과 undocumented의 차이처럼, 전자는 범죄자의 연상을 가져오고 후자는 좀 덜 낙인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좀 더 고려한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어로는 illegal immigrants와 illegal workers가 혼용되는데 반해 undocumented는 노동자나 개인에게 자주 쓰이는 정황을 고려할 수 있다.

2) 개념에 대해 : 다인종·다민족화와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1) 현상으로서 “다인종□다민족화”

이미 앞에서부터 사용해왔듯이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현상은 ‘다인종·다민족화’로 지칭하기로 했다. 인구의 몇 %를 점할 때 다인종·다민족사회라는 공신력있는 기준은 없으나, 본 보고서의 김남일이 현황을 보여 주듯이 그 추세가 지속적임을 적시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민족과 인종에 대한 개념도 물론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구분과 정

13) 물론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중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경로를 밟고, 한국인 처가에 대한 적응이 도전적인 과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특수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나 정책입안의 대상은 보편적인 경향에 주목하게 되는 바, 여기서 제외되는 소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정부단체들의 또 다른 사회 의제화를 통해 정책 의제가 되는 길을 밟게 될 것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의가 논의된 것은, 민족주의 연구를 제외하면 국내의 경우 인류학계에서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도이다(김광익 2005). 설동훈(2006a)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의 정체성문제를 다루는 맥락에서 2005년 시행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와 법적 조항, 문헌개괄을 통해 국민과 민족, 인종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에 대한 규정과 인식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었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국민으로 포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제안을 하고 있다. 김현선(2006)은 좀 더 치밀하게 법적 규정과 사회적 구별 방식을 분석하면서 국민과 민족에 대한 경계를 살펴보았다. 국민에 대한 규정에 들어있는 혈통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을 지적하면서 역시 다양성을 포괄하는 국민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다. 즉, 이들의 연구는 민족과 인종보다는 국민에 대한 연구였으며, 민족보다는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민족과 인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한경구·한건수에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용어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그 자체로서 지난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사회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답아야 할 내용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용적인 용법에 따라 이들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즉, 인종은 피부색, 머리카락, 눈의 빛깔, 골격구조, 외모 등 여러 가지 유전적 신체적 특징 등으로 구성되며, 생물학적으로 타고 나는 고정적인 특질로 본다. 민족은 공통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지역기반의 공동체이므로, 집단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이산민족이라 부른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는 다인종과 다민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규정이 혈통중심인 한국사회에서는, 속주주의적인 규정보다, 국민과 인종, 민족이 상호 교차한다는 점을 간과할 순 없다.

한국은 남방계와 북방계의 몽골인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국민/국적 차원의 개념인 ‘외국인’이 일상에서는 외모(신체적 특징)가 다른 인종적 개념으로 치환되어 사용되어왔으나 설동훈(2006a)의 조사에 나타나듯이 점차 국민/국적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한민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민족은 국민으로 귀화하여 한민족으로 융합되거나 자신의 국적을 유지한 채 제한 화교와 같이 소수 민족 집단을 형성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김은미가 분석한 서울 지역의 ‘외국인 마을’은 인종적으로 다른 외국인(관습적 의미)이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법률적 의미)의 집단 거주지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거주공동

체로서 이민족 마을이기도 하다. 반면, 한민족이지만 한국인(국민의 의미)이 아닌 재외동포(외국국적 동포)와 한민족이면서 한국인인 재외동포(재외국민)가 2005년 현재 660여만 명으로¹⁴⁾ 각 나라에서 이민족/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했다’는 진술 안에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 한민족이 아닌 다양한 민족, 한민족이지만 한국인이 아닌 외국국적 동포, 몽골인종이 아닌 인종과 혼혈인종, 등이 많아진 것을 통칭한다. 이를 두고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진술은 ‘다문화 담론’중의 하나이며, ‘한국사회에 다인종·다민족화가 진행되고 있다’가 현상을 기술하는 진술로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2)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주의

한국사회에 ‘다문화’ 관련 담론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나 다문화주의가 무엇인지에 문제제기와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다. ‘다문화’가 접두어로 등장하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다문화교육, 다문화정책 등등, 한국사회에 다문화 담론이 성급하게 넘쳐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고 목적이며, 본 보고서의 여러 전문가의 글들이 이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목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로 다문화주의에 따옴표를 달게 된 것 또한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합의되지 않은 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문화사회란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개인의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다문화주의는 이를 견인해가는 이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를 다인종사회, 다민족사회, 또는 복지사회나 글로벌사회 등 기타 유사한 명칭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불러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문화라고 하면서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오경석 2007: 13)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다. 본 연구의 한경구·한건수 또한 문화인류학자로서 문화에 과도한 비중이 실리는 것, 문화라는 개념의 이데올로기성 등을 경계한다.

문화의 중요성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1948년의 유엔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이루어 낸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

14) 김현선(2006: 88)은 외교통상부의 조사라고 하면서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의 통계자료-재외동포 현황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약 등에 나타난 문화권과 문화다양성(cultural rights and diversity)에 대한 논란도 유념해야 한다. 소수집단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때 그 집단의 경제 설정과 집단내의 다문화화를 둔 사회정치적 투쟁뿐 아니라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될 수 있는 인권유린적인 상황에 대한 개입 정도, 정부의 문화산업과 “다품종·소생산”적 생산과 유통방식이라는 시장 논리에 부응하는 시장친화적 다문화가 선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 등(김혜순 2006a), 논란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논란은 ‘다문화사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보편가치로서 존중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입장에 따라 이를 수식하는 접두어가 다양하며, 서로 민주주의 이름을 팔며 갈등과 전쟁이 횡행해온 역사를 알고 있다. 경험칙 상, 보편가치일수록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의는 추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선, 다인종·다민족화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다문화사회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지향점으로 견인해 갈 이념으로 지금 다문화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가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와 한국사회의 다인종·다민족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중심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구 맥락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이라는 것과, 다문화주의를 유연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물 중 하나로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두고 학술적·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오히려 ‘다문화’ 담론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표피적으로 활용되어온 구호였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다문화주의 표방’이라는 것이 대중적인 구호로서 일시적으로 어필될지 모르나,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유용성은 물론 학술적 정책적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세계화 이민이라는 보편적인 현상이 한국이라는 개별 사회에서 구현되면서 갖게 되는 특수성 또는 개별성을 다루는 다음 절에 이어진다.

2. 한국 다민족·다인종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 간, 시대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각각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고 측정하는 정태적인 분석에 머물 것인가, 또는 역사적이고 전 지구적인 변화의 보편적 원리가 개별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고 보는 구조주의적이면

서 동태적인 입장에 설 것인가, 본 연구가 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 다민족·다인종화를 경험하는 지구상의 많은 국가에서 외형상으로 유사한 국면과 문제를 경험하겠지만 구체적인 전개와 결과는 각 사회의 역사와 문화전통, 정치구조, 시장의 요구를 역동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보편적인 경향과 개별 사회의 특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다민족·다인종화가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전통, 정치구조, 시장의 요구에 편향된 정책은 대중적 인기에는 영합하겠지만 유효성과 적실성이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다. 이들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착하는 것이 한국적 “다문화주의,” 앞서의 용어 정리를 활용해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한국적 다민족·다인종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1) 세계화 이민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에서의 전개

엄한진은 2006년 보고서(엄한진 2006)에 이어 본 연구에서 한국을 비롯해 최근 세계적으로 이민논의가 다시 중요해진 것은 신자유주의적 국제 분업의 결과 나타난 “세계화 이민”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과 근거를 분석하고 있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원인 등 계기적 요인에 기인했던 고전적 이민과는 구분되는 이민이며, 다민족·다인종화라는 현상은 같지만 추동하는 힘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 다민족·다인종국가에서 이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이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다. 박명선(2007)은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의 최근 이민법 개정이 ‘통합’이라는 국가 개입의 명분을 통해 이주민의 동화를 지향하면서 선별적인 활용과 배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석해낸다. 지금까지 일면 낭만주의적으로까지 보였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진 사회의 논의와 정책을¹⁵⁾ 이제는 어떤 이민을 배경으로 했는가에 따라 구분하며 활용해야 하는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다.¹⁶⁾

15) 필자가 전해 들었던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이주민 자녀에 대한 ‘다문화 교육’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이들 부모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주재원의 자녀가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역사 교육을 받는다고 들은 것이 일 년도 안 되었다. 박명선(2007: 290-299)에 따르면 2004년 신통합법 통과 후 2006년부터 언어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입국허가,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제한이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네덜란드어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고 한다.

16) 대부분 국내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진제국으로 가족 동반 해외 장기 연수나 안식년 경험이 있을 터이고, 해당 자녀가 각 급 학교에서 외국인으로 받았던 특별 배려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 경험에 기반한 ‘선진 다문화’ 주장을 냉철히 검토할 것도 요구된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최근 경향에 국한시킨다 해도, 특정 선진사회의 정책이나 이론을 한국적 다문화 사회 실현의 모델로 삼는다거나, 이들 경향이 한국에서 관찰된다고 하여 한국도 그들에게 수렴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 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세계화 이민이 한국사회에서 구현될 때, 국면상으로는 동시적이지만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진 제국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국내 논의에서 지적하는 한국사회의 단일민족주의나 혈통주의, 위계에 따른 차별주의,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 압력이 강하고 획일적인 집단 중심의 사회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한국적 특수성

한국의 다민족·다인종화 관련 현상을 연구주제로 삼는 거의 모든 글이 연구의 필요성으로 열거하는 항목은 본 연구 또한 <II. 연구의 필요성>에서 다수 공유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각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항목들은 세계화 이민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적시하는 보편적 경향과,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는, 즉 한국 특수적인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특수적인 항목은 한국에 특히 두드러진 특징과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 지역적 차별주의, 부계·부권 중심의 가족중심주의가, 후자는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급격함에 따른 노동력 수급 문제가 흔히 포함된다. 속도의 문제는 선진제국의 경제학적·인구학적 이론과 모델에 따른 처방이나 정책을 참고하는 경향을 가속화하며¹⁷⁾ 정책적 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다는 경고로 이어져 자원 동원을 쉽게 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사회·문화·정치적인 한국의 특수성을 이론화·체계화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정책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이다.¹⁸⁾

17) 2007년 7월 24일 경제 부총리는 전경련 주최로 열린 '2007 제주포럼'에 참여해 캐나다와 호주에서 실시중인 학력, 언어, 직업경력, 기술수준 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허용하는 '영주권 부여 점수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 2007-7-24 보도).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6월 결국 통과되지 못한 미국의 이민법 개정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수제였다. 미국의 재계가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와 법 개정의 시차를 고려할 때 노동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이미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의 전문가가 이 점수제가 이주자 뿐 아니라 개별 기업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NYT 2007-6-5 "A point system for immigrants incites passion," by C. Hulse)

18) 이 어려움에 대해 앞서 <II. 연구의 필요성-4. 국내 학계 및 정책입안의 도전적 과제>라는 소제목 하에서 설명했다.

(1)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 그리고 문명론적 차별”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이민족의 역사가 거의 없고, 혼혈인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에 비해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열광 등등, 최근 ‘다문화’ 관련 담론에서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순)혈통주의에 지적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였다 하더라도, 대중의 기억과 경험이 즉각적이고 선명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온상으로서, 다문화사회 실현의 걸림돌로서 항상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 간혹 간과되는 것이 유럽계 백인에게 호의적이고 유색인종은 차별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선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⁹⁾ 즉, 사대주의적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경구·한건수는 이를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이라 개념화하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의 과제로 분석한다.

(2) 지역차별성과 지역성

근대국가 형성부터 세계화이민에 이르기까지 다민족·다인종 사회였던 서구와, 한국을 나누는 중요한 또 다른 축은 한국이 중앙 집중성이 강하며 그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화에 따라 지역성 또는 현지성이 더욱 중시되어 가고 있는 보편적 경향을 볼 때, 한국사회의 지역성이란 서울과 수도권과 기타 지방의 지역성으로 점차 더 첨예하게 분화되어 갈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양극화이지만, 서울과 수도권내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사이에,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지역 자체는 모든 추상이 구체화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을 갖는다. ‘사회’의 구체적 존재양태로서 영토적 구체성을 가진 국가가, ‘다인종·다민족화’는 인구통계 보다는 특정 장소, 거리와 거주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외국인’에 의해 구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와 가족에 적응하고 통합하는 것이 사회의제로, 정책의제로 부각되는 계기는 이론적 추상화보다는 한국인 시어머니와 밭에서 김매는 장면, 도망갈까봐 남자처럼 옷을 입힌 채 산골 오지마을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는 장면 등등, 일상과 장소적 구체성을 목도하는 경우가 많다. “정주화하

19) SBS가 2006-11-5일 방영한 <SBS스페셜> “단일 민족의 나라, 당신들의 대한민국”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는(일시적 체류자가 아니라), 다양화하는 외국인집단”이라는 정책적 용어도 결국 이런 지역적 차별성(지역과 계급)과 젠더²⁰⁾ 기반에서 구체화된다.

도시와 농촌은 일상생활의 생태적·거주적 환경이 다른 것은 물론, 농촌은 농사가 주요 생계유지 수단이며 도시는 노동을 사고 팔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된 곳이다. 대도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은 그들끼리의 거주 지역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지역에 가서 ‘에스닉푸드’의 음식과 문화를 관광하듯이 접하기는 쉽지만, 그들의 삶이 일상적으로 보여 지고 드러나지는 않는 듯하다. 이주노동자는 물론 처음부터 모여 살겠지만, 결혼이주여성은 도시이건 농촌이건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에 살게 된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적응 뿐 아니라 한국 남성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찾아 이들끼리 모여 살 수 있다. 반면, 농촌에서는 원래의 정주지에 여자를 데려다 살기 때문에, 일부러 배우자의 친지들을 서로 소개하면서 또 다른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지 않는 한 모여 사는 경우가 드물다(김혜순 2006c: 73-74).

일상과 지역의 현지성(특수성)과 지구성(보편성)이 만나 상호 조정 발현되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하며,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주의, 서울 중심주의, 강남 중심주의로 인해 일상과 지역의 현지성이 더욱 두드러지며 양극화되고 있다. 이는 이주자들이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이주 자체로서 삶의 방식이, 따라서 적응과 통합의 과제가 결정된다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떤 사회현상도 그 소재지(locale)가 수도권인가 지방인가에 따라 작동하는 역학관계가 달라진다(김혜순 2006c: 73). 따라서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에 대해 지방분권이 발달한 서구의 이론과 경험을 적용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서울·수도권·도시중심적인 학술적 논의와 정책을 기본 모델로 하고 지방이나 지역은 이를 적용하는 사례로 접근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도 지양해야 한다.

한국적 다인종·다민족화가 지역차별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본 연구에서 김은미는 서울 지역에서 확인된 ‘외국인 마을’이 공간적·계급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한경구·한건수 또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지형이 공간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적시하며, 이해경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중앙정부

20) 이 절은 지역차별성에 대해 논의하지만, 성별 또한 다인종다민족화가 전개되는데 중요한 축이며 한국사회의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중심성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으로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언급할 것이다.

일방으로 입안되고 하달되어 삶의 현장인 지역과 지방의 상황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3) 부계·부권의 가족중심주의²¹⁾

인류학적 표현에 따르면 한국은 고맥락문화라 한다(김민정 2006).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도시보다는 농촌이, 공적영역보다는 사적영역이 더 고맥락적이다. 한국은 외국인이 와서 배워야 할 문화적 문법이 상대적으로 더 촘촘하고 다층적으로 얽혀져 있다. 공적영역은 발달되지 못했었고, 사적영역 중에서도 가족의 우선성이 강조되고, 가족 관련으로 여성의 전담성이 두드러지며, 이런 특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과 여성 관련 이데올로기 장치가 정교하게 발달되어 왔다(김혜순 2006c: 63).

조선 중반 이후 부계·부권 중심의 가족중심주의는 한국사회의 중요 사회조직 원리 중 하나인 유교문화의 일환으로 유지되어왔을 뿐 아니라 일제이후 개인의 근대성과 사회의 근대화가 진행되었어도 그것은 시장과 국가부문, 즉 통칭 남성과 남성영역에서의 근대화였을 뿐 가족과 여성 부문은 철저하게 봉건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가족과 여성의 봉건성 때문에 한국 사회와 남성의 근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개발시기에는 자원과 노동력의 국가적 동원을 위해 부계·부권 중심의 가족중심주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지지되어 왔다(김혜순 2006c: 62).

그간 여성운동의 성과 뿐 아니라 시장이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봉건적 가족관계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도 근대화되고 근대화된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가족관계는 심각한 재조정 국면에 놓여있다. 맞벌이, 이혼, 무자녀 또는 소수자녀, 만혼과 독신, 부모와 분거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않(못하)는 독신가구, 가족성원간의 분리거주 등 전통적인 가족관계보다는 경제적인 고려가 우선되는 가족관계와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김혜순 2006c: 62).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은 가족관계(혈연)와 학연인데, 학연은 가족(부모)의 지원에 따라 세습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족중심주의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에 이루고 있다.

부계·부권의 가족중심주의의 오랜 전통, 최근 부계·부권의 재편과, 가족중심주의의 강화, 이들 특성은 세계화 이민이라는 보편적 경향이 한국사회에서 구현되

21) 이 절의 상당 부분은 김혜순(2006c)에서 가져왔는데, 본문에 구체적으로 인용 부분을 밝혔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는 방식과 ‘다문화’ 담론, 대응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현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대량 유입이 있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계층일수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가족관계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1990년대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였고, 이후 사회경제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남자로 확산되어 왔다. 가족중심주의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낙층화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늙어가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결혼이주여성의 유입과 이들의 적응문제는 ‘다문화’ 담론과 열풍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김혜순 2006c: 53-59).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현상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발견되지만, 가족관련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경향의 차이로 인해 ‘다문화’ 담론과 대응 정책에서 한국과 다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서구의 개별 가족주의 (isolationist familism)가 강하며,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통제하는 일본의 이민정책”(Ochiai, 2006)으로 일본의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통합노력은 무계중심이 다르게 놓여있다는 것이다. 다인종·다민족화

무계·부권 중심의 가족은 해체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중적 경험과 기억은 아직 강고하고 가족중심주의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통합의 문제는 이미 기존 연구가 많이 있고, 본 연구의 각 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정책집단이 한국사회에서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다문화’ 현상의 주요 대응세력, 정부와 시민단체

지금까지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에 대응하여 한국적 ‘다문화’현상을 만들어 온 주요 사회세력은 정부와 시민단체였다. 이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일차 김혜순(2006c)에서 다루었고, 본 보고서에서도 거의 모든 장에서 이들의 활동과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담당 정책관인 김남일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열린사회 구현’으로 요약하면서 2007년 8월 현재까지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 배경, 정책 현황 및 진단, 향후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박천웅은 1995년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사)국경없는 마을)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통해 ‘다문화’현상 전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사회적 의제설정과 정책 의제 제시, 확장과 갈등, 향후 활동방향을 전망한다.

이어 이해경과 윤인진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그간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이해경은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관주도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 학계와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합작품’이라고 한다. 정책입안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현재의 외국인 정책이 나오기까지 정부 각 부처가 각자가 대표하는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과 현 정부와 대통령의 사회정치적인 입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인진 또한 작금의 한국적 ‘다문화’현상이 관주도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내용을 비교하고, 전화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관련 문헌이 모두 지적하듯이 한국의 다문화관련 현상이 사회 의제와 정책의제로 부상되는 데 시민단체의 역할은 지대했다. 그러나 다른 영역과 의제에 비해 정부의 대응과 정책화도 매우 빠르고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이제는 정부가 이 현상을 주도하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경쟁하거나 또는 사업파트너가 된 듯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김혜순 2006c: 59-60). 여기서 제기해야 할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협조, 경합, 경쟁이 어떻게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으며, 이런 관계가 앞으로 도 지속될 것인가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해 김혜순(2006c: 52-54)은 결혼이주여성을 전면에 부각시킬 수 있었던 상황 분석을, 본 보고서의 이해경은 그간 관련 정책이 준비되고 변화해 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의 여러 장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인권친화적인 태생으로 인해 시민단체와의 협력 또는 경쟁관계에 놓여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위 후자의 질문, 앞으로 다민족·다인종화는 지속될 것인데, 정부와 시민단체는 ‘외국인 정책,’ 또는 ‘다문화’ 관련 현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인가.

이제 막 시작한 ‘외국인 정책’이 앞으로 확장·개정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연결 또한 지속될 것이다. 다음 정권이 좀 더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가진다 해도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²²⁾

22) 앞서 인용했듯이, 선별과 배제로 선화된 유럽의 이민법도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동화를 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그런데 이주민문제는 국방, 교육, 경제활동, 복지 등등과 같이 정책대상 집단 성원의 삶의 일부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를 포괄한다. 새로운 국민집단이되, 기존의 국민과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차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마치 하나의 새로운 국가체계를 만들어서 기존의 국가와 통합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따른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장친화적인 정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 계약기간동안만 혼자 와서 노동력 제공하고 돌아가는 단순 노동(예를 들어 농업노동력, 3D 노동력) 등 “선한 이민”²³⁾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시민사회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사업 수주와 집행을 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다. “부정한 이민”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이고, 이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나 움직임은 부정·불순한 세력으로 함께 분류될 것이다. 반면,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적응문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 자녀의 교육문제, 고향과 조국을 찾는 노령의 재외국민동포 지원문제 등은²⁴⁾ 인도주의적, 또는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될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연계관계는 어느 정권, 정부에도 필요하다. 이주민의 적응과 통합문제는 생애주기에 걸친 전체 삶의 주제들을 포괄하며, 각 주제별로 정치적 스펙트럼 상의 다양한 입장이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은 “유비쿼터스” 할 수밖에 없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다양한 정책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부처 간에, 정당 간에, 대표하는 지역의 노동력 요구에 따라 같은 정당 내 국회의원 간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 간에, 인권과 동화를 강조하는 시민단체 간에, 대표하는 외국인집단이 다른 시민단체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타협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정치적 가시화가 진행되어 이들 나름의 의견이 보태지면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일거에 다문화주의를 구현

도하고 있다고 한다(박명선 2007).

23) 엄한진 (2006: 35)은 선진 제국의 이민정책이 이민을 구분하여 선택과 배제하는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선한이민’과 ‘부정적인 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한 박명선(2007)에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24) 이들은 부계부권적 가족중심주의, 혈통주의 등 앞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논의한 특징들과 연결된 대상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부각된다.

하러 한다거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의제를 다룬다는 것은 과욕이다. 다인종·다민족화의 단계별, 정책집단과 과제별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현상의 체계화와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V. 세부 연구과제의 요약

다음은 각장의 필자들이 직접 작성한 요약문이다.

엄한진은 한국의 이민현상을 세계화시대의 이민으로 규정한다. 한국 이민현상, 이민논의, 이민정책의 양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이민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폐쇄적이고 선별주의적인 이민정책, 그리고 이러한 모순의 산물인 불법이민의 일반화와 같은 세계화 시대 이민의 특징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거론되는 순혈주의적 사고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역시 한국 전통사회의 특징이기보다 근대 국민국가나 세계화시대 이민의 일반적 특징으로 인식하기를 제안한다. 다문화논의를 추동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역시 저출산 문제나 농촌총각 문제와 같은 일국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화시대 여성의 이주 또는 매매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국 다문화가정 문제를 총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구나 비서구 모두 세계화 시대의 이민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서구의 경우 세계화 시대의 이민이 비유럽계 이민의 증가, 일시적 이민 등 불안정한 이민의 등장과 같이 근대이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새로운 이민현상이라면, 한국 등 대다수 비서구사회에서 세계화와 연관되어 나타난 이민은 실질적으로 근대국가 형성 이후 최초의 이민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구사회 이민논의의 핵심 이슈 중 테러리즘과 치안문제, 이민규제와 불법이민문제는 한국사회의 논의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1세기 전에 시작된 식민지배와 근대이민의 수용에서 비롯된 종교문제, 역사문제, 인종주의 및 극우주의는 우리에게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엄한진은 현재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유산을 바탕으로, 그리고 인종주의가 등장하기에는 아직 짧은 타민족과의 공존의 역사로 인해 놀라운 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로 이 때가 인종주의가 부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냉철하게 조명할 수 있는 호기라고 지적한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성공의 관건으로 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의 측면에 대한 고려 등의 방안과 보편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조화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아직은 ‘다문화’로 상징되는 관용의 목소리만 들리는 한국사회에서도 서서히 이민문제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진영들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에 적대적인 세력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의 분화, 보편주의 대 특수주의의 대립, 사회경제적 통합을 강조하는 세력과 <차이의 존중>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의 분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한다.

한경구, 한건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 다민족화 현상과 이에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사회 담론을 검토하여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을 분석한다. 최근 한국사회에 일고 있는 사회변동의 핵심은 전지구화와 그로 인한 인적구성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그에 대해 정부나 시민사회가 다문화사회 담론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 넘쳐나는 다문화사회 담론이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성찰위에 제기되기보다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할 것이라는 미래적 전망에만 기초하여 정치적 구호나 사회운동의 가치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한국의 다문화현상의 지형도를 통해 다문화관련 담론이나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이제까지 제시된 다문화 관련 담론들이 한국사회의 다민족화 이행 단계나 다민족화와 관련되어 개선되어야 할 가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문화사회로 이행할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순혈론적 단일민족론이라는 공통된 지적 역시 역사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다. 순혈론적 단일민족론은 근대의 산물이며 그 보다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명론에 기초한 차별과 배제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한다.

결국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은 혈통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에 근거한 단일민족론을 철폐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실도 혈통문제보다는 한국문화를 강조하는 문명론적 차별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주된 과제임을 주장한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다문화사회 담론을 개발하기 위해 본 논문

은 기존의 다문화사회 담론들이 다문화현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사회의 지형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다문화사회 개념에서 문화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개념이 인류학의 전통적 개념이거나 아주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관련 현상은 단일민족순혈주의의 외피를 가지고 있으며 문명론적 보편론에 입각한 자문화우월주의를 포함하고 있고 민족주의적 경쟁의 구도를 전개하면서 에스니시티나 다문화주의 논의에 대한 무관심에서 급속히 강렬한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와 공공의 선을 경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시민과 국가가 정당성을 경쟁하는 장(場)이기도 하며 선진국 의식, 글로벌 경쟁의 일환으로 보편적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국가와 민족의 생존전략으로서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할 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담론을 형성하는 원칙으로 순혈론적 혈통주의뿐만 아니라 문명론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국민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된 인구정책이나 노동력 수급정책, 글로벌 경쟁력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한국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인 다민족화 현상을 연구하는 에스니시티와 같은 이론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정부와 시민사회의 경쟁과 협조의 장이 생산적으로 수렴되는 담론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다문화사회 담론의 형성과 이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도 한국사회의 이행 단계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현실의 한계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김은미는 한국 거주 외국인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지역의 외국인 마을을 분석한다. 이 글은 첫째, 세계화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인구의 국가 간 이동과 글로벌 도시의 발전의 틀 안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정주화의 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주류인구가 95%이상인 한국적 다인종□다민족 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거주 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국에서 발전된 거주공간의 연구에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거주 및 문화 향유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울과 지역 간의 상이한 도시발달의 형태를 계급적□구조적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문화 선진국과는 달리 강력한 주류사회가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외국인 공간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났으며, 이중 주거가 배제된 외국인 문화마을의 경우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다문화국가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마을의 경우에도 문화적□경제적 배경과 소통 노력에 따라 주변 한국사회와의 융화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이라는 지역 공간 안에서도 외국인 마을이 다양한 형태로 양분되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이 분석이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형 다문화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다문화 정책들이 수립되어 집행되기를 바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국관리 정책관 김남일은 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외국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정부가 추진 중임을 설명한다.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도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조직측면에서는 기존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되어 외국인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명실 공히 외국인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과거 출입국 관리와 통제라는 소극적·폐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인력과 인재유치, 사회통합,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 ‘상호 이해와 공존 공생’이라는 방향으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 추진배경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의 현황을 외국적 동포, 정주외국인과 이민자2세, 전문인력, 단순노무인력, 외국인 투자자 및 유학생, 난민, 불법체류외국인 그리고 사회통합차원에서의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향후 외국인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열린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인종□다문화화를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와 환경에 맞는 한국적 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해 나감으로써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박천응은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은 국내에서 다문화 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전개 하여 왔는지에 대한 소개이다. 한국 사회를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추동하는 세 가지 흐름의 축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유입,’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다변화 전략’이다. 다문화 사회의 과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정책, 제도, 습관 등을 바꾸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노골화하기도 한다. 만일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에 대하여 차별적 상황에 그대로 방치 할 경우, 프랑스 사태와 같이 이주민 집단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다문화를 말하면서 민족주의와 내국인 중심의 시민권적 권리주장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이주민을 다문화 사회로 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다문화와 이주민 사업을 자신의 의제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배타성의 외연화, 준비 안된 다문화 사회의 시민단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민관, 시민사회 단체들이 상호 연대하여 지역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더 붙어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 모델’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다문화 지역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내국인과 이주민,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적의식적 실천이 곧 다문화 운동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는 여기에서는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이론과 실천적 사례로서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소개 하였다.

이혜경은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한 달 후인 5월 26일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한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 담론이 가열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감수성’ 등 가히 ‘다문화열풍’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열풍’을 주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적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를 위한 정부□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문헌과 신문검색을 하였고, 특히 2006년 발표된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외국인정책 기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방향 및 추진체계]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다문화 정책을 정부의 이민정책의 변화로 파악하면서, 이는 과거의 정책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윤인진은 2000년에 들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현재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state-led multiculturalism)’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주도 다문화주의(citizen-led multiculturalism)’로 구분하고 양 담론의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 장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의 내용분석을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발의한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률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내용분석을 위해 시민단체의 다문화주의 관련 주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 20개의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주의 관련 활동 내용,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참정권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 중 다문화주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 온 ‘(사)국경없는 마을’,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적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익을 추구하며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인권, 평등,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다문화주의와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제안한다.

VI. 연구의 범위와 의의

1. 연구의 범위

1) 한국사회의 이민이 날로 보편화되고 이들 또한 세계화 이민의 일환이지만,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한국사회를 떠나는 국민과 이주자는 다루지 않는다.

2)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한민족 네트워크 관련 현상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다루지 않는다

3) 기존의 다수자/소수자, 다원주의 논의는 현재의 세계화에 따른 이민/이주 논의와 태생배경이 다르므로 분리한다

4) 현 단계에서 한국사회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학술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적 연구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각 분석마다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이 제안들이 기본 전제에서 각 연구자마다 다르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입장을 조율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출신국, 체류자격(불법/합법), 경제적 지위(계층), 젠더, 체류 지역별 정책적 고려가 달라야 한다.

(2) 현재 외국인 정책이 국내의 외국인과 국민 중 외국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 대상 정책이 더욱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3) 정책대안으로 결국 교육을 강조하게 될 터인데 교육대상은 각급 학교 학생 뿐 아니라 교사 연수, 공무원 연수, 언론인 교육, 평생교육원이나 교양강좌, 언론을 통한 일반 시민 교육 등을 망라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인종·다민족화라는 현상에 대해 담론으로서 부유하던 다문화의 실상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면서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다인종·다민족화라는 현상이 유사 이래 한국사회에 처음 착종되는 중인 현 상황에서 이론화는 학술적 작업인 동시에 정책적인 작업임을 강조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006년 12월 국내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로 법무부가 선정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하게 되었다. 이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요구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정부부처 간에, NGO간에, 학계 내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데, 몇 개의 정책연구로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방향과 철학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본 보고서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방향과 철학정립을 위해 현장의 주도 세력과 그들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과제와 쟁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2006년 보고서에 이어 이러한 노력의 진전을 이룩했다고 본다.

다문화사회는 지향하고 수렴해야 할 방향이지만, 사회□정치화된 구호 차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주제들을 열거하고, 이들에 대한 입장과 지향을 밝히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김혜순 2006c). 본 연구가 시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며, 각 전문가들은 밀은 영역과 쟁점 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제안된 정책방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다인종다민족화의 선진 제국에서 최근 이민법의 기초가 선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특정 법령이나 정책, 제도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이들이 배태된 사회정치적 배경과 역학관계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가치이고 내포하는 쟁점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의 기초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다문화사회 실현’을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셋째,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외국인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책, 예를 들어 다문화 교육, 이 시급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넷째, 중·장기 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 실현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정책집단과 과제별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활동영역과 사업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각 장의 글은 다루는 주제의 범위, 논의와 정책제안의 수준에서 편차를 보인다. 이것은 각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각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 지형의 편차를 반영한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국사회학회는 2006년 학회 차원의 고민을 출발점으로 하여 2006년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지금의 보고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논의로 한 걸음 진전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한국사회학회는 물론 유관학회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변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 연구가 끝나는 지점이 좀 더 진전된 이론화와 정책마련을 위한 후속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면, 본 보고서의 유용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김광익. 2005.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 ; 15-84. 아카넷.
- 김민정 외.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현선. 2006. “국민, 반국민, 비국민-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편 2(2) 통권 12호: 77-106
- 김혜순. 2006a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아시아적 관점”에 대한 토론문” UNESCO 한국위원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Spain Interarts 재단 공동주최.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al Rights and Diversity>. 추가 자료집: 7-10
- 김혜순. 2006b. “서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시대.”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학회 용역과제 06-8: 1~12.
- 김혜순. 2006c.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학회 용역과제 06-8: 13~41.
- 박명선. 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2): 271-303.
- 설동훈. 2006a. “국민, 민족, 인종: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학회 용역과제 06-8: 79-96.
- 설동훈. 2006b ““코시안’…강자의 횡포가 만든 ‘차별의 언어’.” 《국정브리핑》 2006 3 6.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학회 용역과제 06-8: 45-75.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사)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 2-15.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임태훈. 2006. "<실천문학>은 '코시안'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오마이뉴스》 2006 9 9.

정지아. 2006. "니그로? 블랙피플? 톰?" 《월간 인권》 2006년 5월호.

Hsia, Hsiao-Chuan 2004. "자본의 국제화와 아시아 여성에 대한 무역: 대만의 "외국인 신부"에 대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In Delia D. Aguilar and Anne E. Lacsamanc(eds.) *Women and globalization*, pp181-229 Amhers, NU: Humanuty books, 번역 안지영. (출처: 이주여성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

Hsia, Hsiao-Chuan 2006 "Globalization and resistance: The case of empowering 'foreign brides' in Taiwan"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최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의 경험』 자료집: 59-75.

Ochiai, Emiko 2006. "Restructuring family networks in the era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Six Asian societies in comparison" 한국사회사학회 ·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06. 11. 17-18 『전환기의 한국 가족: 글로벌리제이션과 탈전통 · 탈식민』 한국사회사학회 ·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06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1-31.

1장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엄 한 진 (한림대 사회학과)

I. 서론

선진국의 사회논의에서 '이민'이라는 개념은 이민현상과의 연관성이 매우 약한 현상을 포함해 해당 사회의 주된 사회문제들이 결집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즉 인구문제, 민족문제, 가족문제, 치안문제 등이 이민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정작 이민현상 자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압력, 전쟁이 초래하는 폭력, 가난으로 인해 더 나은 곳을 찾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는 행위”(Bernard, 2002: 11)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약하며 이민현상이 그 어떤 사회현상보다 전지구적인 차원의 것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교분쟁으로 인한 난민, 불법이주과정에서의 끔찍한 사고 등이 계기가 되어 극히 최근에서야 이민현상을 남과 북의 경제적 불평등, 전쟁, 민주주의의 저발전과 같은 현상의 부산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불황기가 되면 (a) 인구문제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b) 이민자들 덕택에 토착민들이 덜 힘들고 소득이 높은 직업에 주로 종사하게 되며²⁵⁾, (c) 소비에 기여하는 등 이민이 가져다주는 이점들은 무시되거나 축소된

25)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approach)의 이민현상 설명에 따르면 발전된 국가로 이주하는 저발전국 출신자는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 즉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 파트타임 일자리와 임시직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습득 가능성이 미약해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부문에 편입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이민의 영향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지는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Pedace, 2006),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경우 이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주로 토박이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1차노동시장 종사자는 혜택을 받지만 2차부문에 종사하는 히스패닉계 여성들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다. 더 나아가 반이민주의자들은 (a) 이민자들은 이 나라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b) 그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그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고, (c) 이들이 은밀히 품고 있는 사악한 음모가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의 데마고지를 편다 (Schor, 2004: 227). 따라서 실천적인 함의를 생각할 때 이민문제 자체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분별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이민문제를 계기로 한 인종주의 및 파시즘의 부상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한국의 최근 다인종□다민족화는 세계화 시대 이민의 한국적 실현이다”라는 가설에서 출발해 한국 이민현상의 성격 및 이민논의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이민집단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다소 규범적인 현 이민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국의 이민문제를 설명하는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관련논의,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요정책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그리고 학계의 논의와 언론자료를 검토한다. 아래에서는 한국 이민문제의 특성을 이민수요의 폭증과 선진국의 폐쇄적이고 선별적인 이민정책, 불법이민의 일반화, 이민의 다양화 경향과 같은 세계화시대 이민의 특성을 통해 설명하고(II절), 한국 다문화논의의 특성과 향후 전망을 세계 이민논의의 특성과 비교한다(III절). 이러한 한국 이민현상 및 이민논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정의의 모색, 보편주의의 활성화, 한국에 오는 이주자들의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한국에서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다(IV절).

II.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

1. 세계화 시대 이민으로서의 한국의 이민현상

한국의 이민현상, 이민논의, 이민정책의 양상은 (a)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연관된 대량실업과 빈곤화에 따른 이민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b)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폐쇄적이고 선별주의적인 이민정책, 그리고 (c) 이러한 모순의 산물인 불법이민의

임금하락의 압력을 크게 받게 된다.

일상화와 같은 세계화 시대 이민의 특징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서구와 달리 한국의 경우 세계화와 연관된 최근의 이민이 근대국가 형성 이후 사실상 최초의 이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불법체류문제는 한국의 실정법이나 국익 차원의 논의 또는 추상적인 인권론을 넘어 세계화 시대에 상당수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지극히 정당한 선택이라는 구체적인 세계의 현실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한국 '다문화' 담론의 중심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역시 저출산 문제나 농촌총각 문제와 같은 일국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화시대 여성의 이주 또는 매매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국 다문화가정 문제를 총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 우수인력중심의 외국인노동자정책, 동남아 출신 농촌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된 정책과 같은 선별주의, 그리고 같은 집단 내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신부' 대 결혼중개업소나 남편의 '뺨에 걸린 결혼이주여성'(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161), '위험한 외국인노동자' 대 '불쌍한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이분법적 정형화 역시 선발 이민수용국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세계화 시대 이민논의의 특징이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여겨지는 순혈주의적 사고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역시 한국 전통사회의 특징이거나 한국사회의 후진성의 징표이기보다 근대 국민국가나 세계화시대 이민의 일반적 특징이 한국이라는 사례에 관철되고 있다는 특수한 보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으로 보편의 구현으로만 인식되기 쉬운 서구사회의 경우 역시 특수한 보편, 즉 해당 사회의 특수성과 일반적인 경향이 융합된 독특한(unique) 개별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융합(melting pot)' 모델은 소수민족의 통합방식의 관건이 되는 기존 주류문화가 없는, 더 정확하게는 인디언들의 절멸로 기존 사회질서가 사라진 신대륙의 조건의 산물로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다른 지역과 직접 비교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주의 역시 197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었지만 그 배경은 상이했다(엄한진, 2006: 39-41).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차이 때문에 같은 다문화주의라도 문화적 다양성 또는 국민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하위유형이 있을 수 있다.²⁶⁾ 한국사회 역시 이민문제와 관련해 점차 경험이 축적되면서 보편성을 획득해 나감과 동시에 이 사회의 고유한 역사와 현실에서 비롯된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해 독특한 사례를 형성해가고 있다. 보고서의

26) 이 글의 주 13)을 참조하십시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다른 글들에서 다루어지겠지만 특수성의 주요 항목들로는 외국인 정책 및 이민논의에서의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세계 최저의 출산률, 강한 가부장제 전통 등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다민족으로 출발한 근대 서구사회와 다른 우리의 단일민족국가적인 측면은 한국적 특수성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1민족 1국가 원칙과 강력한 중앙권력의 존재를 상징한 근대 서구의 민족국가(Nation-State) 원리에 매우 충실하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다문화현상이 촉발시킨 대표적인 논의주체인 한국인들 특유의 폐쇄성 역시 외국인혐오증이 근대국가의 필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보면 민족적 특수성 때문이기보다는 일제 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강한 근대 국가의 존재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사회 이민현상의 성격 규명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만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한국인에 특유한 속성에 국한된 접근방식보다는, 이 특수성조차 다른 사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과 동시대 전지구적인 차원의 동학이라는 보편성의 특수한 실현임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함을 말해준다.

2. 세계화 이민의 특징과 한국의 사례

1) 이민수요의 폭증과 폐쇄적이고 선별적인 출입국정책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낙후된 도시지역에서의 갈등,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모로코-스페인 국경지대, 북미와 중남미의 경계선에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위치한 아드리아해 등에서 전개되는 생명을 건 중심부 세계 진입의 시도들, 불법체류자들의 시위, 유럽의 이슬람단체들, 항상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외국인보호소, 소수민족 청년들의 낮은 학업성취도, 식민지시대의 유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Bernard, 2002: 11)

이것은 이민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이슈들의 목록이며 그 자체로 현 세계 이민 문제의 현황을 잘 보여준다. 우선 세계화시대 이민의 외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과거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65-1975년, 당시 국제이주는 매년 1.16%씩 증가했고 이는 당시 전 세계 인구증가율 2.04%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

러나 1985-1990년 사이 세계의 인구증가율은 1.7%로 줄어든데 반해 국제이주는 해마다 2.59%씩 늘어났다. 그 결과 1965년 7,500만 정도에서 2000년에는 1억 5500만 명 정도로 이민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스타커, 2003).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 경향은 현재 이민의 대국인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 1992-1993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 주된 배경을 보면 1990년대 초반 동유럽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에 문을 열었고 이것이 인구와 경제의 측면에서 동유럽과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량이민을 초래한 것이다. 당시 독일은 1992년 12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였었다(Bernard, 2002: 21-22).²⁷⁾ 참고로 2003년 독일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의 수는 78만 명으로 10여 년 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Haut Conseil □ l'int□gration, 2006: 13).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인구이동이 이민수용국의 경제 불황기에 나타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국들은 이민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불법이민현상, 인종주의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즉 아프리카인들의 대량 강제이주가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자본주의 초기와 달리 최근의 “국제이주는 새로운 세계화과정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다.” (OECD, 2000). 즉 사람의 이동은 세계화로 인한 자본의 이동과 달리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혹자는 현 세계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자본은 갈수록 자유롭게, 규제 없이 이동하는데 노동은 오히려 반대의 양상을 띠는 모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 세계화가 과거의 세계화 또는 국제화와 다른 주된 특징으로 간주된다. 물론 위에서 보았듯이 국제이주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몇몇 국가들의 뒤늦은 독립, 소련의 해체와 다수의 신생국가 출현, 지역분쟁과 같은 요인에 따라 세계의 국가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자료가 그대로 국제이주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소련의 해체만으로도 4,500만의 ‘외국인’을 탄생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사람의 세계화’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인간의 이동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27) 198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터키의 쿠데타, 유고내전 등으로 인해 폭증한 난민신청에 직면하게 된다. 그 숫자는 1988년 10만 3천명에서 1992년 43만 8천명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쉥겐조약 이후 유럽연합 공통의 이민정책 노선에 따르기 위해 헌법개정을 하게 되어 2003년에는 난민신청이 1984년 이후 가장 낮은 5만 명 선에 그치는 변동을 겪었다.(Weil, 2005: 28-30)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새 이민법을 제정하고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전통을 강화시키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이민자들에 대한 '불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으로 일관하고 있는 프랑스나 자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시민권 취득 시험'을 치르게 한 독일, 최근 통과된 새로운 이민법(2006.9.24)을 통해 이민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킨 스위스²⁸⁾ 등 세계 곳곳에서 이민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 들어 유럽 국가들은 공히 노동이민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이민 전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고급노동력 또는 특정 영역에 시급히 요구되는 노동력의 유입을 촉진시키려는 것이었다.²⁹⁾ 이와 대조적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은 가능한 한 제한하고 가족 이민에 대해서도 대부분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주요 이민수용국들이 고급인력 확보에 초점을 둔 선별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면, 이민 후발국인 한국은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 국한된 단계를 거쳐 점차 고급인력 수급정책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4.26),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2006.4.2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2006.5.2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2007.4.27) 등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에 등장한 <유용한 이민론>은 이러한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의 두 가지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는 우수외국인력 유치지원이며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2008년에 시행될 기본계획의 4가지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외국인 숙련 생산기능인력의 안정

28) 이는 현실적으로 유럽 이외 지역 출신의 미숙련노동력의 입국을 봉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유럽연합 시민권자들의 경우 스위스와의 양자간 협약에 따라 이주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9) 최근 유럽 최대의 이민국가가 된 독일의 예를 보면 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외국인 IT인력 수급계획을 추진해 왔고 그 외에도 외국인 고급인력을 선점하기 위해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일자리를 갖게 되면 독일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학업이 종료된 후 1년간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새로이 만들고 있다. 영국 역시 같은 맥락에서 2002년의 고급인력수급프로그램(High Skilled Migrants Program) 등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고급인력 중심의 이민정책을 편 결과 2003년에 부여된 13만 9천건(2002년에 비해 20% 증가)의 체류허가 중 29,600건(2002년에 비해 50% 늘어난 수치)이 숙련노동자들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 해에 비해 20% 증가한 65,800명이 이 차지했고 난민허가는 이와 대조적으로 30%가 줄어든 수치였다.

적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선별적 영주의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www.immigration.go.kr).

이외에도 외국적 동포에 대해 여타 외국인노동자들과 다른 처우와 지위를 부여한다든가 출신국가별 쿼터제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논의 역시 이러한 전지구적인 선별주의 경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특별방안으로서의 방문취업제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그간 중요하게 제기되어 온 동포간의 출신국가별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에 비해 국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취업허영업종 확대와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문동거(F-14) 자격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 및 2007년도 신규 입국할 13만 5천명의 동포 등 모두 27만 5천여 명의 동포들이 올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ibid.). 동포의 경우 이제 연간 사증 발급건수가 제약되는 것을 제외하면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장 이동, 그리고 본국과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진 것이다(설동훈, 2005).

동포에 대한 특별정책이 다른 국가 출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포의 이주가 다른 외국인들의 이주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한 명백한 논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동포의 존재가 다른 외국인들의 존재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불법이민의 일상화(routinization)

제3세계 또는 빈국 사람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우처럼 부국 간에는 왕래의 자유가 증대되어 이 자유를 인권의 하나로 여기는 반면, 빈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장벽을 치는 모순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은 불법이민 또는 빈국 간 이민으로 나타난다. 불법이민 현상은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신들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목숨을 건 불법이민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정당하고 정상적인 행위가 된 것이다. 한편 이민에 대한 선진국들의 장벽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은 빈국 간 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주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이민은 제3세계에 속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프리카인들은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이주할 필요성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열등하게 여겨지는 탓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의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능력이 있거나 운 좋은 소수의 이주민만이 발전국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매년 생존을 위한 필사의 입국시도 중 희생되고 있다. 2000년 6월 58명의 중국인이 벨기에로부터 영국으로 불법이주 도중 화물차에서 질식사했고, 2001년 2월에는 시리아에 거주하던 쿠르드인을 비롯한 불법이주자들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806명이 죽었다. 지브라올터 해협에서 알바니아까지 1993년에서 2000년 사이 유럽연합의 경계지역에서 모두 2000명의 불법이주자들이 사망했다(<http://www.united.non-profit.nl/>).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도 그간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일을 도와주거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등의 불법이주 관련 사업이 번성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데려다 주는 가격이 1,000달러 정도에 이른다. 아프리카인이 지브라올터 해협이나 동유럽 방면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내부로 들어오는 일을 도와주는 가격은 500달러 정도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오는데 드는 비용은 2만에서 6만 달러에 이른다.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스타커, 2003)에 따르면 불법이주와 관련된 산업의 매출액은 한 해에 50-70억 달러에 이르며 주로 중국, 터키, 알바니아 마피아들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루트를 통해 2000년에 유럽연합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이민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한국사회의 후진성이나 반인권적인 출입국정책과 외국인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반인권적 요소에 기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러한 전지구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의 한 부분인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실상에 관한 아래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불법체류문제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에 국한된 범법행위이기보다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구조적 현상인 것이다. “3년 동안 일해야 겨우 ‘브로커’ 비용을 갚는데, 손에 쥔 것도 없고,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주노동자가 자진 출국하겠느냐.”³⁰⁾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평균 총 이주비용

30) 유성환 안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출처: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15일자

을 보면 중국 조선족이 5431\$, 중국 한족이 4,239\$, 베트남이 2,640\$, 필리핀이 2,462\$, 인도네시아가 1,565\$이었다. 그리고 출신국가별로 이주비용 중 빛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 조선족이 65.5%, 중국 한족이 60.6%, 베트남은 62.3%, 필리핀은 75.0%, 인도네시아는 46.6%였다(석현호□이혜경, 2003: 87-88). 위에 인용한 출신국가별 이주비용을 고려하면 이들이 갚아야 할 빛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역시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부터 더 잘사는 나라로 사랑과 돌봄(care)이 수입되는, 세계적 차원의 돌봄의 연쇄 고리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국제결혼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을 무상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김민정, 2006). 한국의 경우 특히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현재의 결혼중개 과정이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해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알선 과정³¹⁾, 여성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강압적인 조건, 결혼 후 비자발급을 받는 기간 동안 결혼파탄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적법한 이유 없이 수 개월간 여성들을 정해진 장소에 감금하는 것 등이 이러한 인식의 근거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속을 피하고 높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량□속성 결혼중개 시스템 그 자체가 명백한 인신매매구조이다. 1건당 1천 만원이 넘는 돈이 오고가는 상업화된 국제결혼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 됐다(『한겨레신문』 2007년 2월 2일자). 2006년 맞선 과정의 비인격적인 행위가 큰 문제가 된 후 베트남 정부는 2006년 7월 혼인법을 개정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러자 결혼중개업체들은 아직 집단 맞선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를 새로운 사업지역으로 개척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2월 5일자). 유사중개행위를 포함하면 국제결혼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개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결혼은 최근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의 국내적 배경을 보면: 대형 결혼정보회사의 출현으로 악화된 영업환경과 국제결혼중개가 고수익을 거두면서 국내결혼만 중개하던 업체들이 대거 국제결혼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기사 “이주노동자 정책 이대론 안 된다: ③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
 31)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199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복지부 실태조사, 2005,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12에서 재인용)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중개과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³²⁾라는 지적은 언론을 통해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결혼이주문제의 본질을 잘 일깨워준다.

이러한 핵심적인 요인들이 결혼이주문제 논의의 중심에 있지 못한 것을 보면 한국의 이민논의 및 이민정책이 ‘다문화’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이민문제를 인구문제, 민족문제, 경제문제 등의 도구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동화주의적 패러다임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된다.³³⁾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글로벌한 시각은 민족주의적 인식들을 극복하고 이민문제를 덜 이데올로기적으로 인식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다. 물론 다문화주의 역시 다른 통합전략처럼 ‘주류 민족에 의한 여타 민족의 지배방식의 하나’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허구적인 다문화담론이 한국 고유의 현상인 것은 아니다.

3) 이민경로의 다양화

세계화시대 이민의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는 이민자들의 이주경로와 출신지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제 일부 이주현상은 출신국가와 수용국가간의 식민지 경험을 비롯한 역사적 연관성과 무관한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그리고 TV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부유한 나라들의 모습에 이끌려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인들이 이탈리아로, 이란인, 레바논인들이 스웨덴으로, 베트남인들이 호주나 캐나다로, 파키스탄인들이 노르웨이로 이주하는 경향이 새로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동남아시아인들의 한국행도 이 목록에 포함된다. 전쟁, 기아 등으로 세계화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경우에는 유럽, 미국으로의 이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 내부에서 국가 간 이주가 활발하다. 아시아인들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으로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로 떠나는 이민이나 난민이 많이 있다.³⁴⁾ 이와 더불어 이주의 양상이

32) 소라미 변호사와의 인터뷰. 출처: 『프레시안』 2006년 6월 13일자 기사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 인권보호가 먼저다”,

33) 대부분 저발전국인 이주자들의 출신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무관심한 채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통합정책은 세계화가 미국화의 양상을 띠어 미국이나 영어 이외의 타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약하거나 과거에 비해서도 약해지는 상황에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출신국 언어로의 통·번역서비스, 출신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개, 제2외국어의 범위를 베트남어, 태국어 등 아시아 각국 언어로 확대하는 방안 등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대안(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xvi-xvii)은 이러한 획일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1회에 국한해 특정 국가로 이주하는 고전적인 양상에서 이제 출국과 귀환을 반복하고 당초 계획하지 않은 지역으로 다시 떠나는 등 유동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이민수용국, 즉 이민자들의 최종 목적지로 여겨져 온 프랑스 역시 얼마 전부터 영국으로 가는 아시아인들이나 독일로 가려는 터키인들의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현상은 이상과 같은 새로운 이민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중□재러동포를 예외로 한다면 한국과 이민자들의 본국의 역사적 연관성이 크지 않고(문화적 유인) 한국의 노동조건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짐으로 인해(경제적 유인) 한국이 영구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자들의 최종 정착지가 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해 이들의 한국 거주가 세계화로 인해 활성화된 국제이민의 흐름 속의 한 순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역사적 배경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의 결핍은 안정적인 이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와의 집단적 연관성의 부재와 이민의 불안정성은 향후 이민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과 논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II. 세계의 이민논의와 한국의 ‘다문화’ 논의

특정 국가의 이민논의 및 정책에는 한편으로 (a) 그 나라에 고유한 전통이 크게 작용한다. 이민자 통합정책에 관한 고전적인 유형화는 바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개별국가들의 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다.³⁵⁾ 그러나 다

34) 물론 이러한 새로운 경로와 더불어 고전적인 경향도 여전히 중요하다. 즉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터키에서 독일로, 브라질에서 포르투갈로의 이주가 여전히 활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민양상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지만 개별 이민수용국별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한 두 나라 출신자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멕시코인, 일본의 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호주의 뉴질랜드인, 이탈리아의 알바니아인, 독일의 폴란드인, 구 유고연방 출신자, 터키인, 프랑스의 알제리인, 모로코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Bernard, 2002: 23-25)

35) 복지국가의 유형론이나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유형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민정책 및 통합모델의 유형화가 있어왔다. 유형화는 주로 일시적인 이주노동자(를 상정하는 모델) 대 영구적인 이민(을 상정하는 모델), 혈통주의(에 입각한 모델) 대 출생지주의(에 입각한 모델), 소수민족(으로 존속시키려는 모델) 대 동화(를 추구하는 모델)과 같은 기준에 입각한 것이다. 홀리필드(Hollifield, 1997)는 (1) 일시적인 이민모델(독일), (2) 동화모델(프랑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른 한편, (b) 이민논의는 매우 국제적(international)이다. 즉 19세기 유럽에서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이 그러했듯이(Thiesse, 2001) 각국의 다양한 이민논의 및 정책이 국민국가의 경우처럼 단일한 모델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c) 글로벌한 차원이 새로운 특징인 세계화 시대의 이민논의는 글로벌한 차원의 것일 수밖에 없다. 출입국 문제, 이민통합의 문제는 시장개방이나 지역분쟁과 같이 이들이 조국을 떠나게 만들었던 지역적, 전지구적 요인들이나 대륙 간 불법이민 조직의 발전과 같은 요인 밖에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역시 전지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나라들의 이민논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의 특성들이 한국 이민 논의에 작용하여 한국적인 이민 논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이민논의와 비교하면서 한국 이민논의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선진국과 한국의 이민논의 비교

이민문제는 1980, 90년대에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표 1>에서 우리는 어떤 사안들이 최근의 이민문제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테러리즘과 안전문제, 역사문제, 인종주의와 극우주의, 이슬람, 이민 규제와 불법이민현상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의 관심사라면 폴란드와 같이 독일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나라의 경우에는 노동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9□11테러, 마드리드 열차폭발테러, 독일의 인종주의 폭력, 런던 지하철테러, 그리고 이민문제 및 인종주의와 연관된 네덜란드의 일련의 암살사건과 같은 테러리즘은 이민문제를 치안문제 차원에서 논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독일사회의 상징이었던 혈통주의의 약화는 세계화가 지닌 개방적 효과를 보여주는 현상이지만

스), (3) 소수민족 모델(영국)이라는 세 유형을 제시하고, 캐슬(Castles, 1995)은 (1) 차이에 입각한 배제 모델(독일, 남유럽), (2) 동화주의 모델(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3) 다원주의 모델(미국, 캐나다, 호주 등 비유럽국가)로 분류한다. 이민문제에 관한 명시적인 모델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즉 2000년대 이전 독일과 같이 반영구적인 이민의 존재 자체를 상정하지 않아 명시적인 이민모델이나 정책이 없는 나라들이 있다.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경험이 있는 개방적인 전통의 네덜란드와 영국은 오랫동안 다문화주의적 성격이 강한 통합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여전히 공화주의 모델이 강하게 나타난다.

중남미로부터의 이민을 겨냥한 미국의 봉쇄정책이나 아프리카로부터의 불법이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스페인의 상황은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분리를 강화시키는 세계화의 또 다른 효과를 입증해준다. 한편 양대 식민제국이었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의 이민논의에서는 식민지시대와의 연관성, 역사 재해석 문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느 사회에서나 이슬람이 이민논의에서 중요한데 역설적이게도 이슬람주의와 마찬가지로 서구사회도 여성의 의복문제를 종교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어 왔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서유럽 전역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극우주의는 이상과 같이 이민문제가 테러리즘, 치안문제, 역사문제, 종교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다른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현 세계의 이민문제는 종교와 민족이라는 원초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9·11테러 이후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10월, 11월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프랑스뿐만 아니라³⁶⁾ 모든 나라의 이민자 통합모델이 도마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 모든 나라들에서 자국의 전통적인 이민논의의 방식이나 사회 통합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36) ‘프랑스 이민집단 통합모델, 즉 공화주의의 위기’란 공화주의의 보편주의적인 미덕 대신에 현실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공화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공화주의의 본질과는 대척점에 있는 영미식의 게토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말한다(엄한진,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표 1> 최근 세계 각국의 이민논의

미국	9-11테러의 충격. 미국의 공식어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식어로서 영어 재확인 불법이민의 합법화 조치 멕시코 접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의 오바마(B. Obama) 의원이 성경이 아닌 코란에 손을 얹고 의원선서를 함
프랑스	정교분리주의 원칙 재확인(2004년 3월 공립학교에서의 정교분리주의에 관한 법률안 통과) 프랑스 이슬람위원회 창설 2005년 10, 11월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폭력사태를 계기로 프랑스 이민모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 출신 종족에 따른 통계의 채택에 관한 논의 식민지 역사 및 노예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 그리고 노예제를 반인도주의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채택(2001년)
스페인	2005년 3월 마드리드 열차폭발테러사건과 정권교체를 계기로 이민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전개 2005년 모로코와 카나리아 섬을 통한 이민자들의 급증. 스페인이 대표적인 불법이민의 도착지가 됨
독일	통독 이후 독일은 1990년대 초 인종주의적 성격의 폭력사태를 겪음 2006년 노골적으로 신나찌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됨 국적취득과 관련해 그간의 절대적인 혈통주의 시대가 막을 내림
영국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테러 이후 영국식 이민자 통합모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이민논의가 이슬람의 통합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짐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모임 창설 당시 장관이었던 켈리, 스트로와 고위 사법간부 필립스가 영국 통합모델의 특징인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 공개적으로 제기 2006년 10월 이슬람식 머릿수건 착용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네덜란드	민중주의자이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포르투인(Pim Fortuyn)(2002. 5. 6)과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2004. 11. 2)의 암살, 이슬람 여성의 현실을 고발한 영화를 만들었던 소말리아 태생여성 영화감독 아안 히르시 알리에 대한 암살위협이 네덜란드의 통합모델, 이슬람과의 관계, 이민자들의 조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
폴란드	폴란드의 노동력이 서유럽,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로 빼앗기는 노동력 유출 문제가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출처: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2006: 151)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구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이민논의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이민현상은 세계화 시대 이민의 특성들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논의 역시 현 세계 이민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상과 달리 이민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갈등이나 통합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아니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전망이 정부,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하게 제시되면서 국제결혼, 혼혈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민에 매우 우호적인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것은 한국 이민현상이 세계화 시대의 이민이 지니는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짧은 이민수용의 역사로 인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서구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나 비서구 모두 세계화 시대의 이민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서구의 경우 세계화 시대의 이민이 비유럽계 이민의 증가, 일시적 이민 등 불안정한 이민의 등장과 같이 근대이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새로운 이민현상이라면, 한국 등 대다수 비서구사회에서 세계화와 연관되어 나타난 이민은 실질적으로 근대국가 형성 이후 최초의 이민이다.³⁷⁾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구사회 이민논의의 핵심 이슈 중 치안문제, 이민규제와 불법이민문제는 한국사회의 논의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1세기 전에 시작된 식민지 배와 근대이민의 수용에서 비롯된 역사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문제나 인종주의 및 극우주의도 짧은 이민수용의 역사로 인해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이 선진국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선진국처럼 인종주의, 종교문제 등도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현재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미분화 상태인 ‘다문화’ 논의가 분화와 경쟁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7) 사회학은 본질적으로 당대의 학문이다.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수성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현재에 작용하는 측면에 국한해 다루어져야 한다. 이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역시 전근대, 근대, 당대의 이민을 구분하고 당대의 이민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의 이민자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의 전근대시기 소수민족정책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전통적인 다민족사회의 소수민족 정책과 공존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경험들이 최근 한국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다민족적인 현실과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이민연구 또는 이민사회학의 대상은 모든 다민족 경험이 아니라 근대 및 현대 이민으로 야기된 다양한 종족집단의 공존이라는 상황과 관련된 경험에 국한된다. 다민족적 양상은 시대에 따라 상이했고 이를 크게 구분해 보면, 전근대사회에서는 다종족적 상황이 일반적이었고, 근대에 들어서서는 1민족 1국가 원리에 입각한 민족국가 모델에 따라 하나의 민족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확산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서구사회를 포함해 많은 사회들이 다종족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후 1950년대를 전후한 식민지 해방 이후 또는 1980년대 이후의 소위 세계화시대에는 새로운 양상을 띤 이민에 의해 야기된 다민족사회화가 나타났다.

2. 한국 이민논의의 전망

1) 인종주의의 부상

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인종주의 문제는 이민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단지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반의 미국이나 1980년대 이후 유럽과 같이 민주적인 시기에 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종주의와 이민문제의 친화성의 원인을 근대가 탄생시킨 민족국가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은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공통의 역사, 언어, 종교, 문화 등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민족의 구성원들은 다른 민족의 성원들과의 관계보다 그들 사이에 훨씬 더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고 대부분 같은 지역에 함께 산다(Smith, 1991: 43). 국가도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들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런데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법과 규칙, 행정의 권한은 민중(people)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국가에 정당성을 주는 것은 민중이다. 이렇게 민족과 국가 양자 모두에서 동일한 민중이 핵심주체이기 때문에 근대의 민족과 국가 두 개념 사이에는 구조적 연관성이 있고 유럽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두 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쓰여 온 것이다. 그래서 민족국가(Nation-State)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근대민족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것이어서 군주로부터의 해방과 시민으로서의 주권의식 등 그 이념을 받아들이는 외국인들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근대민족의 논리는 보편적이고 구성원의 출신지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근대의 조국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외국인은 잠재적인 적이 되고 억압적인 법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또 다른 전통이 형성된다.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이고 이렇게 탄생한 민족주의는 외국인혐오증을 주된 요소의 하나로 삼게 된다. 이 이중적인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근대)민족'은 시민들간의 종족적, 종교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족은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비민족으로 정의된 외국인에 대한 거부를 통해 견고해지는 것이다(Blanc-Chalard, 2001: 6).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민족의 문제는 민족국가라는 이상 및 그것에서 기인하는 원칙들과 그렇지 않은 현실간의 모순의 반영인 것이다(Entzinger, 2005). 이와 같이 외국인혐오증은 근대국가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한국인들의 외국인혐오증 역시 종족적 특수성만큼이나 강

한 근대국가의 존재, 한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민족국가의 존재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국가의 측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이다. 우선 외형적인 면에서 민족국가의 이념형에 매우 가까운 사례이다. 즉 비록 한민족이 역사를 통해 다양한 종족과의 공존 및 혼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종족 간 공존을 초래했을 뿐 귀화 등을 통해 타민족이 한민족에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주류민족의 단일한 역사, 언어 및 문화적 특성만이 남게 되었다. 일제 시대와 분단이라는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불과 10여 년 전부터 충분히 많은 수의 이민족의 유입이 있기 전까지 적어도 남한의 근대사회는 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였다(엄한진, 2006).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우리보다 뒤늦은 1950, 60년대에 독립하였고 게다가 1970, 80년대 발전의 실패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어 온 다수의 비서구사회들과 큰 차이가 있다. 즉 이들 사회의 경우 민족국가가 아직 형성 중에 있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과 달리 (남한만을 고려할 때) 언어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통합적이고 동질적이며, 소수민족 공동체의 존재가 미미하고 지역갈등 역시 다른 비서구사회에서 흔히 존재하는 분리주의 운동이라 불릴 만한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의 이민현상은 이러한 전형적인 민족국가로서의 한국에 소수민족의 존재를 낳고 있다. 그리고 민족국가의 속성인 외국인혐오증과 인종주의 역시 경제불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

방문취업제 등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간의 경쟁유발 우려를 낳는 변화들,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경제위기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들이 가져온 사회전반의 우경화(엄한진, 2004)와 같은 요인들이 이러한 외국인혐오증을 인종주의로 전화시키는데 적합한 조건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미디어와 정부에 의한 일부 이민집단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경우 최근 이상과열로 인해 과도하게 부각된 이민집단이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몽적 성격의 사회논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고 난 후 인종주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있다. “그는 92년에 산업연수생으로 처음 들어왔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없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 때가 더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로서는 조금 의외였다”(이선옥, 2003: 434). 이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계적인 편견으로서의 인종주의는 타인종에 대한 무경험의 표현이 아니라 충분한 접촉의 산물인 것이다. 그리고 인종주의 부상의 배경 중 하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인 이민문제에 대한 치안문제화의 징후들을 여수사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방식이나, 최근 인터넷 범죄나 전화사기 등을 계기로 중국동포 등 외국인 및 유학생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4월 13일에 발표된 여수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에는 근무자의 근무기강 확립 방안, 보호시설 개선방안, 화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방안, 경비□계호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www.immigration.go.kr) 이에 대해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구금□추방이 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법무부는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보다는 통제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6일자). 이주노동자 보호소에서 체류시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을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 수형자로 취급하는 것에서도 치안문제 중심의 현 이주노동자 정책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속 위주의 불법체류자 정책은 이들을 범죄인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째다. 그러나 이 고용허가제는 우리의 권리를 전혀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허가제 정착을 이유로 시작된 단속은 우리 삶의 끔찍한 일상이 됐다. 2004년, 2005년에만 5만 7천 3백여 명이 단속당해 강제 퇴거됐다”(『이주노동자의 목소리』 2호, 2007). 이는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과 비교해볼 때 매우 과격한 대응이다. 이민자 수가 2006년 현재 320만 명이고(Haut Conseil □ l'int□gration, 2006: 13) 불법체류자 수도 40만 정도로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의 실태를 보면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2000년의 경우 재입국금지, 국경지대로의 추방 및 본국으로의 추방 등을 포함한 조치가 43,019건 승인에 집행이 9,230건, 2003년에는 각각 55,938명과 11,692명이었다(Haut Conseil □ l'int□gration, 2003: 44).

한국의 현 이민논의는 두 개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간의 적대, 이민집단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는 ‘분리를 통한 지배’ 전략이 내재해 있다. 이것은 인종, 민족에 따른 분리를 통한 고전적인 노동계급 지배전략이 새로운 양상으로 부활한 신자유주의 노동분할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리를 통한 지배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미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한국인들이 일하는 건

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고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경쟁논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이것은 인종주의와 극우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다문화’ 논의의 분화

인종주의 부상의 가능성과 함께 현재 획일적이고 미분화 상태인 ‘다문화’ 논의가 머지않아 분화와 경쟁의 국면을 맞을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담론이 사회적으로 부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담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민에 적대적인 세력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의 분화, 그리고 이민에 호의적인 진영 내부에서도 인권보호와 같은 보편적 원리에 기초한 보편주의 대 출신국 문화에 기초한 ‘정체성 정치’를 주창하는 특수주의의 대립, 사회경제적 통합을 강조하는 세력과 <차이의 존중>을 지지하는 세력, 국민적 통합성을 다시 강화시키려는 세력 대 <국민>과 <시민>, <국적>과 <시민성>(citizenship)의 연계를 파괴하려는 혁신적인 세력 간의 분화와 대립이 예상된다.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동시대 사회 전반의 문화적 변화의 일환이었다. 다문화주의 모델의 대척점으로 여겨지는 공화주의 모델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다문화주의 시대가 있었고 최근 프랑스가 보이는 강경한 공화주의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온건한 차이주의에서 급진적인 공화주의로(du différentialisme modéré au républicanisme exacerbé)’(Les propositions pour un projet populaire: 43) 전환한 결과이다. 즉 줄곧 공화주의를 표방해왔지만 프랑스는 오랫동안 브르타뉴 공동체나 북부지방의 이탈리아공동체가 큰 거부감 없이 존재해왔고 포르투갈 출신 이민들의 성공적인 프랑스사회 통합도 상업적 연결망 등 종족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문화적 차이 및 종족 공동체에 대해 관용적이거나 적어도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았다. 즉 공화주의가 다문화사회와 모순적인 것은 아니다. 공화주의 체제에서 국적은 인종, 종교, 문화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원리에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서로 다른 집단과 정체성을 넘나들 수 있는 사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국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도 존중될 수 있다.³⁸⁾

38) 라코르느(Lacorne, 2004)는 문화적 다양성 또는 국민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에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그러나 이러한 제5공화국의 관용성은 68년 5월을 계기로 비판받게 되고 짧은 다문화주의 시대가 도래 한다. 당시 프랑스 다문화주의는 68혁명에서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국가의 억압성 비판, 그리고 이 혁명 이후 등장한 특수주의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었고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처럼 당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Blanc-Chalard, 2001: 90). 68년 혁명 이후 프랑스사회의 일부는 지배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들어 <동화> 개념을 비판하며 문화적 차이를 찬양했다. <모자이크 프랑스>, <다원적인 프랑스> 등 새로운 사고가 당시에 큰 반향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불평등과 인종주의의 부상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차이를 중시하는 것이 차별로의 길을 여는 것으로 우려했다. 이렇게 해서 공화주의적 평등에 기초한 '통합'(integration)이라는 이상이 1985년 12월 <아랍출신자들의 행진>(la marche des Beurs)으로 상징되는 보편주의적 입장의 이민 사회운동의 사상이 되었고, 그 선봉에 섰던 반인종주의 단체들은 사회적, 법적 차원에서의 동화라는 전통적인 대의를 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1989년 <이슬람식 여성 머릿수건 사건>과 그것이 촉발시킨 정교분리주의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관용적이었던 일부 사람들이 정교분리주의 원리를 근거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도 당시 프랑스와 유사한 사회적 맥락에서 동화주의를 비판한다. 다른 점은 우리가 <동화>와 <통합> 개념을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데 반해 프랑스에서는 동화 개념에서 사적, 문화적 차원에서는 관용적이고 사회적, 법적 차원에서는 평등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새로이 <통합> 개념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다문화주의가 68년 이후부터 1970,80년대 경제 불황 초기까지 전개된 서구에 비해 20여년 뒤늦게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차이에 대한 열광이 각종 '포스트' 담론이 부상한 1990년대 초부터 IMF 금융위기의 사회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 한국사회는 다른 문화에 대한 열정이 시들해지고 다양한 방식의 '통합'담론이 재부상한 1980, 90

따라 (1) 급진 다문화주의(le multiculturalisme radical), (2) 고전적 다문화주의(le multiculturalisme classique) (3) 온건한 다문화주의 또는 문화적 다원주의(le multiculturalisme modéré ou le pluralisme culturel)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다문화주의를 구분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프랑스는 '고전적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며 이 유형의 특징 중 하나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소수민족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이로 인해 우대되는 특정 소수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

년대 서구사회와 비교될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IV. 한국적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그렇다면 향후 예상되는 인종주의 부상의 가능성과 이민담론의 분화라는 조건에서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파악, 보편주의의 회복을 통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조화,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출신국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1. 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정의의 모색

“1960년대 이래 우리는 영국에서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1960년대에 있지 않다. 1970년대에 있지도 않다. 오늘 영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잘못된 이념이다”

이것은 최근 영국의 다문화주의 모델 비판에 앞장선 인종평등위원회 위원장인 필립스(M. T. Philipps)의 말이다(Haut Conseil □ l'intégration, 2006: 159). 바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통합모델의 위기는 국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 것이다. 1990년대 유럽에서 이민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세계의 이민현실 및 통합모델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개념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공동체주의 모델은 집단의 원초적인 차이를 초월하는 보편주의적인 법보다 소수문화나 소수 종족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차이의 정치’(the Politics of Difference)론에서 비롯되었다(ibid.: 158-9). 이 모델은 샌들(M. Sandel), 왈저(M. Walzer), 테일러(Ch. Taylor)와 같은 미국의 사상가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공동체주의의 논리는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종족공동체의 틀 속에 있을 때 더 잘 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종족적 성격의 단체가 장려되고 거주지역이 종족화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즉 ① 개인들이 일상적인 행위나 결혼 등의 문제에 있어서 종족적 틀에서 자유롭게 벗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날 수 없을 정도로 종족공동체가 폐쇄적이고 강압적일 경우, ② 법적 권리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부여될 때, ③ 1964년 이전 미국처럼 종족에 따른 분리정책(segregation policy)이 존재할 때, ④ 개인이 주류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종족적 정체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때. 이러한 조건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통합모델은 폐쇄적인 공동체들의 병렬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공동체주의로 전락한다(Les propositions pour un projet populaire: 47-48). 영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지에서 다문화주의 통합모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 공동체주의는 종족적, 종교적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다문화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을 가지며 실제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공동체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공동체주의 실패의 조건과 상반되는 다문화주의의 성공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³⁹⁾ 우선 공동체주의나 다문화주의 비판의 핵심인 정체성에 대한 폐쇄적인 정의를 극복해야 한다. 홀(Hall, 1991)이나 백(Back, 1996) 등이 주창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종족성>의 모색에서처럼 정체성의 유동성을 인정해야 한다. 종족성을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정체성 형성에 관해 민족적 차원만큼 개인적(individual), 지역적(local), 초민족적(transnational) 차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는 특히 이민집단의 경우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비록 전근대의 종족적 역사와 유대에 기반을 둔 것이긴 하지만 민족과 민족의 전통이 근대에 새로이 정립된 것이듯(invention of a

39) 물론 이 글의 관심은 ‘다문화주의인가 공화주의인가’와 같은 모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된 ‘낭만적’ 성격의 다문화주의에 어떠한 내용을 채우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최근 연구들은 특정 국가의 모델이 지니는 이념과 현실 간 괴리를 강조한다(Weil, 1995; Wiewiorka, 1996 등).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나라들의 실제 통합과정이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정책비교 없이, 해당 사회의 사회세력이나 정당들 간의 입장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한 시기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어떤 모델로만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엔징거는 국가별 유형화가 (a) 통합과정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며 (b) 각각의 이민정책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c)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Entzinger, 2005: 25-6).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예가 잘 보여주듯이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는데 있어서 해당 국가 이민정책의 시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nation, reinvention of tradition), 1970, 80년대 이후 부상한 문화와 문화적 차이 역시 세계화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재구성, 재발명 된 것이다(reinvention of difference)(Bayart, 2005: 60). 그리고 각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인종이나 종교에 의한 구분은 문화가 지니는 이러한 유동성과 자율성을 가로 막고 부정하는 제약요소로 작용하기 쉽다(Weil, 2005: 104-6).

또 다른 요건을 오스트로맑스주의의 민족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주의는 광대한 영토, 다민족적 성격이 강한 지역, 분권적 전통이 강한 연방국가들에 보다 용이하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에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오스만,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세 제국의 해체기 중동부유럽 후발민족 지식인사회에서 태동한 오스트로맑스주의의 논의도 이 점과 연관성이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운명을 염두에 둔 그들 사고의 핵심은 다민족국가(다민족제국)의 틀에서의 문화적 자율성이었다. 오스트로맑스주의자들의 민족론이 당시에 매우 새로웠던 것은 민족을 영토를 토대로 한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당시 서유럽으로부터 전파된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운명에 관심이 쏠려있던 중동부 유럽의 민족문제에 대해 이들은 민족을 영토와의 연관성을 버리고 개인적인 속성으로 전환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점차 특정 영토나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종교처럼 민족도 사적 영역의 것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Cabanel, 1997: 73). 물론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다민족 전통을 가진 사회들이나 유럽연합 등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따른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 지역적 시민성(regional citizenship)을 고민하는 사회들과 달리 오스트로맑스주의의 민족론과 같은 ‘민족’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가 용이하지는 않다. 『국경없는 마을』이 제시하는 ‘국경없는 시민권’이나 ‘주민권’이 이러한 성격의 논의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1960, 70년대의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또는 2000년대 초 영국, 미국, 캐나다, 어느 쪽과 더 유사한가?”

2. 보편주의의 활성화

향후 예상되는 이민논의의 분화에 대비해 한편으로는 이민에 호의적인 세력의 확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때 보편주의란 대상집단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말하고 특수주의는 서로 차이가 나는 ‘인종’, ‘민족’, ‘문화’, ‘종교’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다문화’ 논의는 민족적,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특수주의 경향이 우세하므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조화를 위해 보편주의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이민집단 간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자 출신국 법을 어기는 일종의 불법이민으로서의 결혼이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보다 덜 불법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결혼이주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측면보다는 외국에서의 결혼중개과정이 단속에 걸릴 위험성, 에이즈 감염 등 한국 남성의 위험이나 출신국가와의 마찰이 가져 올 소위 국가의 위상문제, 심지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결혼중개업체의 적발 위험 등 부차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또는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속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합이란 세계화 시대의 주된 특징인 소수집단의 배제를 극복하는 통합의 차원보다 사회 안정을 해치는 문제의 예방이라는 구조기능주의적인 일탈론이나 치안담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본질에서 벗어난 결혼이주에 대한 시각의 근저에는 국익을 위해 국제결혼이 불가피하다는 사고가 깔려있다.⁴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결혼이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저출산□고령화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⁴¹⁾ 이 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40)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규제방침을 밝히면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송출이 중요한 외화획득 수단이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익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개업체들의 무리한 알선과정은 이러한 동남아 정부들의 암묵적인 동조마저 어렵게 할 정도로 심각해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관련 입법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41)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006년 4월 26일 발표된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대책의 경우 이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위한 미래위원회’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

않겠지만 이 담론은 극히 단순화된 미래예측과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등 신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불과 3-4년 전만해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혼 증가 추세도 2004년을 고비로 안정화되었고 2006년 혼인건수가 쌍춘년 효과로 10년 이래 최대의 증가를 보인 것과 같은 사실은 결혼, 이혼, 출산 등 매우 미묘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국제결혼 추세 역시 2005년을 고비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⁴²⁾ 이렇게 사회의 주요 논의가 다분히 신화적 성격을 띠는 이유는 바로 현 국가가 인구문제, 가족문제 등을 국익론을 중심으로 정치도구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경제불황기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편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결혼과정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법의 엄격한 적용을, 그리고 결혼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회성원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를 넘고 있는 실정에서(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16) 이들의 문제를 빈곤문제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결혼 가정 역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이러한 방향의 정책변화가 있다.⁴³⁾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결혼이주문제에 있어서도 불법국제결혼 규제정책과 결혼이주여성 통합정책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 두 차원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분은 이주노동자문제에서의 구분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즉 서구에서 노동이주 관련 정책을 출입국정책과 통합정책의 두 차원으로 분리하는 것은 이미 정주화된 이민들에 대한 통합정책이 불법체류문제 등 출입국 차원의 문제들과 혼재되어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통제의 강화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그 저변에 있는 기본정신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결혼이주 문제에 있어서 정책을 구분할 필요성은 국제결혼의

서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아시아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이들의 문제를 방지할 경우 미래에 닥칠 사회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불온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프레시안』, 2006년 6월 13일자 기사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 인권보호가 먼저다”.

42)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국제혼인건수는 여전히 전체혼인건수의 10%를 상회하지만 2005년 43,815건에서 2006년 39,071건으로 줄었으며 외국인 배우자 이혼건수는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에서 2006년에는 6,187건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한국일보』, 2007년 4월 15일자)

43)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문화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이 소외계층 및 소수자 집단 일반이 경험하는 제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심보선, 2006: 240)는 연구결과는 이민문제를 소수집단 일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불법성에 대한 규제정책이 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통합정책에 대한 관심에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이주과정에서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현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3.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의 측면에 대한 고려

앞서 우리는 최근의 이민문제, 특히 최근에서야 본격화된 한국의 이민문제는 세계화와 연관된 전지구적 차원의 현상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구적 차원을 고려하는 중요한 접근방법 중 하나는 최근 타개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에 대한 권위자 사야드(A. Sayad)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사야드에 따르면 한 사회에 들어오는 이민자가 있다면 이 이민자의 출신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나라로부터 떠나는 이민인 것이다(Sayad, 1999). 이것은 '이민수용국의 입장에서의 외국인인의 이주(immigration)'와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의 배경 및 이주과정(emigration)'을 모두 고려하는 이민문제에 대한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 이민문제는 이민 본국과의 관계,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은 특히 세계화 시대 이민논의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우선 세계화가 교통통신의 발달을 통해 이민본국과의 관계를 예전보다 훨씬 밀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초 세계의 이민들 각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 즉 그가 떠난 나라와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라간의 연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Bernard, 2002: 14). 세계화시대 이민의 특징 중 하나는 위성방송, 국제전화, 고국방문 등을 통한 교류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 본국과의 연계가 중요해졌다.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국적 현상도 이러한 변화의 산물인 것이다.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의 측면에 대한 고려는 또한 현 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불균형의 문제를 드러내 줄 수 있다. 이것은 근대 이민과 달리 세계화시대 이민이 이민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수요에 의해서보다 출신국을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하는 요인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근대사회의 이민은 신대륙정복,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 미국,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재건과 같은 중심부세계 발전과정에서의 노동력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에 세계화시대 이민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최근 각국의 이

민정책에서 이러한 중심부사회의 요구라는 고전적인 양상이 지속되지만 이와 함께 세계화로 인해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한 상당수 주변부 사회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생존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더 나은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최근 세계이민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민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민을 떠나는 동기,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흡하다. 이민자들이 과거 자신들을 지배하지도 않은 한국으로 오게 만든 이주자들의 본국의 경제 상황, 지역분쟁, 종교변동, 이들에 대한 본국정부의 태도 등의 요인은 이들의 출입국과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의 존재가 한국에서의 삶뿐 아니라 출신국의 조건, 출신국에서의 경험에 크게 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재일동포, 재미동포들처럼 본국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⁴⁴⁾

앞서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이주동기는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히 임금차이가 주된 요인이다(석현호□이혜경, 2003: 82). 이주노동자의 한국 이주 전후 월 평균소득을 국가별로 보면 3배에서 8배의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은 8.1배, 중국 조선족이 7.2배, 중국 한족이 7.0배, 인도네시아가 4.6배, 필리핀이 3.4배였다(ibid.: 86). 이 조사가 IMF 직후에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 이 격차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임금차이와 더불어 일자리의 절대부족 문제도 중요한 이주의 원인이다. “네팔에는 농사 이외에는 돈벌이가 없으니 한국같이 일자리가 많은 곳에 오는 것이 네팔인들의 희망”이다.⁴⁵⁾ 한편 한국이 이주희망지역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럽, 미국, 일본으로의 이주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철의 장막을 펴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이외의 지역 중 그나마 경제규모가 큰 한국이 차선적인 일자리 공급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언어적,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조선족과 해외이주가 일반화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혼이주현상에 대한 인식에도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의 일반적 인식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동남아 여성들과의 결혼이 한국사회의 인구문제, 성비, 농촌총각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불가

44) 서경식(2006)의 글은 재일동포의 현실을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45)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까봉 까지만과의 인터뷰, 출처: 이주노동자운동 홈페이지 <http://migrants.jinbo.net>.

피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의 시각, 출신국 사회의 조건에서 보면 이보다 더욱 불가피한 것은 결혼이주자들의 본국의 상황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국제결혼은 이 사회들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처하는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국제이주의 한 형태로 바라보아야 한다.⁴⁶⁾ 이상의 논의가 지니는 실천적인 함의를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서 종교와 풍습뿐 아니라 출신국가의 상황 및 이들 국가와 우리의 연관성 등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위에서 우리는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이 서구 자본주의의 부산물로 시작된 근대 이민과 다른 세계화시대 이민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여겨져 온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강경한 불법체류자 정책, 선별주의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등의 현상이 근대국가의 속성이나 전지구적인 이민정책의 폐쇄성과 같은 보편적 경향의 특수한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이민논의의 분화 가능성과 경쟁하는 두 진영의 형성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다문화논의가 성공하기 위한 관건으로 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보편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조화,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emigration)의 측면에 대한 고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이민논의는 과거 노동자의 존재가 계급에 대한 논의를, 국가의 존재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제국주의의 존재가 자주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촉발시켰듯이, 외국인의 존재는 또 다른 사회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사회논의를 통해 기존의 진보-보수, 민주-반민주, 좌-우 등의 대립구도와 다른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대립구도와 진영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이민문제의 정치화가 아니라 이민문제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은 인종

46) 물론 이주의 경제적 동기에는 외국에 대한 환상과 출신사회에 대한 환멸과 같은 문화적 요인이 결합된다. 그리고 이혜경 등(2006: 273)이 잘 지적하듯이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극빈층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취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친지나 친척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의 부상을 막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이민현상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관용이 불황기에 급속하게 인종주의로 전환되는 일반적인 경험을 고려할 때 이민문제가 호황기가 아닌 불황기에 사회적으로 부상한 현 한국의 상황은 '관용 이후'의 국면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준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06. "'사랑과 돌봄'의 유입 그리고 '혼혈의 문화'." 『경향신문』 2006년 11월 10일자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서경식. 2006.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 석현호□이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이주과정."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pp. 71-95.
- 설동훈. 2005. "외국국적 동포의 노동시장 분석." 『재외한인연구』 17: 5-39.
- 스타커. 피터(P. Stalker). 2003. 『국경없는 노동자』(최수연 역)(원제: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심보선. 2006.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활동과 정체성 정치."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06-8). 한국사회학회: 223-241.
- 엄한진. 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253-286.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2006년 전국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35-56.
- 엄한진. 2004. "우경화와 종교의 정치화: 2003년 '친미반북집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2: 80-115.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선옥. 2003. "원곡동 사람들." 『정치비평』 2003년 상반기. pp. 430-438.

이주노동자운동 홈페이지: <http://migrants.jinbo.net>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적 가족." 『한국 사회학』 40(5): 258-29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2호. 2007.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프레시안』 2006년 6월 13일자.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 인권보호가 먼저다."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2일자.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5일자.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15일자. "이주노동자 정책 이대론 안된다: ③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6일자.

『한국일보』 2007년 4월 15일자.

Back, L. 1996. *New Ethnicities and Urban Culture*. UCL Press: London.

Bayart, J.-F. 2005. *The Illusion of Cultural Identity*. C. Hurst & Co.

Bernard, P. 2002. *Immigration: le défi mondial*. folio actuel. Folio actuel.

Blanc-Chalard. 2001. *Histoire de l'immigration. la découverte*: Repres.

Cabanel, P. 1997. *La question nationale au XIXe siècle*. La découverte: repres.

Castles, S. 1995. "How Nations Respond to Immigration and Ethnic Diversity" (pp.293-308). *New Community* vol. 3. n°21.

Entzinger, H. "Politiques d'intégration en Europe: un modèle multi-dimensionnel". in L. Arnaud(dir.) 2005. *Les minorités ethniques dans l'Union européenne*. La découverte.

Hall, S. 1991. "Old and New Identities. Old and New Ethnicities". in King A. D.(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McMillan: London.

Haut Conseil □ l'intégration. 2006. *Analyse comparative de différents modèles d'intégration en Europe*. décembre 2006.

Haut Conseil □ l'intégration. 2003. *Rapport 2002-2003*.

Hollifield, J. F. 1997. *L'immigration et l'Etat-nation □ la recherche d'un modèle*

national. L'Harmattan.

Lacorne, 2004. "Le multiculturalisme est-il un communautarisme?". Kymlica W.(dir.). Communautarisme. PUF.

Les propositions pour un projet populaire. in http://a1692.g.akamai.net/f/1692/2042/7d/reflexionsmelees.blog.lemonde.fr/files/intgration_des_mots_aux_actes.pdf

OECD. 2000.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Pedace, R. 2006. "Immigration, Labor Market, Mobility, and the Earnings of Native-Born Workers. An Occupational Segmentatio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ume 65 Issue 2: 313-345.

Sayad, A. 1999. La double absence. Seuil.

Schor, R. 2004. Français et immigrés en temps de crise(1930-1980). L'Harmattan.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Penguin: London.

Thiesse, A.-M. 2001. La création des identités nationales: Europe XVIIIe-XXe siècle. Seuil: Point/Histoire.

United for Intercultural Action. Internet: <http://www.united.non-profit.nl>.

Weil, P. 2005. La République et sa diversité. Seuil.

Wieviorka, M. 1996. Une société fragmentée. le multiculturalisme en débat. la découverte.

2장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 경 구 (국민대 국제학부) □ 한 건 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I. 들어가는 글

전지구화와 함께 진행된 국제이주의 물결은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이 붓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다민족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학계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며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주도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라는 용어를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기도 한다.

다문화사회 개념으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최근의 논의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의 규모나 그에 따른 문화 다양성 수준에 적절한 논의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미래의 가능성과 유추된 전망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¹⁾. 즉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은 아직 한국사회의 실체를 반영하는 분석개념이라기 보다는 미래의 전망을 위해 사용되는 수사적 개념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는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 단계를 진단해 온 기존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시민사회나 정부, 학계에서 논의되는 다문화사회 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1) 한국사회학회가 2006년 동북아시아위원회 의 용역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인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에 실린 논문들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진단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가 더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된 계기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검토는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과 미래의 전망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다문화담론을 소개하며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으로 제시하는 수준의 글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한국사회학회(2006)가 동북아시아대위원회의 용역으로 연구한 보고서에서 다인종 다민족화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 단계를 분석하며 다문화사회 담론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엄한진(2006)은 먼저 현대 한국사회의 다민족화 현상을 다른 서구 국가의 사례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초래된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는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국제분업의 결과로 진행된 이주의 대중화와 다양화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종교나 정치, 경제적 원인으로 진행된 고전적 이민과는 상이하다는 논지를 편다. 김혜순(2006)은 다문화 사회 담론에서 부계혈통중심의 순혈주의를 토대로 한 단일민족론에 개입된 공모와 경쟁의 기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제기했다.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사업 경쟁과 대중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문화사회론의 다양한 입장을 분석해야 함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에서도 전광희(2006)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체계의 구축이나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며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오경석(2007)은 한국사회학회(2006)의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다양한 다문화사회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다문화주의가 적절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이행의 주체인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존권과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의 초점을 문화가 아닌, ‘아래로 부터의 소수자 연합정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주의 담론이 다양한 주체들에 따라서 제기되고 형성되는 담론 형성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언어로 표현되는 ‘다문화사회’가 얼마나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재의 이론적 논의나 담론들이 다문화사회 자체에 대한 이해나 설명 없이 정치적 구호로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다문화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해 ‘문화’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엄한진(2006)의 경

우도 현재 한국의 다문화 대중 담론들이 '문화 없는 다문화'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의 논의에서도 문화개념 자체에 대한 분석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혜순(2006)이 제기한 '경쟁과 공모'의 논의도 결혼이주여성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민족, 계급, 젠더의 매트릭스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원인을 재검토할 것이다. 즉 기존의 담론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한국사회의 순혈주의적 민족주의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인지를 재검토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단일민족론'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 질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거 전통 한국사회가 외래 이주민에 대해 어떤 정책과 관심을 가져왔는가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유교 지식인들이 이해한 세계관과 이주민의 수용 정책이나 명문 가문의 족보에 등장하는 중국 기원론, 귀화한 성씨의 규모와 존재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통 한국사회가 이해한 집단성원의 정체성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필자들은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만 토대를 두고 있다거나 실제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서 자체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이주민에 관한 우리 선조들의 견해를 다양한 역사 자료를 통해 재검토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통해 오늘날 대중적 민족주의 정서의 핵심인 순혈주의적 단일민족론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피식민 경험과 근대 국민국가 건설 과정을 통해 살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본의 식민유산을 청산하려는 탈식민 노력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성찰과 분단이후 냉전체제에서의 민족담론 경쟁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이다. 해방 이후 줄곧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려 애쓰면서도 실제 국가 민족 문화에 대한 일본의 담론이 우리의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엄밀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민족주의 담론 형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한 바가 없다. 또한 해방 후 냉전체제하에서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를 경험하면서 남과 북에서 민족주의와 통일논의가 어떻게 경쟁적으로 전개 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역사적, 문화론적 성찰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찰적 분석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토대로 진전되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 담론을 공허한 정치적 구호나 외국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상황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다문화사회 담론이나 이론들이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다양한 범주나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과 용어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다문화사회 담론을 구축하는 기초적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현재의 담론들은 민족□국민□인종과 같은 개념조차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민족’□‘다인종’□‘다문화’사회와 같은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이 강조하는 사회유형의 특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지칭하거나 한국사회기 이행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유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혼용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한다.

정부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개념적 혼란과 남용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이행을 분석하고 ‘다인종□다민족’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가능성과 한계, 기회와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사회와 다민족사회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인식은 ‘문화’개념의 빈곤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인적구성이 다민족화 한다는 것이 곧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통용되는 ‘다문화’ 개념에서 ‘문화’개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어 다문화사회의 실태나 다문화 정책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담론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첫째,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의 주축인 다양한 이주민과 한국인 집단들이 민족, 계급, 젠더 관계의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지형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문화 현상의 행위주체인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계급이나 젠더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한국의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다문화 사회론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즉 한국식 다문화주의 담론이 갖는 특징과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현 단계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이 갖는 개념과 용어의 혼동이나 문화개념의 부재에서 비롯된 다문화사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냄으로써, 현재 제기되는 다문화 담론을 재정비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셋째, 기존의 다문화 담론이 갖는 근본적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주민의 수용에 관한 우리 선조들의 태도나 입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새롭게 분석할 것이다. 즉 혈통에 근거한 단일민족론이 우리의 전통적 민족관념이고 이를 토대로 이주민을

대했을 것이라는 관념 자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혈통과 순혈을 강조하는 단일민족론이 현재 한국의 다문화 상황 또는 다인종 다민족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부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넷째, 단일민족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적 민족주의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독립이후 국민국가 건설과 탈식민 과정에서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분단 현실과 통일의 과제를 갖게 된 한국사회의 민족모순이 민족주의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 단계에 맞는 다문화주의 담론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담론들이 다루지 않은 주제들을 논의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다문화사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정부의 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II. 현대 한국사회 다문화주의 담론의 형성과 특징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1980년대 말 이후 급증한 이주민의 존재가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에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 속에 출현했다. 결혼이민자의 입국이 급증하기 전,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관리 정책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허락하지 않는 교체순환정책을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정책은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노동시장의 경제논리에 충실한 노동력 관리나 ‘불법체류’ 노동자의 단속과 관리와 같은 출입국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가 이주민 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고 이들의 관리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후의 일이다.

시민사회 또한 정부의 이주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나 업체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이주민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운동가들 역시 이주민 운동의 상당기간을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급박한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응급조치 위주의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에 달한 시점인 1993년 정부는 뒤늦게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존재 유형을 규정하게 되었고, 미등록 노동자의 양산과 함께 '현대판 노예제'라는 극단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역시 문제의 근본이 한국사회의 이주민 정책과 관점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전망을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은 이들의 열악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폐쇄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드러내줌으로써 글로벌 시대 한국사회의 치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자성적 반성을 촉구하는 이러한 캠페인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온정주의적 시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차별적 시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은 이주노동자를 타자화 시키거나 온정주의적 시혜의 대상으로만 재현해냈고 이주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한진수, 2003).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이주노동자와 함께 어울려 사는 한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온정주의적 시선을 넘어 대등한 이웃으로 이주민들을 주체화시키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주노동진영에서는 다양한 분화를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협의회가 분화되는 과정에는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역량을 개발하고 이들의 주체성을 담보해 주는 관점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었다(설동훈, 2005; 오경석, 2007).

결국 한국사회의 이행과 관련된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이 추진한 사회공학적 문제제기는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이슈화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의 확산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이행 문제는 이슈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다. 이주민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외국인이자 수동적 존재일 뿐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거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이행을 추동하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정부나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자의 등장이다.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실질적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된 국제결혼의 급증은 기존의 이주민 정책을 본질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노동자나 다른 외국인 이주민과 달리 한국에 정착한 후 영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주뿐만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 다른 이주민과는 전혀 다른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갖게 했다. 결국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급증으로 인해 이주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주민의 존재와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나 시민사회 모두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부계혈통중심의 혈연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김혜순, 2006).

이주노동자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결국 이주민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시켜주었고, 손님으로서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던 이주민을 우리사회의 타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할 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한국사회의 전망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엄한진(2006)의 논의대로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와 이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현상'은 서구의 고전적 이민과 그에 따른 다민족사회의 형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다민족화 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이행, 즉 다문화사회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공학적 아젠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명확함으로 한국사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만들어지는 현대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전망이 제시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해석과 주장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현 단계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분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고려 사항이다.

1. 한국사회의 다문화지형도: 민족계급·젠더·공간

현대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은 계급과 젠더의 매트릭스에 따라 서로 다른 층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출신 국가의 경제력과 한국에서의 직종에 따라 계급적인 구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이주민이라도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나 한국사회의 소외계층과 결혼한 외국인인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에서 하층부로 편입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중산층 이상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전혀 다른 사회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공통의 문제이긴 하다.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니즌(denizen)²⁾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이자 해당 사회에서 주변화 된 범주인 ‘마지즌(margizen)³⁾의 분화는 거주국에서 이들이 확보하는 권리마저 차별화 시킨다. 한국의 경우 권리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상황의 주체로서 이들이 편입되는 경로나 자리매김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데니즌’들의 문화는 한국 문화만큼 문화적 권리를 향유한다. 한국인들은 ‘데니즌’의 문화에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지만, 미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나 아시아권 결혼이주여성들인 한국사회의 ‘마지즌’의 문화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자신들의 문화가 기여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시 중산층 시민들은 “타이 쌀국수로 점심을 먹고, 인도 카페에서 ‘짜이’를 마시고, 티베트 불상을 구경하고, 네팔 전통 의상을 쇼핑”(신운동옥, 2004; 설동훈, 2006에서 재인용)하지만, 공단 지역 주민이나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국적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숙련 직종의 이주노동자는 국제이주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한 계급관계

2) ‘데니즌’은 출신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체류하는 국가에 영주하거나 영주권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과 같은 거대 기업이 체류하는 국가의 복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체류 국가에서 특권을 누리는 외국인을 말한다(Cohen 1997: 168; 김현미(2005:23)에서 재인용).

3) 마르키니엘로가 유럽에서 이주노동자처럼 주변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Martiniello 1994; 김현미(2005:24)에서 재인용).

가 작업장이나 거주지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위계적 관계에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설동훈□최홍엽□한건수, 2002). 이러한 위계적 관계는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한국문화와 만나는 접점에서 반영된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주장은 한국사회와의 문화적 교류를 강조하며 다문화주의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실천적 측면에서는 논란 중이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향유권과 한국사회와의 문화교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장이 이주노동자 축제인 ‘아리랑축제’이다. 그러나 이 축제를 주관하는 주체가 여전히 한국인 활동가들이며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한국인들의 낮은 참여도도 문제로 제기된다⁴⁾. 축제의 주체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하는 주체적 역량에 대한 논의의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이주노동자 자신의 삶이 반영되고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한국인에 의해 문화교류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다문화상황을 발전시키는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계급과 젠더 면에서 이중의 질곡을 갖고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편입되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절대 다수인 결혼이주여성은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 본국과 한국의 젠더 관계, 한국인 남편과 그 가족이 속한 계급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구조에 위치 지워진다.

탈법적인 결혼중개업체 일부의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에 근본적인 한계를 만들어낸다. 또한 결혼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경비지출을 근거로 부부간 또는 고부간 가족관계를 매매혼적 권력관계로 전환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원초적 폭력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상담해 온 시민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 상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받는 여성들을 위한 긴급구조 상담을 주로 해야 했지만 점차 문제의 본질이 한국사회의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구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다문화주의 담론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들이 직면한 다문화적 상황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와

4) 아리랑 축제 준비위원회인 (사)다문화열린사회 활동가와와의 인터뷰(2007.4.1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고통 받는 현실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들의 다문화적 상황은 국제이주의 정치경제적 구조가 초래한 기본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판 노예제’라 불렸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완전 폐기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고용허가제 이전에 입국했던 다수의 미등록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체류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 길거리 광고나 매매혼으로 인식될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 한국인의 국제결혼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인식태도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활을 규정하는 구조적 강제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자들의 다문화 상황은 문화적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이 일차적으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결혼이주자나 그 가족들 모두 서로의 문화가 다르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나,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주로 전가되고 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인식하는 문화적 차이는 음식이나 언어와 같은 극히 제한된 영역이며, 실제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결혼의 진정성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설명하는 문화외적 원인들이야 말로 실질적으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화차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한건수, 2006b;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국제결혼 가족의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들은 아내와 며느리인 이주여성에게 문화적 동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결혼 부부의 사례를 보면 과거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디어 재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언어나 문화적 적응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재현은 상당수 결혼이주자들에게 문화적 동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인 가족들에게는 근거 없는 기대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농어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배우자나 시댁 가족들은 낮은 문화에 대한 문화가독성(cultural literacy)을 키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며느리가 하는 음식은 먹을 만한 것이 없다며 부엌에서 내다 버리는 시어머니나 아내가 하루 빨리 입에 맞는 한국 음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남편(한건수, 2006b)은 정부나 시민사회

가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먼 나라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내의 모국어를 남편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이상적 노력은 낮은 교육수준과 불안정한 생계경제에 시달리는 한국인 남편들의 현실 앞에 무기력한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 가족의 다문화적 상황은 문화다양성이나 문화 간 소통과 이해와 같은 다문화주의 담론에 의해 현실적 문제가 은폐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국제이주를 낳는 정치경제적 조건과 체류조건이나 자격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주체가 되는 다문화주의 담론은 한국 사회 전반의 논의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거나 선호하지 않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지형은 공간에서도 중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이산동네(diasporic neighborhood)’⁵⁾가 공간적으로 다문화지형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동부이촌동의 일본인 마을, 서울 이태원과 해방촌의 아프리카인 거주 지역, 반포동의 프랑스 마을(서래마을), 구로동의 조선족 거주지 같은 집단주거지도 있으며, 동대문 시장 근처(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인)나 대학로(필리핀인)처럼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도 생겨났다(김현미, 2005: 20-21). 경기도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누리기도 한다.

이들이 형성하는 다문화 공간은 위계적 공간분포를 보여준다.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거주비용과 노동시장의 근접성 때문에 “지하철 노선의 맨 끝”인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일대의 공단지역 근처에 자신들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설동훈, 2006). 서울의 고급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형성하는 전문직 이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 공간이 지역적 분포에서 기존 한국사회의 계급성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에 의해 차별적인 의미부여를 받는 것이다. 동부이촌동의 일본인 마을이나 반포동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

5) ‘이산(민)’으로 번역되는 디아스포라(diaspora)는 종교적·정치적 이유로 고향 또는 고국에서 추방되어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주된 사례로 언급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다양한 경로로 이주한 이주민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지역은 한국 사회의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받는 반면에 이주노동자들이 형성하는 공간은 계도화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한민족의 이주 역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에서 한족을 형성하고 있는 재중동포(조선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일제강점기하에 한반도를 떠난 많은 이산 한민족의 후손들이 한국으로 재이주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 동포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할린 교포들이 국내로 노동이주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전통적 민족개념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좌절하기도 한다. 같은 민족으로 동등한 대우를 기대했지만 자신들을 다른 아시아권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똑같이 대하는 것을 경험한 후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한다(유명기, 2005).

국내로 이주해오는 이산 한민족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한민족의 이주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타국에서 거주국의 국민으로 귀화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적을 취득하고 거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국민(nation)과 민족(ethnic group)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건수, 2006d).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논쟁이나 개정 방향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이산 한민족 간에도 재외동포나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산 한민족 간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민족과 계급이 또 다른 메트릭스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현대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은 참여하는 주체의 계급과 젠더에 따라 중층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각 층위가 만들어 내는 다문화적 공간과 상황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담론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채 ‘다문화주의’라는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각자의 언어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6) 본 논문에서는 nation과 ethnic group의 한국어 용어로 민족/국민, 민족/종족(種族)을 병기하려고 한다. 영어에서의 nation에 해당하는 한국어 용어가 민족으로 고착된 지 오래지만, 맥락에 따라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성원을 의미할 때는 국민으로 번역하고, ethnic group 역시 종족(種族)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병기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개념을 논의하는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다문화 정책의 지형도

한국 정부는 2006년 4월 결혼이민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과 병행해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양산해 내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로 인식될 정도로 상당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를 캐나다와 호주의 '공식적 다문화주의(official multiculturalism)'와 조금 구별되는 새로운 현상인 '관주도 다문화주의(state-sponsored multiculturalism)'로 분석하는 시도(김희정, 2007)는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문화 정책은 민족이나 종교 또는 문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존중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전제한다(엄한진, 2006).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기조로 본격적인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단계는 아니며 정책 내용도 다문화정책으로 평가되기에는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다문화주의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 중앙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입안과정과 추진체계의 기획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가 설정한 정책 아젠다의 상당부분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경쟁은 때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빼가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불편한 관계"(김혜순, 2006: 25)로 나타나기도 한다. 필자가 면접한 활동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시민단체의 기존 활동을 자신들의 직접사업으로 가져가면서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형성해 온 이주민과의 신뢰관계나 지역에서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 한다⁷⁾. 일부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⁸⁾ 제발 정부가 조용하게 자신들의 정책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언론에 홍보만 한다는 비판이다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의 이주민 사회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 경험이 없

7) 전북 장수 민들레 학교 활동가(김현선)와의 면접 자료(2007. 5. 2.).

8) 가톨릭 계열 지원단체인 대전의 <모이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초기의 결혼이주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9) 부산 <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활동가(이인경)와의 면접자료(2007.7.1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의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중앙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는 이주민 운동을 오래 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향이 높아 정책 방향 자체는 시민활동가들과 큰 차이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소관계나 기회의 균등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순히 시민단체를 통해 이주민을 동원하는 경구도 많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결국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협조체계를 구축한 후 이계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김희정(2007)의 진단처럼 ‘관주도 다문화주의’라는 해석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3. 다문화 담론의 지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이 외부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사회로 한국사회를 이행시키기 위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실천적 담론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정책은 같은 상표를 달고 있지만 담론의 주체에 따라 내용과 실천적 지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경석(2007)은 다문화주의 담론과 관련되어 현 단계 논의의 초점은 “문화라기보다는 생존에 맞춰질 수 있어야 한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단속, 추방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존이라는 슬로건은 공허할 따름”임을 주장한다. “공존을 위해 문화에 앞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삶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이고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동의 기회’”이기 때문이다(오경석, 2007: 13).

다른 한편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주장파도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의 정치적 민주화는 “단일민족에 기초한 동

질적인 문화집단으로서 한국사회'라는 오랜 통념"을 해체해 나갔으며 "소수자 또는 주변인들의 발언권 확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에 본격적인 균열을 내었고, 결국 "한국사회를 하나의 균질적인 문화공간으로 바라보았던 지배적 인지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상길□안지현, 2007: 110).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초기에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점차 캐나다 주류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들의 문제도 다문화주의 정책의 중요한 대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 한다는 실천적 담론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 불과 2년 정도 추진된 관주도 다문화주의 정책은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정책 아젠다를 시민사회와의 협의 구조 속에서 정부가 선별적으로 채택한 것이며 그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국가가 주도하는 관주도 다문화주의라는 해석(김희정, 2007)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며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며 경쟁하는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문화주의 담론 역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를 주체로 보는 이주민 운동 진영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키는 수식어"로만 사용하는 미디어 담론(이상길□안지현, 2007: 115)에서부터 이국적 문화를 소비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중산층의 소비지향의 다문화담론 또는 "식탁위의 다문화주의"(한건수, 2006c),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인구정책으로 이해하는 일부 공무원 담론¹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들이 경합하고 있다.

10) 2006년 경상북도여성정책연구원 학술대회에 참가한 도여성국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실무 공무원들의 정책기획안들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정당성을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III. 단일민족론과 한민족정체성 형성의 역사인류학적 고찰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논의들은 우리사회가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이주민을 배제하며 차별하는 근본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단군의 자손”이라는 인식이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인식의 원인이고 이러한 혈통 중심의 사고야말로 현대 한국사회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하인스 위드의 방한이후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은 교과서 기술 내용을 삭제 하거나 수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한건수, 2006a).

<표 1>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과서의 단일민족주의 사례

	학년	과목	교과서 원문 내용
초등학교	2	생활의 길잡이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	도덕	우리는 본디 하나 땅도 하나 민족도 하나 말도 하나였습니다.
	6	사회	우리는 생김새가 서로 같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단일민족입니다.
중학교	1	도덕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세월을 ----
	2	도덕	~ 바로 우리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이라는 ~
	3	사회	민족, 언어, 문화가 같은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1	도덕	본래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 민족으로서~
	1	국사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	정치	우리 민족은 ~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해 왔다.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다문화 가정 품에 안는 교육지원대책> 2006년 4월 28일.

순혈주의적 단일민족론에 대한 비판은 심지어 소위 단일민족 신화 자체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주장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최근에 출간된 한 서적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온, 조화와 융합, 평등과 사랑의 문화 국민”임을 일깨우려는 계몽적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 책은 단일 민족설이나 “치졸한 국수주의적

민족의식"을 차별의식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이 "터무니없는 근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¹¹⁾ 이러한 논의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의 민족주의가 단군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순혈주의처럼 보이는 요소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대 한국의 민족주의를 "순혈주의적" 또는 "순혈주의적 가부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둘째,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나 이에 기반한 관주도 다문화주의가 현재의 차별 상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전근대적인 혈연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문명론적 함의를 기저에 가지고 있는 국민문화론적 다문화주의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결국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나 대책의 모색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면서 문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다문화주의 논의는 혈통에 대한 강조가 전근대적, 차별적인 것이며 문화 논의는 좋은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에 의한 구분은 혈통에 의한 구분보다 좋은 것이라는 전제는 문화인류학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명과 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생략하고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의 중요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칫 전통적인 문명주의적 민족주의나 문화 개념에 입각한 문화민족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문명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차별은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차별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며 그 폐해 또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 "단군의 자손"주장과 순혈주의의 관계

우리의 민족주의가 단순히 공통의 언어와 풍습, 역사만이 아니라 단군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순혈주의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1) "도무지 기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일 민족설 때문에 우리는 문화 민족인데, 동방예의지국 입네 하면서도 한국전쟁 때 생겨난 혼혈아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피부색 다른 사람들에 대해 턱없는 차별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 단지 피부색으로, 나라이름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확대하는 치졸한 국수주의적 민족의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것이다" (박기현, 2007: 239).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그렇게 믿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시대에 단군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이라 칭한 것은 우리 민족 모두가 단군의 핏줄을 이어 받은 혈연공동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고려와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한 나라”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군의 자손을 순혈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지만,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물론 학자들조차도 “단군의 자손”을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의 기초 또는 증거라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가 혈연을 강조하는 가족주의라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도 “단군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것이 혈연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라 해석하는 태도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다분히 식민지 기간 중 또한 해방 후에도 일본의 이에(家)가 혈연에 구애 받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계승자로 발탁하여 작게는 이에의 번영을, 크게는 국가의 번영을 이룩한 것에 비해, 항상 자기 핏줄만을 고집하다가 도약에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탈락하는 한국의 조직과 사회에 대한 근대론적인 비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은 혈연주의, 일본은 근대적 탈혈연능력주의”라는 일본 발(發)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주장은 소위 삼한정통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고려 후기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를 통해 문자로 기록되었고 조선 초의 권근 등에 의해 제기되어 실학자인 성호 이익 등에 의해 논의가 완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우리가 중국에 못지않은 당당한 문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우성, 1976; 1966, 송찬식, 1976; 1970). 즉, 단군에 의해 중국 못지않게 오래 전에 이미 나라가 건국되었고 또 기자에 의해 중국 못지않게 오래 전에 교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단군과 기자를 계승한 조선은 중국에 못지않은 당당한 문명국가(즉, 우리도 中華)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의 모든 백성이 혈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모두가 단군의 생물학적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단군 신화의 내용 자체가 이미 단군의 탄생 이전에 이 땅에 인간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족이 혈연적으로 단군을 유일한 조상으로 한다는 믿음은 단군 신화 자체에 의해 부정된다. 중요한 것은 단군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단군의 자손이라는 점이며, 모든 사람이 단군의 생물학적인 자손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실제로 피를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 서출이나 외손보다도 먼 곳에서 양자를 데려다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혈연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심지어 아들이 없어 양자를 세웠다
가 나중에 정실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은 경우, 과양을 하여 정실부인의 소생인 “피
를 나눈” 아들을 후계자로 하지 못하고 양자에게 계승을 시켜야 했다. 이는 “피를
나눈” 사실 자체보다 정통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단순한 순혈주의가 아닌 것이다.

유교의 기본적인 발상이 혈통을 중시하면서도 교화와 자기완성이 더욱 중요하
였다는 사실은 가계의 계승은 물론 유교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이민
족 출신자에 대해 정책과 태도에도 반영된다. 역사적 증거들을 검토하면 고려시대
는 물론 조선시대의 왕실과 정부도 외래 혈통에 대한 차별 못지않게 오히려 계급적
차별을 중시했던 것 같다. 중국에서 귀화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 출신이라
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진인과 왜인에 대한 시각은
문명의 유무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혈통을 중시하기는 하
였으나 혈통은 가계의 혈통을 중시한 것이지 민족 전체가 동일한 혈통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문명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혈통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혈통보다도 교화, 즉 문명화의 가능성과 성취도
를 더욱 중시하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맹아로 일컬어지는 실학자들의 삼한정통론
은 우리나라를 정통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혈통에 의한 華夷의
구분보다는 문명화의 시기와 성숙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문명론적인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민족주의”라고 부를만한 유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순혈주
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명주의적 민족주의였다.

단군이 국가 개국의 시조라는 유교적 해석에서 한민족이라는 혈연집단의 시조
로 뒤바뀌고 중국에 못지않은 문명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주의”
가 혈연을 공동으로 하는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로 뒤바뀐 것은 근대에 일어난
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천황가를 본가로 하고 모든 신민을 천황의 적자로 상정하는
일본 발 가족국가관과 단일하고 순수한 기원을 지닌 일본 민족만으로 일본이 구성
되어있다는 일본 발 단일민족신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싸우면서 닳는다고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민족주의의 여러 요소들을 받아
들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소위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란 유교를 공식적 이념으로 하고 있던 조선시대에는
발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단일민족이라는 발상은 피히테 등 겉으로는 언어와 문
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혈통으로서의 민족을 강조했던 독일식 민족주의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일본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기옥은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의식이 일본에서는 전후에 비로소 등장한 것이라는 주장(Lie, 2001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Shin, 2006: 19), 한국의 단일민족의식이란 식민지 상황에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한 혈통과 계보를 강조하면서 발전시킨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단일민족론은 일본보다 식민지 한국에서 먼저 등장한 것이 된다.

물론 단일민족론을 연구한 오구마(2003; 1995)가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에서는 혼합민족설이 우세했으며 단일민족신화는 전후에 비로소 정착한 것이라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일본의 혼합민족론은 일본 국내는 물론 일본이 “진출”한 지역의 민족 역시 “태고에 일본민족을 구성했던 요소의 일부였고 일본민족의 혈연으로”(오구마, 2003: 475-6) 여겼었다. 즉, 혼합민족론은 피지배 민족을 혈연관계로 보고 있었으며 “상대방을 명확히 이민족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오구마, 2003: 476)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민족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혼합민족론이라고는 하나 일본 제국의 세력권 내에 있는 모든 일본 국민들이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단일민족론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후의 단일민족론은 전전의 혼합민족론과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단일민족론은 일본의 단일민족론을 전후의 산물이라고 볼 때에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내선일체에 대항하여 발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전의 일본의 혼합민족론이 단일민족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의 단일민족론이 독일과 일본의 민족론을 의식하면서 발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 우월감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화이관이나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해왔던 유교적 이념에 대한 확신은 근대 서구 문명과 식민지화의 충격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한국의 민족주의는 문명과 미개를 기준으로 하는 문화민족주의적 전통보다 혈통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단일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던 것이며, 단군의 자손이란 정통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단일민족주의는 해방 후에 전쟁,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냉전을 겪는 가운데 남북한의 민족주의 경쟁, 경제개발과 통일에 대한 염원, 집권세력과 운동권의 민족주의 경쟁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이미 유교적 정통론이

지지는 물론 이해를 얻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단군의 자손”개념은 본래의 국가적 계승의식의 개념을 회복하지 못하고 혈연적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된 채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렇게 독일에서 시작되고 일본에서 발전한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전후의 한국에서도 계속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한국의 민족주의를 단순한 순혈주의가 아니며 이를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라 규정하는 것은 현대 한국의 민족주의 속에 있는 일본 발 민족주의의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2. 차별원인은 순혈주의적 단일민족론이 아니라 문화적 우월주의

단군의 자손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대 한국의 민족주의가 폐쇄적 혈연집단으로서의 민족을 강조하면서 단일민족론을 본질로 하는 것처럼 보이며 바로 이것이 차별의식의 원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차별의식은 순혈주의적 단일민족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강력하게 존재하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별의식은 우리가 중국에 못지않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화이관적 문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월감은 문명화의 시기와 정도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여진인이나 왜인에 대한 태도 가운데 화(華)와 이(夷)의 구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혈통이라기보다는 문명화였다.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거주 경험이 없으며 한국이 전통적으로 “순혈주의적” 또는 “순혈주의적 가부장주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중국인, 여진인, 왜인 등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송의 멸망이나 명의 멸망은 학식을 가진 다수의 중국인들이 한반도에 정착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당수 중국인들은 같은 문명인으로 인식되었고 능력이 있는 경우 고위 관직에 올랐으며 귀화 성씨로 정착하였다. 혈연집단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의식보다는 당사자의 가계와 혈통이 중시되었으며 민족의 경계보다는 신분의 귀천과 학식의 유무가 더욱 중요하였다.

고려와 조선은 당대에 확립된 중국의 예를 따라서 향화(向化)하는 외국인을 우대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정부는 오는 자는 막지 않고 가는 자는 잡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여진인과 왜인의 경우 조세(田租)를 3년간, 요역

(徭役)은 10년간 면제해주었다(한문중, 2001: 20).

귀화한 왜인과 여진인의 자손의 수가 늘어나자 이들도 우리 백성이므로 당연히 군役に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을 때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대우하는 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손자의 대에 군役に 편입시키는 것은 생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결국 증손의 대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일도 있다.¹²⁾ 조선에서는 향화인이나 그 자손에게 문□무과의 응시를 허용하였으며, 죄를 지은 자는 조선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였으나 감죄율(減罪律)을 적용하여 법률 규정보다 가볍게 처벌하였다(한문중, 2001: 196).

많은 왜인들이 식량부족이나 생활고 때문에 투항하였으며 조선정부는 왜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투항하는 자들을 받아들였다. “전하께서 항복하는 자를 어루만져 안정시켜주고 지난날의 사악한 행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기에 토지를 청해서 백성이 되고자 한다”(태조실록 권 10, 5년 12월 을사; 한문중(2001)에서 재인용)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태종 연간에는 경상도에 분치한 향화왜인의 수만 하더라도 2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조선 정부는 향화인 중 상당수에게 관직을 주었는데, 이 경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족세(族勢)가 강하거나 의술, 조선술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직을 주어 활용하였고 단순한 생활고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향화한 경우에는 외방에 나누어 두고 토지를 주어 백성을 편입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한문중, 2001: 49). 그러한 결과 향화왜인 중 일부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했으며 부자(父子)가 어의로 활약한 경우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검토해 보면 여진인과 왜인에 대하여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서 그 마음이 반드시 검은 면이 있을 것이니” 등 차별적 표현과 사고가 등장하는데¹³⁾ 이것 역시 풍습과 본성을 논한 것으로서 도덕적 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12)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귀화한 왜인·양인의 자손이 번성하는데, 군역에 충정하지 않는다면 군액(軍額)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는 너무 가까우니, 증손에 이르러 군역에 충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귀화한 사람은 귀순한지 오래지 않아서 살아갈 계책이 영정(零丁)18796) 한테, 손자에 이르러 종군(從軍)한다면 아마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서울에 사는 귀화한 자의 손자를 일체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면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대우하는 체모에 어그러지는 데가 있으니, 군역에 충정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어서(御書)하기를, “증손(曾孫)에 이르러 군역에 충정하라.” [성종 207권, 18년 9월 7일]

13) ... 이제 그들을 토벌한 후에 <지난 일을 뒤우치고> 귀순해 오니, 예의상 후하게 대하여 마땅하나, 우리 민족이 아니라서 그 마음이 반드시 검은 면이 있을 것이니, 어찌 그 귀순하

것이며 오랜 세월 교화를 거쳐 교정되지 못한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향화인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보에 대한 고려에서 벽지에 분산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我族類가 아니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¹⁴⁾

한편 중국인의 자손은 야인이나 왜인의 자손과 구분을 하여 혜택을 더 주었던 사례도 있다. 영조 27년(1751) 11월 26일에 어영대장 홍봉한의 논의에는 “중국 사람(華人)의 자손(子孫)에 대해서 야인(野人)이나 왜인(倭人)의 향화(向化)한 예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히 신분(身布)을 면제하여 주니 성상의 뜻에 대해 신은 실로 흠앙(欽仰)하는 바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인은 야인이나 왜인에 비해 특혜를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야인에 대한 대우가 달랐었으며 향화한 야인들이 조선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¹⁵⁾ 한편 관직에서 차별의 사례도 나타나는데, 단지 야인 출신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면모만 고치고 포악한 풍속을

는 마음만을 믿고 출입의 방식을 엄중히 하지 않겠는가(今者征討之後, 革面來附, 禮當待之以厚, 然非我族類, 其心必異, 豈可徒信其歸附之心, 而不嚴其出入之防乎!)... .”(世宗 63卷, 16年 1月 12日)

신의 생각에는 성곽이 없는 군현(郡縣)에는 성을 쌓아 호인(胡人)들의 사특한 마음을 눌러버리고, 우리 족속이 아닌 오랑캐[鱗介]들은 구축하여 화이(華夷)12918)는 섞이지 못함을 밝혀야 되리라 여깁니다. (臣意以爲, 郡縣之無城郭者築之, 以壓胡人之邪心; 鱗介之非我族類者逐之, 以明華夷之不雜)。[中宗 54卷, 20年 4月 5日]

“조종조에서 혹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인면 수심(人面獸心)인 저들을 어찌 다 믿을 수 있으랴”라는 표현이 연산군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 [연산 3년 5월 28일]

14) “섬에 있는 왜인은 우리 나라 민족과 종류가 다르오니(島倭非我族類), 서울과 경상, 전라도에 많이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빌건대 나누어 깊고 궁벽한 곳에 두소서.”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행된 경우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世宗 4卷, 1年 7月 6日).

예조에서 아뢰기를, “귀화(歸化)한 야인들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녹봉을 받아 먹고 하는 일이 없어서 날로 떼를 지어 술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고, 간혹 술로 인하여 서로 다투어서 사람을 상해하는 일까지 있기에, 이미 인리(隣里)로 하여금 본조(本曹)에 보고하게 하여 위에 아뢰어 치죄(治罪)하옵니다마는, 암만 금지하여 막아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모여서 마시고 방종하기를 꺼림없이 하오니, 장래가 걱정되옵니다. 부득이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한 이외에는, 그 나머지 불필요한 잡류(雜類)들은 정부(政府)와 의논하여 본토로 돌려보내도록 하소서.” (禮曹啓: “投化野人, 厥數猥多, 受祿食廩, 且無公務, 日以群飲爲事, 間或使酒相鬪, 至有傷人者. 已令隣里告于本曹, 啓聞治罪, 雖有禁防, 然非我族類, 其心必異, 不畏國令, 昏夜聚飲, 縱恣無忌, 其漸可慮. 除有關係不得已人外, 其餘不緊雜類, 與政府同議, 刷還本土”) [世宗 107卷, 27年 3月6日]

15) 연산 3년 5월 28일의 기사를 보면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세종·세조조에는 야인(野人)을 중히 대우하였기 때문에 투화(投化)하여 와서 시조(侍朝)한 자가 많았습니다.... 시조하는 자는 그 스스로 향화(向化)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우리 나라 사람에게 장가든 자의 소생입니다....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¹⁶⁾ 그렇게 되기도 하였다.

3. 문명론의 차별과 혈통의 차별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논의의 저변에는 혈통에 대한 강조는 전근대적, 차별적인 것이지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혈통에 의한 구분은 비과학적이고 나쁜 것이지만 문화에 의한 구분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는 전제는 문화인류학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문명이나 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논의를 생략하고 단지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를 중요한 극복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자칫 문명의 우월을 입각한 민족주의나 국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민족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문명론적 우월성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은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차별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며 그 폐해 또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6) 훈련원 정(訓練院正) 이성(李晟) 등이 상소하여 야인 출신 동청례의 벼슬을 바꾸라는 상소를 했는데, “국조(國朝)에서 성균관(成均館)과 훈련원(訓練院)을 설치하여 문무(文武)의 선비를 대우하여서 장수와 재상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배출되었으니, 조종조(祖宗朝)에서 항상 선비들을 뽑아 썼습니다. 이번에 병조(兵曹)에서 동청례(童淸禮)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습독관(習讀官)에 임명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청례가 비록 과명(科名)25232)을 차지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는 처음으로 면모만 고치고 와서 복종한 사람인데, 그 포악한 풍속이 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다 고쳐지지 않았으니, 신 등은 더불어 항오(行伍)를 이루기가 부끄럽습니다. 습독관(習讀官)이 사만(仕滿)25233) 되면 예대로 동반직(東班職)에 제수하는데, 더러 감찰(監察)에 제수하기도 고 더러 낭관(郎官)에 제수하기도 하며 혹은 외방으로 나가서 백성에게 임하는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동청례가 비록 사만(仕滿)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러한 직책을 맡길 수는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비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섞여서 벼슬하지 말도록 하소서.”[성종 24년 1월 8일]

IV. 식민지 청산과 근대화 과정의 민족주의 형성 및 재생산

1. 식민지 청산과 민족주의

조선시대의 문명론적 의미의 단군계승론이 식민지시기에 저항적 민족주의로 발전하면서 일본의 단일민족론과 유사한 혈통주의적 의미를 가진 단군자손론으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혈통주의적 단군자손론이나 단일민족론이 어떻게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일민족주의로 발전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미군정 기간에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고쿠타이(國體)를 강조하던 전전(戰前)의 도덕교육(슈신, 修身)이 폐지되었으며 노골적인 황국사관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자취를 감추었다. 제국의 관도가 일본열도로 축소되면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일본인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반일이라는 의미에서의 식민지 청산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¹⁷⁾ 좌우의 대립과 새로운 국가의 형성, 그리고 한국동란 등 격변을 거치면서 근대의 형성이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도와 증오의 대상인 일본으로부터 수용하거나 채택한 여러 제도와 수단 등에 대한 차분한 반성이나 검토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특히 한국동란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한 양쪽에서 강화된 국가 동원 체계는 전전의 일본의 동원체제를 당연히 그 모델로 하게 되었으며 전전의 일본 민족주의의 많은 요소가 남북한의 민족주의 경쟁, 경제개발과 통일에 대한 염원, 집권세력과 운동권의 민족주의 경쟁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조선시대가 허례허식과 당쟁으로 멸망했으며 유교는 근대화 실패의 원인으로 간주되던 상황에서 유교의 교화 개념과 정통론에 기반을 두고 있던 문명론적 단군계승론은 지지를 회복하기는커녕 제대로 이해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단군 계승” 개념은 본래의 국가적 계승이라는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한민족의 혈연적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된 채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오히려 국가 총동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유럽에서의 후진국인 독일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수용한 일본의 민족주의의 여

17) 물론 이러한 청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러 요소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분단되고 전쟁을 체험하였던 한국에서 매우 설득력이 큰 세계관과 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민족 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거나 각종 자원을 동원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후 노골적인 친일파에 대한 비난과 청산 시도가 있었으며 미국식 학제가 도입되기는 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사범학교 졸업자들이 교육현장에서 계속 활동하였고 특히 소위 15년 전쟁기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동원 체계와 민족지상주의 체계 하에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행동규범을 습득한 사람들이 계속 교육현장에서 활동하였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국권의 상실과 식민지 체합이었다. 외국의 호의와 명분 논의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승리를 거둔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인 동시에 기묘하게도 모방과 찬탄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동양평화론에 공감하면서 일본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물론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분노하였던 사람들조차도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평화의 관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증오하면서도 단기간에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중국의 청년들이 서구보다는 일본 유학을 선택한 것 역시 단지 서구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구를 어떻게 빨리 잘 배우면서 스스로를 변혁시킬 것인가를 일본에서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 내내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유학하였다. 비용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서구에 유학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식민지배 하에서 출세하기 위해 일본을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중국의 청년들과 유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을 유학 대상국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이들이 일본에서 보고 익힌 것은 서구의 문명만이 아니라 서구 문명을 어떻게 일본적으로 변형시키고 적용 하는가 이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새로이 정의하기 위해 전통을 창출(*invention of tradition*)하고 문화민족주의적 노력을 통하여 서구에 대항하는 민족문화 담론을 만들어 낸 것(Meiji ideology의 형성)은 식민지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적(敵)이지만 일본의 여러 제도와 정책, 일본인의 근면성이나 노동 윤리 등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이나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깊이 연구하고 학습하며 국내에서 보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이기도 했다. 일본에 이

기기 위하여 일본 것을 배우고 이용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 어떠한 고통과 모욕도 감내한다”거나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망설일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랫사람에게서라도 좋은 것은 배우는 것(不恥下問)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정신무장과 애국심의 함양을 위해 한민족 우월주의, 한국문화예찬론 등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고쿠가쿠(國學)나 문화민족주의적 노력들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의 문화민족주의는 단선진화론과 서구우월주의가 지배하던 당시에 비서구사회의 지식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특수성을 넘어 적어도 후진지역에서는 부분적 보편성을 획득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변형을 통한 적극적 수용과 모방 이외에 일본제국이 만주사변 이후 주로 서구를 대상으로 발전시킨 외세배격의 논리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독립운동 기간 중의 몇 차례의 좌절된 좌절 경험, 예를 들자면 전승국의 민족자결주의에 기대를 걸었던 3.1 운동의 좌절이나 연해주 지역에서의 경험 등은 보편적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외세와의 협력보다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경향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미 분단 과정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실력자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상대방을 민족반역자이며 외세의 앞잡이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동란은 강대국의 이익이 한반도에서 충돌한 국제적 전쟁이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한국동란을 외세의 개입에 의하여 통일이 좌절된 비극으로 규정하였으며 김일성 정권 역시 남한을 괴뢰정부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남북 대립 하의 냉전 체제하에서 남한과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동원이나 정신 무장, 그리고 권위적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전에 일본에서 발달한 여러 상징과 담론과 수단을 활용하였다. 민간의 수많은 기획이 전쟁에 비유되었으며¹⁸⁾ 끊임없이 “위기”가 강조되었다. 국가동원 체제가 남쪽에서 완화된 것은 결국 1987년의 민주화 이후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 심지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에 다수의 졸업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목표 합격자수를 “○○고지”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군사적 표현은 산업과 노동현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러한 동원체제하에서 민족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더욱 강화되었다. 1960년대까지 “교육칙어”를 연상시키는 “우리의 다짐”이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교육 현장의 낭독과 암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기와 관련된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족이 강조되었으며 역사 교육이나 위인 숭배 등도 외세의 침략에 대한 항전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민족과 한국문화의 존재를 당연시하였고 인권이나 평화나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한민족의 단결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민족에 대한 강조는 집권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다. 민주화 운동 세력 역시 민족을 강조하였으며 집권세력과 저항세력은 서로의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에서 찾기도 했지만 서로 상대방을 외세의 앞잡이나 외국 사조에 물든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족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때로는 민주적 절차나 개인의 자유, 인권 등의 개념이 서구적인 것, 즉 외래적인 것으로 규정되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나 긴급한 필요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되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의 경제성장의 결과 어느 정도 민족적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1980년대에는 “우리 것”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상업주의와 강력히 결합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설 <단(丹)>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환단고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한국사 교육에 대한 비판이 급기야 국회 청문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건강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선도나 단학선원 등 단전호흡이나 수련의 보급과 확산 또한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소설 동의보감> 등도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갈망이 여행과 한의학 붐 등으로 이어지는 상업주의적 성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상업주의와 결합된 민족주의는 1980년대까지의 권위주의 하에서의 민족주의와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익의 추구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가리지 않을 것이지만 1980년대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하면서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관청이나 군부대의 자판기에서 커피를 배제하고 국산차를 마시게 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외국제 넥타이를 매지 못하는 상황은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종속이론이나 저발전 논의 등에 입각한 운동세력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던 정권의 민족주의적 대응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다.

올림픽의 개최는 이론상으로는 세계주의적 경향을 강화해야 할 것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주로 민족과 국가의 위신과 긍지를 높인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세계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여전히 국민국가를 매개로 하는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최고조에 달했던 동아시안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 또한 민족주의의 범위와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환위기의 경험은 국가와 민족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물산장려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을 연상케 하는 금 모으기 운동 등 각종 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한국사회에서 방어적 민족주의적 경향을 적어도 담론의 레벨에서 다시금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누가 더 민족주의적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록 민족주의의 공과(功過)에 논의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한민족이나 한국문화의 존재 자체나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전제에 대한 진지한 의문 제기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이 성행한 것 또한 단일민족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혐의가 있다.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타문화의 여러 요소를 흡수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적응능력을 가진 국민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관료들 가운데에도 큰 인기를 모았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등은 로마제국의 성공 원인으로 타문화라는 이질적 요소를 수용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가토 슈이치(加藤周一)가 <잡종문화론(雜種文化論)>을 통해 강조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혈통주의적 의미를 갖는 단군자손론은 식민지 시대에 단일민족론의 형식으로 등장하여 해방 이후의 분단 과정에서 또한 한국동란과 이후의 국가적 동원 체계의 형성과 운용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국가와 민족의 범위 일치하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정권유지와 자원동원에 매우 유용한 환경과 도구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도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 담론의 범위 내에서 보다 선명한 민족주의를 위한 경쟁을 하였던 것이다.

단일민족론은 단순한 식민주의의 유산이 아니며 전후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

로이 재생산되고 발전된 것이다. 왜 단일민족론이 지속되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단일민족론이 자본주의를 표방한 남한과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에서 그토록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현대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아무런 심각한 고민이나 논의 없이 관료나 시민단체에 의해 주장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는 비록 여러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민국가를 전복하거나 해체하려는 경향도 가지고 있다. 현대 한국의 다문화주의 논의가 세계화시대의 거센 물결을 헤쳐가기 위해 국민국가를 새로이 무장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새로운 생존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또는 국민국가의 행동의 자유와 형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주목을 요하는 문제이며,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

2. 분단과 통일의 역사의식과 민족주의

단일민족담론이나 폐쇄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민족주의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하는 연구들-흔히 ‘상상된 공동체’(Anderson, 1991)나 ‘전통의 발명’(Hobsbawm and Ranger, 1983)을 주된 분석개념으로 사용하는-에 관심을 갖게 했다. 인류학계에서는 원초적 범주(primordial category)로 주장되는 상당수 민족 집단이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집단의 경계와 정체성을 정당화시키는 문화적 자원을 동원해 왔음이 지적되기도 했으며(김광익 외, 2005), 이러한 관점은 한국의 단일민족 신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임지현, 1999)에 원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탈민족담론은 분단된 민족 현실과 통일의 과제라는 면에서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민족담론이나 민족주의가 근대의 기획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단된 현실은 여전히 근대의 기획인 민족주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주의 담론에 대한 북한 노동신문의 신경질적 반응은 분단과 통일의 과제가 우리 사회의 민족인식에 어떤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을 거세하고 《다민족□다인종사회》 화를 추구하는 괴이한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 이 소동의 연출자들은 남조선이 미국인 등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인 《혼혈의 지역》이라느니, 《폐쇄적인 민족주의 극복》이니,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의 포용성과 개방성》이니 하는 황당한 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

말마디 자체도 민족적 감정에 칼질하는 것이지만 보다 엄중한 것은 이 반민족적인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이 벌써 론의 단계를 벗어났다는 데 있다. 이미 지금까지 《단군의 후손》, 《한핏줄》, 《한겨레》 등을 강조하여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2009년부터 《다인종□다민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며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등의 용어도 《다문화가정》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민족적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하는 말 그대로의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운운하는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은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 말살론이다.¹⁹⁾

V. 한국식 다문화주의 담론의 성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 이행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담론들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수사나 사회공학적 가치로서의 다문화주의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점은 현재의 다문화담론중 상당수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다문화사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다인종□다민족사회로서 한국사회가 도입해야 하는 공공정책이나 이주민에 대한 사회일반의 수용 자세에 대한 가치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점들이 물론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인 다문화사회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데 한계를 갖고

19)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은 민족말살론”(로동신문 2006. 4. 27). 설동훈 교수는 남북군사회담장에서 남북 대표가 주고받은 대화와 이 기사를 통해 순혈의식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남북간의 인식차이를 소개한 바 있다(설동훈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있다.

다민족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상생의 과제는 반드시 다문화사회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오경석(2007)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논제는 다문화사회 담론의 소개나 주장이 아니라 어떤 다문화주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이주민의 ‘체류권’이나 ‘노동권’ ‘자유와 삶의 권력’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왜 다문화사회를 고민하는가라는 기본적 질문에 현재의 다문화사회론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의 변화 핵심이 전지구화로 인한 인적구성의 변화이며 이주해 들어 온 이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으로서 다문화사회 담론을 제시한다면, 한국사회의 이행단계에 맞는 다문화사회론을 고민해야 한다. 캐나다나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오랜 이민의 역사나 선주민의 역사로 인해 축적된 사회적 갈등의 궁극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단순한 기본권 보장이나 이주민 지원 대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주민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것은 생활양식, 세계관이나 가치의 문제이며 이것은 결국 문화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했기에 다문화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다민족 사회인 외국의 오랜 고민의 결과인 다문화주의가 형성된 단계나 과정을 배제하고 최종단계의 담론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가 이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는가, 앞으로 한국사회는 어느 수준까지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서구사회의 최종단계의 다문화주의를 논하는 것은 사회공학적 논의로 논의를 넘어 각자의 실천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은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에 사용되고 있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현재 상투적으로 논의되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문화인류학의 문화 개념에 입각해 있다. 즉 문화의 단위를 민족집단(ethnic group) 또는 국민국가라고 전제하면서 하나의 민족집단은 하나의 문화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다수의 문화를 갖거나 다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²⁰⁾

그런데 문화에 대한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전적 견해는 다른 문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문화가 내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일관되고 뚜렷한 체계 또는 구조를 가지며 하나의 개인이 하나의 문화에 속하면서 문화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물론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형태론(Configurationist Approach) 등의 이론적 관심을 바탕으로 근대 문화인류학이 형성되던 시기에 지배적이었던 시각이다.

현대 인류학에서는 특정 문화집단에 속한 성원들이 동질적으로 해당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개별 집단에 속한 성원들은 내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끊임없는 경쟁과 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특정 문화의 주류를 묘사할 수 있지만 그 문화는 내부의 경합과 타협을 통해 다른 시점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다양한 문화집단이나 문화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개별 문화집단 내에서 또는 문화집단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하는 역동적인 실체로 보아야 함에도 대부분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개별 문화들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주의의 문화개념은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간과하고 있다. 니시카와(2006)에 의하면 근대학문으로서의 문화인류학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출현한 문화 개념으로부터 국가라는 틀을 제거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감수성을 둔화시켰다.²¹⁾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는 또 다시 문화인류학의 주제로 등장한다.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전한 소위 “국민성 연구”(national character studies)는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소규모의 사회를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과 방법론을 국민국가나 대규모 사회에 적용하게 했다. 적국인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많이 인용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문화와 일본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경전으로 이해된

20) 엄한진(2006)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1) “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의 특색 중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출현한 문화 개념으로부터 국가라는 틀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류학을 과학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했지만, 그 반면에 문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감도(感度)를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니시카와 2006, 제6절)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 책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으나 오랫동안 서구인이나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현대 국민국가인 일본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국화와 칼』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대부분의 논의와 논쟁은 이 책의 근거가 된 자료나 이를 토대로 기술된 책의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해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본질은 이 책의 전체 자체이다. 즉 매우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일본을 “일본 문화”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려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화민족주의는 민족의 존재를 논란이 많은 혈통 대신에 문화를 근거로 함으로써 민족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토테미즘에 대한 논의에서 토테미즘이 하나의 사유의 방식이며 “동물들이란 생각하기에 좋다”(Animals are good to think)라고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시대에는 “문화란 생각하기에 좋다”(Cultures are good to think)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구조(structure)보다는 과정(process)을 중시하면서 문화 내부에 많은 모순과 경쟁, 이해관계의 대립과 투쟁을 발견하며 우리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일시적인 타협이나 해결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문화는 여러 다양한 주제나 요소들의 대결과 경쟁, 갈등과 타협, 설득과 강제와 장(場)이라 간주하며 사회 내에서 일부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세계관 또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스스로는 물론 사회의 일부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문화 자체의 보존이나 다양성의 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 문화들이 실제 내부의 문제나 질곡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즉 문화가 해당 집단 내의 권력관계나 불평등과 관련하여 현상을 유지하거나 변혁시키기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과 전체 사회의 사회적 유대나 정체성 통일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역할에 대한 제한된 이해로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의 역할, 문화의 도구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에 적용되어야 한다(김남국, 2005).

여섯째, 이러한 문화개념의 오류는 다문화주의나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문화의 단위를 설정한 문화개념은 다문화

주의 정책의 집행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단 내부의 차별을 방관하는 결과를 낳거나 민족이나 종교공동체가 다른 하위 공동체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Charney 2003: 295-310; 김남국 2005: 102에서 재인용).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크교도들은 출신 국가별로 다문화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의해 힌두교도에 의해 억압받는 인도의 경험이 재현되고 있음에 격분하기도 한다(한건수, 2006c). 또한 문화 간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개인들에게 부모나 조상의 출신국가에 따른 문화적 경계를 강요하는 억압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특정한 민족 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해당 민족 문화의 경계 내에 머물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화 간 경계를 넘나드는 개인은 다문화주의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VI. 한국식 다문화주의론의 이론화와 정책제안

1.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론화

현대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다문화적 상황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질적 내용과 실천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덮고 있는 ‘다문화’라는 모호한 구호를 벗겨낼 필요가 있다. 이주민을 수용하는 우리 사회의 경험과 원칙이 실제 어떤 기준이었으며, 이러한 기준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비판하는 순혈적 단일민족론이 과연 현재의 다문화주의에 의해 극복되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민족사회’보다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면, 진정 ‘다문화주의’가 함의하는 ‘다문화’ 현상의 실증적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구호는 다문화주의지만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동화주의의 기초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주민 지원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1) 특성과 개념화

한국사회는 최근 다민족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고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논의가 넘치고 있으며 다문화 관련 각종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외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 이론화 작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 작업의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소위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의 극복을 요청하는 견해는 미성숙되기는 했으나 한국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를 순혈주의적 반다문화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교육과 각종 정책을 통해 비합리적인 순혈주의에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국사회가 변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보다 약간 진보한 것이 오경석(2006)과 김희정(2006)의 논의이다. 이론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다문화사회 담론들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2006)은 한국의 다문화주의 상황을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로 설명한다. 이는 국가주도형 다문화주의를 변형시킨 것으로서 이론화작업 자체가 심화된 것은 아니며 또한 한국사회를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라 부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혈주의적 반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이나 정책과제 발굴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협조와 경쟁관계에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은 관주도라기보다는 시민사회와의 협조와 경쟁의 역동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오경석(2006)은 현재 한국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문화를 강조하는 다문화사회 담론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상황은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사회 담론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서구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이행 단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어떤 다문화주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제안들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과 제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또한 다문화주의적 담론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담아내면서 서구와 다른 한국적 특성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초보적인 제안이나 문제제기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이렇게 이론화작업이 부족한 상황은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다섯 가지 요인들은 동시에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규명하고 향후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개념적 틀을 구성하며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및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첫째,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며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오해가 식민지 지배시기에 등장하여 해방 이후까지 매우 오랜 동안 유지되고 강화되는 가운데 민족(ethnicity) 문제는 외국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도 적었고 에스니시티 분야의 이론적 발전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도 무척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고 이민자의 동화(assimilation)나 통합(integration)에 관련된 고전적 논의를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적 논의, 차별 문제, 아이덴티티 문제, 교육과 종교 등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전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이해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국내 화교에 대한 박은경(1986)의 선구적 연구나 박경태 장수현(2003)을 비롯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최근까지 학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며 민족 문제의 가장 큰 이론적 관심은 한민족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주도하고 있었지 에스니시티에 대한 이론은 한국 상황의 이해에 적실성(relevance)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자면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부족과 일본인의 특별한 고질적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치부되었을 뿐이며 한국사회의 상황과의 이론적 논의상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재중한인, 즉 소위 조선족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논의나 운동 또한 같은 민족과 동포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이 우선시되었지 보편적인 에스니시티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오해는 다민족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에도 이를 에스니시티 및 다문화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론화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작업의 전개를 오히려 저해했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적 정권이 주도한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 담론은 국내의 노동자와 농민을 사회경제적 약자로 규정하면서 신식민주의, 매관자본, 다국적 기업 등을 경계하면서 민족경제의 종속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1990년대 말의 금융 위기는 또다시 한민족과 한국의 민중이 경제적 약자이며 피해자라는 의식을 상기시켜주었다. 이러한 민족적 피해 의식, 즉 자국의 피해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몰입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나 인권 유린 등 열악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비교적 늦게 두게 했으며, 나중에 연구를 시작하면서도 인권문제나 차별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게 했지 에스니시티나 다문화주의 관점에 주목하지 못한 면이 있다. 최근에서야 한국사회의 현실을 다문화주의와 관련시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에스니시티 주제는 한국과는 거리가 먼 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셋째, 식민지 체험과 민족분단은 남과 북의 정권 간의 정통성 경쟁에 민족주의를 매우 큰 요인으로 만들었고 또한 권위적 정부와 민주화 운동 세력 간에도 민족주의적 정통성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민족은 거의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외세배격의 배경과 자주독립, 그리고 민족통일이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원초주의(primordialism) 이외의 다른 여러 민족주의 이론들이 한국사회의 이해에 적용되거나 한국의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 또는 종족성을 도구주의(instrumentalism)적 관점에서 분석한 이론적 연구들이 한국의 현실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있었으며 나아가 최근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이론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²²⁾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스니시티 및 다문화주의 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려 발상 자체도 극히 적었지만 그러한 발상을 하더라도 이는 거의 신성불가침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넷째, 이렇게 다민족 상황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이해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등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인권유린 사례에 주목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서구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실천 사례 등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도 있으며, 세계화를 국면을 맞이하여 정부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면서 인류 공동의 선(善)과 도덕적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 민주화의 달성,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들의 전세계적 붕괴 및 퇴진과 북한의 곤핍화 등으로 한국사회의 주요 담론 경쟁이 민족주의 경쟁에서 글로벌화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는 글로벌화에 따른 무역의 확대, 자본의 이동 등에는 비판적이지만,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국가, 참여정부에 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등의 자기

22) 에스니시티 이론과 그 적용에 대해서는 한건수(2005)를 비롯한 김광익 외(2005)에 실린 논문들을 참조할 것.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인권에 대한 강조 등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와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 등도 다민족 현상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하자 사업의 발굴과 기구의 확대, 예산의 획득 등을 통하여 소위 다문화주의 대열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편승하거나 합류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하고 확산시킨 다문화주의 실천 의제들과 담론을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장악하여 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김혜순, 2006). 이러한 의제의 장악과 주도권의 행사를 관주도 다문화주의라 규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전체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일부 시민운동단체와 학계에서 시작한 다문화주의 대열에 정부의 일부 부처와 각종 시민단체, 연구자 등이 경쟁적으로 편승하고 합류하는 현상이 급속히 전개된 것은 그 이전의 무관심에 비교하면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다.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관료, 지식인, 기업인, 정치가 등의 우려가 국민국가의 생존전략으로서 단일민족주의를 넘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국민국가와 민족의 생존전략으로서의 다문화주의에 관심을 가질 경우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의 확보를 의미하며 이는 잡종의 적응 및 생존능력 우월과 직결된다. 한국적 다문화 현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세계화 국면에 대한 중대한 대응의 하나로서 국민국가 내부에 일정한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다문화주의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동의나 다문화주의가 현실적 정책으로 나타날 경우의 재정적 사회적 부담과 함의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다문화주의 담론을 수용하고 각종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구성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볼 때 이를 형성적 다문화주의라고 일단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한국적 다문화주의로서의 형성적 다문화주의는 단일민족순혈주의의 외피를 가지고 있으며 문명론적 보편론에 입각한 자문화우월주의를 포함하고 있고 민족주의적 경쟁의 구도를 전개하면서 에스니시티나 다문화주의 논의에 무관심에서 급속히 강렬한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와 선을 경쟁하는 다문화주의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과 국가가 정당성을 경쟁하는 장(場)이기도 하며 선진국 의식. 글로벌 경쟁의 일환으로 보편적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국가와 민족의 생존전략으로서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위

한 다문화주의이기도 하다.

2) 변화의 방향

한국적 다문화주의가 형성적 다문화주의라 개념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적 다문화주의가 문명론적 우월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순혈주의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신부에 대한 차별이 결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케 한다. 이는 현재 소위 후진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차별적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면서도 소위 선진국인에 대해서는 열등감이나 친밀감을 가지고 호의적 태도와 배려를 보여주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심지어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조차 종종 열등감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문명의 선진성이라는 기준과 평가 때문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순혈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문명의 선진성과 우열이라는 의식이다.

둘째, 민족주의 경쟁이 세계화의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 글로벌화 경쟁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전환마저 국민국가와 민족의 생존전략으로서의 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현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언제든지 반발에 직면하여 다시 민족주의로 선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생존 기회를 높여주는 다양성이 확보되기보다는 국민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문화주의는 매우 쉽게 포기될 수도 있다. 실제 최근 호주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의 폐기를 논의한 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역풍이 늘 상존하는 요소임을 인정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셋째 외국인노동자나 여성들보다 국내의 빈곤한 노동자나 농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못하고 또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보다는 우리 한국인의 피해자 의식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강력한 상황이며 또한 향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발전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주의 의제를 둘러싼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경쟁, 정부 부처 내 및 시민운동단체들 간의 경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다민족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민족, 다문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나 경험이 없고 훈련된 활동가가 부족하며 적절한 내부적 감

사나 자정 능력 등이 부족한 가운데 급격히 각종 지원금이 증가하고 각종 정책과 사업이 적절한 조정이나 사업효과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 없이 추진될 경우 이러한 경쟁과 아젠다의 쟁탈은 심각한 후유증이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자칫하면 다문화주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델의 정립 전략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이행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적용할 다문화사회의 모습 역시 단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는 달라야 한다. 한국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다문화주의 모델도 최종단계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논의한 다문화현상의 지형도나 다문화주의 담론의 토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사회 담론의 이상적 적용보다는 한국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수준, 즉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한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비판하고 있는 동화주의 모델은 그 자체가 악한 것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사회가 동화주의의 이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일한 시민이 되자는 공화주의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기 과제는 이주민과 한국인을 구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에게는 한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정책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과 계몽을 실시해야 한다. 다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지구화가 일으키고 있는 변화가 단순히 국제질서의 변화나 무역협상, 자본의 압박뿐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의 인적구성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문화간 만남의 확산과 문화 다양성의 증가 현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국제이해교육>은 전지구화, 문화간 교류,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7차교육과정의 재량학습 과목으로 인정된바 있다. 이러한 통합적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줄 것이고 이들이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열어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중장기 과제는 서구사회의 이상적 다문화사회론이 한국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구축이다. 한국 사회의 이행 전망에 대한 사회학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서구의 이론적인 논의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실제 다민족화가 진행된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경험적 심층연구가 절실하다. 해당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모색해 나가는 상생의 삶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을 주로 하는 인류학적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현실에서 시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문화현실을 가늠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문화담론이나 정책을 둘러싼 ‘공공선’의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과 집행에서 사회적 역풍에 대한 고려와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억 외. 2005.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 아카넷.
- 김남국. 2005. “심미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1): 87-107.
- 김현미. 2005.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 문화.
- 김혜순. 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pp.13-41.
- 김혜승. 2003. 『한국민족주의: 발생양식과 전개과정 [개정판]』. 비봉출판사.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응”(사) 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국경없는마을. pp.32-40.
- 니시카와 나가오. 2006. 한경구□이복 역. 『국경을 넘는 방법: 문화, 문명, 국민국가』, 일조각.
- 박경태 장수현. 2003 『한국화교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박기현. 2007.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성씨』. 역사의 아침.
- 박은경. 1986.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문화연구원.
- 설동훈. 2005.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윤수중 편.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이학사.
- 설동훈. 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이해교육포럼」 발표문.
- 설동훈. 2007. “한국 사회의 현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걸림돌.” 한국여성개발원 「다문화사회정책포럼」 발표문.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송찬식. 1976[1970]. “星湖의 새로운 史論”. 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 인식(하)』. 창작과 비평사.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pp. 45-75.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사) 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pp. 2-15.
- 오구마 에이지. 2003.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 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 국립국어원.
-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73-100.
- 이상길 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pp. 109-131.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 이우성. 1976[1966].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 歷史把握에 있어서 體系性和 現實性.” 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 (하)』. 창작과 비평사.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 전광희. 2006. “외국인 관련 공공정책의 구조와 향후 전망.”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p. 101-128.
- 한국사회학회. 2006.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157-193.
- 한건수. 2005. “종족정체성과 역사적 상상: 요루바 종족성과 기억의 공동체.”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 아카넷. pp.121-154.
- 한건수. 2006a.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한국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교육혁신위원회 심포지움 자료집.
- 한건수. 2006b.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건수. 2006c. “현대한국사회와 다문화주의.” 2006년 6월 2일. 인권재단 포럼 발표문.
- 한건수. 2006d. “민족은 국가를 넘을 수 있는가?” 『황해문화』 51: 70-82.
- 한건수□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문중. 2001. 『조선전기 향화□수직 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y*. Routledge.
- Charney, Evans. 2003 "Identity and Liberal Nation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2): 295-310.
- Hobsbawm, E. and T. Ranger. 1983.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e, John. 2001. *Multiethnic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장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김 은 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I. 서론

지난 10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95,778명에서 2006년 698,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수는 한국이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외국인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거주 인구가 이미 백만 명을 넘어서서 한국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고, 출신국도 40개국을 넘어설 만큼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거주인구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거주 외국인의 약 27%가 서울에 거주할 만큼 서울은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여 가고 있는, 한국 내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이다.

한국이 단일민족사회라고 알려져 왔으나,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한 역사는 꽤 오래 되었으며, 최근에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도 급격한 시장개방을 경험하면서 외국 자본, 외국인 임직원 및 노동자들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1997-98년의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필두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펼쳤으며 외국자본, 특히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가 두드러졌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가의 값싼 노동력이 한국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적극

* 본 연구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지현과 조혜림의 연구보조가 있었으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치에 나서게 된 것도 최근 10년 사이의 현상이다. 반면, 한국의 농촌에서는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으로 인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화의 한 주요 현상으로서 증가한 국가 간 인구 이동과 더불어 한국의 특수한 상황—즉, 경제위기 이후의 급속한 시장 개방, 외국인 노동자 유입,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이 더해져서 한국의 외국인 거주 인구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도 “세계화 시대의 이주”라고 부를 수 있는 외국인의 유입과 더불어 세계화 시대 이전부터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도 있었다. 세계화 시대 이전부터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은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 일제시대 이후 한국과의 여러 관계로 정착한 일본인, 오랜 한-중 역사 속에서 한국에 정착한 중국 화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세계화 시대 전·후에 유입된 여러 집단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 다양한 외국인 집단들이 각각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나름대로 형성한 것이 외국인 마을들이다. 최근 서울시의 “글로벌 존” 지정에 대한 언론의 집중 조명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민족신화가 강한 한국에서 이러한 외국인 마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외국인 마을들에 대한 공간적·계급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외국인 마을들이 시사하는 한국의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한국적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정주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수의 다양한 외국인 마을들이 존재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2006년 진행된 필자의 연구보고서를(김은미·김지현, 2006) 중심으로 외국인 마을들에 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서울의 외국인 마을들에는 크게 두 부류가 발견되었다(김은미·김지현, 2006). 하나는 주거마을로서 주로 세계화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외국인 마을들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민의 역사가 길면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주류사회로 이주민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쇠퇴해가는 것이 이와 같은 주거마을이다. 특이할 사항은 한국 유입이 상당한 기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을들이 계속 유지해 가고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되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유형의 외국인 마을들은 필자의 연구에서 문화마을로 명명하였는데, 이들은 세계화 시대 이후에 생성된 외국인 마을들로서 주기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마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마을들은 다른 외국 사례에서 잘 다루어지

지 않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외국인 문화 공동체이며, 대부분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혹 불법 외국인 단속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이러한 다양한 외국인 마을들이 생성되고 발전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적인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강한 주류사회가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스스로가 주류인구가 98%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마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한국사회에서 인구 유입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외국인 집단들이 선진국에서는 이민 초기에나 형성되는 외국인 마을을 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다인종□다민족사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특히, 세계화의 현상에 따른 인구의 이동과 글로벌도시의 발전,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이민 사회 및 외국인 거주공간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한국 내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서울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실증 연구(김은미□김지현, 2006)를 바탕으로 한국적 다인종□다민족 사회에 대한 이론적인 함의를 모색하고, 특히, 외국인 마을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국적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발전이 가능할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도시 및 이민사회 발전에 대한 문헌연구

본 장에서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변화하는 자본과 인구 이동 및 글로벌 도시의 발전,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외국인 공동체의 공간적□계급적 전개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세계화 시대의 자본과 인구 이동 및 글로벌 거대 도시 발전에 관한 연구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의 상호 교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운데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Cohen and Kennedy, 2000; Robertson, 1992). 로버트슨(Robertson, 1992)은 이 같이 증폭된 상호교류를 ‘세계의 압축’이라고 불렀다. 하비(Harvey, 1989)는 이제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장소가 아니며,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물리적인 공간이 축소되면서 사람과 물류의 활발한 이동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카스텔스(Castells, 1996)는 이 같은 상호연관성 및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네트워크가 그간 문화, 경제적으로 자족 자급하던 각 국가의 국경을 허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가는 물론 이에 속한 도시와 지역 또한 다른 사회와의 통합내지는 공존을 위해 밖으로 뻗어 나가게 됨을 의미 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경제질서가 국가 중심의 세계체제에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세계 도시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도시가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화의 주된 무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인, 1995).

사센(Sassen, 1988)은 국제경제의 변화가 국가 간 경제의 재편보다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경제의 통합이 있는 반면,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의 이동과 재편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또, 세계화 시대에서 도시는 고도의 기술과 더불어 단순기능을 동시에 요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역동적인 자본 투자의 성격이 국제사회의 이주 노동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금융 등의 새로운 서비스 활동을 요하는 노동시장의 주요한 정점으로서 뉴욕, 런던, 동경 등과 같은 거대 도시의 출현을 가져왔다(Bashi and Hughes, 1997). 사센(Sassen, 1988)은 이러한 거대도시의 출현 이면에는, 서비스 산업의 조직 특성상 수반되는 양극화 현상이 도시에서 구현되며,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의 수익창출과 여러 직종을 가진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 불균형과 불평등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도시사회구조의 계급갈등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도시 이론으로 분석한 하비(Harvey, 1978)는 도시의 공간과 과잉축적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지역 경제활동과 분배에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또, 로간-몰로치(Logan and Molotch, 1987)는 도시 자산 관계를 바탕으로 도시 사회학을 수립하려고 시도 했다. 반면, 바시-휴(Bashi and Hughes, 1997)는 세계화가 미국의 인종별 주거지의 분리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는데, 주거지 분리의 주된 원인이 세계화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백인의 유색인종에 대한 태도와 정책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장 다인종 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세계화에 따른 교역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은 많은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이 1997년 말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한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고용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수출 지향적 산업화와 노동력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맞물려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동시장구조를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의 국제화가 노동시장의 국제화도 초래하였다(김희재, 2003).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높은 인구밀도와 자원부족 및 국가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상황에서 1989년을 정점으로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인력난이 심각하게 대두되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의 인력난과 고임금을 해결하려는 인력 수용국이 되었다(김희재, 2003). 아시아 지역에서도 노동력 이동이 이미 1980년대 후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때 노동력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대만, 일본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력 수용국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200백만 가구의 주택건설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대폭 개선하면서 이 같은 노동력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 등의 동남아시아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동포들이 친지 방문, 취업 또는 결혼의 목적으로 몰밀 듯이 밀려들어왔다(Martin, 1991). 한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임금도 상승하여 한 때 조선족이 1년 동안 한국에서 번 수입으로 중국에 돌아가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Choi, 2001). 1988-89년을 기점으로 해외 투자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자본의 유입과 함께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불법체류자와 합법취업자를 모두 합해 1993년 말 66,000여명이었던 것이 1997-98년의 경제위기 초기인 1997년 10월에는 22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최준욱, 2004).

한편,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다국적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졌다. 다국적 기업이 처음 우리나라에 진출한 시기는 1967년경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진행에 따라 개발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부터이지만, 1960-70년대에는 직접투자 외국인 자본 유치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고, 상환의 의무가 없는 해외 원조와, 직접투자에 비해 낮은 이자율의 해외 차관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의 주를 차지하였다(Kim, 1997). 그 이유는 다국적기업도 한국 시장에 회의적이었고, 한국 정부도 다국적기업보다 이자율 등 더 좋은 조건의 외국차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다국적기업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상당히 진전되고, 특히 외화의 축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1980년대 말-1990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대 초이며, 다국적 기업을 통해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대거 유입도 이때 함께 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2006).

국내의 세계화 연구는 세계화가 한국내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재하, 1997; 이재하□이혜주, 1999; 초의수, 1993; 최병두, 2002). 이재하□이혜주(1999)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분석틀을 가지고 경상북도 구미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세계의 반주변 지대로 발전함과 동시에 구미라는 지역 안에서도 또다시 산업이 입지한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농촌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으로 중심□주변의 공간구조로 심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체제론으로 국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한 국가내부의 불균형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의 주관심영역인 외국인의 유입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울-지역 간 차이를 문화적 불균형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이 있다 (김준, 2002; 이정덕, 2001; 정진웅, 2003). 정진웅(2003)은 서울 : 지방의 독특한 이분법에 대해 논하면서 지방에 대한 서울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적했으며, 이정덕(2001)도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빨아들이는 서울의 블랙홀 현상을 분석하면서, 프랑스, 미국, 일본의 문화 분권화와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세계화 연구와 서울-지역 간 격차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유입의 문제나 외국인 마을과 같은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세계화 관련 연구 결과는 세계화가 한국으로의 해외 자본 및 외국인의 유입, 서울-지방 간 격차, 외국인 마을들의 계급화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2.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이민 사회 및 외국인 거주공간에 관한 연구

현대의 이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론이나 이민사회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구가동과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쟁점 중의 하나인 외국인 거주공간에 대한 연구는 그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기반을 둔 문헌들에서 외국인 거주 공간의 형태 및 분화에 관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한국을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지향해야 하는 사회

가 다인종□다민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가정 위에서 아래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이 이민국가가 아니며, 주류인구가 98%이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래의 연구를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해서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외국사례가 많지 않고, 더욱이 한국에 대한 이런 연구가 일천하여, “지향점”의 사례로서 선진외국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원주의 이론은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지만, 문화 다원주의는 주류사회를 중심으로 주변문화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를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 간의 비교적 수평적 관계와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김은미□김지현, 2006). 미국의 이민정책은 문화 다원주의적이고 캐나다, 호주 등은 다문화주의를 주축으로 이민과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겠다(김은미□김지현, 2006).

위의 외국인 및 이민 정책의 틀 안에서 외국인 거주 공간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이주 집단이 이민국에 정착하는 초기에 이민자들은 최초 입국지를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소수민족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이민자들은 조국의 향수에 젖어들기도 하면서 모국의 휴일을 기념하거나 그들만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Cwerner, 2001: 12-13). 동시에, 가족집단, 사회집단 등의 활동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경제적 독립 여부와 큰 관련이 있다. 즉, 이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고 민족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형성하지만, 경제력이 확보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구성원들이 주류사회에 동화 또는 적응하면서 계도화 되었던 초기의 커뮤니티의 성격이 변화하고, 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커뮤니티의 응집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Cwerner, 2001: 9-10, 12-13). 또한 이주민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이주 집단이 클수록 초기 커뮤니티가 강하고 빠르게 형성된다고 한다(White, Kim and Glick, 2005).

이주 집단의 거주형태도 인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풍□윌키스(Fong and Wilkes, 2000)는 캐나다의 사례 분석을 통해 피부색, 문화적 차이와 함께 이민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이민자 주거형태를 결정짓는다고 분석하였다. 공간동화이론을 바탕으로 이민 집단의 거주 패턴을 분석한 로간□알바□장(Logan, Alba and Zhang,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 이민국에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젊은 이주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소수 민족 저소득 지역 공간을 형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성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 민족적□문화적 고려보다는 경제적인 고려에 의해 저소득 이주자 커뮤니티를 떠나 이주국의 상류 거주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 초기 이민자들의 민족 중심 거주공간은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소수민족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Myles and Hou, 2003).

마일즈□후(Myles and Hou, 2003)의 캐나다 토론토의 흑인 및 남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 외국인 집단의 초기 정착 지역은 저소득 지역이지만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이주한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아예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이 정부의 정책 목표로 처음부터 설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문화를 보호□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는 시각이 있다(Wood and Gilbert, 2005).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그 지방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민족문화가 정치적□문화적 다원성과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그 지방이나 도시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Good, 2005).

이민 소수민족 집단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선진 이민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순혈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는 일본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 외국이주노동자가 가장 먼저 유입된 국가이며, 일부 외국인에게 시민권의 부여라는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핵심 정책을 도입한 국가이다. 일본은 외국인을 크게 4집단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본 유입시기와 내용도 다르다.¹⁾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권 정책과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 사회 내의 갈등이나 욕구, 또는 국가 정

1) 타루모토 (Tarumoto, 2003)의 일본 다문화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에 소개된 일본 다문화 사회의 구성을 보면, 구이주자, 신이주자, 니케이진(Nikkeijin), 그리고 장기 불법체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이주자들은 대개 1947년 이전 일본에 정착한 한국인 및 중국인 또는 그의 후손들이며 신이주자들은 1980년대 후반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니케이진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역 이민 온 일본 동포들이고 장기불법체류자들은 산업 연수생이나 학생으로 입국하였다가 단순 노동자로 정착하게 된 외국인들로 전체 외국인집단의 약 1/7을 차지하고 있다(Tarumoto, 2003:91). 또한, 일본 내 국가별 외국인 집단의 구성을 보면, 남북한을 포함한 한국인 및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및 페루로부터 역 이민 온 일본 동포들의 숫자가 전체 약 177만 명의 중 약 140만 명에 이르는 등 일본이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기보다는 몇 개의 큰 외국인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책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신흥 선진국인 일본에 대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압력 때문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다문화나 외국인 집단의 논의와 구분 된다(Tarumoto, 2003:96). 즉, 일본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다문화사회의 틀 안에서 분석되기 보다는 정치적□법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에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학자 리(Lie, 2004)는 일본 내의 다문화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한국인 등을 포함한 일본 체류 외국인들이 일정한 계층을 이루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일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 연구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 이민 국가이면서 외국인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선진 이민국에서의 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민족 거주지가 생겨나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문화의 중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커뮤니티는 이주 초기에는 저소득층의 소수집단형태로 나타나며, 민족인구의 수와 경제적 자립 정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성공과 함께 소수집단의 커뮤니티가 점점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민국의 특성과 다문화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인 접근에 따라 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달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외국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특히 비이민국에 대한 노동력의 유입이라는 측면과, 일본계 외국인 동포의 유입과 함께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국의 다인종□다민족 사회 연구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한국의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

국내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외국 자본과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른 공간적□계급적 분석보다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한국 내 지역 간 경쟁의 심화와 서울에 대한 경제□정치□문화의 집중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초의수, 1993; 이재하, 1997; 이해주, 1999; 정진웅, 2003; 이정덕, 2002; 최병두, 2002). 세계화에 대한 연구와는 별도로 국내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 목적별로 집단을 분리하여 진행한 연구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있다.

한국의 외국인 집단에 대한 연구는 크게 외국인 노동자 및 다국적 기업인에 대한 연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등과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서울특별시, 2006)는 분야별 외국인 생활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의 수가 최근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OECD 가입국의 추정인구는 1999년 30,761명에서 2005년 24,285명으로 오히려 약 21%가 감소하였다고 파악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국적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비OECD 국가의 인구가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장여건, 경영여건 그리고 생활여건 개선이 투자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향후 개선방안 연구』(조권중, 2002)에서도 서울의 외국인 거주 환경을 연구하였으나 서울의 국제적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의 틀 안에서 외국인의 거주 편의와 자녀들의 교육 여건 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되는 추세를 지적하면서 외국인 학부모의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그보다 앞서 발표된 『서울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건립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에서는 서울시내 외국인들의 분포 현황과 이들의 거주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당시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 목적의 체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IMF체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정책과 외자유치노력 등이 상당히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는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의 원인과 이 같은 현상이 노동력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사회에의 적응 방식 등에 대해 분석했다.

한편, 세계화 시대의 활발한 인적 교류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와 농촌 지역의 결혼 적령기 여성의 부족으로 인해 이주해 들어오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라든가 문화의 차이 등을 연구한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양옥경, 2007)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갈등 및 적응의 어려움,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이들의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지역적 분포도 및 출신국 등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이 대부분 중국동포들이며 지역적으로는 영등포구, 구로구 등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주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와 이들의 유입 배경, 생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책적인 보고서에 그쳤으며, 그나마 이마저도 대부분 서울의 경제적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들로 외국인 거주 공간에 대한 계급적 분석 등을 위시한 학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I. 서울의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외국인 마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0년대 초 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의 유입으로 빠르게 다인종·다민족화 되어 가는 서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김은미·김지현(2006)의 『서울 속의 세계알리기 프로젝트』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김은미·김지현(2006)은 서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외국인 마을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형성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들의 주류사회와의 소통 및 적응 특징을 살펴보았다.²⁾

위의 실증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 각 외국인 집단의 한국 유입을 세계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서울에 이주하고 정착하게 된 과정, 역사 및 배경에 대한 연구를 통한 외국인 마을의 공간적·계급적 구성 분석과, (2) 외국인 마을들의 문화적인 특징과 주류사회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2) 김은미·김지현(2006)의 외국인 마을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한국이나 해당 외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겨났으며, (2) 단순 집중 거주 지역이 아니라 문화체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그리고 (3) 해당 외국 국가 또는 해당 문화를 영유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 이에 따라 조선족마을, 화교마을, 일본마을, 프랑스마을, 이탈리아마을, 몽골마을, 필리핀마을, 이슬람마을 등 총 9개 마을이 최종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출입국 관리소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외국인 마을에 대한 실증 연구는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생 2명과 국제학부 학생 4명이 참여하여 각 외국인 마을 별로 5-10회씩 탐방조사를 실시하였다.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화 시대 전·후 외국인 유입과 서울의 공간적·계층적 구성

서울은 세계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유입으로 한국 내에서 세계화의 물결을 가장 많이 빠르고 강력하게 받은 지역이다. 다국적 기업 임직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한국 동포(예: 조선족, 고려인)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 마을이 형성되어 다인종 다민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김은미·김지현, 2006). 또한 서울에는 세계화 이전부터 한국에 유입되어 정착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외국인 집단도 있다. 따라서 여러 다양한 외국인 집단들이 형성하는 주거 공간도 이들의 이주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게 분화되고 계급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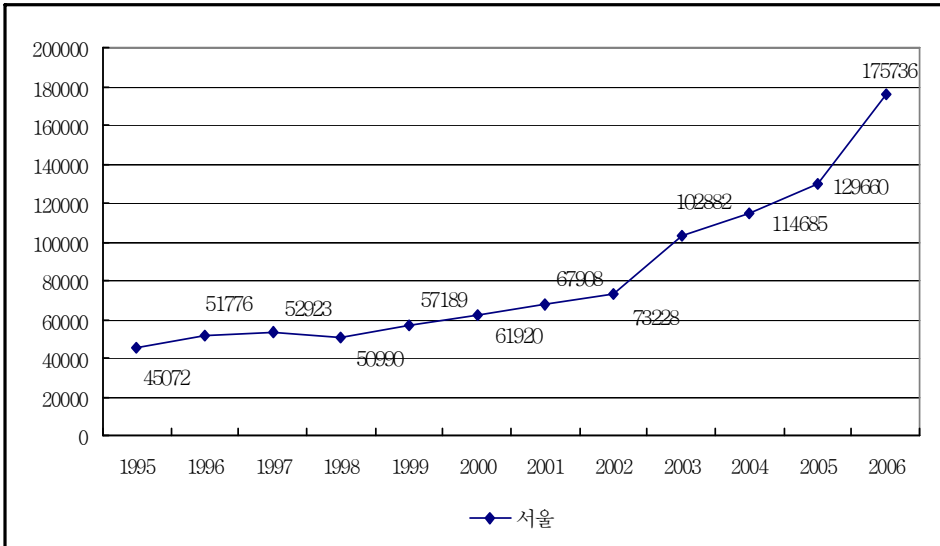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서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외국인 마을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국과 같이 주류인구가 98%이상을 차지하는 비이민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외국인 마을들의 생성시기와 과정과 외국인 마을들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야말로 한국적인 다인종·다민족 사회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미·김지현(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인 마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마을은 외국 문헌 연구에서 주로 연구된 집중거주 지역으로서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상시 존재하는 공간이며, (2) 문화마을은 주거와 분리된 제3의 공간으로서 일시적이지만 정기적인 문화체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후자는 비이민국가인 한국에서 관찰된 공간으로서 주거와 분리하여 생성된 문화 공동체이다. 간혹 홍콩의 상류층 가정에 고용된 외국인 보모들이 주말에 홍콩 도심에서 모인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서울에서 관찰된 외국인 문화마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이민사회 및 다문화 사회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본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이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1997-9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다국적 기업의 한국진출과 해외 자본의 유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서울의 외국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주민등록 통계 기준 1997년 52,923명에서 2006년 현재 175,736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의 인구성장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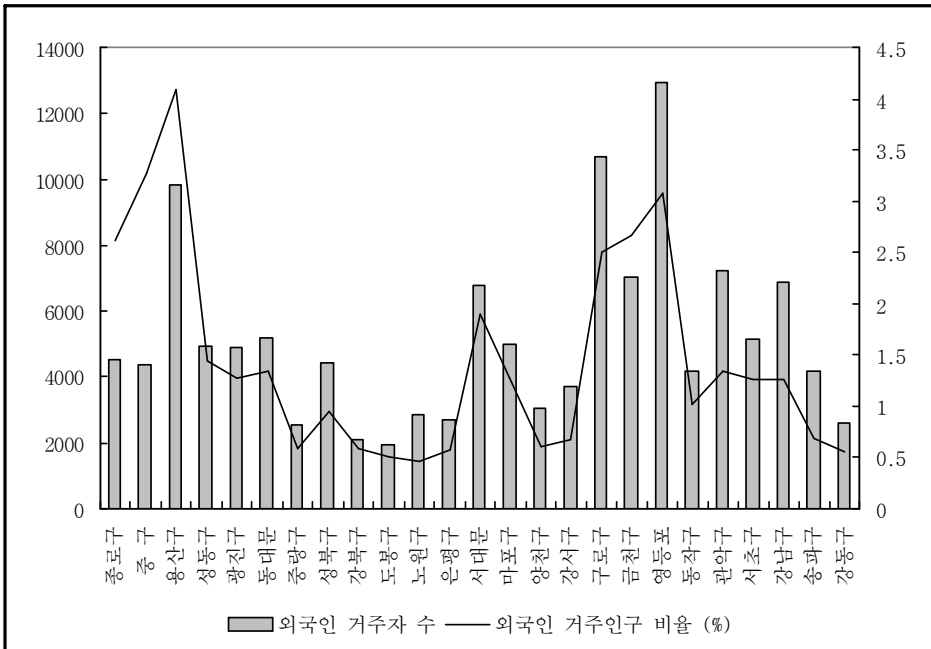
3장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그림 1> 서울의 외국인 유입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 DB

<그림 2> 서울 내 외국인 거주인구 분포와 각 구별 외국인 거주인구 비율



자료: 서울시 주민등록통계, 2006.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적 특성은 <그림 2>의 서울 내 외국인 인구의 주민등록상 거주 분포와 각 구별 외국인 거주인구의 비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가 2.5%이상의 외국인 인구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서울의 외국인 집단이 경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지역별 분포는 <표 1>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1> 서울의 외국인 거주분포

구분	전체	국적별 외국인 인구 (상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서울전체	175,036	조선족 (105,178)	중국 (14,122)	미국 (11,890)	타이완 (8,974)	일본 (6,864)
종로구	5,897	조선족 (2,334)	중국 (933)	미국 (539)	타이완 (263)	일본 (257)
중구	5,699	조선족 (2,499)	타이완 (709)	중국 (478)	몽골 (363)	미국 (270)
용산구	10,988	조선족 (2,585)	일본 (1,673)	미국 (1,561)	필리핀 (557)	중국 (493)
성동구	6,458	조선족 (3,513)	중국 (596)	필리핀 (387)	베트남 (352)	몽골 (304)
광진구	7,098	조선족 (4,630)	중국 (856)	미국 (324)	일본 (306)	몽골 (137)
동대문구	6,852	조선족 (3,783)	중국 (1,184)	일본 (335)	타이완 (231)	몽골 (228)
중랑구	3,326	조선족 (2,159)	중국 (314)	몽골 (179)	필리핀 (117)	베트남 (115)
성북구	5,668	조선족 (2,175)	중국 (913)	미국 (456)	필리핀 (317)	타이완 (266)
강북구	2,634	조선족 (1,651)	중국 (195)	미국 (151)	타이완 (102)	베트남 (89)
도봉구	2,221	조선족 (1,131)	필리핀 (221)	중국 (195)	미국 (158)	일본 (87)
노원구	3,583	조선족 (1,636)	중국 (627)	미국 (328)	일본 (151)	몽골 (135)
은평구	3,360	조선족 (1,799)	타이완 (498)	일본 (276)	중국 (247)	미국 (140)
서대문구	7,632	타이완 (2,414)	조선족 (1,819)	중국 (890)	미국 (819)	일본 (576)
마포구	6,466	조선족 (2,781)	타이완 (1,417)	중국 (697)	미국 (377)	일본 (352)

자료: 서울시 주민등록통계 2006.

3장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표 1> 서울의 외국인 거주분포(계속)

구분	전체	국적별 외국인 인구 (상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양천구	3,889	조선족 (2,368)	미국 (356)	타이완 (284)	중국 (239)	일본 (108)
강서구	4,900	조선족 (2,685)	중국 (391)	타이완 (278)	미국 (267)	필리핀 (191)
구로구	16,954	조선족 (14,933)	중국 (637)	타이완 (232)	필리핀 (153)	일본 (122)
금천구	10,746	조선족 (8,404)	중국 (736)	베트남 (313)	필리핀 (303)	태국 (145)
영등포구	21,118	조선족 (18,242)	중국 (817)	타이완 (468)	미국 (388)	베트남 (157)
동작구	6,396	조선족 (4,948)	중국 (504)	미국 (247)	일본 (131)	타이완 (129)
관악구	10,778	조선족 (8,331)	중국 (770)	미국 (311)	일본 (242)	베트남 (199)
서초구	5,704	조선족 (2,188)	미국 (1,462)	프랑스 (416)	중국 (309)	일본 (252)
강남구	7,694	조선족 (2,830)	미국 (2,076)	일본 (702)	중국 (423)	캐나다 (299)
송파구	5,522	조선족 (3,463)	미국 (683)	중국 (381)	일본 (146)	캐나다 (115)
강동구	3,443	조선족 (2,291)	중국 (297)	미국 (203)	일본 (109)	베트남 (109)

자료: 서울시 주민등록통계, 200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족과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입이 많아 서대문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구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경우 연희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화교마을 주변에 거주 인구가 집중되어 대만 국적의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천구, 중랑구 등의 외국인 인구 구성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인구 구성이 차이를 보여 공간적 구성과 함께 국적 간 계급분화의 현상 역시 의심할 수 있게 한다.

이러 계급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용산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외국인 마을들이 주로 다국적기업 임직원과 대사관 직원들이 거주하는 중산층 마을인 반면, 동대문구와 구로구에 위치한 마을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정착한 저소득층 마을이며 해당 외국인의 유입 역사도 비교적 짧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2>는 서울 내 외국인 마을들의 위치, 생성시기, 그리고 규모 등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표 2>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의 현황

	위치	생성시기	규모
조선족마을 (엔벤틀거리)	구로구 가리봉동	1990년대 후반	구로구 내 약 15,000명 거주 가리봉동 주변 약 12,000명 거주
이슬람마을	용산구 이태원동	1980년대 초반	주말 이슬람 인구 400-500명
화교마을1 (리틀 차이나타운)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연남동	1997년 이후 급증	약 2,500명 거주
프랑스마을 (서래마을)	서초구 방배4동	1980년대 후반	약 500명 거주
일본마을 (리틀 도쿄)	용산구 이촌1동	1970년대 초반	약 1,300명 거주
몽골마을	동대문구 광희동	1990년대 후반	주말 몽골인구 300-400명
화교마을2	중구 명동	1970년대	-
이탈리아마을	용산구 한남동	2000년대 초반	주말 이탈리아인 인구 30-40여명
필리핀마을 (작은 마닐라)	종로구 혜화동	1995년 이후	주말 필리핀 인구 200여명

자료: 김은미·김지현, 2006.

서래마을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마을은 서초구 방배동과 반포 4동의 프랑스 외국인 학교를 둘러싸고 주거 및 상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서울 거주 학령기 프랑스인의 75%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양식도 인근 지역 한국인 거주 형태와 같은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빌라와 단독주택 중심으로 “쁘띠 프랑스” 및 “한국의 몽마르트”로 불린다. 다국적기업의 임직원 가족이나 대사관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이 마을은 서초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산층 마을로 자리매김하여 각종 관광 홍보 책자에도 소개되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마을인 일본마을(리틀 도쿄)은 용산구 이촌1동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1970년대 외국인 아파트 입주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현재 서울에는 7천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720명이 용산구에, 이중 1,408명이 이촌 1동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마을에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상권이 두루 갖추어진 주거복합형 마을로 매우 안정적인 중산층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몽골마을은 한국과 몽골이 1990년대 후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이후 형성되어 현재 약 2,438명의 몽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은 유입 역사와 비교적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몽골마을은 서울의 한복판인 동대문구 광희동의 벌우물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구직을 위해 유입된 저소득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유입 인구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집단은 조선족으로서, 1980년대 후반 친지방문으로 시작된 국내 유입은 한□중수교가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 노동자(단순 서비스업 포함) 및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구성된 조선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서울에 공식 등록된 인구만 105,178명에 이르고 있다. ‘마을’을 이루는 외국인 중 가장 큰 인구집단으로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에 약 1만2천 여 명이 거주하면서 가리봉시장 인근 약 500m에 이르는 조선족의 밀집 지역인 ‘엔벤티거리’는 서울 내 최대 단일 외국인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리틀 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화교 마을 역시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외국인 마을로,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연희동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시설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거주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화교는 2,414명으로 서울 거주 화교의 20%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한성 화교 중, 고등학교가 명동에서 이사 오면서 화교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 지역 화교 인구가 급증하였다.

그 밖에 필리핀마을은 세계화와 더불어 구직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유입된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이며, 이슬람마을은 1976년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성원을 중심으로 생겨나 주말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 이슬람교도들이 성원주변으로 한시적으로 모이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외국인 마을은 오히려 인구 유입의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형성하여 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인구구성을 보이면서 발전해 간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 보고된 이주민 연구와 상당히 다른 양상의 보이고 있다. 즉, 선진 이민국에서는 이민초기에는 이주민들이 자기들만의 주거공간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주류사회에 스며들면서 외국인 마을이 사라지거나 그 기능이 쇠퇴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외국인 집단이 주거마을을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선진국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를 저소득층의 소수 민족 집단 거주지로 규정하여 엔클레이브 (ethnic enclave)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된 주거마을과 저소득층의 외국인 문화마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행정적인 지원도 편향되어 있어서 다인종□다민족 선진국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제도적 기반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이에 따른 지역발전은 꺾이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이 같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마을이나 일본마을 등 선진국 외국인마을에 편향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표 3 참조).

〈표 3〉 서울시 구청별 외국인 마을 지원 현황

구청명	지원 외국인마을	지원내용
서초구청	프랑스마을 (서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내 서래마을 전담부서 설치 ▶ 불어가능자의 행정 상담 및 행정 서비스제공 ▶ 홈페이지에 영어, 국어, 일어 외에 불어 서비스 제공 ▶ 프랑스 대통령 방한 시 기념 삼색 보도블럭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용산구청	일본마을 (리틀 도쿄), 이슬람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 "우리 동네 가볼만한 곳"으로 소개 ▶ 각종 문화 이벤트 및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강남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전담 부서 (International Affairs Team) 운영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지원

〈표3〉에서 보듯이 프랑스마을의 경우 서초구청에서 이 마을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불어 가능자의 행정상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도 서울시내 대부분의 구청이 제공하고 있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 이외에 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내 프랑스인 거주민들을 위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테랑 대통령 방한 시 가로등 정비 사업, 삼색 보도블럭 설치 등 프랑스 문화와 관련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서래마을 거주 프랑스인들을 “주민”으로써 지원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용산구의 경우 “우리 동네 가볼만한 곳”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마을, 이태원 이슬람성원

등 각종 외국인 마을을 소개하는 등 각종 문화 이벤트 및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는 특별히 외국인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담부서를 두고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서래마을의 경우처럼 “주민”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경우와는 달리, <표 3>에 나타나지 않는 대부분의 구청들은 외국인과 외국인 마을에 대한 특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나 영등포구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상당수의 구청이 홈페이지에 주요 외국어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나 구 차원의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어(구로구, 노원구, 광진구 등), 선진국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인 구청활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외국인 마을들에서도 세계화와 함께 증폭되고 있는 도시 내의 양극화 및 계급화 현상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며, 향후 외국인 정책을 개발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서울의 외국인 마을의 문화적 특성과 주류사회와의 소통

본 장에서는 김은미□김지현(2006)연구의 결과 나타난 서울 내의 외국인 마을의 구성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전개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주류 한국사회와의 소통의 문제를 조망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9개 마을은 1) 주거, 2) 교육시설, 3) 상권, 4) 종교 등의 4가지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거복합형 마을과 문화마을의 두 부류로 나누어 연구되었다(표 4 참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중거주, 상권, 종교, 교육시설의 여부에 따라 조선족마을, 연희동 화교마을, 프랑스마을, 일본마을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합형 마을을 형성하며, 이슬람마을, 이탈리아마을, 필리핀마을, 몽골마을 등은 주거와 상권, 종교, 교육시설을 거점으로 한 문화향유체계가 분리된 문화마을을 이루고 있다. 즉, 주거지역과 문화향유체계가 같을 경우 프랑스마을, 일본인마을, 화교마을, 조선족마을처럼 가시적인 ‘마을’을 형성하지만, 이슬람마을, 이탈리아마을, 필리핀마을, 몽골마을 등 체류신분이나 종교에 따라 주거와 문화체계가 분리된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마을이 아닌 ‘특정 시간 동안 생겼다 사라지는, 그러나 문화 체계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마을이 형성되고 있다(김은미·김지현, 2006).

<표 4> 외국인 마을의 기능별 분석

	마을	소재지 (동/구)	외국인· 문화권	집중거주	상권	종교	교육시설
1	엔벤티거리	가리봉동 /구로구	조선족	◎	◎		
2	이슬람마을	이태원동 /용산구	이슬람		◎	◎	
3	리틀 차이나타운	연희동 /서대문구	화교	◎	◎		◎
4	서래 마을	반포동 /서초구	프랑스	◎	◎		◎
5	리틀 도쿄	이촌 1동 /용산구	일본	◎	◎		◎
6	몽골 타워	광희동 /동대문구	몽골		◎		
7	중화 거리	명동 /중구	화교 중국		◎		
8	클럽 이탈리아	한남동 /용산구	이탈리아			◎	◎
9	필리핀 일요 장터	혜화동 /중로구	필리핀		◎	◎	

자료: 김은미·김지현, 2006:37.

이슬람마을은 이러한 문화마을의 대표적인 경우로 이슬람교 예배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서 주말 동안 한시적으로 용산구 이태원동에 형성되고(김현미, 2005:27), 이 주변으로 이슬람 관련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문화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변과 소통하려는 전형적인 문화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다. 9/11 테러이후에는 사원을 중심으로 이슬람 성원과 종교로서 이슬람을 알리기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등 이슬람 문화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자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슬람식 식당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개방적인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마을은 거주 외국인의 수가 적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종교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주거가 배제된 문화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이 모두 100여명으로 극히 소수이지만 이들은 이탈리아 문화원과 공조하여 언어교육 프로그램, 미술 전시회, 이탈리아 음식 소개, 영화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여 조직하면서 주로 한남동의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운영

하는 프란치스코 국제 유치원 지하를 공간적 배경으로 매주 일요일 미사 이후 클럽 이탈리아 모임을 갖는다. 약 30-40여명의 이탈리아인이 모이는 소수이기는 하나 클럽 형태의 개방적인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국 문화원과 함께 한국인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1995년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필리핀마을은 매주 일요일 종로구 혜화동 성당 앞에 필리핀 일요장터를 중심으로 '작은 마닐라'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성동구와 성북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중거주하고 있으나, 강력한 종교적 공동체 의식과 필리핀의 공용어인 타갈로어를 중심으로 트럭 노점상들이 양념, 야채, 잡화부터 필리핀 드라마 테이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리핀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종교와 상권이 결합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 장터는 비단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인들에 정보 제공의 장이자 타갈로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소통 채널이 없는 특성상 폐쇄적이고 임시적인 상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 역시 아직 한국의 외국인 유입의 역사가 짧고 각각의 민족의 한국 유입 인구가 많지 않은 다문화 극초기 단계의 현상의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몽골마을 역시 서울 안에서 강력한 문화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 떠 있는 몽골섬'이라는 별칭을 가진 "뉴금호타워"빌딩은 한국어가 거의 없이 키릴문자만으로 이루어질 만큼 단단한 몽골인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상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빌딩은 보따리 장사로 시작된 한국과 몽골 사이의 무역으로 상점과 사무소가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10층 건물 전체가 몽골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무역회사, 운송회사, 식료품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몽골인들은 주로 일자리가 가깝거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이면 '문화마을'로 모여들어 폐쇄적인 상권에서 나오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언어 및 몽골 신문과 몽골 방송의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하는 등 문화를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서울의 외국인 문화마을들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인구 유입의 정도가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태리마을 그리고 몽골마을 등은 유입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각 독특한 문화향유체계로 이어진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편, 프랑스마을, 일본마을, 화교마을, 그리고 조선족마을 등은 주거와 문화향유체계가 공동체 안에 모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족마을을 제외한 세 마을들은 가시적인 마을 덕분에 대체로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장소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타국의 정통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족마을은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저소득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역의 예와 유사하다. '엔벤 거리'의 골목을 지나다 보면 각종 중국물품, 양고기, 소고기, 개고기 등을 재료로 하는 조선족 특유의 꼬치구이 등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다. 이들 상점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다른 외국인 마을과는 달리 인구조적 특성 즉,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며 주변 이웃과의 소통이나 교류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언어 소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이미 주변과 격리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약 30여개의 상점 대부분을 조선족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 상점의 주 고객이 조선족, 한족 중국인인 주변 서울시민에 대해 폐쇄적인 상권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가리봉동 쪽방촌'으로 불렸던 주거지역과 과거 공단 형성 지역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심에 생겨나 그 폐쇄성으로 인해 주변과 격리되어가는 외국인 공동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또 조선족마을의 경우에는 다른 주거복합형 마을과는 달리 최근 도심 재개발 열풍, 불법체류자 단속, 공단 주변의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슬럼화 되어 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서울 내의 외국인 마을의 문화적 전개를 정리해 보면, 주거복합형마을의 특징은 1) 유입 역사가 오래되어, 2) 인구구성의 특성상 교육시설과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3)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마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주거가 배제된 문화마을은 1) 유입 역사가 비교적 짧고, 2) 종교 활동 중심이면서, 3) 단순 노동 중심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마을과 한국사회와의 소통의 정도는 주거복합형이나 문화마을이나에 따라 다르지는 않지만, 주류사회와 크게 소통하지 않는 외국인 마을들인 조선족마을, 몽골마을, 필리핀마을 등은 구청 등에서의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강력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매개로 한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마을들은 자기 민족이나 나라 사람들의 고유된 문화와 상행위/종교 행위 등을 함께 공

유하기 위해 생성된 마을로서 한국 주류사회와의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고 편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만들어내는 마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서울 안에는 다양한 외국인 마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알려짐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마을 내부의 문화나 소통 방식은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간에 따라 그 역동성과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한국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다.

IV. 결론: 한국적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외국인마을의 사례를 통한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 서울이라는 지역적 공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진 이민 국가들의 외국인 마을의 형성과, 한국, 특히 서울에 존재하는 외국인 마을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과 이론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앞서 문헌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울은 정치·문화·경제적인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며, 한국 안에서도 세계화와 개방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입되는 외국인의 27%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인종다민족 지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연구가 다른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서울이 대표적인 한국의 다문화 지역이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인종다민족 선진국과는 달리 강력한 주류사회가 존재하면서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외국인 마을은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화마을의 경우 그 형성의 경제적·정치적 배경과 소통 노력에 따라 주변 한국사회와의 융화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의 공유채널로서 다양한 외국인 문화마을’의 형태로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있음을 시사한다.

선진 이민국에서 발전된 이민 외국인 집단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한국과 유사한 정도의 강한 주류사회를 지닌 일본의 외국인 집단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함의를 갖는다: 1) 비이민 사회이며 주류인구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총 인구의 98%를 넘는 경우 나타나는 외국인 마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긴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출신국 집단을 중심으로 주거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강력한 주류사회, 또한 “단일민족”신화가 있는 한국사회의 배타성에 대응하기위한 주거□문화 형태라고 보여 진다; 2) 주거마을과 더불어 한국, 특히 서울에서 관찰된 문화마을은 외국 문헌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현상으로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말에 쉬면서 만나는 공간을 넘어서서 종교 활동과 연관되거나, 상거래를 하며, 문화(언어□음식□노래 등)를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문화 공유의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의 초기 현상인 소수문화의 자생적 외국인 문화 마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극초기 단계인 한국사회의 현 시점에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외국인 마을을 문화적으로 포용□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일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형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 대한 이론적인 함의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적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문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다른 인종 및 종족 집단들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 집단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구축되어지기도 하고 해당 수용 국가의 중앙 및 지방자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강력한 주류사회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주류사회를 인정하고 주류사회 안에서 외국인 문화가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한국적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정부의 소통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다양한 외국 문화를 인정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이들 외국인 마을에 대한 조사, 발굴을 실시하는 것이 정책적 노력의 시작이라 하겠다. 이는 비단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광주 등 지방 도시 및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그 현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3장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 정부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지원확대: 외국인 마을과 문화를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큰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문화의 이해와 수용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외국인 마을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여줌으로써 이들과의 소통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정부 중심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언어교육, 고용,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각기 다른 외국인 마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필요: 서울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 마을들의 공간적□계급적 분포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외국인 마을들의 한국 유입의 시기와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종 정부 지원책이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계급화 현상이 외국인 마을들에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각각의 외국인 마을들의 니즈에 부합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외국인 지원책이 실효가 있을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채널 확보: 외국인 마을이 속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소통채널구축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의 서초구에서 서래마을 프랑스 주민들에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이곳을 관광 자원화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외국인 마을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이민 집단의 독특한 문화 축제를 지원해주거나 이를 홍보하고 나아가 함께 참여하고 해당 지역 구청 등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통해 외국인 마을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거마을과 문화마을을 동시에 이해하고 이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행정서비스 또는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다문화 교육의 시작: 다문화 선진국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자국 내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해를 고취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보람과 중요성을 초등 교육 커리큘럼에 서부터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그들의 교육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 사회에 이미 자생하고 있는 외국인 마을들을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각종 탐방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마을의 역사 및 한국사회와의 관계, 문화적 자산 등에 대해 외국에 가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학습장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 국가에서 외국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은 외국인 집단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구축되어지기도 하고 수용국가의 중앙 및 지방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강력한 주류사회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주류사회를 인정하고 주류사회 안에서 외국인 문화가 성장해야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한국적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 1995. “세계화시대 서울의 도시경영전략.” 『국토계획』 30(3): 5~16
- 김준. 2002.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만들기.” 『경제와 사회』 통권 53호.
- 김은미□김지현. 2006. 『서울 속의 세계 알리기 프로젝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 번역』. 또 하나의 문화.
- 김희재. 2003.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정책.” 『사회조사연구』 18:61~93.
- 이정덕. 2002. “문화분권과 지역문화 부흥 정책대안.” 『지역사회연구』 9(2).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 이재하□이해주. 1999. “구미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 양옥경. 2007.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서울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건립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2006.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정진웅. 2003. “서울과 지방, 그 중심지향의 문화를 넘어.” 『당대비평』 26.

조권중. 2002. 『서울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의수. 1993. “공간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과 한국 지역연구의 동향.” 『지역사회연구』 1(1).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최준욱. 2004. “인구고령화와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Bashi, Vilna and Mark Alan Hughes. 1997. "Globalization and Residential Segregation by Rac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51: 105~120.

Castells, Manuel. 1996. 『The Information Age : Society and Culture : The rise of network society』. Blackwell Publishers, Inc.

Choi, Woo-Kil. 2001.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The Change of Its Identity." *Development and Society* 30: 119~141.

Cohen, Robin and Paul Kennedy. 2000. "Thinking Globally." 『Global Sociology』. NYU Press. pp.10~40.

Cwerner, Saulo B. 2001. "The Times of 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1): 7~36.

Fennema, Meindert. 2004.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Ethnic Commun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0(3): 429~447.

Fong, Eric and Rima Wilkes. 2000. "A New Vertical Mosaic in Canada." Conference Paper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Conference, Los Angeles, CA, U.S.A.

Good, Kristin. 2005. "Patterns of Politics in Canada's Immigrant-receiving Cities and Suburbs." *Policy Studies* 26(3-4): 261~289.

Harvey, David. 1978.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 101~131.

- Inglis, Christine and Koenig, Matthias. 2004. "Editorial in Managing Migrant and Divers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ies* 6(2): 196~201.
- Kim, Eun Mee. 1997.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s: 1960-199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ie, John. 2004. 『Multiethnic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 Ling, Huping. 2005. 『Chinese St. Louis: From Enclave to Cultural Community』. Temple University Press.
- Logan, John, Richard D. Alba and Wenquan Zhang.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299~322.
- Logan, John and Harvey Molotc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tin, Philip. 1991. "Labor Migration in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5(1): 176~193.
- Myles, John and Feng Hou. 2003. "Changing Colours: Assimilation and New Racial Minority Immigrant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9(1): 29~58.
- Niemonen, Jack. 1999. "Deconstructing Cultural Pluralism." *Sociological Spectrum*. 19(4): 401~419.
- Robertson, Pat. 1992. 『The New World Order』. Thomas Nelson.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UP Great Britain.
- Tarumoto, Hideki. 2003. "Multiculturalism in Japan: Citizenship Policy for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5(1): 88~103.
- Thompson, Susan and Kevin Dunn. 2002. "Multicultural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in Australia." *An Uneven Tale of Access and Equity Urban Policy and Research* 20(3): 263~279.
- White, Michael, Ann H. Kim and Jennifer E. Glick. 2005. "Mapping Social Distance: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a Multiethnic Metro."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34(2): 173~203.
- Wong, M. R. 2005. "Ling, Chinese St. Louis: From Enclave to Cultural

Communit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2(3): 10~15.

Wood, Patricia K. and Liette Gilbert. 2005. "Multiculturalism in Canada: Accidental Discourse, Alternative Vision, Urban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679~691.

Zelinsky, Wilbur and Barrett A. Lee. 1998. "Heterolocalism: an alternative model of the sociospatial behaviour of immigrant ethnic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4(4).

4장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김 남 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정책관)

I. 머리말

21세기 초반부터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은 지식, 기술, 인재 중심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활발한 FTA 및 시장개방으로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인력부문의 세계적 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WTO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 협상(GATS의 MODE 4: 자연인의 이동)이 타결되면 노동인력의 국제이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 기술, 경영 등의 분야의 세계적인 표준화로 인해 이들 분야 인재들의 국제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류가 물적교류·정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 활발히 추진하게 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910,149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100명중 약 1.86명이 외국인인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 100만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체류 외국인의 유형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다양한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우리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들 외국인의 정주화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국경관리를 위해 소극적·폐쇄적인 관점에서 출입국 법령과 제도를 운영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해 왔으나, 이제 정부에서는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그간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인력과 인재유치, 사회통합,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상호 이해와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체류외국인 현황¹⁾ ('06.12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체류 인원	주요 국가별 체류 인원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체류외국인 (합법 + 불법)		910,149	382,237 (42.0%)	108,091 (11.9%)	43,207 (4.8%)	54,698 (6.0%)
외국국적 동포		체류 인원 229,982	중국 200,822 (87.3%)	미국 20,221 (8.8%)	캐나다 4,335 (1.9%)	호주 1,744 (0.8%)
외국인 근로자 (236,262)	전문 인력	24,038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6,604 (27.5%)	5,163 (21.5%)	1,602 (6.7%)	1,226 (5.1%)
	예·체능 인력	3,183	필리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1,866 (58.6%)	281 (8.8%)	223 (7.0%)	106 (3.3%)
	단순기능 인력	209,041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80,629 (38.6%)	24,992 (12.0%)	23,394 (11.2%)	17,866 (8.6%)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전)	87,252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난민 인정자	50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카메룬	
		18 (36.0%)	13 (26.0%)	4 (8.0%)	3 (6.0%)	
외국인유학생	28,062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19,812 (70.6%)	1,694 (6.0%)	946 (3.4%)	919 (3.3%)	
외국인투자자	6,550	일본	중국	파키스탄	미국	
		1,854 (28.3%)	831 (12.7%)	569 (8.7%)	476 (7.3%)	
불법체류외국인	211,988	중국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93,913 (44.3%)	14,168 (6.7%)	12,524 (5.9%)	12,015 (5.7%)	

※ 외국인의 자녀 (20세 이하)

① 외국국적 소지자 ⇨ 합법체류 53,465명, 불법체류 8,704명

② 국민(이민자 2세) ⇨ 정부 공식통계는 없으나 약 35천명 추정 (2003년 필벽 재단)

작년 5.26. 대통령주재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를 외국인정

1) 법무부 자료

책 총괄부처로 지정하였으며,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한 제한외국인정책을 총괄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어 2006. 12. 7.에는 “혼혈인□이주자사회통합대책”업무의 총괄 권한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 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여 종합적 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 추진하던 외국인 정책의 총괄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난 7.18.시행됨으로써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로 만든다는 취지와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외국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 제한외국인은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의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주요변화와 최근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 참여정부의 주요 외국인정책과 향후 외국인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는 8월 하순경 대통령 주재 하에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바, VI. 향후 외국인정책의 추진방향에서는 현재 관계부처와의 세부정책에 대하여 검토와 협의과정에 있으므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수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

1.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환경변화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간 활발한 인적교류 둘째,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외국 인력의 수요증가 셋째, 체류외국인 유형의 다양화 및 정주화 등을 들 수 있다.

1) 국가간 활발한 인적교류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간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을 통해 전문인력의 자유이동을 추구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을 통해 숙련기술 전문인력, 기업체 임원, 간호사 등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방화,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의 활발한 인적교류 등의 영향으로 출입국 수가 급증하고 있다. <표 2>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출입국자 수는 3,26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5년 1,601만 명에 비해 약 104%나 증가한 수치로서, 2010년에는 5,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601	2,180	2,264	2,515	2,397	2,961	3,264
국 민	894	1,148	1,265	1,481	1,470	1,818	2,064
외국인	707	1,032	999	1,034	927	1,143	1,200

체류외국인 수를 보면, 2006년 12월 현재 910,149명으로 1995년 19만 명에 비해 약 378%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35만 여명이 체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

년 3월 들어 전체 체류외국인의 수가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 국민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이 1990년에는 국민인구 1,000명당 1명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1,000명당 18명으로 18배나 증가하였다.

〈표 3〉은 국제결혼 증가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01년도의 1만 2천여 명에 비해 3.5배가 증가하여 4만 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2000년에 1천 8백여 명에 불과하던 국적취득자 수도 2005년에는 1만 7천여 명으로 9.5배나 급증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비해 2006년 국제결혼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동포의 입국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사기결혼 등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표 3〉 국제결혼 증가추이

연 도	1990	1995	2000	2005	2006
총 결혼건수	399,312	398,494	334,030	316,375	332,752
국제결혼 건수	4,710	13,494	12,319	43,121	39,690
국제결혼 비율(%)	1.2	3.4	3.7	13.6	11.9

2)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외국인력 수요증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미 저출산 국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aging)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이면 고령(aged)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또 2026년에는 ‘초고령(super-aged) 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²⁾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약 20년이라는 단기간에 고령화로 진전하고 있는 것은 서구 여러 나라가 70-100년간 점진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370만 2천명으로 총인구의 71.7%를 차

2) 매일경제, 2007. 6. 13. “고령화사회 멋진 노년시대를 열시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지하고 있으나, 그 중 50~64세 인구는 18.4%(618만 9천명)이며, 2020년에는 35%를 넘을 정도로 전체 노동력 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물론 가까운 시기에 생산 활동 인구의 절대규모의 감소가 우려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50대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중의 증가는 전체인구 중 노동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며, 결국 노동력의 절대규모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³⁾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은 결국은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노무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외국인노동력 확충계획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지식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는 노동력의 국제이동 뿐 아니라 광범위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한국과 한국인을 세계 속에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의 문제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참여정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창조적 미래를 기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적 자본이 경제와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⁴⁾ 출범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구상과 정책적 과제를 실천에 옮겨왔다.

3) 체류 외국인 유형의 다양화 및 정주화

최근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유형을 보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상용방문이나 무역상담, 기술지도 등과 같은 일시적인 체류형태를 띤 외국인들이 주로 입국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결혼, 대학들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그리고 고용허가제 도입의 영향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인해 장기체류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3월 방문취업제가 실시됨에 따라 입국동포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서초구의 프랑스인들이 거주하는 서래마을이라든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인천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에 특정 외국인의 거주지역

3) 김용익 외. 2004.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한국사회의 대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4) 노무현 선대위 국가비전21위원회. 2002. “2002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

이 형성되는 등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 사회통합·다문화포용 등 새로운 정책 수요발생

1) 사회통합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의 필요

지난 2005년 프랑스, 호주의 이민자 소요사태를 통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지위와 경제수준에 걸맞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정주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정주외국인이 스스로 조기에 자립토록 지원하여, 장래의 인적지원 및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간 외국인 문제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고 있었으나, 복잡다기한 외국인 문제를 각 부처가 개별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2) 다문화 포용에 필요한 사회 환경 조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우리나라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순혈주의, 가부장중심의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해 왔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서로간의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의 새로운 정책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인종, 문화, 언어 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더욱 발전적, 생산적 사회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정책은 이제 단순히 노동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벗어나, 결혼, 가족, 귀화, 교육, 의료, 복지, 정체성, 나아가 '사회통합'이라는 복합적인 사회과제가 되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따라서 결혼, 귀화, 출생 등의 방식으로 한국인이 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하고 자기발전의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을 선진화하는 등 다문화 포용에 필요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수요로 떠오르게 되었다.

3)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 외국인력 도입·활용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이 발달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었듯이 고임금과 인력부족시대에 놓여 있다. 또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국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학력화,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단순노무 외국 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투자자, 과학기술인력 등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단순노무, 숙련기능 인력의 합리적, 선별적 도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4) 인권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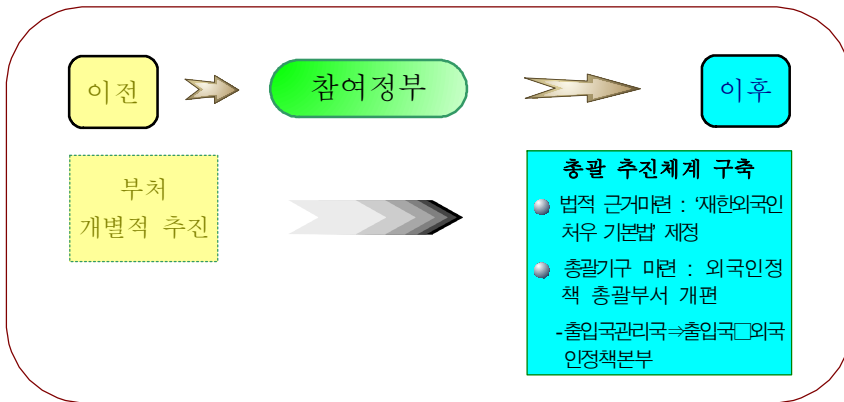
한국인의 의식 속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단일민족, 순혈주의라는 전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외국인이나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이민자 100만 명의 시대를 앞두고 선진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한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하며,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통합을 이루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타국의 외국인 정책 주무기관과의 이민협력을 통해 정책역량을 높여나가는 한편 재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위를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종합적·중장기적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마련 필요

외국인 정책은 ‘물류이동’과 달리 ‘사람의 이동’에 관한 정책으로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각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통합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생겼다. <그림 1>

<그림 1> 외국인 정책추진체계



1) 외국인 체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의제 대두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통합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빚어 오는 등 정부차원의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주외국인 및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범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정책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 환경에 따른 외국인 정책의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통합정책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된 것이다. 이는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어느 나라이든 이제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종교가 섞이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정책에 대한 총괄시스템

외국인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략차원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근거한 종합적인 접근이 다소 부족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적동포,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투자자, 유학생, 우수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각 부처입장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중복, 충돌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으나, 2006~2007년 외국인정책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정책을 종합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III.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주요 변화와 최근 추진 현황

1. 외국인정책의 주요 변천

1) 인재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정책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목표는 해외의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외국인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간 경쟁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외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데 있다. 세계 각 국가들도 전문 인력의 유치 확대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전문인력 유치 및 외국인력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허가정책을 살펴보면, 국민대체성보다는 전문인력의 국익기여도라든가 전문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개인자질 검증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문인력의 경우 업종 및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단순기능인력과 달리 일정한 자격증, 학력, 기술수준,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업종, 직종의 경우 전문인력에 해당되

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추천절차를 거친 후 취업을 허가하는 등 위와 같이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외국인 단순노무인력 정책

〈표 4〉는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주요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표 4〉는 우리나라 외국인정책가운데서 외국인 단순노무인력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노무인력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단순노무인력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고용기회침해, 산업구조조정지연, 외국인단순노무인력의 국내 정주화로 인한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의 대체가 어려운 업종에 한정하여 취업허가를 하고, 그 체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1993년 이전에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등의 국가들과 같이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을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취하여 왔으나, 1990년부터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후진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3년 11월 국내 산업관련단체가 해외송출기관을 통하여 모집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기업들에게 배정하여 연수를 시키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1998년 2년간 산업연수 후 자격시험합격자에게 1년간 정규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4월에는 「연수2년+취업1년」에서 「연수1년+취업2년」으로 변경됨으로써 산업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제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동 제도는 내국인고용기회침해방지를 위해 도입 업종 제한⁵⁾, 총쿼터 설정, 사업장별 취업허가인원 제한을 두는 동시에 국내에서 산업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재차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의 장기 취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 2004. 3.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한 2004년 산업연수제 도입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이다.

<표 4> 외국인정책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시행 의미
1993. 11월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 외국 인력의 본격적인 도입
1999. 9월	“재외동포 법” 제정	•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자유 보장 → 구주·미주지역 동포 귀국 촉진의 계기
2002. 4월	영주자격제도 신설	• 영주자격제도 최초 도입 → 우수외국인력 유치 계기
2002. 12월	취업관리제도 시행	• 중국·구소련 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완화
2004. 8월	고용허가제도 시행	• 단순노무 외국인력을 근로자로서 본격 도입 → 산업연수제 관련 인권침해 논란 상당부분 해소
2006. 5월	“제1회 외국인정책 회의” 개최	• 종합적 외국인정책 본격추진 →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립
2007. 3월	방문취업제도 시행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쉽게 고국을 방문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동포간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
2007. 5월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 외국인정책 수립·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및 총괄추진체계 정립의 계기

이러한 산업연수제도와 더불어 1년의 연수기간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3년간 정규근로자로 취업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근거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2003.7.31.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8월 17일부터 동 제도에 의하여 외국인력이 도입되게 되었다. 또한 동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2003.9.1. - 11.30. 기간동안 4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를 위한 자진신고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자 중 144,091 명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중 40,108 명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재입국한 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내국인고용기회침해방지를 위해 업종별 총정원 설정, 사업장별 취업허가인원 제한,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만 노동부(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허가를 해주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만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해 주도

록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업종은 매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4년에 허용한 업종은 산업 연수제 허용업종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장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하되, 출국후 1년이 경과하면 횟수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있다.

3)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27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해 단순노무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허용되는 반면, 단순기능인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10일 6개 분야 서비스 업종에 2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추진하였다. 내국인고용기회침해방지를 위해 총쿼터 설정, 사업장별 취업허가인원 제한, 내국인구인노력을 다한 업체에 대해 노동부에서 고용 추천 후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취업허가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최장 취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출국 후 1년이 경과한 자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 8. 17.부터는 취업관리제가 고용허가제에 흡수됨으로써 공사금액 30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등 건설업에서도 취업을 허용하게 되었고, 취업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3월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

2. 외국인정책의 대상별 최근 추진 현황

1) 외국적동포

(1) 중국□구소련(CIS)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외국적 동포는 단순히 ‘외국인력 활용’차원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 확보와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8조, 2004.3.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안)”참조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외국적동포가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그간 미국, 일본 등 거주 동포에 비해 국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취업허용업종 확대와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문취업제도”를 금년 3.4.부터 시행하였다.

“방문취업제도”는 그동안 동포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여 왔던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허용업종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 중국 및 구소련 거주동포 등이 고국을 방문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주관하여 '05년 상반기부터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다. <표 5> 방문취업제는 과거 특례고용허가제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같이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들은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동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2개 업종(단순노무분야)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국내 호적□친족이 없는 무연고 동포까지 입국□취업을 허용하였으며, '07. 5월 국적 신청 동포에 대해 국적취득 전까지 취업을 허용하였다.

<표 5> 방문취업제 및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대 상	방문취업제	특례 고용허가제
동포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자, 국가(독립)유공자 가족 등은 취업쿼터 폐지 - 기타 동포는 쿼터를 정해 취업허용 ↳ '07년 취업 쿼터 : 3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자(연고 동포)에 한정하여 연간 쿼터를 정하여 취업 허용 ↳ 무연고동포는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품 도매업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제조업 등 20개 분야 취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근무처 변경 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근무처 변경 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 3년 체류 후 출국, 재입국시 사증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 사증 발급 ↳ 3년 체류후 출국, 재입국시 사증 필요
사용자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에게 3년 유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일괄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시마다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 1회 유효

또한, 동포들이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기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취업제의 내용을 동포들이 정확히 이해하여 부당한 사기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말 입국할 예정인 무연고 동포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응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처우개선

영주자격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 9월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획일적으로 1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에 대해 능력□실적에 따라 즉시 영주를 허용하였으며, 국내 3년 이상□5년 이상□12년 이상 등 거주 요건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는 국내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영주자격(F-5) 체류자 수는 2002년 6,022명에서 132%증가하여 2006년 13,957명에 이르고 있다. '재외동포(F-4) 사증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2007년 1월 기존 불법체류 다발국가 출신 동포에 한정하여 부과하던 재직증명서□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2) 정주외국인 및 이민자 2세

(1) 정주외국인

법무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제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간 상호조언□협조 및 네트워크 대표를 통해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및 법률□고충상담 등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3월말 현재 4,974명의 결혼이민자가 네트워크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강화하여 지난 05. 9월에는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한 바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05. 3월부터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시 신원보증인의 범위를 한국인배우자□가족이외에 '보증능력이 있는 제 3자'로 확대함으로써 한국인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또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사유로 가족의 신원보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결혼이민자의 혼인파탄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원 판결문이나 병원 진단서 이외에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 확인서'를 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국내 체류 및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시·도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도 2006년에만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실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30개 시군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1,800명에 방문교육도우미 300명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가이드를 발간하여 지원하였다. 법무부에서는 2006년 2월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가이드북」을 제공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년 3월에 「한국문화가이드북」를 보건복지부에는 2006년 12월에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 등의 안내책자를 출간·배포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부처에서 4종(첫걸음, 초급2, 중급) 등의 한국어교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기본적 복지·의료보장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7월부터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 및 자녀를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2006년도에는 총15건 1,500여만 원 상당 무료 진료를 지원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는 총 2,210건, 약37억 8천여만 원의 무료 진료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모·부자 복지법 등을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이민자 2세

이민자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문화화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난 교육부에서는 2006. 5월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6. 6월에는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하고 있고, 2007. 2월에는 교육과정 성취목표에 다문화교육 요소를 반영토록 하였다. 그리고 2006. 12월

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8개 언어)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민자의 자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및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에 외국인이주여성 및 자녀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도□상담 등의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차원에서 이민자 자녀의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교사 간 결연을 맺어 학습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3) 국민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이주민이나 혼혈인에 대한 배타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보편주의에 이의가 없음에도, 개개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해서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국민의 다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 20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작년 10월 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시달하기도 하였다. 교육부에서도 사회□도덕 등 관련 과목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존중을 성취목표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교육 등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를 통해 외국인과 국민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충북제천시에는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제를 추진하였으며, 전남 장흥군의 경우는 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확산하기도 하였다.

4)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단순 노무인력 제도의 안정적 정착, 숙련 기능 인력의 장기체류 허용 등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1)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2005년 9월 영주권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등 외국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나 탁월한 능력 보유자에 대해서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06년 7월부터는 전문 인력의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인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용하였으며, 2006. 7월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직종을 확대하여 회화강의□외국어교실에서 교수□연구□예술홍행 등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첨단기술인력, IT 전문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의 1회 체류기간의 상한선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아울러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체류 편의를 높이고, 보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표 6> 은 06년 12월 말 현재 전문외국인력의 체류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전문외국인력 체류 현황 (단위 : 명, '06. 12월 기준)

총계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24,501	1,159	15,001	2,095	166	351	5,729

(2) 단순 노무인력 제도의 안정적 정착

1992년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갈등 등 사회적 통합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연수제도가 실시된 면이 없지 않다. 2004년도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 고용절차가 복잡하고 해외송출기관의 송출비리가 잔존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8월부터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를 법무부□노동부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것을 단일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해외 송출기관의 비리를 차단할 위해 외국인력 선발□입국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06년 11월에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역

할분담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해외 인력송출기관과 협력업무 대행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이 전담하되, 취업교육□각종 신청 대행 업무는 한국노동재단 및 기존 산업연수제 대행기관(중기협□대한건설□농협□수협)이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기존 산업연수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MOU 체결국가 출신의 산업연수생이 3년 취업 후 재고용된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을 보장토록 하였다.

(3)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체류 허용

외국 단순기능인력에 대하여 장기 취업을 허용할 경우 정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가족을 동반하게 되며, 이들이 출신국의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이민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해외인력에 대해서는 ‘단기 순환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기능인력의 수급 상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숙련 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장기 고용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적극 받아들여, 2007. 5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일정요건을 갖춘 숙련 생산 기능 인력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래 <표 7>는 거주(F-2)자격요건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거주(F-2)자격부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순노무인력으로 국내 총 5년 이상 취업, ②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자격증 취득 또는 일정 임금이상 수령, ③ 생계유지를 위한 자산 보유, ④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소지, ⑤ 품행방정 <p style="text-align: center;">※ 자격증 취득 또는 일정 이상 임금수령자를 “숙련 생산기능인력” 으로 인정</p>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체류 허용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성실한 생활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동기를 감소시키는 물론, 숙련생산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용자의 불법고용 동기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립가능한 자에 대해서만 영주를 허용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갈등 최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화, 우리나라의 기술과 부의 유출 방지 및 세수 확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과 관련하여 정부는 외국인유학생의 유치지원, 외국인유학생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학생의 국내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마련한 유학생 유치종합계획인 「Study Korea 프로젝트」에 따라 2006. 4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복수 재입국허용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는 인문계열의 경우, 우리나라 청년 실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후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수 외국인력의 조기 확보 및 국내 기술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이공계 전공 졸업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취업 허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유학생의 불법이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 3월에는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장에게 유학생관리 담당 직원 지정 및 휴학□제적□행방불명 등 유학생 신분변동 사유 발생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금년 2007. 5월부터는 유학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6) 난민

(1)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및 법령정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구호 등 제반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난민 인정제도 및 법령을 정비해 오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난민인정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난민인정협의회의 정부 및 민간위원의 비율을 7:4 에서 5:5로 조정하였으며, 작년 2월에는 '국적

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난민인정절차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즉,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 법무부 차관)의 전 단계인 난민인정실무협의회(위원장 : 출입국관리국장)를 폐지하여 난민 심사절차를 1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난민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한편, 난민 신청자의 체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여, 작년 12월에는 난민신청자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90일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난민 인정자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1992년 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 후 10년간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였으나, 참여정부(2003. ~ 2007. 5.) 기간동안 난민인정자 60명에 이르는 등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난민 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참여정부 출범이후 난민 인정자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등 선진인권국의 위상에 걸맞은 난민인정 정책을 추진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에서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난민 인정자들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공적인 구호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금년 1월에는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생계수단, 월수입 등 기초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지원시설을 강화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대해 기초생활비를 지급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생계보장,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7) 불법체류외국인

(1) 불법체류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마련

우리나라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자진출국 준비기간부여, 2003년 합법화 조치 등 유화정책 시행,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고충 상담관 지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준비기간이 부족하여 국내체류중 발생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에서는 2006년 1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법무부와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권리침해구제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속되어 보호되고 있는 외국인의 고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2006년 한해만도 11,810건을 처리함으로써, 2002년(2,611건)도 대비 352%가 증가하였다. 이같이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서 보호외국인의 일시해제 93건, 체류허가 23건 등 불법체류외국인을 위한 권익처리가 총153건에 이르는 등 끊임없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의료 혜택의 부여를 통해 인권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그 자녀와 부모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공부하는 학기 중에 부모가 단속된 경우에도 학기를 마치고 나서 출국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피해 등을 당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들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민간),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체류외국인 고충 상담을 활성화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교육 시 인권교육 실시 및 근로감독관 등의 인권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및 보호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 추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방지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를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고용허가제의 시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중에서 자진신고 한 18만4천명을 합법화 조치를 하였으며, 2004. 7월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 등 “불법체류자 종합감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2005-6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자진귀국 프로그램

램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단속으로 인한 동포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향후에는 불법 입국알선, 허위초청 등 불법체류 유발 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인프라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체류의 근원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불법체류자를 과거 체류자격별로 분석하여, 체류자격별로 불법체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언급하였거니와, 2008년부터는 숙련 외국기능인력을 합법적으로 장기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 동기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참여정부의 외국인정책 주요 사항과 정책진단

1. 참여정부의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항

과거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민 허용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제□관리 중심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정책이 종합적이기보다는 단편적인 면이 있었으며, 아울러 정책성과 평가시스템 측면에서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개방화시대에 국제 인적교류의 핵심목표를 ‘한국을 아는 외국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삼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의 이민에 개방성을 부여하고, 또한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외국인처우개선을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을 실현하고, 나아가 외국인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범정부적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정책의 총괄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품질의 종합평가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대상별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사회통합차원에서 외국적동포, 정주외국인과 이민자 2세, 국민으로, 국가경쟁력제고 측면에서 전문인력, 단순노무인력, 외국인유학생으로, 인권측면에서 난민과 불법체류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적동포의 경우 중국 및 구소련동포에 대한 차별해소로 한민족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주외국인과 이민자2세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적응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통합정책을 개발하여 왔다.

한편, 전문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른 나라 대신 한국을 선택해야 할 만큼 한국사회가 전문 외국 인력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도록 법과 정책을 정비해 왔으며, 저숙련 외국 인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영주를 불허했던 과거와는 달리 숙련 생산 기능 인력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자립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영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유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동시에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유학생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인권측면에서 난민에 대해서는 난민인정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불법체류를 차단하고, 인권옹호 정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2. 외국인정책의 진단

1) 긍정적인 면

(1)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전통적으로 외국인정책이 ‘출입국관리’라는 성격이 강하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외국인정책과 함께 장기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 정착과 주류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였다. 참여정부가 세계화로 인한 미래발전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⁷⁾

7) 기존 출입국관리 부분은 혁신을 통해 국제공항협회 공항평가(ASQ) 출입국심사 부분 '05년 4/4분기 이후 연속 세계 1위 차지 및 '07년 유엔 공공 행정상을 수상함.

(2) 개방과 인권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과거 외국인정책이 통제와 관리중심이었다면, 참여정부 들어서 외국인정책의 기초를 '개방'과 '인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개방과 인권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3) 외국인정책 추진 근거마련

2006년 대통령주재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를 외국인정책 총괄부처로 지정하였으며, 법무부가 재한외국인정책을 총괄하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어 지난 7.18.시행하게 됨으로써 다문화사회로의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법을 근거로 외국인정책 총괄기구가 설치됨으로써, 외국인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 미흡한 면

(1)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존재

외국인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의식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잔존해 있으며, 이는 분단국가의 폐쇄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신화라는 혈통주의로 인해 암묵적인 차별과 배제의 행태가 양산되어 왔다고 보인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졌던 불법체류자의 감소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2) 다문화포용 사회풍토 조성 미흡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의 조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절차, 규범, 가치가 안정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화, 제도화, 일상화, 내면화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면⁸⁾, 한국사회가 개방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인류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내면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기반으로 공통의 규칙과 시스템 하에서 외국인과 공동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책평가 시스템 미흡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시 도출된 문제점, 미진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책의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정책의 과제별 성과지표 등 객관적 추진실적 평가시스템이 점차 구축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인다.

V. 향후 외국인정책의 추진방향

우리나라에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외국인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과 이에 따른 아시아계 여성들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동포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며, 비즈니스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선진 외국인들의 국내진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바야흐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거니와, 8월말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연도별 기본계획에는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리고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그리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소관 부처와 외국인정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협의 가운데 있으므로 본 원고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8)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현상, 이론, 성찰”. 나남.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다문화 포용력 강화, 둘째, 외국인 유입의 정책적 관리, 셋째, 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 넷째,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개발이다.

1.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 체계 확립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정책의 의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있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영역을 망라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8조를 보면,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기능을 보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 8조 4항에서는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을 두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같이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 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외국인정책이 통합적 정책 개념보다는 과거부터 각 부처 단위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정책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간 더욱 긴밀하게 논의를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합과 조정을 통한 정책의 중복□충돌의 방지와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책의 총괄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실무위원회 활성화, 총괄기능 강화, 정책평가체계 마련 및 정책 전달체계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서 정책을 통합하고 총괄□조정해 나갈 것으로써 총괄적인 추진과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2. 외국인 유입의 정책적 관리

국가 간,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국가 간 물품 및 서비스의 이동이 용이해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의 국제이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을 전후로 이민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한□중 수교와 함께 경제, 사회발전 등의 영향으로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의 수보다 오히려 국내 유입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 동남아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일을 주로 떠맡아 수행하였으며, 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노동인력의 수급을 위해 ‘산업연수제도’가 적극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한 불법체류□송출비리□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결국 산업연수제도의 대안으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제, 전문인력취업제도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재를 어떻게 유치해 나갈 것인가”하는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8년에 시행할 계획인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 중간에 위치한 숙련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선별적 영주를 허용하는 정책도 바로 세계 각 나라의 인력유치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 및 세수 확대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전문인력과 투자자 유치확대 등 외국인의 유입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될 것이라고 본다.

3. 귀화 신청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운영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초기단계로서, 전체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이 약 2%정도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 나라들도 해당 국가가 처한 환경과 국민적 정서와의 조화를 맞추어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통합이 “외국인이 그 특성과 상관없이 단일한 사회 체계 내에서 서로의 문화□사상□가치□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⁹⁾고 볼 때, 우리나라도 국민과 외국인들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8> 국제결혼 증가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총 결혼 건수	399,312	398,494	334,030	316,375	332,752
국제결혼 건수	4,710	13,494	12,319	43,121	39,690
국제결혼 비율	1.2	3.4	3.7	13.6	11.9

자료: 통계청, 2007.

최근 들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등 우리나라로 귀화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촌의 남녀성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출신국가가 현재 중국□베트남 중심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동남아구각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귀화의 경우 1회 필기시험으로 귀화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 간이귀화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반귀화의 경우, 예상문제집을 단순 암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자의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면제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 이해 등 배경지식 및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갖추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언어는 물론 사회문화 및 풍습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이수제로 대체□전환함으로써 귀화자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하다.

9) 윤인진. 2006.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정책”

4. 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

그동안 동포정책이 외국인력관리 차원에서 행해지는 ‘취업관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소요 인력을 확보하고, 재외동포의 포용 및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거시적으로 재외동포문제에 접근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제약으로 인해 자유 방문과 취업에 제한이 가해졌던 동포들에게 방문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사실상 자유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권익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동포간 화합과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위해 외국적동포의 고국 방문 및 취업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민의 다문화 포용력 강화

서울의 길거리나 웬만한 식당에만 가도 피부와 눈빛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마주치게 된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다른 문화와 관습에 얼마나 관대할 수 있는가가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0년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겪은 이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최대의 화두는 국제화, 세계화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의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벽을 걷어내고 다른 문명과 교류하지 않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같은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을 포용하는 공감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위의 외국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4장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의 주간을 기점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 이해와 발전적 포

용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우리 사회의 외국인들과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행사 등도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보다도 외국인 정책 담당공무원이나 국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사회라는 ‘용광로’가 많은 문화와 문명을 녹이고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관건이 바로 국민의식과 우리 사회의 외국인에 대해 열린 풍토이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때일의 일상적인 사건에 접하면서 우리는 양자택일의 결정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은 손해를 극복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단호히 진행하든지 택해야 한다.”

— 멜저 (Melzer), 와인버거 (Weinberger), 짐머 (Zimmer) —

우리는 국가, 그리고 단체, 개인 간의 상호 연관성이 깊어지고,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세계를 점점 더 밀집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섬에서와 같이 더 이상 혼자서 은자(隱者)로 숨어 살 수는 없게 되었다.

세계에서 다문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불과 30년 전의 일이다. 서구 여러 나라들은 그 짧은 기간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국의 역사와 환경에 맞는 이념과 정책으로 발전시켜 왔다. 한 가지의 이념이나 제도가 도입되어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각자의 역사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접목되기까지는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의 인식과 제도도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무부도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 외국인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법적 제도적 준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외국인정책 추진의 근거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제정되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우리나라가 세계의 열린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인종□다문화를 포용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는 바로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보편적 원리와 우리의 역사와 환경에 맞는 한국적 사회통합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5장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 안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박 천 응 ((사)국경없는 마을 이사장)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문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을 차별적 상황에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우리 사회는 인종적, 민족적으로 그리고 이주민 집단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내국인과 이주민들이,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적 의식적인 실천이 곧 다문화 운동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 모델'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의 한 사례로서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소개 하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 형성을 추동하는 다섯 가지 흐름의 축이 있다. '저 출산□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유입,'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다변화 전략' '포스트 모더니즘,' '인종차별철폐 인권운동' 이다. 다문화 사회 형성을 추동하는 흐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주민의 유입의 측면이다. 선진국의 저 출산 고령화가 국제적인 다문화 사회 형성을 가속화 시킨다. 2006년 6월 코피 아난 UN 전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이주의 새 시대를 위한 초기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1억 9천 1백만 여명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 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1990년보다 21% 증가한 수치이다. 41개 국가에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는 인구의 20% 이상이 이민자이며, 이민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뿐 아니라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이주하며 이민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선진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따른 국제 노동력의 이주가 다문화 사회를 추동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속과 함께 향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저개발국의 낮은 임금에 의존한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는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은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하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이주노동의 도입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산업의 주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에 따른 내국인의 빈곤문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한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등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해소해 나간다. 그러나 제3세계출신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에서 아예 제외 되어있다. 이들 제3세계출신 이주민 들은 국내에서 내국인 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또 하나의 새로운 빈곤층’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를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난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다문화 사회를 추동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학문의 제 영역 등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 문자시대에서 영상시대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성 중심에서 감성중심으로, 논리적 심사숙고에서 감각적 판단으로, 동질 지향적 가치관에서 이질 지향적 가치관으로, 자기절제에서 자기표현으로, 억제된 감성에서 해방된 감성으로 정적 문화의 축에서 동적 문화의 추구로, 소유 욕구에서 소비 욕구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상대주의적이고 불확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문학과 미술 등 예술 전반에 걸쳐 개방성, 해체, 반항, 변용, 다원성, 이단의 정신 등의 불확정적인 이론들이 보편화 된다. 장르가 붕괴되고 혼합되는 양상과, 고급문화와 본격 모더니즘에 대한 적대감이 역력히 드러나며 대중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직접 행위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행위로 연출되기를 기대한다. 예술은 행위를 통하여 시간, 공간, 또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완성된다. 서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 체계인 진리, 주체, 초월적 이성 등을 거부하고 규범과 경전에 대한 도전은 엘리트주의, 남성우선주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대중의 참여

와 비평을 유도하며, 대중문화, 여성문화, 민중미술, 제3세계의 예술, 소수민족 예술, 노동자 예술, 이방인의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의 대중 예술이 주류를 이루게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내재하는 한계와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경향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으로서 다문화 사회를 추동한다.

넷째, 시장의 세계화가 다문화 사회를 추동한다. 본격적인 세계화는 1980년 초 영국과 미국이 '탈규제화 정책'을 기본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세계화의 주요원리는 금융시장의 탈규제화,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와 안보 전략이다. 세계화는 경제 분야의 브레튼우즈 기구들(IMF, IBRD), 세계무역 기구(WTO), 선진서방 7개국(G7) 등이 세계적인 시장통합을 지향하는 사실상의 세계화 정부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과정이 급진전되면서 선진국의 기업조직들은 노동비용과 생산비용이 저렴한 후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정보통신 기술을 생산에 접목함으로써 기업의 재배치, 기업규모의 감축과 계층축소, 자동화 등의 노력을 더욱 철저하게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지식경제, 정보사회의 도래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기술 혁신, 조직구조 혁신, 조직전략 혁신 등에 보다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불확정성(Chaos) 과학, 포스트 모던적 문화 조류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의 다각화와 지속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경영적 측면에서 융합전략(Convergence)을 강조한다. 시장의 세계화는 고객의 요구와 고객의 소비의 문화 창출을 위한 세계화 문화를 추동한다.¹⁾

다섯째, 인종차별철폐 인권운동이 다문화 사회 형성을 추동한다. 인종차별철폐 인권운동은 주류사회의 지배 문화에 대항하여 소수자의 사회 참여와 주체성 형성을 추구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과 동일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관장하며 자유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결정들은 사회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자유권으로서의 문화권이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지킬 권리라면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은 인간의 사회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요청되는 인권의 개념이라고 할

1) 세계화 문화의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념을 지칭하는 '다보스 문화'(The Dabos Culture)로서 전 세계의 정부관리, 은행가, 기업인, 정치인, 학자, 지식인, 언론인들이 모인 연례 세계경제포럼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수 있겠다. 나아가 문화권의 기반으로 제기되는 문화 다양성은 ‘차이로서의 문화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문화 다양성은 ‘차이로서의 문화권’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의 독점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를 추구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주동은 인종차별철폐 인권운동과 연계 된다.

그러나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차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 오히려,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시민사회 단체들 조차 단일 민족주의와 내국인 중심의 시민권적 권리주장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다문화를 말하면서 이주민을 다문화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다문화와 이주민 사업을 자신의 의제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배타성의 외연화이다. 우리는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민관, 시민사회 단체들이 상호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시민사회 진영과 학계에서는 21세기 다문화 사회에 대한 미래 비전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험되어져야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고에서는 국내에서 다문화 운동의 실천을 어떻게 전개하여 왔는지에 대한 소개이다. 다문화 운동의 실천으로서 이 발표는 주로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실천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역 다문화 운동으로서 실천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적 이론 작업으로서의 실천이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까지 외국인의 다수는 이주노동자였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적 다문화 현실을 설명 하는데 이주노동자 만은 한계가 왔다.²⁾ 한국사회의 다문화 적인 주체들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동포(중국, 구소련 등),

2) 다문화 사회의 주체들을 이주민으로 부르는 법률적 근거도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 2월부터 지역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해석상 외국인도 주민이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에 대하여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따라서 다문화 사회를 선교해 나가는 다양한 이주 주체들을 이주민이라 부른다.

새터민, 난민 그리고 코시안³⁾까지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주노동자’만으로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선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다문화 사회의 이들 구성원들을 ‘이주민(Immigra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그동안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주노동자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지위만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지위, 나아가 글로벌한 세계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국경없는 시민권’의 재구성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적 다문화 주의와 다문화 운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운동의 실천을 소개한다. II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차별적 갈등과 다문화 운동에 대하여, III장에서는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에 대하여 국경없는 시민권, 국경없는 마을 형성 이론, 다문화 교육 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IV장에서는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실천 과정을 3기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생략 하도록 한다.

II. 다문화 사회 차별적 갈등과 다문화 운동

1.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한 사회의 갈등의 원인은 주어진 사회의 사회적 욕구가 관련된다. 사회적 욕구는 주어진 사회체제의 구조적 차원과 역사적 맥락, 정서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 사회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간의 갈등은 그 나라와 지역 사회가 서로 다른 나라 출신 이주민 출신들에 대하여 상대의 존중, 역할과 기능의 인정, 참여의 개방이 안정적인 사전 조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하여 그 나라 주류 국민이 배제 혹은 활용의 입장에 설 때 갈등이 노골화 된다. 다문화 한국사회는 신규 노동력의 유입, 저 출산에

3) 코시안(Kosian)은 Korean과 Asian을 합친 말이다. 코시안은 민족 중심주의적 한국인의 의미를 넘어선다. 코시안(Kosian)은 단순한 단어의 결합 (Korean+Asian)을 넘어 ‘평등 됨(=)’과 ‘하나 됨(+)’의 철학과 인권의 사회적 실천(Praxis)의 뜻을 가지고 있다. 코시안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사용한다. (1)국제결혼 코시안 (2) 이주 코시안 (3) 코시안 다문화 가족 등이다. 현재 코시안은 국제결혼 자녀, 이주 아동을 주로 지칭하여 사용한다. 코시안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코시안 다문화 가족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되는 사회 형성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따른 결혼 이민자의 증가, 2세의 출생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간의 갈등이 점차 축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한국사회의 갈등 유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출 되고 있다.

1) 노동력 유입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차별 갈등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2020년에는 노동인력이 최대 4백 80만 명 부족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⁴⁾ 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한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2015년에는 63만 명, 2020년에는 152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이 연평균 4%로 낮은 성장을 할 경우에도, 2020년에는 여전히 8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 대상 국가는 현재 총 11개국이다. 2006년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 스리랑카, 등 6개국과 MOU를 체결했으며 2007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5개국이 추가로 MOU가 체결되어 총 11개국이 되었다. 2004년 8월 이후부터 2006년 12월까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원은 총 1,462,767명이며, 2007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이주노동자는 109,600명이다.

선진국은 정치적, 법적, 통제력이 용이하고 값싼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정치적 통제를 가함으로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 교섭권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시킨다. 선진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 확보와 거세어진 자국의 노동시장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공동 전략으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진다. 자본 측은 노동의 유연화 전략으로서 국제 이주노동의 확대를 꾀한다. 자본에 의한 자본의 재구조화는 노동력의 재구조화를 수반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국제 이주는 신분이 불안한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주민들의 노동통제와 시장의 참여에 따른 소득분배와 사회 복지적 배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세계화의 이주민 통제 기제가 되고 있다(박천웅 2006a: 162-164). 이주노동자 가운데 장기 체류하며 불법체류자로 이미 한국에서 결혼 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 신분의 불안정성,

4) 경향신문 2006년 10월 6일자 참조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 등의 요소들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갈등의 복병이 되고 있다.

2)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신 빈곤층 형성에 따른 갈등

한국사회가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의 대책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인구 구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95년 269,641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6년도 910,149명으로 지난 10년이 지나면서 22.4%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국내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1.88%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08%이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3천만 명, 200년 후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든다. 가까운 2050년을 기준으로 한 적정 인구를 보더라도 매년 20만 명이 새로 유입이 되어야 한국사회가 경제적, 복지적인 적정 인구수인 5천만 명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 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 곧 이혼의 급증과 신 빈곤층 형성 등이다. 첫째, 국제결혼이 늘어난 만큼 이혼도 늘어나고 있다. 내국인끼리의 결혼 이혼율이 37.3%에 비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5.8%이다. 그러나 이혼율이 매우 급증하고 있다. 2005년 2002건이 이혼을 하였고, 2006년에는 6,280건으로서 2005년에 비하여 46.8%가 증가 하였다. 이혼 사유의 96.3%가 언어소통, 짧은 동거, 의치증, 알콜중독, 경제적 무능력 등이다. 둘째 결혼 이민자 가정의 빈곤 상황이다. 결혼 이민자의 실태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2005)이라는 연구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소득은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렀다.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도 15.5%에 달한다.

3) 코시안 아동의 증가와 제3의 정체성 갈등

국제결혼 가정의 코시안과 이주 가정의 코시안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코시안 가족의 강점을 살려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가질 정체성의 문제와도 밀접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한국인이 될 것만을 강요한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 출신인 경우 ‘한국인’이라는 것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으로는 코시안 아동들의 정체성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 외국인 출신의 부모님의 나라를 부정, 멸시, 단절 시키는 또 다른 문화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외국인 출신의 신분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주 가정의 코시안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이 고향인 이 아이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이들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프랑스 사태와 같은 사례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혈통주의적인 입장에서 국적이 아닌 출생지역을 중심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난민의 자녀인 경우 태어나자마자 무국적자가 된다. 법적 모호를 받지 못하는 코시안 아이들이 계속 해서 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에 예상치 못한 사회적 갈등이 찾아 올 것이다.

〈표1〉 연도별 국제결혼 가정 코시안 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3 분만건수/2001 결혼건수*100	2004 분만건수/2002 결혼건수*100	2005 분만건수/2003 결혼건수*100	2003-2005분만 건수/2001-200 3결혼건수*100
계	39	38	23	31.1
중 국	19	21	12	15.9
베트남	170	126	76	94.2
일 본	70	61	36	54.1
필리핀	152	76	57	85.0
몽 골	50	41	36	39.8
우즈베키스탄	112	44	22	39.6
미 국	48	52	36	44.7
태 국	99	45	39	54.2
기 타	57	62	41	5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10.

〈표2〉 이주가정 코시안 아동 현황

연도 \ 연령	합 계	16세 미만	16~20세
2003년	5,440	3,850	1,590
2004년	6,514	4,502	2,012
2005년	6,213	4,670	1,543
2006년	6,814	5,015	1,799

자료: 법무부. 2006.12.

2. 차별극복으로서 다문화 운동의 이해

1)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한국의 단일민족 문화라는 것도 문화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주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민족문화라고 주장할 만한 변변한 민족 문화 조차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하고 지난 세기동안 단일민족임을 강조한다. 한국적 단일민족문화는 문화 자체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다문화란 무엇이고, 단일문화와 다문화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다수자와 소수자가 공동으로 다문화라고 이야기 하는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1)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교

단일문화 주의와 다문화 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단일문화주의는 단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배타적이 되고, 다문화 주의는 다양성의 하나로서 소수자 정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분리주의가 될 수 있다. 첫째, 단일문화주의가 단일성을 강조하다보면 배타적이 된다. 단일문화가 다문화에 대하여 개방성 혹은 포용성을 가진다 하여도 결국 단일 문화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동화주의로 정책이 표현된다. 현재 국내의 다문화 주의는 민족문화 중심주의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타주의에서 동화주의로 정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일문화주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소수자 문화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소수자 문화를 차별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둘째,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분리주의가 된다. 다문화 주의는 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소수자가 다수자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자는 소수자를 동화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자기 정체성 강화는 소수자 문화와 종교만을 강화 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자가 지나치게 자기 정체성만을 강화 시켜 나간다면 이는 분리주의로 발전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수자들의 문화 정체성 강화는 소수자가 다수자 문화와 문화적 충돌이 아닌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화들이 상호존중과 정체성을 가지고 조화로운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공통의 과제를 갖는다.

<표3>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 주의의 비교

	단일문화주의	다문화주의
갈등 형성	배타주의	분리주의
통합 과제	동화추구	다양성 추구

(2) 다수자와 소수자 관점의 다문화 차이점

첫째, 다수자와 소수자가 생각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다수자는 단일 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를 사고하고, 소수자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문화를 생각한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모두 자신들의 문화적 기초를 기반으로 한다. 즉 다문화 주의는 문화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둘째, 다수자와 소수자가 생각하는 사회 통합에도 차이가 있다. 단일문화 중심의 다문화는 기능적 사고로서 소수자를 동질화를 중심에 두고 사회통합을 정책화한다. 그러나 다문화 중심의 전략적 사고는 소수자가 차별화를 통한 자신들의 주체형성을 통한 실체의 인정을 추구한다. 단일문화 중심의 다문화 사고는 동질화 중심의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단일문화 중심의 다문화 사고는 다수자 문화를 향한 소수자의 적응에 초점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도로 단일 문화 형성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소수자는 소수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참여하는 차별화 전략을 갖는다. 단일문화는 하나의 문화를 추구하지만, 소수자의 다문화는 주류의 단일문화, 자신들

의 출신 국 문화, 이 둘의 결합 혹은 제3의 정체성 문화 모두 3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소수자가 생각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사고가 다양 할 수밖에 없다.

셋째, 다수자와 소수자가 생각하는 문화적 개방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다. 문화적 개방성은 단일문화 주의 든 다문화 주의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가치의 창조에 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은 문화적 개방이 주어진 조건의 손익을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쟁력에 경쟁관계이면 차별적이 되고, 보완적이 되면 시장 형이 된다. 자유주의는 현재의 손익이 다문화 적인 미래의 공동체 유형을 결정 한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등주의적 시각은 다문화의 주장이 사회적 가치 창조를 기반으로 평등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차별화가 용인된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를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소수자의 다문화주의는 자신들의 안전의 요구가 보장받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한다.

<표4>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다문화 정책의 차이

	자유주의	평등주의
사회적 가치	시장주의	공동체주의
자기 동력	경쟁과 배제	인권과 참여

2) 차별극복을 위한 다문화 주의의 이해

다문화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 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철폐 민권운동에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출발 한다. 인종차별철폐 민권운동의 근거는 세계인권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나아가 유엔은 소수자와 인종 차별에 대하여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의무를 선언한다. 인종차별철폐 인권운동에서 출발한 다문화 주의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신,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상호 공존 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 문화,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으로서 신 사회운동 이론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현실은 다문화 주의의 추구 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추구하는 가치의 내용과 현실이 다를 때, 사회적 가치의 형성을 현실화 시키려는 노력이 목적의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다문화 운동의 출발이 된다.

(1) 부모가 비록 외국인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을 ‘한국인’이라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은 ‘너는 한국인의 피가 없으니 한국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2)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민 여성이 취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한국인’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필리핀 출신의 이 여인은 그냥 필리핀이었다. 그 여성은 회사에서 일자리도 못 얻고 쫓겨났다.

(3)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인만으로 강요당한다. 외국인 출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라는 철저히 배척당한다. 오직 한국인으로만 살아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외국인 출신의 부모의 나라를 부정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태생에 대하여 자존감이 없거나 왜곡 시킨다.

3) 다문화 운동

(1) 다문화 운동의 비전과 다문화적 가치

다문화 운동은 ‘단순히 다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 시키다.’는 차원에서 운동이다. 다문화 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목표는 ‘행복’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의 담론 역시 최종 목적지는 ‘행복한 사회 형성’에 있다. 행복한 사회의 형성을 다른 표현으로 ‘공동체’라 한다. 오늘 우리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는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관용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성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문화 운동에서 다문화적 가치는 무엇인가? 다문화는 다수자의 소수자 문화

차별에서 문제제기 된다. 다문화의 문제 핵심은 다수자의 인식의 변화에 있다.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다문화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 있다. 다문화는 배타적 차이와 적대적 다름의 문제를 다룬다. 다문화는 차이와 다양성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이주민이 한국인 과 같은 권리를 누리려 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한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주민은 국적 국민이 되어도 한국인은 될 수 없다.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별 문화의 이중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같음을 같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차별구조로서 동일인간의 거부이다. 둘째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수구조의 폭력으로서 제3의 정체성의 거부이다. 이러한 이중문화의 차별 구조는 장미는 무조건 빨간 장미만 존재하고 나머지 색의장미는 모두 비정상으로 보는 우리의 고정 관념과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운동은 공급자인 다수자 중심의 동질화를 향한 정책과 교육이 아니다. 다문화운동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겨내는 운동에서 출발 한다. 다문화 운동은 수요자인 소수자 요구 반영을 통한 자기 삶의 선택과 개방이다.

(2) 다문화 운동의 내용

① 다문화 운동은 '다름과 차이'의 문제를 다룬다.

다름과 차이는 다수자 문화와 관계하여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된다. 첫째, '비적대적 다름'으로서 다름과 차이가 다수자 문화와 관계에서 '조화'를 이룬다. 비적대적 다름으로서의 조화는 다수자 문화와 소수자 문화가 상호 '친숙함'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친숙함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수자 문화가 소수자 문화에 대하여 잦은 접촉점 형성, 비경쟁적 관계, 상생적 이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적대적 다름'으로서 다름과 차이가 다수자 문화와 관계하여 '배타'를 이룬다. 적대적 다름의 경계는 다수자 문화와 소수자 문화와 어울림을 거절하는 '경계함'을 기초로 한다. 경계함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수자 문화가 소수문화에 대하여 낮 설음, 경쟁적 관계, 개별적 이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의 평등성의 문제는 '다름과 차이'중 적대적 다름의 문제를 다룬다. 다문화의 평등성은 다수자 문화가 소수자 문화에 대한 적대적 다름을 우리 사회가 비적대적 다름의 형성을 통하여 조화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행동'이다. 여기서 사회적 행동이 갖는 의미는 가치관의 변화, 제도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동을 통한 다수자 문화와 소수자 문화의 조화로움이란 소수자 문화가 다수자의 문화로의 융합이 아니다. 다수자의 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화는 소수자 문화의 상대성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을, 소수자의 문화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다수자의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다수자와 소수자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에 있다. 따라서 다문화는 차이의 어울림을 통한 제3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문화적 사고이다.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수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통해서이다. 소수자들은 국민은 아니더라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그 집단의 특수한 언어, 종교, 문화 등을 유지 한다.

② 다문화 운동은 ‘차별화와 다양성’의 문제를 다룬다.

다문화는 창조의 문화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문화는 차별화 문화이다. 다문화는 동질 문화를 넘어 차이의 문화를 통한 제3의 문화를 창조한다. 자유권으로서의 문화권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지킬 권리이다. 문화권의 기반으로 제기되는 문화 다양성은 ‘차이로서의 문화권’이다. 다문화는 기존의 서로 다른 문화를 차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장점과 강점을 살려 기회로 삼는 차별화 문화이다. 차별화로서 다문화는 인간의 새로운 삶의 질을 요구한다.

다문화 운동은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문화적 다양성은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집단의 권리를 통한 문화적 차이, 특수성의 보호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강화한다. 문화적 다양성의 논쟁은 주로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세 단계를 거쳐 전개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인권 선언이 나온 1948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1976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76년부터 WTO 세계경제질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로 주로 제3세계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유산,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세 번째 단계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로,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의 독점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문화단체들의 연대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차별문화 극복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1) 지역사회의 차별 문화 극복의 중요성

이주노동자들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절규하는 모

습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러한 절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이주노동자의 이름은 “야, 임마!”로 통한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흔히 듣는 말은 “빨리 빨리!”이다. “빨리 빨리!”는 노동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값싼 노동력 혹은 기계로 보는 차별의 상징 언어이다.

국경을 넘어 노동하는 사람들은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인권 침해와 문화적 차별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에 따른 ‘지구사회 시민권(Global Society Civil Right)’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차별, 통제, 착취,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차별의 대상이고, 정치적으로는 통제의 대상이며, 경제적으로는 착취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는 배제의 대상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차별문화는 문제 제기만으로 고쳐나갈 수 없다. 극복을 시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실천이 요청된다.

2) 차별문화 극복 대안으로서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다문화 운동과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문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을 위한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인식의 변화와 소수자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소수자는 자신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주민으로서 당당하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는 모두는 서로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적 사회 참여와 사회적 통합 형성’을 통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다문화 운동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으로 발전 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기능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최일섭과 류진석(2000: 21-24)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능주의 관점과 갈등주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기능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다수의 상호 연관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부분들, 즉 경제, 종교, 가족 등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각 부분들은 전체가 성공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

(1) 기능주의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에 입각하면,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기능은 생산□분배□소비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모든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주요기능에 대해서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최일섭□류진석, 2000: 10-13에서 재인용).

① 생산□분배□소비의 기능: 지역사회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기능은 주로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를 위시한 각종 전문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도 이러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 사회화의 기능: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양태를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원들은 다른 사회의 성원들과 구별되는 생활양식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③ 사회통제: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법, 도덕, 규칙 등의 규범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결여된 경우 사회질서가 파괴되어 비행과 범죄가 만연되는 사회 해체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일차적인 기관은 정부로서, 정부는 경찰력과 사법권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집행하는 강제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다른 여러 사회조직인 가정, 학교, 종교기관과 사회기관들도 이러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④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사회단위 조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특정제도의 구성원이나 전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충성하여야 하며, 사회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결속력과 사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화의 기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수단이고, 사회통제의 기능이 사람들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피에르(Jean-Pierre)는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참여'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제반활동에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종교제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기

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 내는 사회조직으로서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을 들 수 있다.

⑤ 상부상조의 기능: 개인과 가정은 누구나 질병, 사망, 실업, 사고 등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또 경제적 제도의 부적절한 운용에 의해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나 오늘날의 후진사회에서 상부상조의 기능은 가족과 친척, 동네 사람들, 친목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일차적인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으나.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2) 갈등 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의 유지와 균형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변화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권력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파악하고, 각 하위체계들 간의 조절, 조정,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지만, 실제로 체계단위들 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 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내의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적 자원, 권력, 권위 등이 불평등한 배분관계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동에 관심을 갖는다. 코울먼(Coleman)의 경우 지역사회 갈등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권력이나 권위로 인한 갈등, 문화적 가치 및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 연유한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 코울먼(Cole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갈등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권력이나 권위로 인한 갈등, 문화적 가치 및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 연유한다. 둘째, 지역사회갈등의 역동성 측면에서 보면, 예컨대 쓰레기 수거문제와 같은 주민과 정부 간의 특정쟁점에서 일반적인 쟁점이 제기되거나, 특정쟁점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반대자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구조에 대한 갈등의 영향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조직 간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넷째,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들 및 지역사회조직들은 갈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 주의적 관점에 입각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나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갈등의 주요소재인 권력, 경제적 자원, 권위 등의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 사회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사회 통합적 관점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는 기능 구조적인 면만도 갈등구조면만도 아니다.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전제로 할 때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갈등 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내의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관계를 통해 지역의 변동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체계라는 것은 사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이다. 사회체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이기 때문이다. 변동에 관심을 갖는 갈등구조 역시 사람관계에 중심이 있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관점의 핵심이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관점은 지역의 갈등 구조를 상호협력구조로 전환하여 지역사회가 열린 구조로서 다양성과 평등,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추구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상호협력적인 태도와 사회적 통합성을 통하여 상호의 이익과 필요를 채워주는 공존과 상호협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기능 구조적인 측면과 갈등 구조적인 측면의 통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 주의적 관점의 단순 결합이 아닌 상호성을 살려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III.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1. 다문화 사회의 국경없는 시민권

1) 국경없는 시민권 논의 계기

지난 2000년 안산이주민센터 7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주제를 '이주노동자와 시민권'으로 정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민으로서의 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체류자격의 문제였다. 체류자격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주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주민으로서의 시민권은 불가능 한가?'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다(박천웅, 2006a: 129-158).

아직 국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이주노동자의 '국경없는 시민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막상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경없는 시민권(이주노동자)'의 주제가 공론화 되지 못한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생각보다 자료도 부족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문제에 대하여 처음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는 사고의 한계와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 준비 과정 자체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다 보니 '국경없는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검토 과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은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해 줄만한 전공자가 없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며 준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이주민으로서 '시민권'이라는 부분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에게 '국경없는 시민권'의 문제가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국경없는 시민권 논의는 다소 '돌발적이지 않나?'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 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에 시민권에 대한 기존 논의에 이의를 제기로 출발하였다. 학계에서도 시민사회 단체에서조차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을 '시민'으로 보지 않고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담론에 대하여 오히려 '보수적이다'는 것이다. 각 나라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와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사례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실천적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소수자에 대한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여론의 환기에 있었다.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이 전제되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서 이미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경없는 시민권'의 논의를 통하여 이주 노동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다운 이웃이며 주민이고, 시민으로서 보는 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 한국사회의 경계의 확대를 피하면서도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통제와 차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한국사회 영역의 국제적 확대라는 취지에서 해외동포지위의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노동권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또는 감시, 통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문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추동한 것이었다.

2) 국경없는 시민권의 주장 근거

국경없는 시민권 확대 요구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은 한국 시장 경제의 참여자이다. 시장의 자유경쟁과 공정분배의 실현은 사회의 모든 집단이 시장경제에 충분히 참여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 동안의 국내 이주민 정책은 한정된 자원의 분배로부터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생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서 경제적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회적 존재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1) 이주노동자들도 시민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장경제하에서의 일차적 사회정의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의 보장의 전체 조건으로서 기본생활과 일정수준의 교육, 보건, 주거의 제공이 보편적인 시민권의 원리로 요구된다.

(2)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란 정주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주노동자는 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 인정받는 거주인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의 국제화 된 지금의 시민권이란 단순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가 '체류'라는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상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은 체류신분의 보장을 통한 한국사회 일원이 되도록 받아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3)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노동의 국제화 시대의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은 자유, 평등, 참여로 요약되는 인권의 이념과 재산과 생명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 확대 되어야 한다. 시민권은 국적,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및 관행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국을 떠난 이주노동자는 타국에서 신분의 불안정 문제로 노동권

및 시민권이 박탈을 강제 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지역 사회의 정착을 돕고,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3) 국경없는 시민권의 내용

국경없는 시민권은 영토적 개념을 뛰어넘는다. 국경없는 시민권은 국민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지고 지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경없는 시민권은 체류 및 정착에 따른 일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 인정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구 시민사회는 '국경없는 시민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국경없는 시민권 확보가 처음부터 이루어지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호 열린 마음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경없는 시민권'획득은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주장이 무리한 요구이거나 시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획득 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

시민권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증의 소유 개념 이상이다. 국경없는 시민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 인정받도록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경없는 시민권은 장기체류자의 합법적인 체류보장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국경없는 시민권 공론화의 일차적 과제는 한국출생 아동 및 이주노동자 미성년 아동 및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권 확대의 전 단계로서 한국출생 아동 및 이주노동자 미성년 아동 및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 부여는 정착을 돕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표 5> 국경없는 시민권의 내용

국경없는 시민권	국경없는 시민권 확보를 위한 과도기적 내용
시민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출생 영아에게 국적권 부여 - 이주민 미성년자에게 영주권 허용 -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허용 - 이주노동자 변호사제 도입 -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민족교육, 다문화 교육
정치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주민으로서의 권리 -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 확대 - 지방자치 내 이주민 위원회의의 설치 - 이주민 자치조직의 지원 - 이주민 주민등록증 발급
사회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체류 숙련 이주노동자 영주권 제도 도입 - 2중 차별인 불법체류자 벌금제도의 철폐 - 송출비리 근절, 사실상 노동착취 형 노예 노동의 금지 - 사회복지제도의 이주민에게 전면개방 및 전문 복지 시설의 확충

4) 국경없는 시민권을 넘어선 공동체 사회 구상

국경없는 시민권 형성은 단순히 국가 국민이 되는 것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 형성에 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공동체는 때로는 가족, 마을, 민족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회생활 양식이다. 인류의 진보의 역사는 공동체성의 회복의 역사라 보겠다. 다만 규모가 국가적이냐, 세계적이냐 아니면 지역적 단위인가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1) 다문화 공동체의 구상

계획 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는 글자 그대로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만든 공동체를 뜻한다. 공동체의 형태와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원형은 어디까지나 ‘마을 공동체’이다. 에코 빌리지(Eco Village)는 구미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계획 공동체 또는 생태 공동체와 별 차이가 없다. 한국의 생태 마을은 기존 마을을 생태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비하여 구미의 에코 빌리지는 계획 공동체에 가깝다. 뉴에이지 공동체는 일원론, 신성의 내면화,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추구한다. 무정부주의 전통을 따르는 아나키스트 공동체와 도시의 저소득층 사이에 널리 행해지는 공동 주거 운동(Co Housing) 그리고 특정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생태 공동체(Eco Community)들이 있다.

지구 공동체(Earth Community)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가이아 이론과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물 종(種)과 지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행성 공동체(Planetary Community)는 지구 공동체를 행성 차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에 대한 '우주적 자각'을 전제로 한다. '나'는 우주 안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우주적 공동체를 이룬다고 본다. 여기서는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판단하는 점성술까지 도입한다. 이 밖에도 공동체 현상은 매우 다양하고 부르는 이름과 정의만도 94가지에 이른다(McLaughlin□Davidson, 1985: 10-20).

18, 19세기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반감을 가진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공동체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공동 소유, 공동 노동에 기초한 상부상조로서의 증여의 원리가 지배하는 1차적 집단으로 이야기한다(박현채, 1984: 45). 퇴니스(Tönnis)는 인간의 상호규정적인 인간관계를, 결합 양식을 중심으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제젤샤프트(Gesellschaft)의 두 범주로 나누기도 한다. 퇴니스(Tönnis)는 원시 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까지 게마인샤프트로, 사회주의 이후를 제젤샤프트로 보았다. 현대에 와서 다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 반문화 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자본주의 문명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세계적으로 혁명과 폭동이 빈발하는 가운데 대안적인 문명과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분명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60~70년대에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히피 운동이다(McLaughlin□Davidson, 1985: 11).

(2) 공동체 형성의 이유와 원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높아진 경제력, 안전에 대한 욕구, 공동생활의 즐거움, 공동의 이념 등이 주요한 이유이다. 장세비아(Jean Servier)가 <유토피아의 역사>에서 “빈곤을 몸에 걸치고 스스로 부정을 미워한 나머지 일어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메시아(구세주)들은, 토지 없는 농민, 가축 없는 목동, 일자리 없는 장인, 끝없고 고통에 얽매인 광부들에 의해 신의 비적(秘蹟)의 모든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평등한 인간의 왕국'이라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감추어진 불꽃처럼 간직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박현채, 1984: 47). 천년 왕국 운동은 하나의 신앙 행위로, 신이 그 건설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새로운 질서를 지상에 실현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들과 의식적으로 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잉그리드 코마르(Ingrid Komar)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McLaughlin & Davidson, 1985: 45).

“서로 협동하면 작은 우리 삶의 편협한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협동은 우리로 하여금 주위에 널려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에 접근하게 하고, 닫힌 울타리의 문을 열어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널따란 문화의 광장으로 나아가게 한다. 협동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며, 참여한다는 것은 고독과 단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협동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즉 꿈을 현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공동체는 '일치'라는 말을 포함한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공동체는 사람을 포함하여,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과의 일치 혹은 하나 됨의 체험이다. 공동체는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천의 장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하나됨을 체험하기 위한 맥락이다. 즉, 공동체는 내면의 깊은 곳을 드러내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마음을 열어 갈등과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여정에 안내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하나의 실험이다.

2. 국경없는 마을 운동

1) 문화적 사고로서 국경없는 마을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문화적 사고라는 것은 '문화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이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변해 갈 것이다.'는 비판적인 사고이다. 문화적 사고로서 다문화 선교는 영원불변하는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강요되는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5)

국경없는 마을 형성에 대한 문화적 사고 역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공존의 문화로 변화가능하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문화적 사고란 역사적 사고이며 비판적 사고이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이다. 문화를 커뮤니케이션,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내의 관습, 가치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게 된다. 문화를 한 인간의 집단, 종족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때 집단 간의 문화적인 차별성은 좋고 나쁨이나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로 인식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사고는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식 소비문화로서의 세계화 문화(Global Culture)의 관점은 적어도 아닌 것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 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국경없는 마을은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하위문화가 지배문화와 공존하는 헤게모니의 형성이라 보겠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문화는 지배문화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지배 이데올로기 문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본 인식으로 하면서 국경없는 마을의 가능성을 문화 이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2) 하위문화의 형성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변화가능하다. 문화라는 말은 라틴어의 경작하다, 재배하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로서 사람의 인위적 행동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양식진주(a cultured pearl), 박테리아배양(bacteria culture) 같은 용어의 'culture'에서 문화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김창남, 2002: 9). 즉 문화는 인간의 '경작' 혹은 '재배' 행위로부터 비롯된 말로서 자연에 대응하여 먹고살고자 한 인간의 본능과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6세기에 culture의 의미는 '농작물 가꾸기'에서 '정신(마음) 가꾸기'와 혼용되었다. 18세기 독일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독일 상류 귀족들의 지적활동 즉 학문, 과학, 철학, 예술 등을 'kultur'라고 불렀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와서는 인

5)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박천웅, 2006,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국경없는 마을, 에서 그 이론이 잘 소개 되어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간능력을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과정, 사람이나 민족의 신체적, 정신적 질을 개선하고 높이는 과정으로서 정신적 의미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 인류학이 형성 발전하면서 문화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 활동을 총괄하는 크고 중립적인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Jean-Pierre, 1999: 157-162). 이러한 인간의 문화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적 산물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산물들의 관계와 산물을 둘러싼 소유와 분배의 권력 그리고 지적 체계모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헌팅턴(Huntington)은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우세하게 발현하는 가치, 태도, 신념, 지향점, 그리고 전제조건이라 하였다(Huntington, 2002: 11). 아울러 문화가 사회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발전과 정치가 문화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더라도 문화는 자연 상태의 어떤 것에 인간적인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별로 없다.

3) 하위문화로써 국경없는 마을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경없는 마을은 하위문화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마다 하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차별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질서가 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이주민과 한국사회 문화와 갈등 혹은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언어, 문화, 공간 등을 마련하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만 일방적 지배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들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 평형상태(Moving Equilibrium)’로서의 체계모니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체계모니 과정은 한국사회의 차별문화와 다양한 이주민들 간의 문화가 갈등 혹은 저항을 통하여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위문화는 저항적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위문화는 순응, 승인 통합 형태에서 저항과 일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위문화는 ‘보다 광범한 문화 내에 위치하면서 사회 역사적 구조 내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이 직면한 특정한 입장과 특수한 갈등에 부합하는 타협적인 문화형태’이기도 하다. 특히 하위문화는 좀 더 큰 범주의 계급문화의 요소들을 공유하지만 또한 그로부터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미국사회에서 흑인노동자 계급과 백인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조건이 같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문화 역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주민간의 문화적 차이도 존재함을 인식해야 하는 대목이다. 하위문화로서 국경없는 마을은 국적과 인종,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국경없는 마을은 다국적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조건에 따라 보여주는 문화적 실천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문화인 것이다. 즉, 다문화 공동체로서 국경없는 마을은 한국사회에서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주민들의 하위집단의 의식적, 무의식적 대응이며 하위집단 욕구반영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와 지배문화의 지배력과 이주노동자로 대표되는 하위집단인 이주민의 저항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만나 상호공존의 모색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기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문화실천 운동이다.

3.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교육

문화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문화 공동체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 노력을 통하여 형성된다. 문화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교류, 충돌, 전이, 지배, 호환 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 한다. 단일 민족문화란 지역 경계 내이든 밖이든 사실상 그 주변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독립적이지 않고 주변 문화와 관계적이며 상호 소통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서로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한 다름의 문화적 교류가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숙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문화는 무엇인가? 다문화의 담지자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별적 다문화는 무엇일까? 시민사회가 다문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문화는 무엇인가? 정부가 다문화를 주창하면서 새롭게 형성하려는 국민문화는 무엇일까?

1) 다문화 교육의 목적과 목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다양성의 수용과 사회적 통합성의 형성에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핵심 과제는 3가지로서 소수자 주체화, 다수자 변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공동체 형성에 있다.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주체화에 있다. 즉, 출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대응력의 향상에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수자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관용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자신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은 획일적인 역사관을 극복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교육은 그러한 측면에서 타자에 관한 교육이다. 다수자와 소수자는 더불어 행복 한 세상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역사 안에 함께 해온 이민족의 역사를 발굴 기술하는 작업을 포함, 순수혈통주의나 민족적 우월주의를 극복을 통한 제3의 정체성 형성에 있다. 이것이 다문화 공동체 교육의 지향점이다.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문제는 이제까지 노동력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의 문제이거나, 새롭게 등장한 복지의 대상으로서 소외된 이주 노동자 계층의 문제로만 이해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대한 복지정책과 인권보호 운동, 국경없는 시민권 영역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소수자 스스로 주체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 형성에는 이주민들의 체류조건이 완화하여 그들의 한국생활이 안정적이 되도록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공동체 교육의 목표는 '평등, 평화 교육'이다. 다문화 공동체 사회 형성은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극복기위해서는 관용과 이해, 사랑의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다. 다문화 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주체성을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 어떤 문화권과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평화교육'이며 '더불어 행복 한 세상 만들기'에 대한 실천적 교육이다.

2) 다문화 공동체 교육의 내용

(1) 다양한 민족이 지향하는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적응

다양한 민족이 지향하는 타문화이해교육(Cross-cultural Education), 관용,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 문화적 다양성의 관용과 존중,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민족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2) 문화적 주체화, 자아정체성의 형성 및 대응력 육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 관용,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올바른 지식과 기능, 가치 수립,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타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혼란에 대한 대응 및 적응, 자아정립과 삶의 방식, 사회적 관계 형성 교육.

(3) 개인과 집단 및 지역, 국가 간 갈등 극복과 평화 의식 고양

평화교육을 통한 문화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 집단,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의 평화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대 및 참여, 갈등의 합리적 해결 통한 인류의 평화와 행복, 영성, 공동체의 발견.

(4) 인류 인권의 존중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 형성

인간의 기본권 및 국경없는 시민권 교육,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불평등한 개인, 집단, 국제 사회의 구조에 올바른 인식형성, 지역사회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한 공동체 사회 형성기여.

(5)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실천

한 지역사회의 협동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통한 공동체 일원임을 자각, 공동체의 원리를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질 교육, 국경없는 시민권의 지역사회 실천 및 창조적 대안 형성.

3) 다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1) 이주민들의 노동조건이나 인권침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제와는 달리, 결혼이민자, 여성, 아동, 난민, 새터민 등 새로운 다문화 이주 주체들의 등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칫 다문화 교육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를 간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 경제체의 형성, FTA, WTO 등을 둘러싼 이주민의 노동소외와 인권침해 문제를 좀 더 심층 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다문화 교육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을 넘어서야 한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교육실태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다양한 다문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론 연구, 지역사회 조사, 다문화 교재 개발과 미디어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과서의 편집과정에 다문화적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방송물기획과 제작은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다.

(3)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어울리는 지역축제와 문화를 개발하는 일이다. 지역사회 다문화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림이 중요하다. 국경없는 마을축제나 이주노동자 인권영화제나 다양한 지역단위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공공기반 문화시설과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화 공간, 시민단체 시설, 문화예술의 전당, 주민자치센터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문화 이해와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 교육 전문 역량의 양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관심자, 전공자, 예술가, 실무자, 현장 그리고 교육 전문가가 만나는 유기적 네트워크의 구성 또한 다문화 공동체 사회 형성에 서로 힘이 될 것이다.

IV.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실천 과정

1.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출발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사고의 동기는 크게 두 계기가 있었다.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다문화적 사고와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실천으로 이어졌다.

1) 다문화와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도 ‘주민이다’라는 생각에서이다. 1995년에 2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주장이었다. 일을 시키고도 원급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가하여 공장에서 쫓아내는 일이 자주 발견되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여도 산재 보상도 되지 않았던 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주장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일 뿐 아니라 ‘주민이다’는 생각을 하였다. 주민으로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고는 생활인으로서의 이주노동자를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이 아닌 ‘우리과 같은 사람’으로서 생활인이라는 생각이다. 즉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 등 문화가 다른 사람이지만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다’는 인식이다. 노동단체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이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다문화의 담지자로서 주민이다’라는 주장은 ‘미친 소리’로 취급받았다. 당시의 대세는 이주노동자가 다문화의 담지자로서 주민성은 관심 밖이었다. 다문화의 담지자로서 주민인 이주노동자는 ‘계급적 선명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노동자성을 주장하면서도 주민으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주노동자로서 주민이라는 이주민의 사고’를 주장하였다. 이주노동자를 ‘다문화의 담지자로서 주민’으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곧 지역사회 속에서의 다문화 공동체인 국경없는 마을을 꿈꾸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다문화와 다문화 가족

다문화와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사고의 두 번째는 다문화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1995년 국제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파키스탄 ‘샤미’씨 가정과 이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파르’씨 가정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 이주노동자 출신 결혼이민자 자생적 모임인 ‘과랑새’도 만나게 되었다. ‘과랑새’는 방글라데시 국제결혼 부부 모임으로서 1992년에 결성되었다. 이들 여섯 가정은 안산 시흥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당시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당시의 한국인의 문화는 마치 ‘동물가족’ 취급

6) 당시 필자는 외국인근로자(Foreign Worker)라는 용어 대신 이주노동자(Migrant)라는 국제적인 개념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운동’ 그리고 ‘이주노동자 귀환프로그램’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실천한 당사자였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하듯 하였다. 부부가 길을 함께 걷어가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당시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에 성공한 것만도 대단한 것이었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 역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주민등록부에 외국인출신 배우자의 등재가 되지 않았다. 3개월 혹은 6개월 마다 남편의 비자연장을 받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갔다 오는 날이면 한국인 부인은 눈이 퉁퉁 부어야 했다. 남편이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비자연장을 잘 해주지 않았고, 비자 연장을 해 주더라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온갖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를 당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자녀 문제도 심각하였다. 국제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출생 하여도 아빠 없는 미혼모 출생의 사생아 취급을 받았다. 나아가 남편이 미등록이주노동자 일 경우, 외국인출신 남편과 출산한 아이는 그 존재 자체가 인정도지 않았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과 자녀의 출생이 된 것이었다. 이때, 다문화 가족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방안이 무엇인가? ‘따스한 이웃으로 다문화 가족과 만나기’라는 사고 역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펼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이해

국경없는 마을은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의 지배문화의 지배력과 이주노동자로 대표되는 하위집단인 이주민의 저항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만나 상호공존의 모색하는 실천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기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동시 수행하는 한다.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경제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1) ‘국경없는’이라는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전체 한다.

각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인력부족을 절감하던 1980년대 말, 한국에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과 자녀 출산 등의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단일민족이던 한국사회에 조용한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경없는 마을이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적이 서로 다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 '마을'의 의미는 공동체이다.

'동네'란 말은 주로 여러 집이 이웃으로 하여 살아가는 '주거의 물리적 범위'를 지칭한 반면, '마을'은 물리적 범위만을 뜻하지 않고 주로 '이웃하여 사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직업, 종교,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또는 커뮤니케이션 그룹까지를 포괄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마을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라는 말보다는 마을이라는 말이 보다 공동체적이다.

3) 국경없는 마을은 다문화 사고 운동이다.

문화적 사고로서 국경없는 마을 형성은 지역사회의 차별문화 즉, 배타문화, 소외문화, 경쟁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는 가치관의 개혁과 소외된 인간 관계회복을 추구하는 평등 공동체 형성과 경쟁적인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여 협동 공동체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다문화 실천운동이다. 존재방식에서 다문화 적이고 관계방식에서 공동체적이고 삶의 방식에서 협동적인 다문화 지역사회 운동의 추구인 것이다.

3.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전개

1)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1기 (1996-2002)

(1) 정기 다문화 만남의 장

초기 다문화 만남의 장은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국문화 행사 혹은 서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정기적인 만남이 중심이었다.

① 인터내셔널 카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1996년 '인터내셔널 카페'가 운영되었다. 현재는 인터내셔널 카페가 다문화북카페로 변경되어 운영되지만 당시는 인터내셔널 카페로 운영되었다. 아시아의 각 나라 사람들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전통차와 전통춤과 노래가 있는 문화의 마당으로서의 자리를 생각한 것이다.

② 다문화 거리카페

인터내셔널 카페는 2000년부터는 ‘다문화 거리카페’로 변하였다. 한 달에 한 두 차례 원곡공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음악, 예술 활동을 선보이는 활동을 벌여 왔다. 다문화 거리 카페는 나라별로 돌아가면 운영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노래와 춤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③ 공연 행사

1995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명절 때 자국민 중심으로 문화 행사를 진행하였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의 출신들이 자국의 명절을 한국에서 모여 함께 보낸 것이다. 한국의 명절 등에는 여러 나라 이주민들이 각자 나라의 전통노래와 춤 등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사에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때는 행사는 주로 이주노동자 위로 행사의 성격을 가졌다. 1999년부터는 ‘우리도 안산을 사랑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의식적으로 공연행사를 시민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로 접근하였다.

(2) 다문화 사회 주체 형성

다문화 사회의 주민 구성 주체는 지역 사회거주자를 말한다. 지역사회거주자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주민이다. 원주민은 적어도 당사자 이상의 선조들이 그 지역에 태어나 자리를 잡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둘째, 선주민이다. 선주민은 당사자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자리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 국적의 사람들이다. 셋째, 이주민은 본래 다른 국적의 출신자로서 한 지역에서 수년간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주민 가운데 같은 지역에 장기 체류자는 이주 정착민이고, 일시 체류 이동자는 이주 유랑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코시안(Kosian)

코시안 가족모임이었다. 다문화 가족인 코시안 가족이 모임을 시작하였다. 1997년 6월에 호적법이 남성중심에서 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면서 국제결혼 가정에도 희망의 싹이 보였다. 호적법이 개정된 1997년 9월 가을 국제결혼 가정 50여 쌍이 모여 축하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때 이들을 위해 붙여진 이름이 코시안(Kosian)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한국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개념이 필요해서 아시아인과 한국인의 만남이란 뜻에서 코시안(Kosian)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② 이주노동자 공동체 형성과 NGO 구축

안산이주민센터와 연결된 공동체 조직들이 있다. 방글라데시 공동체는 이미 1992년에 조직되어 본 기관에 사무실을 두었다. 원곡동에 이슬람 사원도 이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다. 그러나 2004년 공동체 지도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고용허가제에서 방글라데시가 제외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출신들의 입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동체 활동은 중단 되었다. 인도네시아 공동체는 1997년 경기도 지역을 일대로 '이스와라(Iswara)'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 되었다. 이 조직 역시 2004년 이후 ICC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되어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 중에 있다. 스리랑카 독립협회는 1999년에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편 이주노동자를 위한 NGO도 형성되었다. 1998년 방글라데시 BMC(Bangladesh Migrant Center), 1999년 인도네시아 IMC(Indonesia Migrant Center)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 활동가들의 비자문제, 생활비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BMC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3) 국경없는 마을 운동' 시작

본격적인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1997년 이후 그동안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던 소식지 '나눔과 일터'를 '국경없는 마을'로 명칭을 바꾸었다. 다문화 지역 사회 공동체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였다.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경없는 마을의 구체화는 1999년 11월 안산이주민센터가 현재의 건물로 이사하고 그 지역이름도 '국경없는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안산이주민센터가 건물을 좀 더 지역 주민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계획을 하면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초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네 가지 흐름이 있었다.

① 지역 주민과의 접촉점 형성을 통한 문화적 갈등 해소 사업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였다. 이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차이, 주민과 나그네라는 차이에서도 발생하는 배타성에도 있었다. 주민과의 접촉점 형성을 통한 문화적 갈등 해소 사업 전개였다. 낮 설은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이웃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접촉점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당시 지역주민과 이주민간의 가장 큰 갈등은 '쓰레기' 문제였다. 갈등의 고리인 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접촉점 만들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을 청소이었다. 주민과 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주민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마을 청소를 하며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였다. 마을 청소를 통하여 상호의 접촉점을 넓혀가며 배타적 감정을 조화의 감점으로 바꾸어 나간 것이다. 접촉점 형성을 넓혀 나가기 위해 마을 신문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였다. 마을 신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주민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도록 하였다.

② 마을 다문화 축제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의식적으로 마을 다문화 축제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안산이주민센터의 행사는 주로 이주민들만의 행사 이었고 공연중심이었다. 주민과의 만남도 없었고, 이주민 스스로도 참여가 부족한 행사들로 가득 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모든 행사를 지역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전개하였다. 동네 주민들이 다문화를 경험하도록 국경없는 마을 '콘비벤츠'를 전개한 것이다.⁷⁾ 해마다 전개되는 국경없는 설날 축제, 안산월드컵, 추석 다문화 축제, 콩 꽃 축제 등이 있다.

③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 이주민 참여 활동

이주민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를 위해 시도한 것이 명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었다. 국민은 아니지만 이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주민들에게 명예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도 하여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④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경없는 마을

국경없는 마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일어나도록 강사를 초청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타 지역의 사례 방문도 하였다.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여론조사, 국경없는 마을 신문 제작, 국경없는 마을 체육대회, 주민 만남의 밤 등을 개최하였고 안산 시장이 수여하는 모범 주민과 이주민 시상도 있었다.

2)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2기 (2003-2006)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제2기는 2001년 까지 국제결혼이 1만5천쌍 이었

7) 콘비벤츠는 신학적 용어로 가까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콘비벤츠는 일상에서 차이를 인정하며 잔치를 벌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박천웅, 2006,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국경없는 마을, 115.

다가 2003년부터는 국제결혼이 2만5천-3만 쌍 까지 급증하게 된다. 한국 사회 이주민의 구성이 급격한 변화기 오기 시작 한 것이다. 이시기는 네 가지 축으로 운동이 이루어졌다. ① 다문화 정책 제안, ② 다문화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③ 다문화적 제도개선운동, ④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확산 ⑤ 국경없는 마을 운동에 대한 이론화 작업 등이 중심이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제안

다문화 정책 제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다문화 사고의 유도이었다. 정책제안은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권리 확대로서 지원조례 및 복지 시설 구축, 이주민 관련 사업의 행정의 체계화 및 전담 공무원제, 이주민 밀집지역의 다문화 마을 만들기 사업제안 등을 하였다.

① 이주민지원 조례 및 복지시설 제안

이주민지원조례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이를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 서울의 성동구이었다. 수원시가 이를 수용하였다. 안산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경기도에서는 5개 지역에 이주민 복지시설이 건축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부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시달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 복지체인 '안산시사회 복지협의체'에 '이주민분과'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설치되어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되고 있다.

② 이주민 관련 사업의 행정의 체계화 및 전담 공무원제의 도입

이주민 관련 사업의 행정의 체계화 및 전담 공무원제의 도입은 안산시와 경기도에 제안하였다. 행정 자치부에도 글을 기고하여 지원조례를 통한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행정체계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안산시에는 전국 최초로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작업을 2004년과 2006년에 실시하여 경기도에서 이주민 관련 사업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정부에 이주민 관련하여 이민청을 둘 것을 건의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는 이주민 관련 정부 정책을 법무부에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는 기구로 출범하여 국내 이주민 정책 업무를 총괄 하도록 하고 있다.

③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제안

2001년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제안을 안산시에 촉구 하였다. 2003년에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청와대 정책비서실에도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 정책과 국경없는 마을 사업을 제안 설명하기도 하였다. 안산시는 현재 국경없는 마을을 살아있는 다문화 지역이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수십억을 투자하여 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2004년 안산, 천안, 농촌 인근 지역을 선정하여 국경없는 마을 유사 사업을 준비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다.

(2) 다문화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①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은 지역 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 보다는 다수자의 문제가 더 크다. 따라서 다수자인 내국인을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을 향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을 열었다.

② ‘주말 다문화 대안학교와 계절 다문화 대안학교’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대로 한 교육이다. 주말 다문화 대안학교는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에게 행하여 졌다. 첫째 한국인 청소년인 경우 주말이면, 한국인 청소년들이 ‘안산이주민센터’를 찾아와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에 참여 하였다. 다문화의 이해와 지역사회 탐방 자체가 다문화 교육의 길잡이가 된 것이다. 방학에는 청소년들이 다문화 캠프를 열었다. 3-4일을 숙박하면서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교육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둘째, 소수자 청소년들을 향한 교육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어 배우기와 한국 문화 체험 그리고 모국어 배우기와 모국어 문화 익히기가 중심이 되었다. 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과 자신들의 출신 국 문화의 이중문화 구조를 가진 아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제3의 정체성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 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이 제3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자존감을 갖게 하는 심리적 과정도 매우 중요하였다.

③ ‘다문화 가족 사업’의 시범 운영이었다.

국내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들로 결혼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되지 못하였다. 지난 2006년에는 ‘경기도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경기도 지역의 5개 곳을 선정하여 결혼 이민자 지원 소외 지역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다. 아울러 안산지역 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한국사

회 적응과 출신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 갖기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 되었다. 한편, 안산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다문화가족 셀프영상 다큐제작, 결혼이민자 상담 기법을 개발하여 체계화 하였다. 코시안의 집에서는 다문화 가족 체험 수기를 공모 하여 '다문화 가족이야기'를 자체 출판하기도 하였다.

(3) 다문화적 제도개선운동

① 이주노동자

산업기술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서 그 신분을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의 인 권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안적 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이다. 이 법안을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꾸준한 정책 경쟁을 벌여왔고 2004년 9월부터 이 법이 국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법의 관철을 위하여 서울 명동 성 당에서 45일간의 텐트농성과 안산이주민센터에서 15일간의 단식농성 등 수많은 집 회와 입법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 1년마다의 재계약 문제 등 독소 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로서의 신분 인정은 다문 화 사회에서의 '노동하는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신분인정' 이라는 매우 중요한 실천 운동이었다.

② 이주가정 코시안 교육권 보장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이주가정 코시안 아동이 합법적 신분 한국에 체류하 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이후 부터이다. 이전은 체류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적 교육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이주아동인권연대를 결성하 여 이주아동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주아동의 인권문 제를 제기하였다. 경기도에서는 2006년부터 경기도 안산과 시흥지역에 이주아동을 위한 특별 학급 시범 실시 운영하였다. 그러던 2006년 5월 등하교를 지도하던 이주 아동의 엄마가 단속되면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 사건 을 계기로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게도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부모가 비자 없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 나 자라고 있는 아동들의 국적권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스스로를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고백이 한국의 혈통주의 국적권에 대 한 정면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③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법

결혼이민자와 그가 족에 대한 법률적 지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혼혈인 차별 금지법', '이주민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동 법률의 자문과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국내에서 다문화적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확산과 갈등

① 시민사회 단체로의 제안

2000년 이후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주목을 받기 시작 하자 국경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민사회 단체들도 관심을 가져 나가기 시작 하였다. 안산지역에서도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토론회를 전개 하였다. 안산 이외 지역에서도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교육시간을 통하여 국경없는 마을 설명회를 벌여 나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선 국경없는 마을을 소재로 여러 편의 학위논문, 소설, 다큐멘터리 등이 제작 되기도 하였다.

② 국경없는 마을의 국제단체 소개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소개는 초기에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 기독교교회협의회 관련 부서들의 국제 토론회에서 국경없는 마을이 소개 되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기관에서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 국경없는 마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 쪽은 미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 이긴 하지만 지역 공동체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다문화 지역 공동체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카고, 하와이, 뉴욕 등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차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시민권, 다문화 지역 사회 공동체 등에 관심을 보인다. 가나가와 시티 등 지역과 상화 활동 등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③ 이주민 운동과 국경없는 마을의 법인화

국경없는 마을을 법인화 하였다. 2004년부터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통해 법인화 된 것이다. 초기의 명칭은 '다문화 사회교육원'이었다. 그러나 이 법인의 명칭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경없는 마을로 변경하여 법인등록을 한 것이다. 이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전문화 하는 기구가 생긴 것이다.

안산이주민센터의 명칭도 변경하였다. '안산이주민센터'의 경우 이전의 명칭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였다. 지난 십여 년 간 단체의 이름이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던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단체 명칭을 과감하게 변경하였다. 단체의 명칭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과감한 변경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만의 문제로 다문화 문제를 담아 낼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④ 국경없는 마을의 갈등

국경없는 마을 원곡동에도 갈등이 있다. 갈등의 양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태도이다. 아직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곡동에서 이주민들의 주거에 따른 문제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지만, 어쩔 수 없는 요소가 사라지면 모두 내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주로 경제적 문제로 연결된다. 주민들과 잘 화합하다가도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주민 정부 반대를 외치며 지역의 ‘토호세력’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공권력과의 관계이다. 국경없는 마을 원곡동은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원곡동을 수도로 생각할 만큼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든다. 이들의 모든 필요한 것이 이곳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그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당연히 몰려들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권력이 단속이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투입 되었다. 한때는 지역 상인들이 가게마다 ‘국경없는 마을 강제 추방단속 중지’라는 작은 배너를 달며 무자비한 공권력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안산이주민센터에 까지 공권력이 침탈하여 이주노동자를 강제 연행하였다. 민간 종교단체에 영장도 없이 무법침입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공권력에 의하여 30미터를 땅바닥에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자 법무부는 국회 자료에 필자를 반한 활동자로 예시하여 보고하기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하였다.

(5) 국경없는 마을 운동에 대한 이론화 작업

국경없는 마을 운동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이시기에 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노동자와 시민권(박천웅, 2001),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박천웅, 2002), 지역사회 연구와 논문작업 등을⁸⁾ 비롯하여 여러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다문화 사회 이론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주요 이론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8) 정건화, 2005, 근대안산의 형성과 발전, 한울. 이태정, 2004,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국경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양대석사논문』 등이 있다.

3)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3기 (2006년 6월 이후 현재)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3기를 이시기조 잡는 이유는 국경없는 마을의 법인화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안산이주민센터로의 명칭을 변경 후 다문화 운동,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새로운 형태로 전개 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3기부터는 주로 법인 사업과 연결되고 있다. 안산이주민센터의 활동 역시 법인 활동과 연계 된다.

(1) 법인화와 다문화 학술 활동

사단법인 국경없는 마을 법인은 2006년 7월에 문화관광부로 법인설립 허가증을 받았다. 법인은 세 가지 부설 기구를 두고 있다. 다문화 사회교육원, 다문화 콘텐츠 개발원, 국경없는 마을 훈련원이다.⁹⁾ 다문화 운동을 펼쳐나갈 지역법정도 설립 진행 중에 있다.

법인내 다문화 사회교육원에서는 매달 다문화 학습을 진행 중이다. 연구학습은 다문화주의 이해를 시작으로 다문화 관련하여 다양한 학계의 의견을 서로 공부하고 있다. 조사사업은 결혼이민자 조사 사업, 이주아동 조사사업, 경기도 정주실태 조사 등을 하였다. 현재는 이주민 문화지도 연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학술발표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공동 발표 작업을 진행하였고, 법인 자체적으로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현실과 쟁점'(2007.2)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다문화 운동의 확산을 위해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인화 이후 한양대, 중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 연세대를 비롯하여 고려대, 평택대, 부산대 등에서 다문화 관련 특강이 이루어졌다. 한국수양부모협회, 이주인권연대, YMCA, YWCA, 무지개 청소년센터, 경기문화재단,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다문화 특강이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제4회 한일시민사회포럼(일본 동경)과 2007년 4월 도쿄에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소개 발표 되었다.

9) 법인 자문위원으로는 이삼열(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안재웅(아시아 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전 총무), 유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창빈(한아봉사회 사무총장)이 있고 법인이사로는 박천웅(안산이주민센터), 정병호(한양대), 이희수(한양대), 정성하(백석대), 권세실(서울예술대), 오현선(장신대), 오경석(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백기영(의제창작스튜디오), 박창수(변호사), 배기철(국제가족총연합회), 김영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재오(ANA 항공 서울지부) 등이 있다.

(2) 다문화 프로그램 활동

다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문화축제의 틀을 넘어 아시아 특성 문화 축제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 음악축제(2006, 9), 아프리카 문화축제(2006.10), 태국 송끄란 축제(2007.4), 스리랑카 설말 축제(2007.4)가 열렸으며, 2007년 9월 한 달간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함께 모이는 다문화 축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축제 및 학술 행사가 열린다.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는 2007년에는 이주민 다문화 지도 제작, 이주민 문화테마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체험 교실 운영 지원, 이주민 문화 멘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다문화 교육 사업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실무자 교육, 유치원 다문화 교육, 초중고등 학교의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다문화 캠프 등이 있다.

(3) 다문화 주체 형성 및 타 지역의 국경없는 마을 운동 확산

2007년 7월 안산시가 국경없는 마을 원곡동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이주민 공동체와 연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국경없는 마을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안산시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 행적과 독단성, 다문화를 이용한 지역사회의 부동산 투기의 장, 다문화를 활용한 지나친 상업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다문화 지역사회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운동은 미시적 공동체 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이주민 위원회, 다문화가족협회, 중국동포노인회, 각국 이주민 공동체, 다문화 청소년 위원회, 다문화 자원봉사자 모임, 다문화 시민단체 연석회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들 작은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다문화 지역 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고 있다.

한편 이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공동체 운동을 확산 시키고 있다. 다문화 운동이 지방에서 특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경없는 마을 멘토 사업이다. 국경없는 마을 사업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알려지면서 다문화 공동체 운동을 연구를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전반부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갈등 극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북 방안으로서 다문화 운동과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대한 한 사례로 국경없는 마을을 소개하였다. 국경없는 마을에 대하여는 국경없는 시민권(다문화 시민권), 국경없는 마을 이론, 다문화 사회교육론에 대하여 다루었고, 실천적 운동으로서 국경 없는 마을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3기오 나누어 설명하였다.

국경없는 마을과 같은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앞서 논의에서 우리는 주체형성에 대하여(지역주민, 이주민), 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 사업에 대하여, 이론작업을 통한 실천에 대하여, 지역사회 다문화 역량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문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로서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주체형성, 미래 비전구축, 전략구축, 다문화 핵심역량 구축이다.

첫째, 다문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주체의 형성이다. 지금부터 할 일은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성이다. 이 주체들이 모이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국경없는 마을’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의 미래 비전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 지역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잘될 수도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 하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다름과 차이의 적대적 요소를 해소하고 조화로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 지역사회 전략의 구축이다. 국경없는 마을의 현재 고민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는 공간중심의 하드웨어가 이주민들의 다문화적인 삶을 파괴 할 수도 있다는 고민거리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지역공동체는 하드웨어적인 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대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사회 다문화 역량 구축사업이다.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다문화 역량 구축작업에 들어가 고 있다. 지역사회 다문화 역량을 무엇으로 설정할지, 다문화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할지, 다문화 역량을 어떻게 지속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남. 2000.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pp. 9-15.

- 박천응, 2001. “외국인노동자와 시민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7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_____. 2001. “외국인 노동자 사회안정망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태사회복지대회자료집』. 아시아태평양사회복지대회 준비위원회.
- _____. 2002.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_____. 외. 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의 영향과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_____. 2006a.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국경없는 마을. pp. 115-164.
- _____. 외. 2006b.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경기개발연구원.
- _____. 2007. “이주민 실태와 기독교사회복지의 역할.” 『2007 한국교회대부흥 100주년기념 사회복지대회 자료집』. 2007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 사회복지대회.
- 박현채. 1984. “공동체론, 공동체 운동.” 『공동체 문화 2집』. 도서출판공동체. pp. 45-50.
- 정건화. 2005. 『근대안산의 형성과 발전』. 한울.
- 최일섭□류진석. 200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10-24.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외). 2006. “다문화 사회와 국제 이해교육.” 『제7차 국제 이해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이해교육원.
- 코린□골든(Corinne McLaughlin, Gordon Davidson). 2005. 『새벽의 건설자들』. 황대권 역. 한겨레신문사. pp. 11-45.
- 데니스(Dennis, E. Poplin). 1993. “공동체.” 『지역사회학-이론과 연구방법』. 홍동식, 박대식 편역. 경문사.
- 헌팅턴(Huntington, Samuel). 2002. 『문화가 중요하다』. 이종인 역. 김영사. pp. 11-17.
- 와르니어(Warnier, Jean-Pierre). 2000. 『문화의 세계화』. 주형일 역. 한울. pp. 167-162.

6장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

이 혜 경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I. 들어가는 글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한달 후인 5월 26일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한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 담론이 가열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감수성’ 등 가히 ‘다문화열풍’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문화열풍’을 주도한 정부의 다문화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적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6년에 발표된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을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러한 일련의 다문화 정책들은 정부의 이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민정책의 수립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의 이민정책 변화는 어떠한 이론틀로 설명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2006년에 발표된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을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각종 보고서와 자료들을 검토하고, 신문검색 및 관련 참고문헌들을 검토를 통해 한국 이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국내 정치적 요인 특히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이민정책 변화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민정책 수립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은 1) 출입국 관리(규제)정책, 2) 외국인력 활용 정책, 그리고 3)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정책 유형은 정책의 필요 시기별로 제1단계 규제 및 활용정책과 제2단계 통합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관리(규제) 및 활용 정책이 먼저 필요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이들이 유입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통합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제 및 활용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경제적인 고려로부터 시작되며, 통합정책은 이러한 경제적인 고려 이외에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맥락까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민정책에 대한 이론들은 주로 규제 및 외국인력 활용 정책에 대한 설명들이 많고, 최근 통합에 대한 설명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각 국가의 이민정책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형성되며, 각 국가의 정치제도, 정당제도 등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과거에 수립된 법이나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장승진(2002)은 이민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1) 전통, 2) 정치, 그리고 3) 경로의존적 접근방식을 영국의 이민법의 변화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전통적 접근이란 특정 국가가 경험한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전통이 이민(규제)법의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제국주의를 경험한 영국은 제국질서가 깨어진 이후에도 식민지 유색인종에 대한 인식과 편차가 남아있어, 효과적인 이민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방해하였고, 따라서 나중에 인종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영국의 정치가들은 영연방 체제의 유지라는 이상에 집착하여 인도 등 과거 식민지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사실상 묵인(무시)하다가 1958년의 폭동을 통해 대중들의 반이민정서가 극에 달하자 어쩔 수 없이 이민규제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가 어떤 일관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변화와 여론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Rich, 1990; Juss, 1993; 장승진, 2002: 13에서 재인용).¹⁾

정치적 접근은 국가의 정당제도와 정치제도 등이 이민정책 수립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은 대중의 반이민정서를 이용 또는 조작하여 각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어떤 이민정책이 수립□시행되는가는 전체 정치체제 하에서 중앙 정책 결정자들의 선거전략에 있어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Money, 1997: 692-696; 장승진, 2002: 18에서 재인용).

경로의존(path-dependency) 접근이란 조직경제학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가 지속되는 이유는 특정 시점에 선택한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 시점에 어떤 행위가 선택되면, 그 선택을 뒤집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므로, 쉽게 경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의 사회적 발전은 단순히 역사적 전통의 일방적인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 등 중립적인 조건하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다양한 시점에서의 선택들이 지속적으로 이후의 선택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장승진(2002: 21)은 특히 헨슨(Hansen, 2000)의 경로의존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영국의 이민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즉 1948년 국적법에 의해 수립된 제도적인 틀이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규정하였으며, 각각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1962년-68년 이민법은 주어진 경로 안에서의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면, 1971년 이민법은 주어진 경로가 제기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한편 코넬리우스와 수다(Cornelius and Tsuda, 2004)는 전세계 주요 11개 이민 국가들의 이민정책을 비교하면서, 각 국가의 이민(규제)정책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야기하는 '간격가설(gap hypothesis)'과 여러 국가의 이민(규제)정책이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들에 의하면, 간격가설은 가설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사실로 이민정책이란 완벽하게 충족된 경우가 거의 없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Cornelius and Tsuda, 2004:4-5).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부분의 나라가 전문직이나 고급기술자는 많이 유입하고자 하며, 저기술 단순노동자는 덜 유입하고자 하나, 결과는 전자는 적게 들어오고, 후자는 넘치게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1) 본 논문에서는 1차 인용한 문헌만 참고문헌에 밝히고 2차 인용된 문헌은 참고문헌에 제시하지 않는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코넬리우스와 수다는 이러한 정책간격이 생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1950-60년대 독일의 *guest worker program*이나, 1942-64년의 미국의 *bracero program*과 같이 정책 자체에 결점이 있는 경우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유입국의 이민 수요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민규제란 실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이 저출산, 고령화 및 높은 교육수준으로 국민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 특정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더욱이 세계화 추세로 이민의 흐름이 더욱 조직화□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구조적 이유 때문에 이민규제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외적 정치적 제약으로 이민정책은 종종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을 받으므로 불경기 때라도 힘이 있는 사용자 집단이 로비를 하면 이민자가 더 유입되기도 한다는 것이다.²⁾ 한국의 경우에는 1995년 이후 제기된 고용허가제로의 변화가 1997년 대선에서 ‘고용허가제’를 공언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그의 임기 내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물론 IMF 경제위기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그의 지지기반이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용자 집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익정치적 산물을 IMF로 정당화한 것이다. 그리고 송출국 국가가 압력을 가하거나, UN, ILO 등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에 의한 제약도 있다. 물론 서유럽과는 달리 일본과 한국에서는 관료집단이 주로 이민정책을 세우지만, 이러한 관료집단(또는 부처)도 그 기반(친기업적 정권)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책이 실제 의도와는 다르거나, 정부의 의견이 부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물론 때로는 모호한 정책 그 자체가 고도의 전략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

한편, 코넬리우스와 수다(Cornelius and Tsuda, 2004:16)는 노동 유입국의 이민정책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으나, 이를 단선적인 진화론식으로 보는 것은 반대한다. 왜냐면, 전통적인 이민국가라도 국가마다 정책이 다양하고, 한 국가의 이민정책도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차원보다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에서 수렴이 더 일어나기 쉽다고 한다. 예를 들어 15개 EU국가들이나, 동아시아 유입국들 사이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숫자쿼터)보다는 전반적인 이민제도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수렴

2) 코넬리우스와 수다는 이를 Freeman(1995; 2002; Cornelius and Tsuda, 2004에서 재인용)의 고객정치(client politics)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입국의 이민정책이 수립하는 이유를 첫째, 한센(Hansen, 2000)이 제시한 '경로의존모델'로 설명한다. 즉 유입국들은 내부적□외부적 압력, 정치제도나 정책수립체제, 여론추이, 이해집단 정치, 역사적 경험, 국가형성의 역사에서 이민의 역할³⁾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이민정책이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국의 정부들이 다른 국가의 특정 정책을 빌려오는 등 '정책모방(policy emulation)'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EU처럼 초국가적 공동체를 이룩한 경우에는 지역통합으로 이민정책이 더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넷째, 전세계적인 사건의 영향이다. 즉 전세계적인 불경기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국제적 사건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국가안보'란 이유로 이민규제정책으로 선화하게 하였다. 다섯째는 여론의 영향인데, 서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론이 '반이민정서'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론이 이민정책을 이끄는 것이지, 아니면 정치에 의해 여론이 이용을 당하는지의 문제는 각 국가마다 각 시기마다 다르다고 한다. 여론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한국에서도 유효한데, 즉 한국도 여론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부나 미디어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유입의 역사가 20여년으로 아직은 짧고, 이주자의 규모가 인구의 2%미만이라, 일반 대중은 아직까지 이민문제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90년대는 주로 사용자집단이 여론을 주도했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나 미디어가 함께 이민과 관련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코넬리우스와 수다(2004)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11개 국가를 전통적 이민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하는 국가(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최근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로 분류한다. 코르넬리우스 외(2004:36-38)는 일본은 고급기술/전문직은 허용해도, 단순노동자의 유입은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책(closed-door immigration policy)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일본은 주로 관료들이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중소기업가들의 로비나 친이민 집단의 노력이 영향을 덜 미친다고 본다. 즉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불허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85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연수생, 학생, 유흥업 종사자, 재외 일본동포(33만명) 등 여러 가지 "side-door" 정책으로 기존의 엄격한 이민정책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3) 이민으로 형성된 이민국가, 마지못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그리고 후발 이민국가에 따라 국가 형성에 이민이 미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국가군 내에서는 정책수립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편, 코넬리우스와 수다(2004:38-40)는 한국의 이민정책은 일본의 정책에 수렴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일본 정책을 베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렴이 가능한 이유로 단일민족과 관료 중심적 정책 수립제도라는 유사한 내부 압력, 과거 일본의 식민지 경험으로 법이나 제도에 일본 유산이 많이 남아 있고, 일본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어서, 일본 이민정책을 초기에 도매급으로 막 베꼈다고 본다(Cornelius and Tsuda, 2004:39). 한편, 설동훈과 스크렌니(Seol and Skrentny, 2004)는 한국은 이민정책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큰 게 아니라, 본래의 정책 의도가 이들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의도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산물로 비록 이민정책이 정당이나 이민자 집단과는 무관하게 거의 전적으로 법무부에 의해 수립되었지만, 고도로 조직적인 중소기업 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정부까지였다. 즉 국민의 정부는 그 기반이 중소기업의 지지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문정인, 1998:53-54).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 기반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웠고, 특히 산업연수생의 도입과 배정을 도맡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간부들이 1997년 이래 송출업체 및 사후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수수 사건(조선일보, 1997/07/08; 중앙일보, 1997/07/09; 한겨레신문, 2003/06/16)에 연루되었다는 뉴스는 중기협과 중소기업 등 그간 줄기차게 고용허가제를 반대했던 세력들의 2003년 고용허가제 반대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즉 2003년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게 중기협의 조직적인 고용허가제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의 조직적인 반발은 2003년에 와서는 1997~98년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한편 이민자에 대한 통합정책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캐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03)의 구분으로, 이들은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차별배제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3D직종과 같은 특정 노동시장에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복지혜택,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등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유형이다. 독일, 일본, 한국 등 단일민족 신화를 간지고 있는 국가는 물론, 동화모형과 다문화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생산가능직종 특정 유형의 이민자에게는 차별배제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배제모형은 이민정책에 있어서 규제(활용)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모델로는 동화와 다문화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동화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이민자의 문화적 동화를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1960년대까지의 미국의 용광로 모형, 프랑스 사회의 공화주의 모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설동훈 외, 2006: 262-263).

다문화주의 모형은 샐러드그릇, 종족적 모자이크, 무지개연합 등으로 불리우며,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전체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가 다문화주의 통합모형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래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지만, 이민(통합)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모형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과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즉 다문화주의모형의 원조인 캐나다는 이중국적 인정, 종교, 식생활, 의복, 가족문화 등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문화활동 장려, 종족에 따른 정치적 대표성 촉진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 2002)는 문화적 다양성의 정치권 보장 정도에 따라 1) 온건 다문화주의와 2) 강경 다문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라코르느(Lacorne, 2004; 엄한진 2007: 50에서 재인용)는 문화적 다양성 또는 국민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1) 급진 다문화주의 2) 고전적 다문화주의 3) 온건한 다문화주의(또는 문화적 다문화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1970년대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통합정책을 시행한 이후 ‘다문화주의’란 용어는 1980-90년대를 통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퍼져나갔고, 2000년대에 들어와 동아시아 주요 노동유입국에서도 유행되고 있다. 즉 2002년 대만, 2006년 일본과 한국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다(Wang and Daniele, 2006; 타무라 타로, 2007). 물론 정부의 이러한 언급이 우리의 경우에는 이민정책의 변화를 동반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나, 일본은 아직 이민정책상의 변화까지를 동반한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문화 지향’이라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극적인 전환은 국내는 물론 국외 이민화자들의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

III.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

1. 외국인력 활용 정책의 변화: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로

우리사회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1980년대 말 중국동포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7년부터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들어온 중국동포는 정치적인 변화(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1992년 국교재개)로 한국을 방문하다가 국내 건설업계의 극심한 인력난으로 취업기회를 얻었다. 한편, 80년대 중반 이후 중동 노동시장의 변화와 동남아시아인 노동자들의 ‘일본러시’로 1990년대 초 필리핀인과 방글라데시인 등 동남아시아인의 유입도 시작되었다(이혜경, 1994).

산업화가 진전되어 인력난이 대두되면 어느 나라이건 거의 예외 없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찬반논란이 시작된다.⁴⁾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업계, 노동계, 정부 및 학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우선 인력난이 심각한 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입 불가피론’이 주장되었고(조선일보, 1991/12/10, 10면), 반면 노동계와 학계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김시평, 1990; 한국노동연구원, 1991; 설동훈, 1992 등).

정부도 각 부처 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즉 노동부, 건설부, 상공부 등의 긍정적인 시각과 법무부와 경제기획원의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되었었다. 즉 1990년 말까지 정부는 ‘해외인력수입불가’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1년에 들어와 노동부(2,7,9월), 건설부(2월), 상공부(6월), 해운항만청(10월), 대통령(10월) 등의 ‘제한적 해외인력수입 적극 검토’ 방안과 법무부(2월), 경제기획원(6월) 등의 부정적인 우려가 교차되다가, 1991년 11월 ‘외국인 연수체도를 3D업종까지 확대’한다는

4) 산업화가 진전되어 인력난이 대두되면 어느 나라이건 거의 예외 없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외국인 노동자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인력난이 심각해지자마자 곧 이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곧 바로 유입된 경우이다(이혜경, 1997). 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채 수립되기도 전에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것이다.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1992년에 들어와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2,3,6월)을 강화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부(4,10월)와 경제기획원(7월)의 '해외인력수입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2년 6-7월 사이 불법취업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6만 1천 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를 하였고, 이들 가운데 제조업부문 취업자(3만 8천 여명)에 한하여 1992년 12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시켜 주었고, 이러한 조치는 그 후 수 차례 더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줌(1993년 6월까지, 1993년 12월까지, 1994년 6월까지)으로써 정부 및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해외인력수입에 대해 갈팡지팡하던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 연수생 수입' 방침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는 2004년까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외국인력 활용정책이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은 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연수생의 작업장 이탈과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1995년 이후 외국인 지원단체 및 정부 내 특정 부처도 '고용허가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력정책의 추진방향을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정책조정이 주로 정통경제부처인 경제기획원 또는 통상산업부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통상산업부(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로 변경)를 축으로 하는 정부 내 주류측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계속하자는 논리를 견지해 왔다(염재호, 김정렬, 1998: 335).

이에 노동부는 통상산업부가 제시한 부분적인 개선대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1995년 9월 14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입법화 방침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이후 노동부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 온 통상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위해 1995년 11월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세계화추진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러한 노력은 관련 부처의 비협조, 중소기업 등 이익집단의 반대 그리고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부가 외국인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매달리는 동안 2002년 말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규모가 80%에 달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유길상 외, 2004). 이에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고용허가제’가 종전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었다. 따라서, 2004년 이전까지 한국의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외국인 전문인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외국인 단순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며, 이들의 정주화를 방지하겠다는 폐쇄적 정책이었다.⁵⁾

우리의 이러한 정책은 코넬리우스와 수다(2004)가 지적했듯이, 일본의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베낀 것이나, 제대로 베낀 것이 아니었다. 즉 우리가 간과하였던 점은 일본의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물론 ‘폐쇄적’이지만, 그 핵심은 ‘연수생(또는 기술인턴)제’가 아니라, ‘해외일본인 후손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즉 90년대 중반 일본의 70만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6% 정도만이 외국인 연수생임에 비하여, 40%인 30만명 가까이 일본인 후손이었다. 즉 일본은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유입할 경우 중국의 엄청난 잠재적 송출자의 규모를 염려하여, 어차피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인종적□문화적으로 마찰이 적은 중남미 일본인 후손을 고용하고, 이들이 고국에서 돈을 모아 중남미로 돌아가서 소사업가가 되거나 또는 일본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 것이다(이혜경, 1997).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부터 조선족을 위시한 ‘재외동포’를 활용하는 주장(이혜경, 1994; 1997 등)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들의 규모와 정주화를 우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뀐 것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그리고 중국의 발전에 화교가 미친 역할과 기여를 인식하면서부터이다(Lee, 2005). 그 후 이들에 대한 정책은 1999년 9월 재외동포법, 2002년 12월 취업관리제,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등으로 이들에 대한 선별정책의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한편, 지난 10년간 ‘산업연수생제’로부터 ‘고용허가제’로의 변화로 대표되는 외국인력 활용정책의 변화는 일견 통상산업부 대 노동부 간의 시각차이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법무부(통상산업부 포함) 대 노동부간의 고객정치, 이익집단 정치, 그리고 부처간 세력다툼을 반영한 것이다. 즉 각 부처의 주요 고객이 경영계와 노동계로 확연하게 다르므로, 이들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였다. 결국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그간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하는 방향으로 일 단락되었고, 2007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이는 그간의 법무부 대

5) 설동훈과 스크렌니(Seol and Skrentny, 2004)의 지적처럼, 우리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정책(산업연수생제)은 ‘저임금’과 ‘착취’가 목적이었다. 이는 초기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주도했던 부처 및 그 고객집단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위주였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제1차 영역다툼이 노동부의 승리로 일단락된 것이다.⁶⁾

한편, 고용허가제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여러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는데, 즉 1995년 이래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온 법원의 판결, 본 보고서에서 윤진이 다루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노력, 그리고 이들의 활동과 여론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그리고 '인권착취'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인권문제에 예민한 참여정부는 그 출범과 함께 고용허가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었다.

2. 사회통합 정책 발표 배경: 결혼이민자 증가

2006년 다문화 정책이 발표된 배경은 물론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전체 결혼의 14%가 그리고 농촌지역 결혼의 34%가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인 것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90년대 후반 이들이 집중되던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색되다가,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산발적□즉자적인 대응을 하다가,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5)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밝혀진 이후, 중앙정부는 2006년 4월 26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은 이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몇몇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여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들에게 관심을 보인 곳은 충청남도청으로, 1997년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김애령, 1998). 그 이후 강원도 여성정책실(서영주, 2001),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민경자, 2003),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이윤애, 2004)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자가 2004년 5월과 8월 사이에 전국 236개 지방자치 정부에 이메일과 전화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거나(58%) 무응답인 지자체(10%)도 있었지만,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32%의 도□시□군 등 지자체는

6) 한편 1998년 이후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의 후원 역할을 담당하던 재정경제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도 노동부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미 이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표 1>, 이해경, 2005).

<표 1>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 가족에 대한 정책 실시 정도, 2004년

무응답	24	10.2%
지원프로그램: 없음	137	58.0%
있음	75	31.8%
합계	236	100.0%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 문화체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들 가족을 위한 화합 한마당 잔치나 부부공동체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강원도에서는 생활수기 우수사례 공모, 외국인 주부를 위한 소식지 발간, 생일케익 보내기, 양모 결연사업, 외국인 주부를 지역 여성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이들의 친정나들이 항공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들 외국인 주부를 도내 관광지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들을 위한 통역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의 예방 접종이나 및 건강 진단에 도움을 주거나, 이들 외국인 주부의 출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이들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거나, 외국인 주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이들 가족이 한우를 사육할 경우에 저리로 융자하는 등 이들에 대한 경제 사업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댁 등 가족의 반대로 교육이 중단되었다는 곳도 있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은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적법은 1997년 11월 18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 국제결혼과 관계가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국적이 과거의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한 것이다. 우선 과거의 국적법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자녀가 출생하였을 때, 그 자녀는 아버지의 국적만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

법에서는 어머니의 국적도 취득할 수 있어서, 자녀가 22세 이전에 이중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98년 개정된 국적법 하에서는 이들도 외국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 국내체류 기간이 2년이 지난 후에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한다는 취지도 있으나, 이러한 법 개정의 이면에는 중국동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의도가 더 강했다.⁷⁾ 법무부는 국제결혼 여성의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 이후 수차례 국적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는 2000년대 이후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이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위한 쉼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 기금(로또복권 수익금)으로 이러한 쉼터 외에도 관련 지원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부가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된 계기는 2004년 7월 (주)태평양이 여성부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하면서부터이다. (주)태평양은 2004년 2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여성부는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및 가족업무를 이관 받고, 2005년 3월 여성가족부로 그 이름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6년 4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결혼이민 여성의 문제를 총괄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06년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지정하여(30여곳)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5년 2월 1일 김춘진의원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설동훈 외, 2005)을 발표하였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정되고 있다.

7)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 2년 안에 이혼을 할 경우, 아이를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혼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2003년 12월 국적법 간이귀화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또는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아야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 후 국적법의 부분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상과 같이 2000년대 이후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2005년 12월 6일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지원대책에 이어, 2006년 4월 26일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등이 발표되었다.

3. 사회통합 정책 발표 및 특성

정부는 2006년 4월 이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그리고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의 특성을 그 주요 정책대상,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의 순으로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란 과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에서 그 주요 정책대상은 합법체류 외국인과 결혼이민 여성 및 그 자녀와 가족 등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의 비전과 목표는 열린 다문화 (인권) 사회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 즉 이민정책이 과거 경제일변도의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아우르는 ‘다문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 증가(2006년 말 90만명 돌파), 향후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문인력과 외국인 투자자 등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므로, 폐쇄적인 이민정책은 더 이상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둘째,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국민의 고학력화로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현상으로 이러한 부문으로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즉 2005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34만5천명(불법체류자 18만명 포함)이나, UNESCO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00만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⁸⁾

8) 유네스코(UNESCO)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 기준으로 200만에 달하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UNESCO, 윤인진, 2006:11에서 재인용; UN, 설동훈, 2006)은 그간의 단기적인 ‘인력정책’ 포기에 중요한 영

<표 2> 정부의 다문화 정책 주요내용

주요 정책	정책대상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외국인 여성+한국인 남성)가족과 그 자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1)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2)안정적인 체류지원 3)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4)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5)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6)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7)추진체계 구축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1)국내혼혈인 2)국외혼혈인 3)국내외국인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	사회통합을 넘어 미래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 양성	1)법·제도적 기반 구축 2)사회적 인식 개선 3)국내혼혈인: 생활안정대책 4)국외혼혈인: 국적취득 지원 및 국가이미지 제고 5)국내외국인: 아동·모성보호 우선보장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1)외국적동포 2)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 외국인의 자녀 3)난민 4)외국인근로자 5)불체외국인 6)국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1)외국인 인권 존중, 사회통합 2)우수외국인력 유치지원	1)외국적 동포 포용 2)자녀 권익향상 3)난민 실질적 지원 4)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5)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6)다문화사회로의 통합기반 구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합법체류 외국인	1)국익제고 2)사회통합 실현	1)다문화포용, 사회통합 2)경쟁력강화 3)인권보장 4)정책수립체계	1)국가 및 지자체 책무 2)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법무부->외국인정책위원회 3)재한외국인 처우 4)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5)외국인전담직원/중합안내센터

- 1)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4.26
- 2)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2006.4.26
- 3)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006.5.26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6.12.5 발의, 2007년 4월 국회통과, 7월 시행 예정

셋째, 체류 외국인의 다양화와 양극화(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 간, 불체자와 합체자 간)로 각 집단별로 다양한 문제와 요구가 대두하였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시작되면 정주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다른 국가의 사

향을 미쳤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례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5년 11월 초에 일어난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를 통해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과 통합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외국인 출입국□체류관리, 난민인정, 영주□국적제도 등의 기존업무와 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사회통합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모색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2006년 5월 26일 발표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2004년 고용허가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 이민정책의 기조가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의 ‘국익우선, 통제 중심’이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통한 ‘국익과 인권보장의 균형’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다(<표 3>).

<표 3> 정부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구 분	과거	2006년 5월 외국인정책
정책 기조	국익우선의 원칙	국익과 인권보장의 조화
외국인 처우	통제·관리 중심	상호 이해와 존중
추진 체계	개별부처 추진체계	총괄 추진체계
정책 평가	단편적□비체계적 (개별평가)	정책품질관리(종합평가)

이는 2005년 프랑스 인종소요 등 다른 국가에서의 ‘인종갈등’ 사례를 거울삼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으로,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사회통합이라는 틀 속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더불어 사는 이웃’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 신화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포용정책은 그 상징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2006년 12월 정부(법무부)가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일단락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밝히고, 2)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밝히고, 3)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를 위해 인권 옹호와 사회적응 지원을 하고, 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4) 국내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5) 외국인전담 직원의 지명□교육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설치 등이다. 특히 외국인정책의 수립□추진체계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은 그간의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한 ‘인력정책’으로서의 ‘외국인정책’이 1) 인구 및 차별철폐정책으로, 2) 가족정책 및 3) 사회문화정책으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첫째,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 및 차별철폐 정책으로 변모하였음은 2006년 4월 26일 발표된 정책과 방안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작성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는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노무현 정부는 그 시작부터 ‘소수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하였고, 특히 5개 대상집단(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90년대 이후 국내 국제결혼의 증가는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주도하였고, 이로 인한 ‘여성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가족문제’로 발표하였다.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여성부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및 가족업무를 이관 받아 9개월 후인 2005년 3월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새로운 여성가족부로서 가족업무로 결혼이민여성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면에는 ‘여성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가족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어필하기 쉽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6:76, 214, 215)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들이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이나, 이들 동남아 부인들은 “본국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거나,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국제결혼 가족 내의 ‘젠더문제’가 향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외국인정책은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외국인력 정책이었음에 비해, 2006년의 방안과 [기본법]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를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그동안 우리의 이민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정책’ 또는 ‘외국인력 활용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정책의 제1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도 이민정책의 제2단계인 ‘사회통합’ 정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2단계로의 정책적 도약에는 국제결혼의 증가가 기여를 하였다. 즉 김혜순(2006)의 지적처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 가운데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발표하였으나,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의 근간은 지난 20년간의 정반합적인 이민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통과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내의 특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간의 제2차 영역확대전쟁에서 법무부가 우위에 설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고,⁹⁾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 개의 관련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러한 제2차 영역다툼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¹⁰⁾

IV.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그동안 출입국 정책과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있었어도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전무하였던 우리 정부가 2006년 갑자기 이들에 대한 통합정책을 쏟아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앞에서 장승진(2002)이 잘 정리한 1) 사회적□역사적 경험, 2) 정치, 그리고 3) 경로의존적 접근 중에서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그간의 외국인 정책(산업연수생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의 경로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인 결단을 가능케한 배경에는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코벨리우스와 수다(2004)가 지적한 각 국가들의 이민정책의 수렴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점은 한국은 이민정책에 있어서 그간 일본의 정책만을 수렴하던 것에

9) 2006년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여성가족부, 법무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내 여러 부처 간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김혜순, 2006; 설동훈 외, 2006:302 등).

10) 관련 법안이란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2005년 2월)’, 고경화 의원 등이 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11월, 2007년 3월)’, 그리고 장향숙 의원 등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 법안(2007년 5월)’ 등이다.

서, 대만 등 아시아 및 서유럽 등 보다 많은 국가들의 이민정책을 취사선택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는 이민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를 야기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특히 정부 부처간 세력확대 노력과 참여정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1. 정부 각 부처간 세력확대 노력

결혼이민자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민정책이다. 그러나 2005년 4월 26일 [지원 대책]에서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2000년대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저출산 현상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일종의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가정과 커리어 가운데 양자선택 밖에 없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2004년 6월 여성부는 복지부의 예산 가운데 보육 및 가족 예산과 업무를 가져갔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각 부처의 세력확대 노력은 ‘산업연수제’ 대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법무부 대 노동부 간의 제1차 영역다툼을 겪었고, ‘가족정책’ 대 ‘이민정책’으로 대표되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간의 제2차 영역다툼을 겪고 있는 중이다.¹¹⁾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 자문단의 역할도 중요하며, 특히 자문단의 구성멤버가 과거에는 경제학자 위주였는데, 2000년대 이후 사회학, 사회복지학, 문화인류학 등에서도 대거 정책 자문단에 참여하게 되었음도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제1-2차 영역다툼은 1987년 이후 급속히 진전된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증대, 정책문제의 복잡화와 전문화 현상, 그리고 부처간 정책고객이 다름에 따른 이익집단 정치의 반영이기도 하다(박재희, 2000). 그러나 이러한 영역다툼을 겪으면서, 그간의 이민정책은 규제(활용) 정책의 질적 변화는 물론 통합정책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11) 이는 정책갈등, 고객정치, 이익집단 정치란 용어로 불리우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용어들 대신에 영역다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참여정부의 특성

정부의 이민정책이 과거 ‘인력정책’에서 ‘다문화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밝힌 12개 국정과제에 동북아 시대의 거점국가에 대한 비전과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2003년 4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2004년 6월 [동북아시아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동북아의 협력을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사회문화적 교류 증가(인적교류 포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현 정부의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려는 노력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이 있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노동력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사회의 역동성, 창의성, 다양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함이다.

2004년 2월 개편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정책과 이를 위한 인구□가족□여성보육 정책 등을 준비하여 왔다. 2005년 4월 대통령은 ‘이민정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지시하였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4년 9월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14인으로 이민행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 2005년 5월 25일 ‘국가간 인적교류 지원 및 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세미나에는 당시 청와대 이정우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에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다문화적’ 이민정책의 근간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¹²⁾

참여정부의 특수성은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는 유사한 현상에 대해 한국과 대만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시각 및 방안이 다르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우리보다 내□외국인간 국제결혼의 비율이 더 심각한 대만에서도 이들 결혼이민자에게 언어교육, 문화교육 등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그 밑바닥에는 외국인 부인의 자질을 걱정하여 이들의 출산을 억제하려는 가부장적 계급적인 대응

12) 본인도 이민행정연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그 동안의 회의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였다.

을 하고 있다(Wang and Daniele, 2006). 물론 우리나라도 가부장적 계급적인 대응을 하고는 있으나, 대만에 비해 계급적인 대응 정도가 낮다.¹³⁾ 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과거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다 사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간의 이민정책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2006년 4~5월의 다문화 정책은 그간의 이민정책의 정반합적인 변화과정의 산물임에 틀림없지만, 현 정부의 시각과 노력은 우리사회에 다문화 정책과 이에 대한 논쟁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V. 한국적 다문화사회 지향 이민(통합)정책에 대한 평가

1. 다문화 지향 정책이지 다문화주의 정책이 아님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지, 다문화주의 정책은 아니다. <표 2>에서 살펴본 어떠한 정책에서도 ‘다문화주의’ 정책이라는 언급은 없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중앙정부의 장관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을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이후, 몇몇 학자들은 이를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과대해석이었다.¹⁵⁾

13) 정부의 결혼이민 가정에 대한 정책은 그 수혜 대상으로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주부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내 외국인 주부 가운데 40% 이상이 조선족 여성인데, 이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왜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만을 부각시키는가? 이는 정부의 정책이 이들 동남아인에 대한 온정적·시혜적 즉 계급적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며, 나아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결혼이민자를 ‘2류시민’으로 다시 ‘소수자화’하는 것이다.

14)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우리의 경우 다문화주의 전통이 적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인해 타 문화 경시와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고 (세계일보 2005/12/08),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부총리는 2006년 5월 26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대회』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다문화주의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26).

15) 엄한진(2006:71)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우려에서 정부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다문화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cosmopolitanism)나 다원주의(pluralism)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민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의 이념형인 캐나다식 모델의 핵심은 이중국적 인정, 종교, 식생활, 의복, 가족문화 등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문화활동 장려, 종족에 따른 정치적 대표성 촉진 등이다(엄한진, 2006).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다문화주의 정책만이 가장 올바른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사회통합 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은 물론 특정 시기라는 시공간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모두 아울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6년 정부의 다문화 지향 정책은 일본식의 ‘다문화 공생’을 한국적인 ‘다문화 사회 지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캐나다식의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라는 용어만 선호하고 있지, 그 내용은 지극히 ‘동화주의’적 정책이다. 즉 결혼이민자는 물론 외국인에게 우리의 말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동화주의’ 정책이다. 그리고 내외국인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위한 어떠한 정책과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부+NGO’주도적 그리고 ‘중앙’ 주도적인 정책임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문화 지향 정책을 ‘정부주도적’ 또는 ‘관주도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한경구와 한건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다. 현실은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에 학자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의 ‘관(또는 정부)주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9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회운동이 ‘NGO-주도적인’ 운동이었듯이, 2006년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 정책은 정부와 NGO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외국인’은 빠진 즉 외국인은 여전히 ‘타자화’된 정책이다.

이는 우리의 정책이 아직도 중앙->지방 하달식 체제에 머물러 있음과 상관이

정책을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후, 다문화주의 정책이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깊다. 즉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가 집중된 지방을 중심으로, 즉 지방에서 시작되어 중앙의 참여를 요구함에 비해, 우리의 다문화 사회 지향은 중앙에서 먼저 주장되어 지방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추진력은 대단하나, 오히려 이러한 초스피드성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리고 있는 “향후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즉 중앙위주 정책의 한계는 외국인이 실제로 생활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유리된 “이념적”인 정책으로,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지방에서 시작되어 중앙정부까지를 변화시키고 있는 ‘다문화공생’ 운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9년 일본 가와사키시와 가나가와현에서 지역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공적영역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시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민’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시민운동’보다는 ‘사회봉사활동’이라는 표현이 외국인과 일본 국적 시민 간의 차이를 ‘합법적인 다양성’으로 변화시켜 외국인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한승미(2003)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러한 비정치화된 개념들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정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다문화’ 지향 정책이란 지역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결혼이민 여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현실과 일상적인 삶과 문화가 반영되어, 즉 다문화란 이름으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은폐하지 않는 정책이며, 지역의 현장에서 외국인 스스로가 참여하는 즉 이들을 ‘타자화’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공적인 문제에 이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중앙->지방 하향식 및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 간 차별적인 그러나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이 절실하다.

VI.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

이민현상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정책은 초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의 ‘인력 정책’으로 시작하지만, 이민현상이 장기화(정주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통합 정책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나,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한국의 이민정책은 재외동포의 문제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향후 통일에 대비한 다문화 정책의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잠재적인 노동력을 이민정책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간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자, 조선족 등 재외동포와의 '문화적' 갈등 경험은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민정책은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사회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이민정책의 각 단계별로 기본 원칙을 구별하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을 포함한 진정한 이민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다문화주의적·동화적 제3의 통합모델 모색

우리 사회에 맞는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코넬리우스와 수다(2004)가 지적한 이민(통합)정책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2000년 대 들어와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다문화'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그간 마지못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또는 인구의 7~8%가 외국인임에도 그간 공식적으로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 독일도 2004년 새로운 이민법의 제정과 함께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통제'에서 '통합'으로 전환하고 있다(박명선, 2007). 그러나 독일을 위시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통합'정책의 지향점에 있어서, 70년대까지의 '동화', 80-90년대의 '다문화주의'에서, 이제 2000년대로 들어와 다시 '동화'로 U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명선, 2007: 281). 박명선(2007: 297)은 이러한 현상을 '통합정책의 보수화'라고 해석한다. 즉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려는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최근 언어습득 및 시험을 통해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한편으로는 이주민의 '동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배제'를 진행시키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변화에서 과거로의 완벽한 U턴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정반합이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의 실험은 새로운 '다문화적' 동화모델을 모색하는 실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사회통합의 두 가지 모델인 '동화'와 '다문화주의' 모델은 현재 각각의 모델 내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전자는 1960년대 미국의 '용광로' 모델부터 프랑스의

공화주의 모델, 그리고 최근 유럽의 '다문화'를 인정하는 새로운 '동화' 모델 모색이란 실험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도 소극적 다문화주의와 적극적 다문화주의가 구별되고, 온건 다문화주의와 강경 다문화주의의 구별도 가능하다. 소극적 또는 온건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나 이를 음식, 음악, 종교, 생활방식 등의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보지, 이에 근거한 어떠한 집단적□정치적인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또는 강경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집단)차이의 정치적인 결사 및 요구까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민정책의 범위를 넘어,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간의 철학적 논쟁의 쟁점이기도 하다(마르티니엘로, 2002).

이제 '다문화'와 '통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지향하는 이민정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¹⁶⁾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다민족□다인종 사회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추세를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의 다양성(다원화)을 인정□수용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의해 공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그 통합의 내용과 범위 및 정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동화주의'는 그르고, '다문화주의'는 바람직하다든지, '동화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화론적 사고를 피하고자 한다.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 2002: 130)가 지적했듯이, 캐나다식 다문화주의 모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대립을 벗어나 한국적인 제3의 사회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계별원칙: 제1단계 '선별'원칙 대 제2단계 '다양성 존중'원칙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정책의 핵심기초는 기술에 따른 선별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전문기술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이들의 영구 정착을 유도하나, "생산직 기능인력"은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의 영구정착을 막고자 한다. 이는 비숙련 이민자들은 자국의 경제에 일시적으로 기여는 하지만 장기적

16) 최근 이민정책은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으므로,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도 존중해야 한다(한겨레, 2005/10/21).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으로는 공공복지혜택의 수혜자로서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인종)에 따른 선별성도 있는데, 즉 EU 국가내에서 EU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나, 비EU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일부 유입국에서는 국적(인종)에 따른 선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인(화교)과 말레이시아인을, 말레이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인을, 대만은 중국(화교, 중국 본토인) 또는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을, 일본은 해외 일본인 후손을 그리고 2002년 이후 한국은 해외 한국인 동포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2002년 12월 취업관리제, 2007년 3월 방문취업제)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선별정책은 계급(기술)과 인종(국적)에 의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최근 이민의 증대와 함께 ‘탈국가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 -ship)’이 제기되고 있으며(Soysal, 1994), 기존의 시민권 개념이 변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민국가의 경계가 유효한 현 시점에서, 이민정책의 각 단계별 원칙들이 구별되어야 한다. 즉 제1단계인 규제(활용)정책에서는 “국익”을 우선한 “선별” 원칙을, 그리고 제2단계인 사회통합 정책에서는 “보편적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권리”란 측면에서의 다양성 존중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내·외국인 정책을 포함하는 진정한 이민정책의 모색

내국인의 해외 이주까지를 고려하는 진정한 이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계약노동자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20만명을 송출하였고 이중 15만명이 중동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1982년을 고비로 노동송출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1980년대 말부터는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겪게 되었다. 즉 한국은 그간 노동송출국이었던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노동유입국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국가이다(Lee, 2005).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해외 유학, 취업, 투자, 노후이민 등 더욱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이민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에서의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및 가이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중국적의 문제 등 내□외국민을 함께 아우르는 이민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이민정책이 되어야 함은 ‘친한(국)과 외국인’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아는 한국인’의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지구적 시대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거듭남이다.

현재 출입국관리국은 2007년 5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로 변화하여, 기존의 ‘출입국’ 관련 업무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문제까지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본부’로의 변화보다는 ‘이민청’으로 승격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외국민의 이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체계적□유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다양화는 물론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조기유학 증가와 이에 따른 기러기 가족 문제, 해외 투자 및 해외취업의 증가, 노후이민의 증가 등 우리 국민의 다양한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2007년 1월 기준 일반체류자 120만명과 해외유학생 34만명)과 500여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총 665만명 해외한인을 포괄할 수 있는 진정한 ‘이민정책’이 절실하다.¹⁷⁾

VII. 맺는 글

본 논문은 우리 사회 ‘다문화열풍’을 주도한 정부의 다문화 정책들을 이민정책의 변화 및 패러다임의 변화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민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의 이민정책 변화를 야기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국내 정치적인 요인 즉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즉 참여정부의 특성, 대통령의 의지와 부처 간 세력확대 노력(영역다툼)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간 국가지상주의, 조합주의적인 통제로 특징되던 우리의 ‘개발국가적’인 한국의 국가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크게 변화하였음(문정인, 1998)이 이민정책의 수립과 실행이라는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이다.¹⁸⁾

2006년에 발표된 일련의 다문화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다문화 지향 정책이지 다문화주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NGO’ 주도적이며, ‘중양’ 주도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이제는 중양

17)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외교통상정보 내 재외동포/단체현황 통계를 참조하였음.

18) 19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대내·외적인 추세는 우리의 국가-기업-(시민)사회의 관계(상호작용)를 크게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이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한 것이다.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는 본 보고서의 윤인진(2007)의 글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지방 하향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 간의 차이 있는 그러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의 이민정책 상의 변화란 국제적으로는 '다문화' 및 '통합'을 지향하는 전 세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음도 진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인 '다문화'적 '통합'이란 이상적인 지향점일 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최근에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해외이주와 외국인의 국내이주가 중첩되고 있는, 그리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은 향후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의 다양성(다문화)을 인정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의해 공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그 통합의 내용과 범위 및 정도에 대해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향후의 사회통합 정책은 다문화주의 대 동화주의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제3의 사회통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민의 추세가 '영주이민'에서 '순환이민'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제 이민은 더 이상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닌 '일상적' '보편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민정책이라고 하면 외국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이민정책이란 우리 국민에 대한 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전환하여 이민과 관련된 '내□외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 이는 앞에서 그간의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의 정책갈등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내외의 조정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이민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민청 및 이민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내□외국민의 이민 관련 연구에 보다 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시평. 1990.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대책소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 원고위정책과정 논문.
- 김애령. 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연구." 충남 도청.
- 김혜순. 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

- 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6-8: 13~41.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사)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 문정인. 1998. “한국의 민주화, 세계화, 정부-기업관계.” 문정인 편. 『민주화 시대의 정부와 기업』. 도서출판 오름. 제2장: 21~62.
- 마르티니엘로, 마르코 지음 (Martiniello, Marco) 윤진 옮김. 2002. 『현대사 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 민경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 2003-8 연구보고서.
- 박명선. 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학』 41(2): 271~303.
- 박재희. 2000. “부처간 갈등과 정책조정력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 9(4): 5~24.
- 서영주. 2001.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강원도 여성정책실, ‘외국인 주부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 2001년 9월 7일 춘천, pp.21-75.
- 설동훈. 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15: 113~44.
- _____. 2006.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2005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 보고서』 법무부: 71~110.
- _____,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_____,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김혜순 편집.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6-8: 45~75.
- _____. 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253~286.
- 염재호, 김정렬. 1998.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과정 분석-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경호 외.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규율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67~391.

-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2004.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 윤인진. 2006. "장래 우리나라 인력난 문제해결 및 재외동포 인력 활용방안". 『2005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 보고서』 법무부: 1~70.
- 이운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이혜경. 1994.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8: 89-113.
- _____. 199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497~527.
- _____.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장승진. 2002. "이민 통제와 국가 시민권의 형성: 1962-1981의 영국 이민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 타무라 타로. 2007. "다문화 공생 사회의 형성과 지역사회 전개에 있어서 일본의 현상과 과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여성포럼 주최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지역사회의 과제' 2007년 7월 24일. 백석대학교 본부동 12층 국제회의실 발표자료: 23-66.
- 한국노동연구원. 1991. 『외국인력수입과 정책방안』.
- 한승미. 2003.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 와 다문화주의의 실험: 가와사키 시 및 가나가와 현의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1): 119~147.
- Castles, Stepha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rnelius, Wayne A. and Takeyuki Tsuda.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The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pp. 3~48 in Cornelius, Wayne, Philip Martin, and James Hollifield (ed.)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sen, Randall. 2000.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Post-war Britain: The Institutional Origins of a Multicultural 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Hye-kyung. 2005. "The Korean Diaspora and Its Impact on Korea's

- Development." *Asian Pacific Migration Journal*, 14(1-2):149-168.
- Wang, Hong-zen and Daniele Belanger. 2006. "Taiwanizing Female Immigrant Spouses and Materializing Differential Citizenship."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arriage and Citizenship in Asia', Organized by the Asian Research Institute, NUS, Singapore, October 2006.
- Seol, Don-Hoon and John Skrentny. 2004.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pp. 481~513 in Cornelius, Wayne, Philip Martin, and James Hollifield (ed.)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oysal, Yasemin.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윤 인 진 (고려대 사회학과)

I. 서론

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진입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¹⁾,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북한이주민(정부의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의사소통문제, 가족관계 문제, 경제문제, 문화충격 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보호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란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1)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하게 불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부적으로 '전문인력', '예체능 인력',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한다.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외국인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는 주로 단순기능인력이고 임금체불, 폭력,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경험해 왔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다만 문맥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겠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를 가리킨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시행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사회 내의 모든 인종, 민족집단이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와 공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유정석, 2003: 14-15; 강희원, 2006: 10-12). 다문화주의 이론의 대가인 캐나다의 철학자 테일러(Taylor, 1992)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인정의 정치는 단지 소수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속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트로퍼(Troper, 1999)의 정의에 따르면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②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다문화주의의 3가지 요건 중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다민족□다문화사회라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무부의 2007년 6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96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2%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2.8%,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송중호, 2007: 91).²⁾

외국인의 증가에는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몫이 컸다. 1990년대 초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는 2006년 12월 현재 45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내국인의 낮은 출산률과 3D 업종의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01년의 유엔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2)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 다만 이민자 문제가 발생하는 서구 선진국(OECD 회원국가에 한정하면)들의 이민자 비율이 10%를 넘는 것을 볼 때 이 수준에 이르면 고도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참고로 OECD 자료에 따르면 주요 OECD 회원국가들의 이민자 비율은 프랑스(1999년 10%), 독일(2003년 12.9%), 영국(2004년 9.3%), 캐나다(2004년 18.9%), 미국(2004년 12.2%)이다(Lemaitre and Thoreau, 2006).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50년 기간에 총 1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결혼도 급증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에 달한다. 2006년 한국의 혼인 신고 건수의 13% 가량이 국제결혼이고 농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33%에 달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2006월 4월 현재 30,727명이고 그 중 학교 재학생은 7천 명에 달한다.

문화적 관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은 아직 다문화주의적 가치관과 행동양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다.³⁾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신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의 강한 동질성과 동질의식은 “다른 것=틀린 것”이라는 사고를 조장하여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타성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비관용성을 키워왔다. 물론 과거에 비교해서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관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신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여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외국인에 대한 온정과 시혜는 이들이 내국인과 경쟁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체계를 도전하지 않은 조건으로 허용되는 인상이 강하다.

다문화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어느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앞서가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경직되고 강압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코시안’이라고 불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시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한국 주류사회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장기간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했다라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강제퇴거하는 출입국관리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국민 의식과 정책 및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의식과 제도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다문화주의적 사회로 변모할 것인지, 아니면 외양만 다문화적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민족국가의 본질을 유지할 것인지는 주의 깊게

3)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는 용어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엄연히 다르다. 다문화적이라는 표현은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인종적·종교적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회학적 사실’을 가리키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그런 사회학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방식을 일컫는 개념이다(Raz, 1994: 173; Bi-Hwan Kim, 1996: 359(김비환(2007: 66)에서 재인용).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을 일으키고 정부로 하여금 다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만든 계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이들의 인권침해 논란 및 사회통합의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실태와 다문화주의 담론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이주노동자 실태

한국사회의 무늬만의, 구호로서의 다문화주의의 실상은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강제 출국을 앞두고 보호소에서 수용 중이던 한 재증동포의 방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이다. 화재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담당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했다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인재(人災)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보호소의 안전시설과 인권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단속과 강제 퇴거를 계속하는 한 이러한 참사는 재현될 것이라는 것이다.

2005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중 합법체류자는 287,534명(61.4%)이고 불법 체류자는 180,792명(38.6%)이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1999년 당시 67%에 달하기도 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면으로 인해 2005년에는 38.6%로 감소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40%에 달할 만큼 높은 비율이다(이정환, 2007: 44).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겪는 문제에는 경제적 문제, 사회문화적 문제,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저임금,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등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유색인종과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 경찰폭력, 타향에서의 식생활의 어려움, 종교공간 부재에 따른 종교생활의 어려움, 의료 등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법적 권리의 미보장에 따른 불이익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단속과 추방의 두려움이 더해진다. 설동훈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4) 법무부의 2006년 12월 31일 통계에 따르면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는 236,262명, 불법체류 외국인은 211,988명이다. 법무부 통계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 중 근로자의 통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자 신분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40% 대에 이를 것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언어문제, 건강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결혼생활 및 성생활문제의 순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사소한 사건이 인종 간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교류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조선경(2006)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어 사용 실태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4%가 교사 외에 의사소통할 만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일상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2001년 말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백서'에 따르면 폭행이나 욕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시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고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이미지를 다룬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보수적이고, 노예처럼 굴종적이며, 느리고, 소극적이며, 의심스럽고, 멀게 느껴지며, 지저분하고, 불쌍하다'는 부정적 내용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직결되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 신입자의 몇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60%에서 70%사이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1년에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이 급여수준,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만족 정도가 낮으며 또한 '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동료들의 인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3. 결혼이주여성 실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결혼 건수는 총 240,755건으로 이중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66.4%이고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은 33.6%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기준으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동포)이 47.4%를 차지하고 중국(17.3%),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전체 외국인 아내의 반 수 가량이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더욱이 국제결혼이 대중화되면서 모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입국하여 사회적응과 신혼생활, 자녀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차이와 적응의 문제는 결혼까지의 과정과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에 따라 발생한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알선으로 결혼하게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 없이 졸속으로 하게 된다. 결혼 후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오해와 갈등이 생겨난다.

이주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언어의 차이이다. 단어와 문자는 물론 음성과 음량, 문법에 이르기까지 모국어와 전혀 다른 한국어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사전이 단어장 수준이고 학습서의 수준이 여행자용 회화 소책자 정도로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태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가정에서의 한국어 학습 역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어머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이 지체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업을 쫓아가기 어렵게 된다 (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음식문화, 명절과 제사 등 관례문화 등 일상생활양식의 차이도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다. 많은 음식을 집에서 손수 만들어야 하거나 말없이 빨리빨리 식사를 하거나 먹다 남은 음식을 다음에 다시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가족 구성과 친정 및 시댁과의 관계,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권한과 역할,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식구의 며느리에 대한 태도, 부부관계 등 가족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이주여성들은 모국 문화와 커다란 문화차이를 경험한다. 가족관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모든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지만 친정과 시댁의 관계가 동등한 공계 또는 양면적 가족구조를 가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한국의 부계가족체제와 관계에 적응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 공계 또는 양면적 체제에 익숙한 이주여성들에게는 부부간의 사안이나 가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일은 자신의 소관이며 부부의 의견 조율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 시댁식구가 관여하거나 또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성역할 의식의 차이 역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의 소득이 적은 것과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으나 한국에 와서는 가사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고 시댁에만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시부모가 그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한되어 있고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이주여성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모국의 문화가 무시되거나 폄하되고 한국인으로 철저히 동화될 것을 강요받는 것이다. 즉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수행능력의 부족에서 찾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다.

4. 다문화주의 담론의 부상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온 기간은 15년이 넘고 2006년 12월말 현재 약 4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시로 일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보다 유입 시기도 짧고 전체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율도 10% 정도로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한시적 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정주자로서 ‘우리 식구’로 인식되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다문화주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김혜순, 2006: 52). 이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위탁사업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언론이 결혼이민자 가족에 온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다문화주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politically correct)’ 또는 어떤 반대도 용인하지 않는 신성한 도그마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학계도 국제이민과 국제결혼가족문제의 중요성과 앞으로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주의 이론과 정책이 출현한 서구와는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한국사회에 대한 진지하고 비판적인 검토 없이 다문화주의 담론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들과 정책들이 제기되기도 한다(엄한진, 2006). 만일 다문화가 불가피한 시대적 추세이고 한국사회를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의 이념과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오경석, 2007).

본 논문은 한국적 "다문화주의" 이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적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서구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 배경을 검토하고 한국적 다문화주의 담론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라는 비판에 기초하여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의 모델의 경험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발전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으로 단계적 다문화주의와 민관 가버넌스체계(governance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 배경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자국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노동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급속한 비서구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은 거주국의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국가정체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구 국가들은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을 통해 신규 이민자들을 기존의 사회구조에 통합시키고자 하였다(Park, 2006). 캐나다는 1971년에 서구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

다. 원래 의도는 퀘벡주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리운동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후 소수인종집단의 문화보호와 평등한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는 미국, 호주,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소수민족과 원주민 그리고 소수 인종·문화집단들의 요구와 압력이 점증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 생존과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한편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문화주의가 채택되게 된 것이다(김비환, 2007). 김리카(Kymlicka, 2005: 31-36; 김비환, 2007에서 재인용)가 지적하였듯이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원인에는 ①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② 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인종집단의 권리의식의 고양, ③ 민주주의의 확립, ④ 냉전의 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의 감소, 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의 존재 등이 있다. 결국 비서구 출신 신규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이들에 대한 다수집단의 인종편견과 차별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의 사회부적응, 다수-소수 인종집단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다문화주의라는 이념과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배경과 문제점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관심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설동훈, 2004; 오경석, 2006).

앞서 지적하였듯이 2000년 한국에서 형성된 다문화주의 담론은 국가가 주도하고 이런 담론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확산된 양상을 띠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률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서 국제결혼을 후원하였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고 전 세계적 경향에 부합하는 ‘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다(김희정, 2007: 38).⁵⁾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비교해서 힘들지 않고,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정부로부터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기존 활동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면서 다문화주의가 민간영역에서도 확산되었다(이선옥, 2007: 85). 여기에 사회학, 인류학, 국문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학자들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자녀 문제를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인식하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런 현상을 다문화주의 담론과 연계하였다. 특히 가족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20여개 지역에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현상을 자신들의 연구 및 사업 영역의 확장에 발 빠르게 활용하였다. 언론의 역할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KBS 1 TV의 ‘러브인 아시아’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들이 겪는 언어 및 문화장벽, 교육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가족성원과의 갈등문제들을 보고하면서 다문화가족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및 지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주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06년에 한국계 흑인 하인즈 위드가 미국 슈퍼볼 경기에서 MVP로 선정되고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혼혈인 차별 문제가 부각되었다(이상길□ 안지현, 2007: 115).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서구의 다문화주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경석(2007: 5)은 한국의 학계가 생산해내고 있는 다문화 사회 관련 담론들이 “다문화주의의 철학, 이론, 개념 등에 관한 진지한 분석을 생략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당위’로 간주한 후, 결혼 이민자라는 ‘제한적인 범주’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회통합의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천선영(2004)은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이해와 관용, 융화와 화합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근대 국가단위사회에서의 문화적 단일성 내지는 동질성을 재확인 내지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선옥(2007: 85)은 일부 시민단체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한국염 대표는 ‘코시안’이라는 용어가 인종차별적이라는 거부감과 반대가 있자 미국에서 ‘이주문화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다문화자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필자와의 인터뷰).

보였다. 그녀에 따르면 일부 지원단체들은 “NGOs와 준정부기구의 사이에서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채 이주노동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불분명한 관계로 인하여, “지원단체는 기존에 주력하였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노동허가제 논쟁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해결점이 쉽게 보이지 않는 노동 문제에 거리를 두고 상대적으로 정부에 받아들여지기 쉬운 국제결혼여성의 권리문제와 이주아동의 교육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행사에 주력하고 있는 향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는 길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순혈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동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인 합법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으로 구분되고 불법 외국인은 다문화주의의 주체로부터 배제되게 된다.

문경희(2006)는 현재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상황에서 정부와 주류 언론이 다문화주의 도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의 권리나 지위문제보다는 다문화주의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국적 취득을 허용해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주장도 국익 우선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이용한다면 이주자, 특히 저숙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소수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다수문화 보편주의의 성향을 띠는 다문화주의가 시행된다면 국제결혼 이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소수집단 내에서 주변화되는 여성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남국(2005)은 한국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추진된다면 공화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문제, 예를 들어 다수의 전제가능성과 지배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일체감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의견을 억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국익 우선의 다문화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자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다문화주의가 균형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가 주장하듯이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로부터 실제 다문화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정작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레토릭이 아닌 실질적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모델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성급한 다문화주의 이론의 도입과 정책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07년 2월 (사)국경없는 마을 다문화사회연구원 소속의 연구자들이 그간의 현장 활동 경험과 내부 포럼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학술토론회에서 오경석, 김희정, 이선옥 등은 국가 또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주도형 다문화주의(official multiculturalism 또는 state-sponsored multiculturalism)’라고 명명하고 이런 방식의 다문화주의는 과거 방식보다 세련된 외국인 관리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만일 관주도형 다문화주의가 있다면 그에 대칭되는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있을 것인데 선행연구에서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의 대안적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다. 필자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에 대칭되는 형태의 다문화주의를 ‘시민주도 다문화주의(citizen-led multiculturalism)’라고 부르고 이것이 어떻게 관주도형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다문화주의를 ‘국가주도 다문화주의(state-led multiculturalism)’, 이주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및 학자들이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를 ‘시민주도 다문화주의(citizen-led multi-culturalism)’로 부르겠다.

III.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의 내용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의 면에서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된 다인종□다민족사회들로서 이러한 현실로부터 생기는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해서 국가로서의 통합을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다문화주의는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서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또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를 국가통합의 이념과 정책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최소한 초기에는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캐나다가 영국계와 프랑스계로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1971년에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정책으로 선포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한국도 이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최근 1~2년간 한국 정부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한국이 급속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이해하에" 부서 행정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그 해 4월 26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다 부처 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의 두 정책이 채택되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으며" 따라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단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다문화를 강조하고 타인종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러 정부 부처 중에서 다문화 담론의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부처는 단연 법무부이다. 법무부는 부처 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민 정책: 외국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열린사회를 위하여"라는 공청회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서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정책"이라고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공청회 개회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씨는 "현재 한국에는 이미 8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이는 등, 급속히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구사회의 경험에서 보듯이 다문화정책을 통하여 이주자를 통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김희정, 2007: 33).

정부는 2006년 11월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키로 의결하였고,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최근 국제 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약 4만9천 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현재 약 96만 명으로 19배 증가하였고, 그 증가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다. 법의 목적을 두고서는 한국의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다른 나라의 다문화주의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희정, 2007: 39). 그러나 “제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정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을 합법 외국인에게 국한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담론이 형성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의 투쟁이 있었는데 정작 외국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들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다문화주의 정책의 적법한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거리이다. 김리카조차도 다문화주의 논의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한 이주민들로 국한하면서, 이주민들은 국적을 취득할 전제를 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을 실시할 당위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의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만약 다문화주의 담론이 합법적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라면 사회정의라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이고, 그들의 귀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주노동자의 수가 결혼이민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김희정, 2007: 40).

한국의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에 대한 하나의 관리 기제로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합법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으로 이분화하여 관리통제 한다는 측면과 문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은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엄한진(2006: 35)이 지적하듯이 “선한 이민”과 “부정적인 이민”의 구별짓기가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하기 힘든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 가족제도를 유지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인 반면 남성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까지 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빼돌리는 존재로 인식되게 된다. 그리고 외국적 동포 대 일반 외국인, 미주 및 일본의 선진국 재외동포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재외동포간의 차등화가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표 1〉 한국에서 외국인 관리의 메커니즘

	세부 구분	법적 지위	관리 기제	한국사회 통합여부
국제결혼	국제결혼여성	합법	다문화주의	통합 대상
	국제결혼남성	합법	-	-
아동	국제결혼가정아동	한국인	다문화주의	통합 대상
	이주노동자 자녀	불법	최소 인권	귀환 대상
이주노동자	등록 이주노동자	합법	고용허가제	귀환 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강제추방, 의도적 묵인	귀환 대상
재외동포 (중국)	-	합법 불법	동포취업제	통합-귀환 대상

자료: 이선옥(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pp. 76-89.

물론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의 수혜자를 합법적인 국가 구성원에 한정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현행법을 어기고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와 기존 사회문화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규모와 자격을 통제하고 국내법을 어긴 외국인을 단속하고 출국시키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다. 이런 이유들로 국가는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시행할 때 외국인을 합법성의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고, 정책의 대상을 합법체류 외국인에 한정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과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개별 외국인의 인권과 특수 상황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문화주의의 실질적 구성원들에게 다문화주의 정책의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 혹은 보호에서 벗어나 국가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권, 환경, 평화, 문화 등과 같은 탈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과 밀착되고 이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도 현장에 기반을 둔 시민

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2. 시민제도 다문화주의의 내용

앞에서 시민제도 다문화주의는 원주민(aboriginals) 및 이주민(im-migrants)과 같은 소수집단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및 학자들이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시민제도 다문화주의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from below)’ 또는 ‘풀뿌리 다문화주의(grass-root multiculturalism)’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제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주체인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처지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시민제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의 주체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가 국익과 공공선의 이름으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할 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시민제도 다문화주의가 시정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를 민주주의와 비유해서 설명하면 다문화주의도 민주화와 같이 단계적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단계를 거쳐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르는 것처럼 다문화주의도 초기에는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동화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로의 이행 단계를 거쳐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문화주의의 공고화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의 시민제도 다문화주의는 원주민 또는 이주민 집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뉴질랜드의 다문화주의는 초기부터 마오리(Maori)족과 영국계 정착민들 간의 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1960년대의 흑인들의 민권운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Thomas, 2001). 그러나 한국의 화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혼혈인 등은 다문화사회의 주체이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자체 자원을 동원하여 정부와 주류사회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왔다. 외국인의 정주를 허용하지 않아 온 정부의 외국인 관리 정책, 화교와

같은 정주 외국인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소유권과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은 차별적인 정책, 그리고 아직까지 이들이 짧은 이주기간으로 인해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를 형성하지 못한 점들이 소수집단 성원들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행위자로 나서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자녀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주도해 왔다.

시민단체에서 '다문화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물론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에도 일부 지원단체에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운동의 의제는 아니었다. 이런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2005년 경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지원단체와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다문화'를 채택하였다. 현재 이주노동운동 속에서 '다문화주의'는 이미 이주인권연대, 외국인노동자협의회 등의 주요 지원단체와 이주여성상담 단체의 주요 의제이고, 최근 들어 정부 정책과 예산안의 증액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주노동운동에서 관련 사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이선옥, 2007: 77).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 관련 활동 및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많으며 기존 단체들이 다문화 관련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면서 매년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의 수가 국제이주여성 관련 시민단체들보다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시작하였지만 최근에 국제이주여성 또는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면서 이제는 시민단체를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으로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여전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보호사업(임금체불, 퇴직금 미수령, 폭행 및 성추행 문제 해결)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에 내부 조직으로 결혼이주여성전담팀을 만들었다.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가정 형편 상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이주노동자가 되게 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문제와 결혼이주여성 문제가 중첩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소위 '붐'이 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민간영역으로부터 다문화가족 관련 위탁사업을 수령하려고 너도 나도 나서게 되자 시민단체 내에서 자성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째는 여전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권과 인권문제가 심각한데 시민단체들이 돈도 안 되고 힘만 든 이주노동자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국제이주여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이 필수적인데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한국문화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리하여 이주여성들에게 다도(茶道), 한복입는 법 배우기, 전통 예절 배우기 등 다문화적 가치와 배치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다문화 관련 활동 및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20개의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20개의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갖고 전체 시민단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현황과 한계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화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시민단체들은 송중호(2007: 123) 논문의 부록에서 소개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회원단체 주소록,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출간한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정기선 외, 2007)의 부록에서 소개한 국제결혼 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민간단체 현황,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표본에 선정된 시민단체들의 단체장 또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설립연도, 주요 활동, 다문화 관련 활동 여부 및 활동 내용, 정부 지원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현안인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문제점과 선호하는 고용제도,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전화조사는 2007년 7월 20~25일에 걸쳐서 필자와 연구조교 송영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3.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관점

20개의 시민단체들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모든 단체들이 내담자를 대상으로 각종 상담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몇 개의 단체들은 의료 진료를 하거나 의료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주요 사업이 아니다. 다문화 관련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적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하게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산하 기관인 ‘다문화열린사회’가 주관하는 Migrant Arirang Festival은 여러 국가 출신의 외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국민 노동자들이 자기 문화를 홍보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성격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시민단체들은 소수이다. 대부분 한국의 명절, 크리스마스 등 주요 절기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최하는 행사들(예를 들어, 서울시의 Hi-Seoul Festival 또는 이천도자기축제)에 외국인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문화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즉 시민단체의 역량이 자체적으로 다문화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 내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다문화 사업으로 '다문화 캠프', '아내 나라 말 배우기 교실' 등이 있으나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단체의 다문화 관련 활동은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한국인이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실험적으로 시작한 한국인 남편 대상의 베트남어 교실은 처음에는 20명의 남편들이 참여했지만 5명만이 계속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 베트남 아내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어를 배우는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부관계가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노후를 베트남에서 보낼 생각으로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국제결혼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은 국제결혼이 단지 동남아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 남성이 아내를 통해 동남아로 진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민단체들이 사업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개 단체 중 반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프로젝트 기준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 관련 경비만 지급받고 단체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비는 지급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도 단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의 단체장 또는 실무자에게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현안인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외국인 고용제도, 참정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관련해서 20개의 시민단체 중 반수가 전면적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머지 반은 제한적, 조건적, 또는 단계적 합법화를 주장하였다. 서울의 한 이주노동자센터의 실무자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관련하여 노동운동가들 간에 의견 불일치가 심하고, 만일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과 기준에 합의하기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는 대책 없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합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단체들 간에 의견 차이가 심하고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찾기 어렵다고 말을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고용제도로는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측과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서 사용하자는 측이 비슷한 비율을 이루었다. 노동허가제를 선호하는 측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과 변경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 사용하자는 측은 현 시점에서 노동허가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개선하면 노동허가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즉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같이 외국인 고용제도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대체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갖는 단체장이나 실무자는 없었고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표 2> 참조).

전체적으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다수의 단체들이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중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고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적 사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다수의 단체들이 재정, 인력, 시설면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 간에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외국인 고용제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강경일변도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위의 사안들에 대해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갖는 단체들이 많았다. 이런 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서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 민관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본 전화조사는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항목의 제한성으로 인해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예비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다음 절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다문화주의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관점을 조사하기 위해 시민단체 중 다문화주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온 ‘(사)국경없는 마을’,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사례로 선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표2>

IV.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사례

1. (사) '국경없는 마을'

1) '국경없는 마을'의 출현 배경

국가의 일방적인 다문화주의 담론에 대항해서 다문화 사회의 실질적인 주체들의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사회의 모델로 안산시 원곡동의 '국경없는 마을'을 생각할 수 있다. '국경없는 마을'은 안산시 원곡본동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지역사회의 실험이다(오경석, 2007: 11).

1995년 무렵부터 원곡동 지역에서는 소위 '코시안'이라 불리는 한국인과 아시아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1997년 호적법의 개정으로 그들에게도 합법적인 한국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인종적, 문화적 차별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국경없는 마을'의 박천웅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오경석□정건화, 2006). 박천웅 목사에 따르면 '국경 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 프로젝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배타적인 차별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박천웅, 2004c; 오경석□정건화(2006)에서 재인용).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1999년 "다문화 및 대안 공동체 건설, 국경없는 노동자 시민권 확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 권리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국경없는 마을 1차년도 5개년 계획'의 추진 일정이 수립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박천웅, 2001).

오경석□정건화(2006)가 분석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역할 변화 과정을 정리한 것을 보면 박천웅 목사의 문제의식의 변화를 잘 볼 수 있다. 즉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역시 그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가 철폐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적 범위 외의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 진정한 삶의 차원에서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에서 사람과 접촉, 자연적인 접촉에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하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들을 조직하였다.

2)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주장

‘국경없는 마을’의 사상은 생존권, 평등, 공생, 공동체로 요약될 수 있다. <표 3>에서 1989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주장을 종교, 노동, 지역, 공동체, 인권의 차원에서 정리하면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과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주민권과 시민권을 요구하고 정부기관과 지역주민간의 협치(거버넌스)를 주장한다.

<표 3>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주장 및 관점

종교	‘다문화목회’, 상이한 가치관 인정
노동	국경없는 노동 『노동의 축제』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존하며, 이주노동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생존권리로서 자유로운 이동과 가정을 꾸리고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지역	국경없는 평화 『신인간운동』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존하며, 이주노동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생존권리로서 자유로운 이동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공동체	국경없는 공동체 『국경없는 마을』 “국경없는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구조와 저항 혹은 협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국경없는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공동체 형성을 지향합니다.”
아카데미	영구적 신학가치의 추구, 실천차원에서 각종 이론의 수렴 및 현실적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
인권	국경없는 인권 『국경없는 시민권』 “국경과 인종으로인한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법률적 제도적 권리보장 활동을 위한 국경없는 시민권 활동을 전개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관계	국제유엔규약에 따른 이주민들의 “주민권”과 “시민권” 요구, 다문화 지역거버넌스 형성 주장
국제적인 연대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지구적 시민권 주장
여성과 아이	국제결혼자녀들의 차별 반대, 다문화교육주장

자료: 예동근(2007), “다문화사회와 초국적 커뮤니티”.

3)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활동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슬로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 사회정의 실현, 다문화 공동체 형성, 주민권력 형성”이다(오경석□정건화, 2006).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먹는 데는 차별이 없다”에서 출발한 ‘먹거리 축제’, “노는 데는 차별이 없다”에서 출발한 ‘길거리 카페’, ‘콩꽃축제’, ‘추석축제’, ‘국경없는 마을배 월드컵’을 조직하였다. ‘주민의식의 강조’에서 매달 한 번의 주민과 함께 진행되는 길거리청소, 마을지도 만들기 및 사이버마을 개설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학습, 그들의 생존권 해결을 위한 체불임금 받아주기, 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그들이 마을의 손님으로부터 주민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활동은 ‘안산월드컵’이다. 이 활동은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참여하고 참가인수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와서 영향력이 크다. 2004년 5월 30일에 개최된 안산월드컵에서는 안산 시민 200명과 이주노동자 2천명이 참가하여 스포츠를 통한 상호간의 문화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 행사의 목표는 ① 아시아 각 국별 다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장을 넓힌다, ② 시민과 이주노동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경없는 마을’을 형성한다, ③ 시민과 이주노동자가 함께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하며 주인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사업추진성과에 대해 내린 자체평가 결과 시민과 이주노동자가 축구를 통해 얼굴을 익히고 서로를 이해하며 친분을 깊게 하여 함께 사는 주민으로서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이주민들은 하나의 동원대상이었지, 동원주체가 되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박천웅 목사가 강조하는 “문제의 대상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신념이 잘 관찰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짧은 체류기간과 강제추방의 위협 속에서 이주민들이 주체로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활동이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舊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1) 출현 배경 및 변화

1991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이 급증하였지만 법적 제도적 미성숙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특히, 1992년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예배 위주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노동상담, 임금체불, 산업재해 처리, 폭행문제 해결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그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최의팔 목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996년 8월 15일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7년 9월 2일 ‘서울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서울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는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로 단체명을 변경하였다.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의 설립목적은 ①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책제안 및 지원활동, ②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 의료 생활상담 및 지원활동, ③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교육 언론홍보 활동, ④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 제공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및 주장

첫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과 출국문제, 가정문제, 송금문제 등의 상담을 한다.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 안내 및 의료비지원, 그리고 거주할 곳이 없는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실시, 노동 교육, 귀환교육, 생활교육, 기술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나라별로 공동체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와 국제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을 불식시키고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이웃나라 배움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원활동가, 일반시민,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 및 기타 체육대회, 야유회, 한국문화체험 등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가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단속 및 강제추방정책 철폐, ② 모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 ③ 고용허가제의 보다 근본적인 개정 ④ 외국인 동포에 대한 자진출국프로그램과 상응하는 특별조치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단속 및 강제추방정책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근절시키는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단속과 강제추방조치만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의 단적인 예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추방정책에도 불구하고 18만7천여 명(2006년 12월말 현재)이 여전히 불법체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단속과 추방조치로 2003년 11월 당시 불법 체류율이 88%에서 44%로 줄어들었지만 당시 정부의 목표인 불법 체류율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제단속의 직접적 원인으로 2006년 봄에 인도네시아 누루 푸아드씨가 단속을 피하려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고, 최근 여수 참사사건은 강제단속과 감금 그리고 강제추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모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10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정부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법체류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기존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법질서 내로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고용허가제의 보다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 모집기관에 위탁과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

항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주에 의한 일방적 계약, 사업장 이동 불허 내지 사업장 이동회수의 제한, 매년 계약 갱신, 계약기간 제한(3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 동포에 대한 자진출국프로그램과 상응하는 특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차선책으로 재외동포를 동포라는 측면에서 포용정책을 수립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구성원의 일부가 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포용정책을 펼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장기체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써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방문취업제 실시와 함께 타민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할 뿐 아니라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맞물려 한국사회가 합리적 이주노동자 운영제도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제적인 추방정책보다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단속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고 숙련노동자나 장기체류자에 대한 특별체류권이나 영주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 출현 배경 및 변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국제결혼가정 피해여성의 지원을 위하여 2000년 10월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의 집'으로 시작하여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2003년에 '이주여성인권센터'로 단체명을 변경하였다.

이 인권센터의 대표인 한국염 목사는 초기에는 종교여성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국내로 입국하면서 외국인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처하려고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당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의 대표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이들이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주노동자 센터로는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게 된 주된 동기였다. 창립초기에는 이주여성노동자 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터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의료지원,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 임금체불 등의 노동 인권상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면서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이주여성노동자들보다 심각한 것을 직시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활동을 주로 벌이고 있다(한국염, 2007a).

2) 주요 활동 및 주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문화활동, 한국여성과 이주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결혼이민자들과 체류상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권상담과 법률지원, 쉼터지원, 임/출산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모성지원,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1년에는 법무부로부터 하역금 G-1 비자(간이비자제도)를 발급하게 하여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이주여성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6년 4월 26일에는 빈부차별시정위원회와 협력하여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초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이 후에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한국염 대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문화가족이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가 존중받고 어우러지는 것이 다문화가정이고 그럴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한국염, 2007b). 즉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 가정의 핵심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들이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시민으로서의 위상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지원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하는 복지대상으로서 주변화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한국염, 2007c). 이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소양교육도 필요하지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소양교육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이주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이다. 즉 이주여성을 보호받고 교육받고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 여성들을 격려하여 주체적인 존재로 세워야 건강한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가족은 그 나라 문화로 동화시키는데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염, 2007c).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주여성지도력 개발프로그램이다.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3년을 목표로 여성의 지도력을 육성하여 한국에서 당당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국여성의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주여성이 알아야 할 한국생활 이모저모, 생활경제, 여성의식화, 민주시민양성, 리더쉽 개발 과정 등이 있다. 이렇게 이주여성의 지도력 육성은 서로를 지지해 줄 나라별 자조집단 육성으로 이어진다. 나라별 자조집단 육성을 통해 이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고자 한다(한국염, 2007a).

그 외 주요활동으로는 2002년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가족치유 프로그램 시작, 2003년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 문화체험 교실, 이주여성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2004년 이주여성지원핸드북 제작, 베이징 + 10 행동강령 평가(이주여성부문) 작업과 한국보고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형성을 위해서 이주여성 관련단체들과 함께 2006년 6월에 실시한 '정부의 결혼 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10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하였다(김민정, 2006).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표 4>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관련 10대 정책요구안

순서	내용
1	가족주의적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결혼이주자 인권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결혼이주자가 세력화(Empowerment) 할 수 있도록 지지(Encourage)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입국 전 결혼이주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결혼비자 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5	탈법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6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정착과 재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8	혼인과탄 귀책사유 입증에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 의한 현장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9	이주민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	결혼이주자를 포함하여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V. 결론과 정책제언

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비교

앞장에서 설명한 국가주도와 시민주도의 다문화주의 목표와 활동을 비교하여 이념형적으로 정리하면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 법무부로 하여금 혁신적 외국인 정

책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국을 이민청과 같은 외국인□이민 정책 총괄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조직 내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였다.⁶⁾ 그 결과 2006년 5월에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가 완성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법무부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보고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서는 외국인정책의 목표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문화를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열린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핵심어는 ‘국익’과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률과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력부족문제를 외국인력 도입과 국제결혼으로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단순 기능인력은 정주화를 막는 방법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은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신속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지원을 하고자 한다. 비록 정부의 외국인정책에서는 정책목표 대상으로 합법적 외국인과 불법 체류 외국인이 모두 포함되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르면 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합법적 외국인(합법적 단기체류 외국인, 국제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귀화 외국인, 난민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주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법률,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상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목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학습하고 변화하기보다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변할 것을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체 외국인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정부기관간 중복투자과 단기적 지원으로 예산 낭비와 실효성 있는 정책 결실이 생겨나기 어렵고, 한국인의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6) 필자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2006년 5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선진국에 비교해서 인권의식이 약하고 단일민족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만 국민의식을 변화시키고 정부기관들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피력하였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의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도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법의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이주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주도를 해 왔다. 시민단체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내국인과 이주민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차별 없이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에 비교해서 현행법의 테두리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 대상을 합법적 외국인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체류 외국인까지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활동 방향은 실리, 실용성, 국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외국인의 인권 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결혼이민가족의 역량강화와 같이 외국인의 내적 가치를 추구한다. 주요 다문화 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통한 한국인 만드기에 치중하지 않고 다문화 축제, 권익증진, 인권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과 같은 역량강화, 내국인의 다문화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재정, 인력, 시설면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다문화주의 활동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보편적인 인권을 주장하다보면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대행하면서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부여받으려고 개별 시민단체들간에 경쟁과 대립을 하게 되고, 시민단체들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난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당수의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강경일변도라는 사회통념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과 접근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부를 불신하고 투쟁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정부-시민단체-외국인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체계를 바람직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점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적 사회 문제를 실용적 관점과 접근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장에서 제시할 ‘단계적 다문화주의’ 개념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문제해

7장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결을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표 5〉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비교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목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다양한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문화를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열린사회 구현 ⁷⁾)	내국인과 이주자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감(다문화공생)
행위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정책목표 대상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외국인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에 따르면 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합법적 외국인임(합법적 단기체류 외국인, 국제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귀화 외국인, 난민 등) ⁸⁾)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주요 추진 방향	-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 우수외국인력 유치 지원	- 외국인의 인권 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 결혼이민가족의 역량강화
주요 다문화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한국어 교육 - 다문화 축제, 권익증진, 인권보호,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제점	- 전체 외국인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 -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 정부기관간 중복투자과 단기적 지원 -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 재정, 인력, 시설의 부족으로 내실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움 -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려울 수 있음

7)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5.2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제1회 외국인정책회의 보고서)

2. 단계적 다문화주의

글로벌한 세계 환경에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원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조금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보편적인 가치와 미덕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내용과 운영원리는 한국적 맥락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고 민족국가라는 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및 국내 취업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거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아무 조건이나 기준 없이 합법화하는 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온정적인 주장은 국민 다수의 반발을 일으켜서 오히려 외국인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국익증진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다문화주의(stepwise multiculturalism)를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1단계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기본적 성격의 인권보장을 충실히 하고 특히 여성, 자녀, 난민인정자 등 소수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외국인 지위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합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과 본국송환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속 및 보호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문취업제와 자진귀국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출입국하고 취업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와 의료혜택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체류와 정주를 허용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주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참정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엄연히 장기간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일정한 주민권(denizenship)을 부여하여 것이 필요하다.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다문화주의가 성숙해진 3단계에서는 이민과 귀화의 문턱을 낮추고 이민자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소수차별금지 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를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혈통과 종족이 아닌 시민권에 의해 재정립하고 국민들이 다문화주의적 가치와 행동양식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다문화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3. 민관 거버넌스체계

현대사회에 와서 국가의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주도보다는 민관협작이어야 더욱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제(예컨대 공적부조 환경정책 산재정책 등)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협조노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가지도자의 의지와 정부의 주도적 노력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동화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가 강하고 외국인을 출신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사교가 강한 환경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에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밀히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책 지침과 실질적인 집행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증대하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사회의 주체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에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내실화하여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는 정책지원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자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단체를 경유하지 않고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외국인간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카와사키는 1996년에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조례로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외국인 시민의 시정참가를 허용하였다. 카와사키시의 모델은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들이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용하는 행정이 결합하여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곽준혁, 2007).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는 ‘외국인복지과’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외국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카와사키시처럼 외국인들이 시정에 대표자로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외국인들이 스스로 관계된 여러 문제들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회를 보장하여 공무원과 외국인 주민간의 상호이해력을 높이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외국인 행정의 거버넌스체계의 한 방안으로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호): 5-34.
- 김남국.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5집(4호): 97-121.
- 김민정. 2006.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정책 다시보기”.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외, p 57.
- 김비환. 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다문화 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pp. 61-88.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순. 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pp. 47-75.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pp. 16-40.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3호): 67-93.
- 박백권□정건화. 2005.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한울출판사.
- 박천웅. 2007. 『이주민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국경없는 마을.
- 설동훈. 2004.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배경”. 『실천문학』 74호: 220-230.
- 설동훈 외. 200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송중호. 2007.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30호: 90-125.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pp. 13-43.
- 예동근. 2007. “다문화사회와 초국적 커뮤니티”. 미발표 논문.
- 오경석. 2006. “한국에서의 이주 문제의 동향과 안산 지역에서의 현안과 과제”. 안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주자지원분과 집담회 발제문.
- _____.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pp. 2-15.
- 오경석□정건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호: 72-93.
- 유정석. 2003. “캐나다-다문화주의 제도화의 산실”. 『민족연구』 11: 12-26.
- 이상길□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도래”. 다문화 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pp. 109-131.
- 이선옥. 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pp. 76-89.
- 이정환. 2007.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방향”. 『다문화 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pp. 41-60.
- 이한숙. 2005. “한국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과 전망.” 『이주노동자 운동의 미래, 그리고 진정한 연대를 향한 모색』. 2005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이주노동자인권연대, p. 73.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 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실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정기선 외.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조선경.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문제와 대응 방안". 『새국어생활』. 16권.
- 천선영. 2004.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4권(2호): 363-380.
- 한국염. 2007a. "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현황과 과제." 경기도청□경희대학교 공동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연구에 대한 국제세미나 발표원고.
- _____. 2007b. "다문화가족지원법마련연구 최종보고회 토론편."
- _____. 2007c. "친밀성의 재구조화: 다양한 가족형태." 『국회도서관보』 5.
- Kim, Bi-Hwan. 1996. "A Critique of Raz's Liberal Perfectionism". *Government and Opposition* 31.
- Kymlicka, Will. 2005. "Liberal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in Asia*, edited by Will Kymlicka and Baogang He. Oxford University Press.
- Lemaitre, Georges, and Cécile Thoreau. 2006. "Estimating the Foreign-born Population on a Current Bas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rk, Kyonghwan. 2006. "The Multicultural Society without Multiculturalism: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Sustainably Reglobaliz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권 3호: 69-78.
- Raz, Joseph. 1994. "Multiculturalism: A Liberal Perspective." *Dissent Winter*: 67-79.
- Taylor, Charles.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as, Brook. 2001. "Civic Multiculturalism and the Myth of Liberal Consent: A Comparative Analysis". *New Centennial Review* 1(No.3): 1-35.
- Troper, Harold. 1999. "Multiculturalism".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edited by Paul Robert Magocsci.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997-1006.

부록: 중간보고회의 전문가 논평

제 1 장 논 평

김남국 (서울대 정치학과)

기존의 한국 이민 문제 논의가 경제적 관점이나 인구학적 관점, 또는 여성학적 관점 등 어느 한 시각에 국한된 논의들이 많았다면, 엄한진 교수의 이 논문은 한국의 이민문제를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이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맥락속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보고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논문의 많은 부분에서 저자는 이민 문제에 정통한 학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성찰을 보여준다.

예컨대, 인구, 가족, 치안, 민족 문제 등 사회적 다수와 관련되어 은폐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이 이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의 수렴 현상을 보인다거나, 외국인 혐오증이 근대국가의 필수 구성요소라는 점, 한국의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세계적인 맥락을 반영한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한국의 이민 흐름이 정치적, 문화적 요인의 결핍으로 인해 안정적인 이민을 어렵게 한다는 점,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이민을 보내는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은 흥미로운 지적들이다. 또한, 이민을 둘러싼 미래의 담론구도가 인권론 대 국익론, 경제적 관점의 세계화 대 보편적 관점의 세계주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 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 사회적 소수의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입장 대 치안 차원에서 접근하는 입장 등으로 나뉘어 대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날카롭다. 저자의 전체적인 논의의 구조와 방향에 동의하지만 좀더 풍부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저자는 한국의 이민현상은 전형적인 세계화 시대의 이민현상이다라는 가설에서 논문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말은 더 분명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가 무엇이고, 그 시대의 이민현상은 무엇이고, 특별히 다른 시대와 구분될 전형으로 부를만한 세계화 시대의 이민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한국의 이민현상이 이러한 구분에 속하는지 설명을 필요로 한다. 필자의 생각에 한국의 이민현상이 꼭 세계화 시대의 이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자신이 출생한 곳을 떠나 멀리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동하는 이민의 역사를 경험해 왔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면 인류는 벌써 세계적 단위의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지구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고대와 근대의 지구화 경험은 21세기에서 일어나는 현대의 지구화 현상과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구별된다. 첫째는 변화의 속도에서, 둘째는 변화의 양에서, 셋째는 변화의 다양성에서 현재의 지구화는 이전의 모든 변화를 압도한다. 오늘날 지구화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과 노동의 균일하지 않은분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의 지구화를 규정 짓는 가장 큰 특징은 노동의 이동일 것이다.

한국도 이 경로를 그대로 밟아 왔다. 고대에도 이민이 있었을 것이고, 제국주의 시대에는 주변부의 송출국으로서 많은 한국인들이 멕시코나 미국, 만주로 떠났다. 한국은 1988년을 전후로 이른바 노동력의 유입국이 되었다. 세계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이주 노동자를 쏟아 부은 것은 아니라 균일하지 않게 전개되는 세계사의 한 부분에서 꾸준히 이민의 변화 양상을 보여온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의 이민 현상만을 따로 떼어내어 세계화 시대의 전형적인 이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의미 있는 가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둘째, 저자의 논의가운데 불황기에 급속하게 인종주의로 전화하는 경험과 관용 이후 국면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있다. 저자는 한국의 이민 현상을 지배하는 세계화라는 구조와 함께 호황 또는 불황기의 경제를 주요 구조적 변수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의 후퇴는 이민과 다문화 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인종주의와 극우의 활성화는 경기가 나 빠진다고 자동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그러한 상황을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과장하는 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폭발한다. 다시 말해, 경기만 좋으면 인종주의는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다. 예컨대, 9/11이후 경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이민논의와 다문화주의 후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국현실에서 다문화주의가 선협적인 대안일 필요는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어떤 다문화주의인가가 더 정확할 것이다. 마치 오직 한 종류의 다문화주의가 있고, 그 다문화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화주의로 갈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서술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규범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문화가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현실을 묘사하는 개념으로써 다문화주

의는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즉, 모든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반면, 규범적 개념으로써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구분되는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이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이러한 권리를 공공영역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의 다문화주의도 단계에 따라 또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즉,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자치나 대표의 권리를 부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주의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떤 다문화주의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세계 각국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

넷째, 저자는 다문화주의의 쇠퇴를 강조하기 위해 영국의 인종평등위원회 CRE 위원장 트레버 필립스의 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은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프랑스의 고등통합위원회가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 또는 공화주의적 통합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트레버 필립스의 말을 비판적 검토 없이 재인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트레버 필립스는 흑인의 언론인 출신이자 노동당원으로 런던시장 후보가 되는데 실패한 후 런던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CRE 위원장을 지냈다. 그가 다문화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격리된 집단 거주자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 역시 다문화로 이루어진 영국정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주장이 CRE 15명의 위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켄 리빙스턴 런던시장으로부터는 곧 영국민족당BNP에 가입할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계도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대해 비판한 필립스의 주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많은 논쟁과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의 개인적인 주장을 다문화주의의 쇠퇴를 강조하는 증거로 바로 인용할 수는 없다.

다섯째, 한국의 현실에 대해 낭만적 다문화주의라고 규정한 것은 흥미롭다. 저자는 다문화사회의 이행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국제결혼, 혼혈 문제 등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전국민적 동의가 있었다고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단계까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압박Political correctness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무엇이이상적인 것인가 또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의 강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우리 사회의 힘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향해 전진하거나 쇠퇴하

는 식의 단선적 발전을 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단계들이 동시에 혼재한다. 예컨대, 2003년 불법체류자 자녀의 취학문제, 2004년 주민투표법을 통해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등은 유럽이나 미국이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투쟁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었다. 우리는 아직 관용을 생활화하는 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정권과 교육권 같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해치우기도 한다. 물론 아직 우리사회에는 다문화주의의 틀안에서 은폐되는 구습과 관행이 있을 수 있고, 자유주의의 보편적 세례를 통해 타파해야 할 부정적인 관습들이 있다.

제 2 장 논 평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1.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다문화, 다민족 논의들이 엄밀한 한국사회의 실상분석에 기초하여 제기되는 튼튼한 담론체계라기보다 일종의 지적 유행과 같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서구의 특수한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담론이 한국사회에 접맥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사적, 문화론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개념의 애매한 사용, 모순적인 적용 등을 밝혀내고자 한다.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이론적으로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쟁점들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2. 아직 완성된 원고가 아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저자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의 개념 및 그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 다문화사회를 다민족사회와 혼용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
 - 순혈주의에의 거부감과 문화론(문명론)에 대한 일방적 예찬이 내포된 점에 대한 비판
 - 민족집단을 문화단위로 파악함으로써 민족문화론의 함정

2) 한국사회=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 단일민족국가이념의 억압적 성격 비판론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의 '단군단일민족론'을 순혈주의로 보기 보다는 문명주의적 민족주의로 파악
- 문명론적 민족주의도 강력한 차별성, 위험성을 동반
-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는 근대에, 일본과 독일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

3) 한국의 다문화상황 진단

- 현재의 다문화주의는 주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권리향유를 목표로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에서 강조하는 논리
- 주체별로 다문화 담론을 제기하는 이유와 목적 다름 - '구호'로 동원
- 소수자들의 주체화 전략과 연계
- 다문화상황은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실상 - 여전히 국제이주의 정치경제적 문제, 기본권의 문제가 본질로 남아있는 형편
- 다문화주의 담론이 현실문제를 은폐할 가능성 -여성에게 특히 가혹하게 작동
- 관주도 다문화주의의 문제 - 정부와 시민사회의 경쟁

4) 정책적 함의

- 차별의식은 순혈주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문명론에 기인
- 문명론적, 문화론적 민족주의가 갖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
- 다문화주의 담론의 모호한 구호를 벗기고 실상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

3. 위의 주된 논점별로 논평자의 견해를 피력하면,

1) 개념적, 이론적 문제

-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다민족주의 등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게, 너무 혼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개념들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분석적으로 사용하는 것, 나아가 어떤 이론적 패러다임과 결합되어 있는 개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이 글 자체도 이런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문화주의, 다민족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의, 다문화상황, 다문화사회, 다민족/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등의 용어들이 함께 쓰이고 있으나 그 엄밀한 개념적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문화민족주의, ‘문명론적 함의를 기저에 가지고 있는 국민문화론적 다문화주의’란 말도 쓰이는데 혼란을 초래한다.

2) 단일민족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

- ‘단군의 자손’으로 명명되는 단일민족론을 혈통주의로 보지 않고 문명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해석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핏줄보다도 정통성 내지 문명적 우월성과 더욱 친화적이던 구체적 사례들을 밝혀준 것은 한국민족주의=혈통주의로 단순화하려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하지만 원래 문명론적 원리가 강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에 대한 극복이 되지 않는다. 필자들 스스로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로 뒤바뀐 것은 근대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식민지 하에서 변형된(구성된)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저자들의 입장이 불분명하다.

- 식민지 하에서 순혈주의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된 이유, 그렇게 바뀐 논리의 실질적 규정력 등이 역사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오구마의 논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John Lie나 신기욱의 논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문제는 ‘언제’ 단일민족론이 형성되었는가 아니라 그 현재적 속성과 규정력의 실상이 무엇인가에 있다. 또한 일본발 단일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아니면 그에 저항하여 ‘발명’된 것이든, 현재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밝혀져야 하며, ‘일본발’로 인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을 순혈주의보다는 문명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전히 혈통주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혈연적 변수가 부차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혈통+문명의 복합적인 구조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 이것은 특히 근대적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관됨 -- 최근 테니즌/마지즌 구별에도 이런 두 요소의 복합적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다문화지형도

- 다문화 지형이 여러 주체 (특히 계급과 젠더)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오류이고 자칫 다문화주의 담론이 다양한 현

실적 문제를 은폐시키거나 특정 주체에게는 억압적 효과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 하지만 이 글 역시 다문화상황의 지형도를 단일한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즉 ‘다문화 상황의 지형도’, ‘다문화담론의 지형도’, ‘다문화정책의 지형도’는 구별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국제결혼가정, 탈북세터민, 소수자 등 주체의 특수한 지위와 문제와 연관하여 그 실상, 담론구조 및 정책들이 같지 않다. 또 출입국관리 영역, 경제적 권리영역, 국적과 시민권 영역, 시민사회의 영역, 문화나 지식의 영역, 교육정책의 영역처럼 다양한 제도적 층위 사이에 나타나는 편차나 중층성을 밝히는 일도 필요하다.

- 이런 점에서 ‘관주도 다문화주의’를 단지 ‘시민사회와 경쟁적인 협조’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넘어가는 것도 너무 안이해 보인다. 왜 특정 정책 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다른 정책과의 불일치와 상호 모순성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에 대한 본격적이지 분석적인 검토가 없이 ‘다문화주의가 구호적’이라고 지적하는 것 만으로는 그런 우려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 최종적으로 필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명확해지면 좋겠다. 결론 부분에서 ‘다문화사회’가 ‘다민족사회’ 보다 더 선호될 만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한계나 위험성도 지적하고 있다. 채합의되지 않은 ‘다문화주의’ 개념을 각 주체별로 제 입맛에 맞추어 사용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들이 선택하거나 제안하려는 대안은 무엇인지?

4) 방법론적 제언

- 이 글은 ‘역사적’인 시각과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다양한 과거의 시점들, 예컨대 서문에서 언급한대로 적어도 근대이전, 식민지시대, 해방 후 냉전 상황, 탈냉전 세계화 시대라는 역사적 시공간성을 총체적으로 시야에 넣고 주제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조선시대 이전에 대한 여러 중요한 지적이 주목할 만하지만 해방 후는 단지 “전쟁, 분단, 냉전 등으로 (그 경향이) 더욱 확산되었다”라는 지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게다가 시기가 달라지면 다루어지는 주제도 달라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전통(과거)과 현실(현재)라는 이분법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근대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총체적인 역사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의 다문화상황을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문제의 출현을 들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재발견'과 그 접촉 경험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정체성, 단일민족론과 관련하여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려 할 때 다양한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존재는 중요하다. 정책적으로도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논란, 문화적 정체성과 법적 시민권, 이중국적 문제 등이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정책에 미친 효과도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구조적 변인으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효과가 이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담론의 지형도는 주체의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지지만, 한 시대의 역사적 조건, 그 시대상으로부터 규정되고 영향받는 것이 적지 않다.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실천, 정책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왜 1990년대 이후에 급증하게 되는지,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사회사적으로나 지식사회학적으로 천착하는 작업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3 장 논 평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은미 교수의 발표는 다문화 사회에 형성된 외국인 마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며 한국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마을의 특징을 서구사회의 사례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전지구화와 함께 한국 사회의 인적구성의 변화나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롭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의 적절한 논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외국인 마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증적인 사례연구의 방향이나 질문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표이다.

다만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듯하다.

첫째, 이 논문은 외국인 마을의 형성과 발전과정, 한국의 외국인 마을의 특징을 이론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논문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정확하게 규정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있다. 논문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마을’ ‘문화마을’ ‘문화체계’ ‘문화향유체계’ 등의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특히 ‘문화마을’의 경우 일시적인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장터’나 ‘문화공간’으로 보임에도 ‘문화마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문화공간’이라고 규정해도 될 텐데 ‘마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마을’의 개념에 대한 저자의 이론적 주장이 담겨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의 ‘외국인 마을’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리뷰할 때 한국과 해당국의 차이에 대한 엄밀한 비교 검토가 없어서 분석 단계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듯하다. 외국 사례에서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이주해 왔는가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거나, 캐나다의 ‘First Nation’과 같은 선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형성된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마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의 ‘외국인 마을’에 해외 사회를 피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주정책의 내용과 방향, 이주의 역사가 전혀 다른 사회를 단지 ‘외국인 마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외국인 마을’에 관한 기존 연구의 이론적 쟁점을 규명하고 그것이 한국의 ‘외국인 마을’에 담는 함의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관된 문제로, 국내의 ‘외국인 마을’ 역시 이주 과정이나, 체류자격, 경제적 여건 등이 너무나 다른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을 형태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주노동자가 주축인 필리핀인이나 몽골인들은 체류자격과 취업조건에서 교육시설과 주거지가 융합된 ‘마을’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국사회의 수용 태도나 이주기간 등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요소가 아닌가 한다.

넷째, 물론 이론적 논의가 논문의 주된 주제이긴 하지만, 실증적 연구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다. 국내의 외국인 마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마을의 실증적 연구 자료가 중요함에도 단편적인 사실들만 제시될 뿐 해당 외국인 마을의 특징을 보여줄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런 점은 국내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논문에서 전혀 인용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있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보인다. 서울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연구들이나 안산의 이주민 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험적 연구 자료의 부족은 '몽고'마을과 같은 '몽골'인들에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실수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이주민 집단들이 서울에 체류하며 자신들의 집단거주지나 '모임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인들의 집단거주지화 되고 있는 이태원 일대 등에 대한 자료나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다섯째, 경험적 연구 자료가 적절하게 소개되지 않아서 외국인 마을의 특징을 설명하는 논문 저자들의 견해나 해석이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필리핀 마을은 폐쇄적인 반면에 이태리 마을은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해석은 너무나 피상적인 설명이 아닌가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인 집단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축인 두 민족 집단의 사회적 존재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 진술은 객관적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여섯째, 외국인 마을의 유형분류나 특징에 대한 해석에서 언어 소통 능력과 같은 변수를 문화마을 형성의 중요 변수로 삼는 것이나, 집단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 '종교'의 차이, 인구학적 구성 요소가 다른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교육'의 변수 등은 유형분류의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 집단에서 교육변수가 외국인 마을을 형성하는 변수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문화마을'의 존재를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징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 '문화마을'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더 구체화 시켜야 하며, 외국 사례에서 보이는 초기 이민자들의 마을 구성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문 16쪽 두 번째 문단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강력한 주류사회와 문화가 존재하고, 그 주류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개별 문화에 대해 선택적으로 호감 또는 비호감을 가지게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문화가 배제되어지는 효과를" 낳았고 "주류사회에 의해 선택된 집단의 문화체계는 지원되고 지지되면서, 소수 외국인 공동체는 문화마을의 '형체가 없고' 비조직적인 형태고 남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필리핀이나 몽골 등 이주노동자가 주 구성원인 '문화마을'들의 형성 배경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경험적 연구 자료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 4 장 논 평

윤인진 (고려대 교수)

I. 외국인정책 수립의 의의

우리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단일민족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왔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동질성은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고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었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강한 동질성은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구분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다인종□다민족사회에서는 인종□민족집단들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소수인종□민족집단 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인종□민족문제가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여겨져 왔고 소수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지난 수 십 년 간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해왔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이질성은 점차 증가해가고 있다. 앞으로 상이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단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참여하면서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요구하게 될 때 사회관계에 있어서 인종과 민족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갈수록 다원화되는 국제환경에서 단일민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강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이다. 혈통이나 문화적 동질성에 집착하기보다는 타민족을 존중하고 그들과 공존□공영하려는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줄 아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법적 지위 및 처우, 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외국인정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책의 수립은 시의적절하다. 우리에게 앞서 대량의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여 온 서구 선진국에도 없는 외국인기본법을 우리가 먼저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구에는 이민이 일상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인종 및 민족집단 성원들간에 공존하는 기술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타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하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같은 명문화되고 구속력을 갖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은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I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개선 사항

법무부에서 마련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정책의 기본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 가지 개선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적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1장 제2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외국인은 합법적 단기체류 외국인, 국제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귀화 외국인, 난민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로 제정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담론 형성과 외국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집단들이 외국인 근로자,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맺어진 외국인 기본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외국인 정책이 합법적인 이주자들만을 대상으

로 한다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실천면에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III.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내실화

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의 수혜자를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정부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익을 추구하며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들에게 다문화주의 정책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 혹은 보호에서 벗어나 국가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권, 환경, 평화, 문화 등과 같은 탈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면서도 합법성의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인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지대하다.

현대사회에 와서 국가의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주도보다는 민관협작이어야 더욱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제(예컨대 공적부조 환경정책 산재정책 등)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협조노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가지도자의 의지와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권 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동화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가 강하고 외국인을 출신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사고가 강한 환경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일상생활에서 지역공동체에서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의 주체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내실화하여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는 정책지원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적 정책을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을 변화하는 것이 필수

적인데, 이때 정부와 시민사회는 교육과 홍보노력을 함께 하여 다문화주의적 가치가 일반 국민의 삶과 의식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논 평

주은우 (중앙대 사회학과)

1. 200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가 야기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장면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주의인 바, 안산은 한국사회의 이러한 문화적 변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이다. 그동안 사회적 장면에서 계속 배제되어 오던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주노동자의 현존이 집약적으로 가시화된 곳이며,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하고 운동의 쟁점이 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며, 한국사회의 다인종사회화□다문화사회화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 해온 곳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 — 안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는 바로 이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사례로 하여 다문화 운동이란 무엇이며, 어떤 실천적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가, 그리고 다문화 운동은 어떤 문화적 쟁점을 제기하며 어떻게 이론화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그리 많지 않았고 현재 우리 학계에서 다문화주의 담론 혹은 이론화가 첫걸음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앞에서 짚어본 안산이라는 지역이 갖는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이 논문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논문이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실제 운동과 조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커진다.

2. 이 논문은 다문화 운동의 실천과 관련하여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국경없는 마을’과 관련하여 이 논문이 손대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의미. 이것은 주로 ‘국경없는 마을’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된다(II장).

둘째, 국경없는 마을 '운동'. 이 주제는 주로 운동으로서의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된다(III장).

셋째,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이 부분은 운동의 전개 과정과 다문화 공동체 교육에 대하여 논하는 부분 등에 분산되어 논의되고 있다(III장과 IV장).

주제의 성격상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는 서로 구분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수준에서는 구분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둘 다 '실천'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과정으로서의 사회운동과 그 목적을 부분적으로라도 달성한 상태에 있는 조직의 일정한 제도화 내지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연대성과 연결망의 확립(이 경우 다문화 공동체) 혹은 그 확립이 일정하게 성취된 상태는 성격이 다르고 부딪치는 주요한 문제 역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무엇보다 이주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의 시민권 확보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로서 다루었고, 국경없는 마을 '공동체'는 다문화 공동체라는 하나의 하위문화 공동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전체 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활동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즉, 전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국사회라는 (큰)타자로부터 인정을 얻는 것이었다면, 후자에서는 아무리 불충분할지라도 그 인정을 어느 정도 획득한 상태에 있는 운동이다. 이러한 차이는 운동과 조직 활동에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분석적 차원에서 운동과 공동체라는 두 주제는 분리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논문에서는, 특히 뒷부분에서는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논의가 운동의 차원과 공동체의 차원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정 쟁점을 다룰 때마다 어느 차원에서 제기되는 쟁점인지가 보다 분명해지면 필자의 논의가 전달되고 다문화 운동의 이론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실천 과정을 소개하는 III장에서 이 논문은 운동의 전개 과정을 제1기(1996-2001), 제2기(2002-2006), 제3기(2006년 6월-현재)의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제3기는 국경없는 마을의 법인화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안산이주민센터로의 명칭 변경이라는 명확한 기점이 존재하는데, 이에 비해 제1기에서 제2기로의 전환은 뚜렷한 기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3기의 시작 기점을 볼 때 필자는 운동 조직 형태상의 변화를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데, 제1기에서 제2기로의 전환 역시 같은 차원에서 시기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논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운동의 주요 쟁점이나 활동 방식의 변화를 통해 느슨하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4. 이 논문의 II장에서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단일문화주의’는 단일성을 강조할 때 ‘배타주의’가 될 위험이 있고, 소수자 문화에 대해 관용적이 될 때에도 기껏해야 ‘동화주의’에 머물 뿐이라 지적한다.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할 때 ‘분리주의’의 위험을 초래하며, 이런 점에서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이 논문에서 암시하듯이 거울상적 대립쌍일 뿐이다. 그런데 83쪽에서 제시되는 2×2 형식의 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의 범주들은 현재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xy축으로서 연속적 혹은 서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자는 범주들의 비교 차원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표를 변형할 것을 제안한다(제일 좌측 칸 내용은 잠정적 제안일 뿐이다).

	단일문화주의	다문화주의
극단화	배타주의	분리주의
통합의 과제	동화주의	통합주의

마찬가지로 84쪽의 <표3> 역시 화살표를 지워야 한다.

	자유주의	평등주의
	시장형	공동체형
	차별형	인권형

여기서 토론자는 제일 좌측 칸 내용을 비웠는데, 이 표에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비교하는 각각의 차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형과 공동체형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각각 터하고 있는 사회의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별형과 인권형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각각 품고 있는 소수자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본 관점과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현재 논문의 해당 부분에서의 논의는 꼭 그렇다고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상태에 있다.

5. 위의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이어지는 논의에서(85-86쪽) 다문화 운동이 '다름과 차이'의 문제를 다룰 때는 평등주의의 입장에 서고, '창조와 풍요'의 문제를 다룰 때는 자유주의 입장에 서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이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이들을 평등하게 다루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차이 자체의 인정과 차이들의 평등의 포용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단순 결합으로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 문제가 여기서 제기된다. 그것은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형용모순성과도 같은 것이며,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결합이 진지한 숙고 없이 단순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문화 운동의 인식론적 토대 혹은 다문화주의 자체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자유주의적 다원주의가 진정으로 차이 자체의 인정과 포용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6.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과 인식전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의 확산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토론자는 판단하는데, 사실 이런 낙관은 그리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10여 년 동안의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동은 그토록 견고한 것처럼만 보이던 한국사회의 순혈주의문화의 아성을 순식간에 허물고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단시간에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물론 이런 태도변화의 내부에 잠재한 모순과 위선성, 그리고 어떤 혼혈인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른 차이와 차별성,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가 이런 인식 변화를 촉진한 면이 있다는 역설, 혼혈인에 대한 태도변화가 '외국인'과 타인종에 대한 태도변화로 이어지는가 등등의 문제들은 전혀 다른 문제들이다). 이런 단시간의 거의 근본적인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그것을 고수하려해온 집착을 상당히 실없는 것으로 보이게까지 한다(그리 금방 쉽게 바뀔 것을 무엇하러 그렇게들 대단한 것처럼 고수해왔을까?).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globalization의 산물이다. 세계화와 시장 논리가 과연 다문화 '공동체'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가? 자본과 시장은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며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그것들을 파괴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시장을 다문화주의의 객관적 토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면까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려가 요청되지 않는가 한다.

7. 다문화 운동에서 이주민과 그 자녀들의 ‘시민권’ 획득은 가장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다. 토론자는 시민권 획득, 이주 주민등록증 부여 등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시급한 과제를 인정하지만, 이 논문의 필자 역시 인정하리라 믿어지는 것처럼 시민권은 다문화 공동체 확립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권 이후’에 대한 고민이 요청될 것이며, 이 부분에서 시민권의 일부가 아니라 시민권을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으로서의 보편적 인권과 그것에 대한 중단 없는 요구가 중요하게 숙고되어야 할 과제일 수 있다. 또한 시민권의 요구에만 머무르는 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걸림돌이었던 국민국가의 경계에 머무는 일일 수도 있다.

8.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3의 정체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싶다.

제 6 장 논 평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최근에 붐이 일어난 다문화 관련 논의는 학계의 준비 상황을 뛰어넘을 정도로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多文化를 茶文化로 알던 시절이 얼마 전이었던 것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현재까지 다문화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쟁점을 던진 주체는 학계라기보다는 정부 측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학계는 (비록 산발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에 따라 뒷북을 치는 모습이었다. 이 논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근 몇 년 간 정부가 주도해온 다문화 담론의 내용과 그 진행과정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들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시도이다. 특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일선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해온 이해경 교수는 정부 부서 간의 균형관계를 포함하는 분석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장점들을 집어보자. 일단 이 논문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특성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표 1>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으며, 해당 절은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 증가, ②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③ 체류 외국인의 다양화와 양극화, ④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의 충격 등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둘째로 이 논문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인력정책에 그치지 않고 인구 및 차별 철폐정책, 가족정책, 사회문화정책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책의 성격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변한 것, 국적취득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들이 사라진 것 등을 주목하면서 여성주의 시각에서 정책들을 바라본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셋째, 이 논문은 정부의 다문화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 요인들 중에서 정부 각 부처간 세력 확대 노력을 꾀한 것과 노무현 정부의 특수성(소수자 출신, 시민사회운동 출신)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전자는 이 분야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연구를 해오면서 정부 각 부처들의 현장을 직접 만난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예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다문화정책을 분석하면서 문화에만 매몰되어 분석하기 보다는 사회과학의 보다 크고 일반적인 분석틀인 권력, 계급, 성별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흔히 다문화정책을 얘기할 때 '문화'의 측면만 강조하고 그것의 확산이나 수용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지만, 문화가 전체 사회를 이루는 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변수들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이 논문이 좀더 다듬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몇 가지 점을 굳이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하나하나한 지적이겠지만) 아직 완성된 글이 아니어서 분석적인 비평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군데군데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 괄호를 사용해서 추가 서술할 부분들을 밝혀놓은 곳들이 있다. 저자의 의도대로 추가 서술이 이뤄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117쪽에서 외국인이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체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은 날짜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시행된 것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셋째, 117쪽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주요 변화를 꼽는 두 번째로 국제결혼의 증가가 ‘여성문제’인데도 ‘가족문제’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의문시켰는데, (물론 완성본에서는 잘 설명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두 ‘문제’가 갖는 차이점은 무엇이고 정부가 의도한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채기 어렵다.

넷째, 저자는 정부의 다문화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요인으로 노무현 정부의 특성을 언급했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출신이거나, 과거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어서 대만에 비해 계급적인 대응 정도가 낮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정책,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편다는 의미)고 언급했다. 이 표현은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좀 더 엄밀한 서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 출신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과 정책 입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주요 부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

다문화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비참한 소수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동정하고 떠안아야 한다는 식의 담론이 다문화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 논문의 주는 의미는 지금 반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담론이 품고 있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내고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이 다듬어져서 우리 사회 다문화담론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큰 역할을하기를 기대한다.

제 7 장 논 평

오경석 (이주노동자와함께하는안산지역실천연대)

(1)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현재 생산, 소통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담론을, ‘국가 주도 다문화주의(state-led multiculturalism)’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citizen-led multiculturalism)’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 각각의 형성 배경과 내용, 장점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지향성을 매개해줄 수 있는 대안적인 다문화주의로서 단계적 다문화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2) 방대한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론과 현실, 정책적 층위를 아우르며, 다문화 담론 생성의 복잡한 지형과 내적인 차별성을 비교적 잘 드러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다문화주의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토론의 준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그러나 아쉬운 대목들도 몇 가지 눈에 띈다. 우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서인지, 명확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문화주의 담론의 유형화라고 보기에는 ‘국가’와 ‘시민’이라는 구분의 근거가 모호하다. ‘국가’와 ‘시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상이한 상을 그려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 생산자’로서의 위상은 공유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현실을 다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감을 공유할 수 있는 셈이다. ‘시민’이 지원 단체나 전문가 집단을 뜻하는 경우, 다문화주의를 주도하는 ‘국가’와 ‘시민’이 상호배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협업적인 관계에 있을 개연성은 상존한다.

두 가지 유형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비판적 소개라고 보기에는 분석 내용이 빈약한 편이다. 최근 발의되고 있는 주요한 다문화 관련 정책들(“거주 외국인지원조례 시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안” 등)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다.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배경, 특징,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 도덕적, 개념적’ 곤궁과 혼돈, 내적 모순을 지적할 수 있으려면, 그런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발굴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를테면,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곡동 외국인 마을 관광 특구’ 사업) 시민 단체 세 곳의 다문화 관련 활동에 대한 분석도, 단체들의 공식적인 ‘리플렛’ 수준에 가깝다. 그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해 온 이주민 공동체들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여수 사건’이 이 글 전체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포함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두 가지 유형의 다문화주의의 ‘공통적인 한계’에 대한 분석의 부재도 아쉽다.

‘단계적 다문화주의(와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대안의 제시가 초점이라고 보기에, 개념 규정의 엄격성과 소박한 낙관주의적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제시하는 단계적 다문화주의는, “1단계: 합법체류와 불법체류의 강한 구분, 차별적 적용, 2단계: 장기체류자 합법화, 제한된 주민권 부여, 3단계: 이민조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완화, 적극적 조치, 인정의 정치 허용”이라는 세 단계를 경유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명확한 개념 규정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를 강하게 구분하고, 다문화적 포용 정책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1단계)”하는 보수적 이민 정책이 다문화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게다가 그렇듯 강력한 동화주의 이민 정책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에 가까운’ 급진적인(인정의 정치가 공유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진화해갈 수 있으리라는 가정은 너무 소박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단계적 다문화주의’가 ‘대안으로서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다문화주의 개념의 외연이 동화주의를 포함하는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적 논증이 필요하며, 정책의 이행이 배제된 행위 주체들의 적극적인 집합 행동없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의 제시가 필요하지만, 이 글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제의 모호함 다음으로 눈에 띄는 아쉬움은 구성 및 서술 방식의 문제이다. 글의 주제와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은 한국 사회의 이주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50%에 해당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다문화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주 현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다문화주의 담론이 공론화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실태만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 탓에 글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깨어지고 만다.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서는, 등록 이주 노동자 범주 내부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문화 공동체들을 소개하고, 결혼이민자 관련해서도, 결혼 경로, 가족 구성(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등), 문화권역 별로, 다양한 결혼 이민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삶이 향유되고 있음을 소개해주었다더라면, 글의 집중력이 제고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2차 자료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어떤 단락은 다른 연구물의 ‘발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용 부호가 생략된 부분도 발견된다.

(4) 전체적으로 여러 동료 연구자들 및 정책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욕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문제 제기와 쟁점의 제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문화주의 담론 지형을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그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의 제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이 보여주는 몇몇 아쉬움은 정당한 한계일지도 모를 일이다.

(5) 마지막으로 이 글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연구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개념의 ‘대안적인 급진성’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천착이 요구된다. ‘다문화’란 사회 구성의 다양화를 뜻하는 분석적 개념이자, 다양화의 구현을 추구하는 정치 지향(규범)이기도 하다. 전자와 관련, 우리들의 연구는 아직 이주민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네팔인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이 35개에 달한다. 그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담론의 영역을 벗어나 이제 다문화 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지향으로서 다문화란, 논리적으로 ‘탈물질, 비국가적 사회공동체의 구성을 목표로 한다. 비국가적 사회공동체의 구성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너무나 소박한 희망이다. 이 점에서 다문화는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체제의 근간인 민족 국가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공유하는 정치 이념일 수 밖에 없다. ‘탈물질’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 역시,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가부장적 생산력주의라는 공식적인 꿈에 대한 전복적인 탈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비판의 기획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물질에 대한 신화를 거둬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급진적인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정책의 차원 너머를 겨냥할 수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